

2012년



자연재난 표준행동매뉴얼



산 청 군
산청군재난안전대책본부

안 전 관 리 헌 장

오늘날 우리는 태풍 · 지진 · 화재 · 교통사고 · 전염병 등 갖가지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으로부터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

재난은 언제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와 기관 · 단체 그리고 학교와 기업은 안전관리에 앞장서 노력하여야 하며, 국민 모두는 스스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우리의 번영은 안전문화의 터전 위에서 이루어지며, 안전을 위한 노력과 투자는 우리와 후손의 행복을 위한 것이다. 이에 우리는 안전한 국가를 지향하는 새로운 가치관을 정립하고 성실한 실천을 다짐한다.

- I.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 단체, 기업 그리고 국민은 모든 일에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
- I. 가정, 학교, 직장 그리고 사회의 각 분야에서 교육과 홍보를 통하여 안전관리를 생활화하도록 한다.
- I. 위험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여 미리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 I. 국가기반체계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되어야 한다.
- I. 생활주변 시설과 사업장 그리고 위험지역은 안전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 I. 자원봉사기관, 자원봉사자, 시민단체 그리고 전문가의 협력을 통하여 안전관리의 효율을 높인다.
- I. 과학적 안전관리를 위한 연구에 힘쓰고 안전산업을 육성한다.

목 차

제1장 총 론

제1절 산청군의 지역여건

1. 지역적 여건 2

제2절 일반사항

1. 개요 3
2. 매뉴얼 적용범위 3
3. 관련법규 3

제3절 재난관리대책

1. 기본방향 4
2. 추진전략 4

제2장 재난관리조직 및 근무체계

제1절 조직 및 근무체계

1. 산청군재난안전대책본부 조직 체계 14
2. 상황근무 체계 16
3. 단계별 실적별 근무인원 편성 22
4. 상황실 근무자 실무반별 담당업무 29
5. 유관기관 등 파견근무자 비상근무계획 35
6. 현장상황지원관 운용계획 38

제2절 비상지원본부(현장CP) 설치·운영

1. 비상지원본부 운영 지원 40

제3장 자연재난유형 및 단계별 행동요령

제1절 태풍·호우

1. 대비단계 53
2. 대응단계 75
3. 복구단계 117

제2절 대설

- 1. 대비단계 127
- 2. 대응단계 135
- 3. 복구단계 145

제3절 황사

- 1. 대비단계 150
- 2. 대응단계 151
- 3. 복구단계 157

제4절 가뭄

- 1. 대비단계 159
- 2. 대응단계 171
- 3. 복구단계 173

제5절 지진

- 1. 대비단계 175
- 2. 대응단계 177
- 3. 복구단계 182

제6절 강풍

- 1. 대비단계 184
- 2. 대응단계 191
- 3. 복구단계 211

제4장 업무유형별 표준행동 요령

제1절 풍수해 업무

1. 재난취약시설 점검, 지정관리 223
2. 방재물자 확보·비축 및 동원장비 등 지정관리 232
3. 봉사단체 및 유관기관 협조체제 구축 234
4. 재난상황 홍보방안 및 자율방재의식 고취 238
5. 인명구조 및 고립예상지역 대책 243
6. 응급진료·구호 및 이재민 보호대책 244
7. 생활필수시설 긴급복구 대책 253
8. 시설물 응급복구 대책 260
9. 방역 및 보건위생 대책 261
10.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265

제2절 기타 자연재난 업무

1. 대설대책 272
2. 황사대책 276
3. 가뭄대책 279
4. 지진대책 283

제5장 산청군 재난안전대책본부 행동요령

1. 본부장(군 수)	285
2. 차 장(부군수)	291
3. 총괄조정관(기획감사실장)	291
4. 통제관(건설과장)	291
5. 담당관(재난관련부서장)	292
6. 실무반	299

제6장 실과별 주요임무

1. 기획감사실	304
2. 주민생활지원실	304
3. 행 정 과	307
4. 재 무 과	308
5. 문화관광과	308
6. 환경위생과	310
7. 경제도시과	311
8. 건 설 과	313
9. 산림녹지과	316
10. 보건의료원	320
11. 농업기술센터	321
12. 상하수도사업소	326

제7장 국민 행동요령

제1절 태풍	329
제2절 호우	332
제3절 대설	335
제4절 황사	337
제5절 가뭄	339
제6절 지진	340
제7절 폭염	342
제8절 강풍	345

※ 참고자료

1. 기상특보 및 발령기준	346
2. 산청군재난안전대책본부장 지휘매뉴얼	347
3. 자연재난으로 인한 과거10여년간의 피해현황	364
4. 재난관련부서·유관기관 표준행동매뉴얼(요약본)	365
5. 재난상황관리 비상연락망	370
6. 2012 자연재난대비 방재시설·물자 확보현황	373

1장 총론

제1절 산청군의 지역여건

제2절 일반사항

제3절 재난관리대책

제4절 재난의 이해

제1장 총론

제1절 산청군의 지역여건

- 산청군은 경남의 서북부에 위치하고 동부는 합천군·의령군, 서부는 함양군·하동군, 남부는 진주시, 북부는 거창군에 인접하였는데 그 규모는 동서가 38.5km, 남북이 40.6km이며 총면적은 793.89km²이다.
- 주위의 대부분이 준엄한 산령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특히 서부는 지리산 천황봉을 기점으로 지리산 산맥이 남북으로 질주하여 하동, 함양군과 경계를 이루고 합천군과는 백운산의 지붕인 황매산이 양군의 분수령을 형성하고 있어 집중호우가 잦은 지역이다
- 여름철에는 지형적인 영향으로 집중호우가 잦은 편이고, 겨울철에는 대륙성 고기압 확장시 편현상으로 주변지역보다 최저 기온이 높게 나타난다. 지난 10년간 연평균 기온은 3℃이며 같은 기간동안 평균 최고 기온은 19.4℃, 평균 최저 기온은 7.8℃를 기록하고 있다.
10년간 평균 습도는 62.5%이며 평균 강수량은 1,744.2mm, 최고 강수량은 1998년도에는 2,154.3mm였다.
- 함양으로부터 중앙부를 남북으로 관류하는 남강, 좌우로 황매산을 원천으로 양천강, 지리산을 원천으로 하는 덕천강이 합류하여 진양호로 유입되고 있으며 대부분 하폭이 좁고 구배가 급한 미개수 하천으로 홍수 피해의 근원적 취약 요인을 안고 있다.
- 도로는 대전~통영간 고속국도 35호선인 대전~진주선, 국도3호 남해~금산선과 국도20호 산청~산청선, 국도 59호 광양~양양선이 동서남북으로 관통하고 있다. 지방도로는 고성군 하이~고제선이 단성 관정에서 금서 주상까지, 서포~단성선이 단성 당산에서 단성 창촌까지, 명석~차황선이 신안 청현에서 차황 신기까지, 오부~대양선이 오부 오전에서 차황 장박까지, 유림~성산선이 생초 어서에서 생초 향양까지, 신등~차황선이 신등 단계에서 신층 사정까지 통하고 있다. 국도는 각 면 소재지까지 통하여 교통은 편리한 편이다.

제2절 일반사항

1. 개 요

가. 목 적

이 매뉴얼은 태풍, 호우, 대설, 황사, 가뭄, 지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자연재난에 대한 재난유형별, 단계별(대비, 대응, 복구), 업무유형별 표준행동 매뉴얼을 작성·활용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상황대처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기여하고자 함.

나. 근 거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4조, 제74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 자연재해대책법 제45조

2. 매뉴얼 적용범위

- 가. 태풍, 호우, 대설, 황사, 가뭄, 지진, 폭염 등으로 인한 재난업무 수행과 관련되는 군 관계부서 및 유관기관에 적용
- 나. 태풍, 호우, 대설, 황사, 가뭄, 지진, 폭염 등으로 인해 발생이 예상되는 재난에 대하여 군의 대처능력 제고를 위한 활동에 적용
- 다. 태풍, 호우 등으로 인한 침수, 하천범람, 산사태, 매몰 등의 사태로 재산 및 인명 피해가 발생되거나 예상되어 군 차원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에 적용

3. 관련법규

- 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 나. 자연재해대책법
- 다. 재해구호법
- 라. 농어업재해대책법
- 마.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 바. 자연재난 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지침
- 사. 산청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 아. 산청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조례

제3절 재난관리 대책

1. 기본방향

- 가. 사전 예방활동 강화로 종합적인 방재대책 추진
- 나. 유관 기관간 원활한 공조체계 유지
- 다. 신속한 응급대책 실시

2. 추진전략

- 가. 방재시설물, 대규모 공사장 등 재난취약 시설의 철저한 사전 점검·관리
- 나. 수방자재, 구호물품, 응급복구장비 등의 적정량 사전 확보·관리
- 다. 자원봉사단체, 군부대,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의 비상연락망 구축 및 긴밀한 협력관계 유지
- 라. 신속하고 안전한 주민대피 및 효율적인 구호활동 전개
- 마. 전기, 가스, 수도 등 생활필수 시설의 신속·정확한 복구작업 추진

제4절 재난의 이해

1. 재난의 정의

가. 자연재난

- 태풍·홍수·호우·폭풍·해일·폭설·가뭄·지진·황사·적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인적재난

-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공연장사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고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다. 기반재난

-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와 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

2. 재난관리의 책무

가. 국가 등의 책무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의 예방과 피해경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재난을 신속히 대응·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재난관리 책임기관(지방행정기관·공공기관·공공단체 및 재난관리의 대상이 되는 중요시설의 관리기관 등)의 장은 소관업무와 관련된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하며,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 및 시·군·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협조하여야 함.

나. 국민의 책무

- 국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고,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건물·시설 등으로부터 재난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다. 재난의 신고

- 누구든지 재난의 발생이나 재난이 발생할 징후를 발견하는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군수 및 긴급구조기관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함.

3. 자연재난의 발생유형

가. 태풍(typhoon)

- 일반적으로 중심최대풍속이 17 m/s 이상인 폭풍우를 동반하는 열대저기압을 태풍이라고 부른다.
 - ※ 세계기상기구는 열대저기압 중에서 중심 부근의 최대풍속이 33 m/s 이상인 것을 태풍(TY), 25~32 m/s인 것을 강한 열대폭풍(STS), 17~24 m/s인 것을 열대폭풍(TS), 그리고 17 m/s 미만인 것을 열대저압부(TD)로 구분한다.
- 태풍은 지역에 따라 다르게 불리는데 북서태평양에서는 태풍(Typhoon), 북중미에서는 허리케인(Hurricane), 인도양에서는 사이클론(Cyclone)이라고 한다.

- 태풍의 크기는 풍속 15 m/s 이상이 미치는 영역에 따라 소형, 중형, 대형, 초대형으로 분류한다.
- 태풍의 강도는 중심기압보다 중심최대풍속을 기준으로 약, 중, 강, 매우강으로 분류한다.
- 일반적으로 태풍이 발생하려면 열대 해역에서 해수면온도가 보통 27 °C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공기의 소용돌이가 있어야 하므로 적도 부근에서는 발생하지 않고, 남·북위 5°이상에서 발생한다.
- 태풍은 호우, 강풍, 해일을 동반한다. 태풍권역이나 진행방향의 우측(동측)은 강한 바람이 불며, 중심권역이 가까이 다가오면 폭풍우가 발생한다.
- 태풍이 접근하면 폭풍과 호우로 수목이 꺾이고, 건물이 무너지고, 통신 두절과 정전이 발생하며, 하천이 범람하는 등 막대한 피해가 일어난다.
- 그러나 태풍이 늘 해로운 것만은 아니다. 태풍은 중요한 수자원의 공급원으로서 물부족 현상을 해소시키기 때문이다. 또한 저위도 지방에 축적된 대기 중의 에너지를 고위도 지방으로 운반하여 지구상의 남북의 온도 균형을 유지시켜 주고, 해수를 뒤섞어 순환시킴으로써 바다 생태계를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 태풍의 강도 및 크기 분류

강도 (최대풍속)		크기 (풍속 15m/s 이상이 미치는 영역)	
약	17m/s 이상 ~ 25m/s 미만	소형	300km 미만
중	25m/s 이상 ~ 33m/s 미만	중형	300km 이상 ~ 500km 미만
강	33m/s 이상 ~ 44m/s 미만	대형	500km 이상 ~ 800km 미만
매우 강	44m/s 이상	초대형	800km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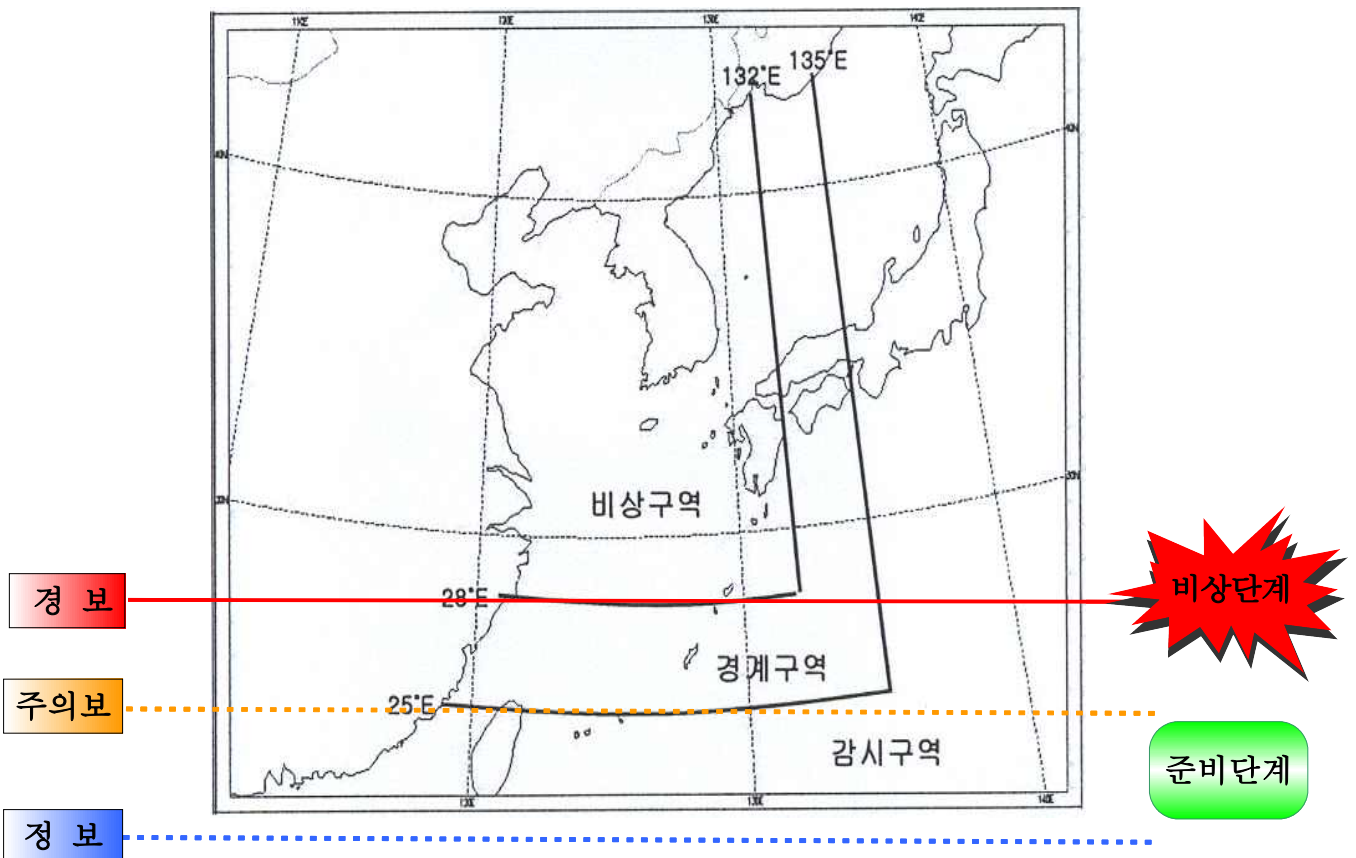
- 태풍특보기준 세분화

종류	태 풍 경 보		
	3급	2급	1급
바람	17~24m/s	25~32m/s	33m/s 이상
비	총강수량 100~249mm	총강수량 250~399mm	총강수량 400mm 이상

【바람과 피해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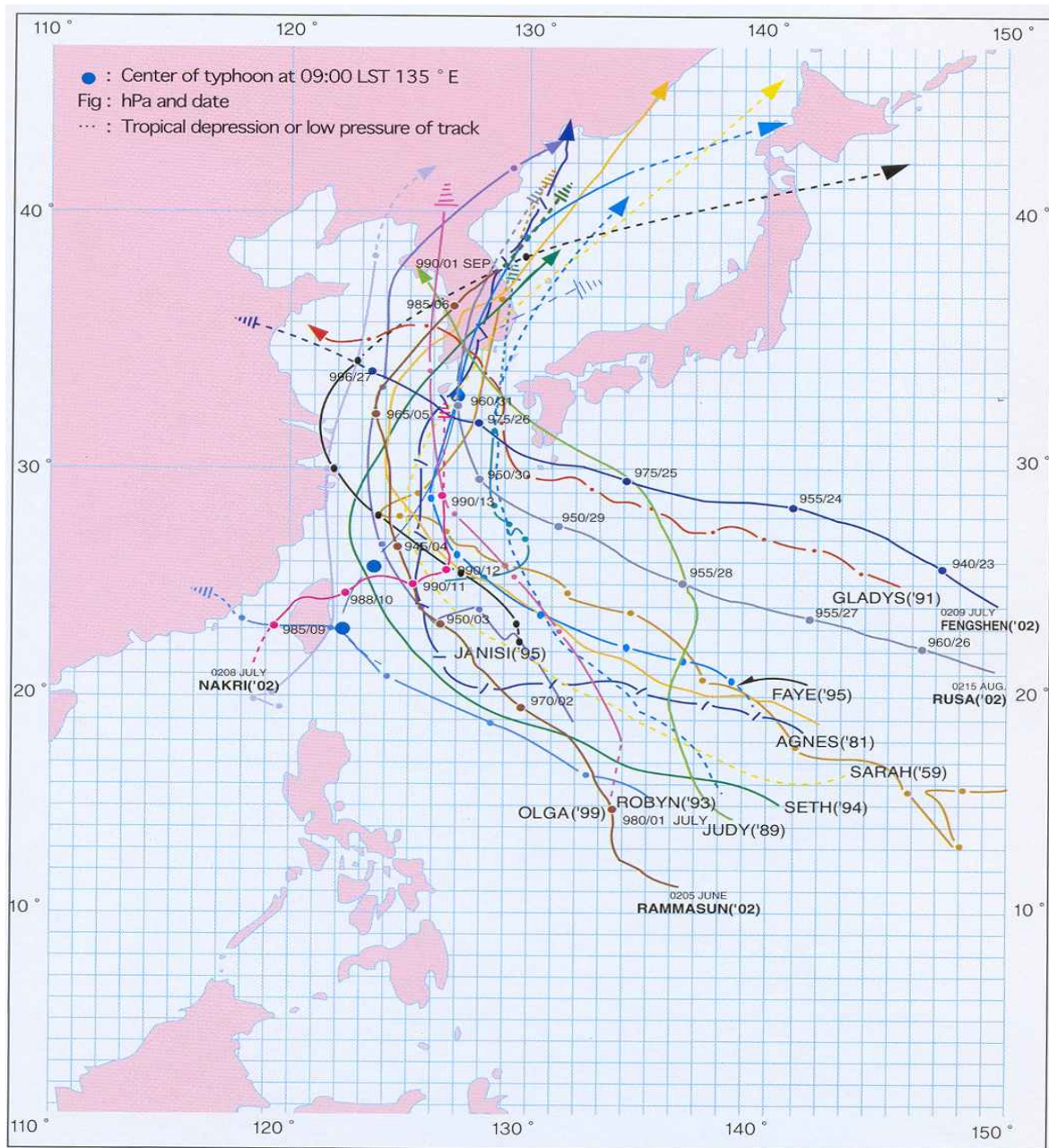
평균속도 (m/초)	시속 (km/hr)	풍압 (kg중/m ²)	비교속도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	나무의 모습	건축물 피해
10 ~ 15	~ 50	~ 11.3	일반도로의 자동차	바람을 향하여 걸기가 힘들어진다.	수목 전체가 흔들린다.	설치가 불안정한 간판이나 함석판이 날기 시작한다.
15 ~ 20	~ 70	~ 20.0	고속도로의 자동차	바람을 향하여 걸을 수 없다. 넘어지는 사람도 있다.	잔가지가 꺼어진다.	비닐하우스가 쓰러지기 시작한다.
20 ~ 25	~ 90	~ 31.3		신체를 고정하지 않으면 넘어진다.		바람에 날린 물건으로 유리가 깨진다.
25 ~ 30	~ 110	~ 45.0		서 있을 수 없다. 옥외에서의 행동은 위험하게 된다.	수목이 쓰러지기 시작한다.	블록담장이 무너진다.
30 ~	110 ~	45.0 ~	특급 열차			목조주택이 파괴 되기 시작한다.

【단계별 태풍구역 정보】



단계별	기상상황	태풍위치	태풍구역
준비단계	평 시		
보강단계	호우예비특보 태풍정보, 태풍예비특보	16.0 N, 141.5 E	감시구역
비상단계1~3	태풍주의보 태풍경보	25.0 N, 135.0 E 28.0 N, 132.0 E	경계구역비상구역
복구단계	태풍통과	동해 진출	-

○ 과거 주요 태풍 진로도



나. 호우(heavy rain)

- 일반적으로 큰비와 같은 뜻으로 사용되며, 특히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이 내리는 비를 가리킨다.
- 그러나 기상학적으로 우량·강우강도·지속시간 등에 따른 명확한 정의는 없다. 각각의 강우기후구에서 평균적인 강우량보다 훨씬 많은 비가 내릴 때 사용한다. ⇒ 집중호우
- 호우는 발생하는 위치와 시각 및 강수량을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다. 따라서 태풍으로 이미 비가 많이 내린 지역에 호우가 발생하게 되면 피해가 가중되어 엄청난 손실을 낸다.
- 호우에 의한 피해는 지대가 높고 낮음과 상관없이 발생한다. 따라서 호우가 높은 산에 발생하면 고지대는 도로의 붕괴로 고립현상이 나타나고 저지대는 유수에 의한 침수가 발생한다.

【호우시 시간당 강우량과 벌어지는 상황】

강우량 (mm/hr)	사람이 받는 느낌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	실외 상황	차에 있을 때	재해발생 상황
10~20	세게 내리는 비	걸을 때 바지를 적신다.			오래 지속되면 주의가 필요하다.
20~30	장대비라 말한다.		지면에 물웅덩이가 생긴다.	와이퍼를 빨리하여도 잘 보이지 않는다.	하수나 작은 하천에 물이 넘치고 작은 사태가 발생하기 시작한다.
30~50	물통으로 붓듯이 내린다.	우산을 쓰고 있어도 옷이 젖는다.	도로가 강과 같이 된다.	고속 주행시 바퀴와 노면의 사이에 수막이 생기고 브레이크가 잘 듣지 않게 된다.	산사태가 쉽게 일어나고 위험지대에서는 대피준비가 필요하다. 도시에서는 하수관으로부터 빗물이 넘친다.
50~80	폭포와 같이 내리며 쿵쿵 소리가 난다.		물보라가 일어나 도로면이 새하얗게 되고 시야가 나빠진다.		도시에서는 지하실이나 지하상가에 빗물이 흘러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 재난이 발생한다.
80이상	가슴이 답답한 압박감이 있다. 공포를 느낀다.	우산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차량운전은 위험하다.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높다.

다. 대설

- 일시에 많은 양의 눈이 내리는 현상으로 같은 양이라 하여도 도심 지역에 내린 경우와 기타 지역에 내린 경우 대처 방법이 다르다.
- 도심지역은 산간지역에 비하여 적은 양의 적설이 있어도 교통두절 상황이 발생한다. 이에 비하여 산간지역의 과다한 적설은 도로두절을 초래하여 마을간 고립현상이 발생한다.

라. 황사(Asian dust. yellow sand)

- 주로 중국 북부나 몽골의 건조, 황토 지대에서 바람에 날려 올라간 미세한 모래먼지가 대기 중에 퍼져서 하늘을 덮었다가 서서히 강하하는 현상 또는 강하하는 흙먼지를 말한다.
- 보통 저기압의 활동이 왕성한 3~5월에 많이 발생하며, 때로는 상공의 강한 서풍을 타고 우리나라를 거쳐 일본, 태평양, 북아메리카까지 날아간다.
- 황사 현상이 나타나면 태양은 빛이 가려져 심하면 황갈색으로 보이고, 흙먼지가 내려썰이는 경우가 많이 있다.
- 황사가 발생하면 노약자, 어린이 그리고 호흡기 질환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 동시에 가축이 질병에 전염되지 않도록 사전대비가 필요하다.

【단계별 발령기준】

명 칭	발 령 조 건
황사정보	황사로 인해 미세먼지 1시간평균농도가 $30\mu\text{m}/\text{m}^3$ 이상이 2시간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황사주의보	황사로 인해 1시간평균 미세먼지(PM10) 농도 $400\mu\text{g}/\text{m}^3$ 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황사경보	황사로 인해 1시간평균 미세먼지(PM10) 농도 $800\mu\text{g}/\text{m}^3$ 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마. 가뭄(drought)

- 오랜 기간에 걸쳐 비가 적게 내리고 햇볕이 계속 내리쬐어 수문학적으로 물의 균형이 깨져 물부족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 예전에는 가뭄의 강도를 무강수(無降水) 계속일수의 길고 짧음으로 판단했으나, 최근에는 물부족량 정도의 지속 기간 및 가뭄의 영향을 받고 있는 지역의 넓이 등에 따라 판단한다.
- 따라서, 강수량과 증발산량·토양삼투량·유출량 등을 토대로 물균형 계산을 해야만 정확한 가뭄의 강도를 판정할 수 있다.
- 가뭄의 특성은 다른 재난과 달리 피해가 서서히 발생한다. 또한 같은 지역이라도 물을 사용하는 주체에 따라 가뭄이라는 재난이 될 수도 있고 자연현상에 불과할 수도 있다.
- 지역에 따라 가뭄 대처법이 다르다. 도심지역에서의 대처는 절수운동이며 농촌지역은 농사철에 따라 파종법과 논물을 이용하는 요령이 달라진다.
- 가뭄이 심해지면 농사뿐만 아니라 공업용수도 부족해지기 때문에 가뭄의 영향은 기간산업에도 영향을 미친다.

바. 지진(Earthquake)

- 지진이란 지구내부의 활동과 판구조 운동으로 인해 지구내부, 특히 지각에서 장시간 축적된 에너지가 순간적으로 방출되면서 그 에너지의 일부가 지진파의 형태로 사방으로 전파되어 지표면까지 도달하여 지반이 흔들리는 자연현상이다.
- 지진의 규모란 지진으로 방출되는 에너지를 지진계로 측정한 크기를 말하며, 1935년 미국의 지진학자 리히터(Richter)에 의해 최초로 사용되었다.
- 진도란 지진으로 인해 땅이나 사람 또는 다른 물체들이 흔들리고 파괴되는 정도를 미리 정해놓은 등급으로 나타내는 것으로 우리나라는 현재 일본 기상청에서 정한 0~7까지 8등급을 사용하고 있다.

【지진의 규모 및 자연, 사람에 대한 영향】

규모	구조물, 자연계 등에 대한 영향	인체영향	JMA진도 (8등급)
2.5미만	사람의 몸으로는 느낄 수 없고 지진계에만 기록됨	느낄 수 없음	0(무감)
2.5~3.0	정지하고 있는 사람, 특히 감각이 민감한 사람이 다소 흔들린다고 느낌	민감한 사람만이 느낌	I(미진)
3.0~3.5	모든 사람이 느낄 정도로 창문이 다소 흔들림	여러사람이 느낌	II(경진)
3.5~4.0	건물이 흔들리고 창문이 움직이며 형광등과 같은 매달린 물건이 흔들리거나 그릇의 물이 출렁임	약간 놀람 자다 깬	III(약진)
4.0~5.0	건물의 흔들림 심하고 불안정하게 놓인 꽃병이 넘어지며 그릇의 물이 넘침, 많은 사람이 집밖으로 뛰어나옴	매우 놀람 자다 깨 밖으로 나옴	IV(중진)
5.0~6.0	벽에 금이 가고 비석이 넘어짐 굴뚝, 돌담, 축대 등이 파손됨	서 있기 곤란하고 심한 공포를 느낌	V(강진)
6.0~7.0	건물파괴 30%이하,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고 땅에 금이 감, 사람이 서 있을 수 없음	도움없이 걸을 수 없음	VI(열진)
7.0~8.0	건물파괴 30%이상 산사태가 나고 땅이 갈라짐	이성상실	VII(격진)
8.0~9.0	건물 완전 파괴됨 철로가 휘고 지면에 단층현상이 발생	대공황	
9.0이상	관측된 바 없음		

2장 재난관리조직 및 근무체계

제1절 조직 및 근무체계

제2절 비상지원본부 설치·운영

제2장 재난관리조직 및 근무체계

제1절 조직 및 근무체계

1. 산청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조직체계

□ 기 능

-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 조정
- 재난대책에 관한 관련실과 및 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 조정
- 재난예방, 상황관리 및 응급조치
- 재난복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작성
- 재난상황 통합관리를 위하여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제반조치 요청 등

□ 조 직



□ 구성원별 임무

- 본부장(군수) : 본부의 대표로서 의장이 되며 본부 업무를 총괄
- 차장(부군수) : 본부장을 보좌하고 본부장 사고 시 직무를 대행
- 총괄조정관(기획감사실장) : 본부장 및 차장 보좌
- 통제관(건설과장) : 본부장 및 차장, 총괄조정관을 보좌하며 명을 받아 실무반 지휘
- 담당관(재난관련실과소장) : 본부운영의 실무 책임자로서 총괄조정관 및 통제관 보좌
- 실무반 : 본부 회의에서 정한 사항과 본부장이 지시한 사항을 능률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상황총괄반, 행정지원반, 비상지원반, 구조구급반, 자원봉사지원반, 공보지원반, 유관기관 지원반을 둠

□ 재난대비체제의 단계적 실무반 편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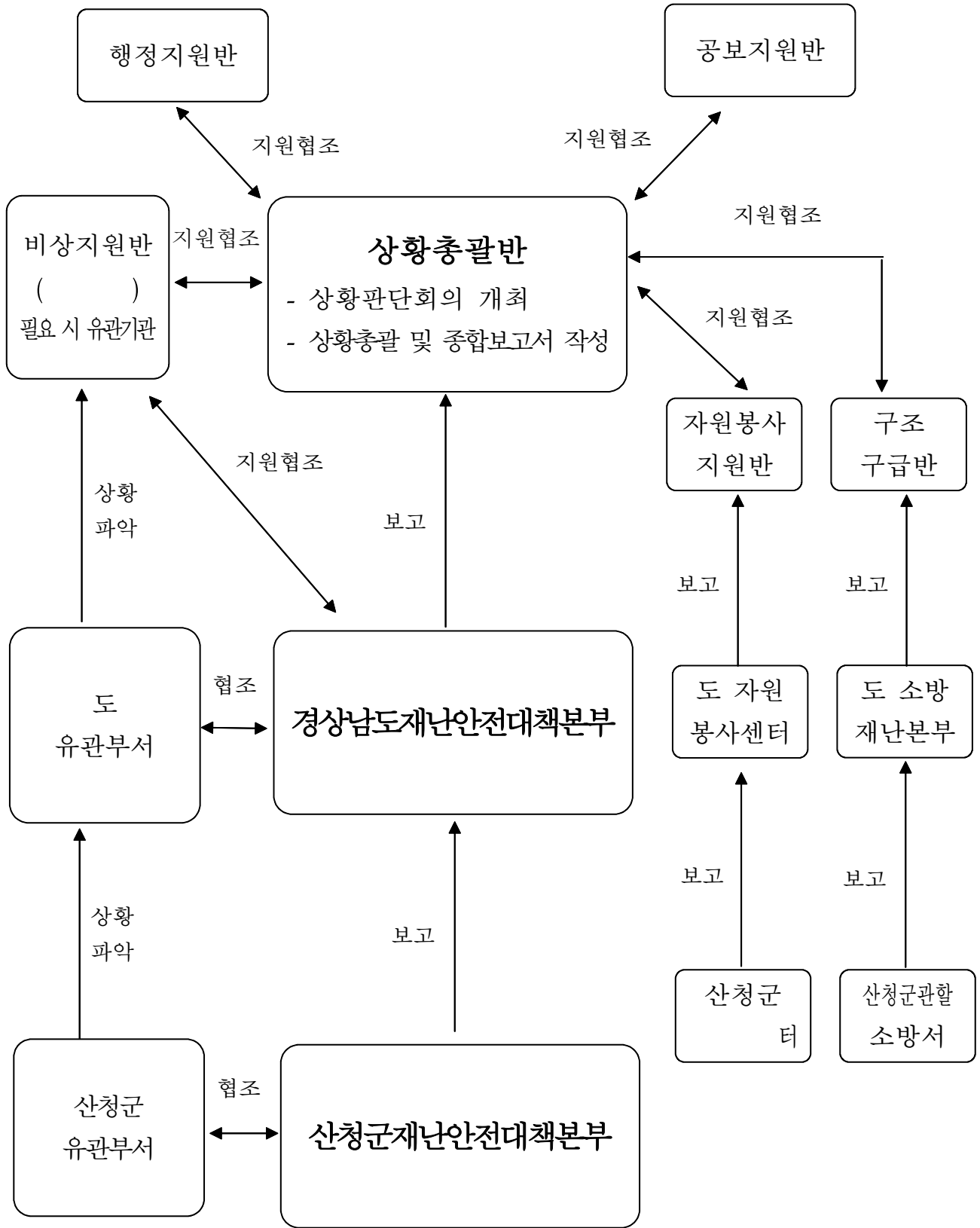
재난대비체제		재난상황	실무반 편성	비고
준비 단계	(준비) 상시대비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발생의 징후는 없으나 재난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지속적인 상황관리가 필요한 단계 	1개반 2명	- :건설과 -야간:당직실
	(보강) 사전대비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설예비특보 ▪ 태풍정보 발령 	3개반 10명	
비상 단계	I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기상종합정보 중 호우·대설 등 주의보 또는 태풍 예비특보 발령 	6개반 20명	
	II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기상종합정보 중 호우·대설 등 경보 또는 국지적 태풍 주의보 발령 	6개반 29명	
	III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기상종합정보 중 광역적 태풍경보 또는 태풍 경보 발령 	6개반 29명	

2. 상황근무체계

□ 기상특보 발효기준

종류	주 의 보	경 보			
강 풍	풍속 14m/s 이상 또는 순간 풍속 20m/s 이상이 예상될 때. 다만, 산지 풍속이 17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25m/s 이상 예상 시	육상에서 풍속 21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26m/s 이상이 예상될 때. 다만, 산지는 풍속이 24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30m/s 이상이 예상시			
풍 량	해상에서 풍속 14m/s 이상이 3시간 이상 지속 유의파고가 3m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될 때	해상에서 풍속 21m/s 이상이 3시간 이상 지속 유의파고가 5m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될 때			
호 우	6시간 강우량이 70mm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10mm이상 예상될 때	6시간 강우량이 110mm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80mm이상 예상될 때			
대 설	24시간 신적설이 5cm 이상 예상될 때	24시간 신적설이 20cm 이상 예상시, 산지는 신적설이 30cm 이상 예상시			
건 조	실효습도 35%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실효습도 25%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폭풍해일	천문조, 태풍, 폭풍, 저기압 등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해수면이 상승하여 발효 기준값 이상이 예상될 때. 다만 발효 기준값은 지역별로 별도 지정	천문조, 태풍, 폭풍, 저기압 등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해수면이 상승하여 발효기준값 이상이 예상될 때. 다만, 발효기준값은 지역별로 별도지정			
지진해일	한반도 주변해역(21N~45N,110E~145E) 등에서 규모 7.0 이상의 해저지진이 발생하여 우리나라 해안가에 해일파고 0.5~1.0m 미만의 지진해일 내습이 예상될 때	한반도 주변해역(21N~45N,110E~145E) 등에서 규모 7.5 이상의 해저지진이 발생하여 우리나라 해안가에 파고 1.0m 이상의 지진해일 내습이 예상될 때			
한 파	10월~4월에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 이상 하강하여 평년값보다 3℃가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②아침 최저기온이 -12℃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③급격한 저온현상으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10월~4월에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5℃ 이상 하강하여 평년값보다 3℃가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②아침 최저기온이 -15℃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③급격한 저온현상으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피해가 예상될 때			
태 풍	태풍으로 인하여 강풍, 풍랑, 호우 현상 등이 주의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태풍으로 인하여 풍속이 17m/sec 이상 또는 강우량이 100mm 이상 예상될 때. 다만, 예상되는 바람과 비의 정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세분한다.			
		구분	3급	2급	1급
		바람(m/sec)	17~24	25~32	33이상
비(mm)	100~249	250~399	400이상		
황 사	황사로 인해 1시간평균 미세먼지 (PM10) 농도 400µg/m ³ 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황사로 인해 1시간평균 미세먼지 (PM10) 농도 800µg/m ³ 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폭 열	6월~9월에 일최고기온이 33℃ 이상이고, 일최고 열지수(Heat Index)가 32℃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6월~9월에 일최고기온이 35℃ 이상이고, 일최고 열지수(Heat Index)가 41℃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 상황실 운영체계



□ 상 황 근 무

1) 상시대비단계(평상시) 실무반 편성기준(상황실 근무체제)

- 상 황 실 : 2명씩 2교대 근무 24시간 상황 유지
- 근무인원 및 근무시간
 - 주간 : 건설과 2명
 - 야간 : 당직실 3명
 - 상시근무자 : 연중무휴 09:00 ~ 익일 09:00 (24시간)
- 상시근무자 편성표

구 분	상황실장	반 원	비 고
1 조	재난관리담당	건설과 2명	☎ 주간 970-6731~4 ☎ 야간 970-6·7222
2 조	당직사령	당직자 3명	

- 상황실 근무요령
 - 읍면 재난상황 파악 및 이상 유무 확인
 - 예비특보 등 재난에 대한 정보의 수집 및 읍·면 등에 전파
 - 기상특보 시 비상근무자 비상소집 및 기상상황 보고
 - 상황실근무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시사항, SAFE-ON등 처리
 - 24 상황유지근무 하되 당직자는 08:30 ~ 09:00까지 업무 인수인계
 - 도·군 재해관련부서 및 읍면 상황전파 업무처리 등
 - 상황근무자는 07:00 기준 상황근무 결과 보고 (구두 또는 서면)
 - 상황보고 : 종합상황반장(담당)→담당관(건설과장)→ 부군수·군수
⇒ 긴급상황 발생 보고는 즉보 (부군수·군수)

2) 사전대비단계 실무반 편성기준(상황실 근무체제)

○ 호우·대설, 태풍으로 구분 근무

구분	기상상황	근무인원
사전대비 (보강)단계 (호우대설)	· 인근 3개 시·군 이상의 호우· 대설 등 예비특보가 발령되었을 경우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 본부요원 10명씩 교대근무 · 비상근무 실시
사전대비 (보강)단계 (태풍)	·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기상종합 정보 중 태풍 정보가 발령된 경우	· 재난관련부서 및 읍면 1명이상 비상 상황 유지

※ 통제관이 상황에 따라 근무통제 조정·운영 및 유관기관 파견근무요청

○ 상황실 근무요령

- 반드시 명찰을 패용하고 근무시간 동안 상황실에 정위치 근무
(자리 이석 시에는 상황총괄반장에게 보고)
- 근무자는 관련업무의 자료제공 등 상호 긴밀한 협조 유지
- 비상근무조 투입 시는 A, B조로 순차적으로 근무
- 상황실 파견근무자는 시군 관련분야 업무에 대한 사전조치사항 지도
및 파악 후 총괄반장(사전대비단계 : 건설과장, 비상단계 : 부군수)에게
보고
- 상황근무는 24시간 근무 후 교대하되 08:30 ~ 09:00까지 업무 인수·인계
및 상황파악 등을 위하여 합동근무 실시
- 상황보고 : 상황총괄반장(담당) → 담당관(재난관련실과소장) → 통제관(건설과
장) → 총괄조정관(기획감사실장) → 차장(부군수) → 본부장(군수)

⇒ 긴급상황 발생 보고는 즉보 (부군수·군수)

3) 준비,보강,비상단계(Ⅰ,Ⅱ,Ⅲ) 실무반 편성기준(상황실 근무체제)

○ 5단계로 구분 근무

구분	기 상 상 황	근 무 인 원
준비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난발생의 징후는 없으나 재난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지속적인 상황 관리가 필요한 단계 -준비단계(평상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부요원 2명씩 교대근무
보강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기상종합정보 중 호우·대설 등 “예비특보” 발령 또는 국지적인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본부장이 이에 준한 상황이라고 판단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본부요원 10명씩 교대근무 비상근무 강화 또는 응급 조치 지원 전 공무원 1/10비상 대기 근무
비상Ⅰ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기상종합정보 중 호우·대설 등 “주의보”나, “태풍예비특보” 발령 또는 국지적인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본부장이 이에 준한 상황이라고 판단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본부요원 20명씩 교대근무 비상근무 강화 또는 응급 조치 지원 전 공무원 1/10비상 대기 근무
비상Ⅱ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기상종합정보 중 호우·대설 등 “경보”나 “태풍주의보·경보” 발령 또는 국지적인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본부장이 이에 준한 상황이라고 판단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본부요원 29명씩 교대근무 비상근무 강화 또는 응급 조치 지원 전 공무원 1/5 비상 대기 근무
비상Ⅲ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기상종합정보 중 광역적인 “경보”나, 광역적인 “태풍주의보경보” 발령 또는 광역적인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본부장이 이에 준한 상황이라고 판단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29 교대근무 비상근무 강화 또는 응급 조치 지원 전 공무원 1/3비상대기 근무

※ 통제관이 상황에 따라 근무통제 조정·운영 및 유관기관 파견근무요청

○ 상황실 근무요령

- 반드시 명찰을 착용하고 근무시간 동안 상황실에 정위치 근무 (자리 이석 시에는 행정지원반장에게 보고)
- 근무자는 관련업무의 자료제공 등 상호 긴밀한 협조 유지
- 비상근무조 투입 시는 A, B조로 순차적으로 근무
- 상황실 파견근무자는 시군 관련분야 업무에 대한 사전조치사항 지도

및 파악 후 총괄반장(사전대비단계 : 건설과장, 비상단계 : 부군수)에게 보고

- 상황근무는 24시간 근무 후 교대하되 08:30 ~ 09:00까지 업무 인수·인계 및 상황파악 등을 위하여 합동근무 실시
 - 상황보고 : 상황총괄반장(담당)→ 담당관(재난관련실과소장)→ 통제관(건설과장)→ 총괄조정관(기획감사실장)→ 차장(부군수)→ 본부장(군수)
- ⇒ 긴급상황 발생 보고는 즉보 (부군수 · 군수)

3. 단계별 성과별 근무인원 편성

1) 준비단계() : 재난부서 2명 교대근무 - 1 안준석 차현식 2조 김기훈

2) 보강단계(호우예비특보,태풍정보 발령시)

- 근무시기 : 호우·예비특보 발령 ~ 상황종료 시까지
- 근무방법 : 산청군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 합동근무
- 근무요령 : 해당성과별 2교대 근무
- 성과별 근무자 명단(2개반/10명) - 총괄 : 통제관

구 분	A 조		B 조	
	실 과 명	근 무 자	실 과 명	근 무 자
정보수집및 보고서작성반	건설과	7급 정돌순	건설과	6급 김기훈
상황관리 지 원 반	건설과	8급 차현식	"	8급 정회교
비상지원반	주민생활지원실	6급 정인식	주민생활지원실	6급 천도영
	경제도시과	7급 우한석	경제도시과	6급 공동찬
	건설과	6급 안준석	건설과	6급 이창규
	산림녹지과	6급 박춘서	산림녹지과	8급 김진구
	농축산과	6급 민영구	농축산과	6급 권영환
	농업지원과	지도사 최인락	농업지원과	지도사 정상섭
유관기관지원반	· 국립공원관리공단 지리산사무소		· 한국농어촌공사진주산청지사산청지소 · 국립공원관리공단 지리산사무소	

3) 비상 1 단계(호우 등 주의보, 태풍 예비특보 발령시)

- 근무시기 - 기상종합정보 중 호우 등 주의보 발령 ~ 상황종료 시까지
- 태풍 예비특보 발령 ~ 상황종료 시까지
- 근무방법 : 2층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 합동근무
- 근무요령 : 해당실과별 2교대 근무
- 실과별 근무자 명단(6개반/20명) - 총괄 : 통제관

구 분		A 조		B 조	
		실 과 명	근 무 자	실 과 명	근 무 자
상 황 총 괄 반	정 보 수 집 및 보 고 서 작 성 팀	건 설 과	6급 신현영	건 설 과	6급 김기훈
		건 설 과	7급 정돌순	건 설 과	7급 이덕화
		건 설 과	7급 김영옥	건 설 과	7급 홍순일
	홍 수 대 책 팀	건 설 과	8급 차현식	행 정 과	8급 성병훈
	상 황 관 리 지 원 팀	건 설 과	6급 안준석	건 설 과	6급 이창규
		행 정 과	7급 최진봉	행 정 과	6급 진위용
행 정 지 원 반	기획감사실	6급 정종민	기획감사실	6급 정육진	
비 상 지 원 반	주민생활지원실	6급 정인식	주민생활지원실	6급 천도영	
	환경위생과	7급 김성환	환경위생과	6급 민정식	
	경제도시과	6급 공동찬	경제도시과	7급 강태환	
	건 설 과	7급 성지은	건 설 과	7급 정춘기	

구 분	A 조		B 조	
	실 과 명	근 무 자	실 과 명	근 무 자
비 상 지원반	산림녹지과	6급 박춘서	산림녹지과	9급 이주환
	보건증진과	6급 김선옥	보건증진과	6급 서용석
유관기관 지원반	제8962부대3대 대	기동대장	제8962부대3대 대	작전대장
	지역자율방재단	단장	지역자율방재단	부단장
구 조 구급반	행정과	7급 송희란	행정과	7급 김현수
자원봉사 지 원 반	주민생활지원실	6급 이순선	주민생활지원실	6급 조만선
	농축산과	6급 오수환	농축산과	8급 김광웅
	농업지원과	지도사 이양호	농업지원과	지도사 최인락
공 보 지원반	기획감사실	6급 정욱진	기획감사실	8급 정지훈

4) 비상 II 단계(호우 경보, 태풍 주의보 발령시)

- 근무시기 - 기상종합정보 중 호우 등 경보 발령 ~ 상황종료 시까지
- 태풍 주의보 발령 ~ 상황종료 시까지
- 근무방법 : 산청군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 합동근무
- 근무요령 : 해당실과별 2교대 근무
- 실과별 근무자 명단(6개반/29명) - 총괄 : 차장

구 분		A 조		B 조	
		실 과 명	근 무 자	실 과 명	근 무 자
상 황 총 괄 반	정 보 수 집 및 보고서 작성팀	건 설 과	6급 신현영	건 설 과	6급 김기훈
		"	7급 정돌순	"	7급 이덕화
		"	7급 김영옥	"	7급 성지은
		기획감사실	7급 박원생	기획감사실	7급 최규남
	홍 수 대책팀	건 설 과	8급 차현식	행 정 과	8급 성병훈
	상 황 관 리 지원팀	건 설 과	6급 안준석	건 설 과	6급 이창규
		행 정 과	7급 최진봉	행 정 과	6급 고현숙
		상하수도사업소	8급 김성훈	상하수도사업소	6급 차상효
	행 정 지 원 반	기획감사실	6급 정종민	기획감사실	7급 정해자
		행 정 과	7급 송희란	행 정 과	6급 정병주

구 분	A 조		B 조	
	실 과 명	근 무 자	실 과 명	근 무 자
비 상 지 원 반	주민생활지원 실	6급 조병식	주민생활지원실	7급 오경자
	문화관광과	7급 한인자	문화관광과	6급 문병국
	환경위생과	7급 김성환	환경위생과	6급 민정식
	경제도시과	6급 이상인	경제도시과	7급 강태환
	보건증진과	6급 김선옥	보건증진과	6급 서용석
	건 설 과	9급 임민섭	건 설 과	7급 홍순일
	"	7급 정회교	"	8급 차현식
	산림녹지과	6급 박춘서	산림녹지과	6급 정명희
유관기관지원반	8962부대3대대	기동대장	제8962부대3대 대	작전대장
	지역자율방재단	단장	지역자율방재단	부단장
구 조 구 급 반	행정과	6급 이병혁	행정과	7급 이대인
	보건증진과	7급 박영순	보건증진과	6급 최화혜
자원봉사 지 원 반	주민생활지원 실	6급 이순선	주민생활지원 실	8급 김지향
	한방산업과	6급 김명문	한방산업과	6급 이성안
	농축산과	6급 오수환	농축산과	8급 정길섭
	농업지원과	지도사 이양호	농업지원과	지도사 최인락
공 보 지 원 반	기획감사실	6급 정옥진	기획감사실	8급 정미숙
	"	8급 정승화	"	8급 오진선
	건 설 과	8급 김귀녀	건 설 과	8급 손재호

5) 비상III단계(광역적 태풍경보 발령시)

- 근무시기 - 기상종합정보중 광역적 호우 등 경보 발령 ~ 상황종료 시까지
- 태풍경보 발령 ~ 상황종료 시까지
- 근무방법 : 2층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 합동근무
- 근무요령 : 해당실과별 2교대 근무
- 실과별 근무자 명단(6개반/29명) - 총괄 : 본부장

구 분		A 조		B 조	
		실 과 명	근 무 자	실 과 명	근 무 자
상 황 총 괄 반	정 보 수 집 및 보고서 작성팀	건 설 과	6급 신현영	건 설 과	6급 김기훈
		"	7급 정돌순	"	7급 이덕화
		"	7급 김영옥	"	7급 성지은
		기획감사실	7급 박원생	기획감사실	7급 최규남
	홍 수 대책팀	건 설 과	8급 차현식	행 정 과	7급 이혜진
	상 황 관 리 지원팀	건 설 과	6급 안준석	건 설 과	6급 이창규
		행 정 과	7급 최진봉	행 정 과	6급 고현숙
		상하수도사업소	8급 김성훈	상하수도사업소	6급 이창규
	행 정 지 원 반	기획감사실	6급 정종민	기획감사실	7급 정해자
		행 정 과	7급 송희란	행 정 과	6급 정병주

구 분	A 조		B 조	
	실 과 명	근 무 자	실 과 명	근 무 자
비 상 지 원 반	주민생활지원 실	6급 조병식	주민생활지원 실	7급 오경자
	문화관광과	7급 한인자	문화관광과	6급 문병국
	환경위생과	7급 김성환	환경위생과	6급 민정식
	경제도시과	6급 이상인	경제도시과	7급 강태환
	보건증진과	6급 김선옥	보건증진과	6급 서용석
	건 설 과	7급 정춘기	건 설 과	7급 홍순일
	"	7급 정회교	"	8급 차현식
	산림녹지과	6급 박춘서	산림녹지과	6급 정명희
유관기관지원반	8962부대3대대	기동대장	제8962부대3대 대	작전대장
	지역자율방재단	단장	지역자율방재단	부단장
구 조 구 급 반	행정과	6급 이병혁	행정과	7급 이대인
	보건증진과	7급 박영순	보건증진과	6급 최화혜
자원봉사 지 원 반	주민생활지원 실	6급 이순선	주민생활지원 실	7급 이해림
	한방산업과	6급 김명문	한방산업과	6급 이성안
	농축산과	6급 오수환	농축산과	8급 정길섭
	농업지원과	지도사 이양호	농업지원과	지도사 최인락
공 보 지 원 반	기획감사실	6급 정육진	기획감사실	7급 정미숙
	"	8급 정승화	"	8급 오진선
	건 설 과	8급 김귀녀	건 설 과	9급 손재호

4. 상황실 근무자 실무반별 담당임무

1) 보강단계

분	담 당 업 무
반 장	재난안전대책본부 종합상황실 업무 총괄(종합상황실장)
정보수집 및 보고서작성반 (1인)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난에 대한 정보의 수집·전파, 상황관리 및 총괄조정 2. 기상상황 등 재난진행상황 파악 및 전달·처리 3. 재난정보 수집·분석 4. 재난 대응·응급복구 상황에 관한 자료수집·관리 5. 기타 재난예방대책에 필요한 사항
상황관리 지원반 (1인)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상시 모니터링시스템 구축·운영 2. 재난의 예측 및 분석관리 3. 재난피해정보의 수집·분석 및 전파 4. 국내 언론보도 등 재난정보 수집·분석
비상지원반 -유관부서 지원팀 (1인)	<p>건설 관련 부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붕괴우려 시설물, 방재시설물, 재해우려지역 사전점검 및 재해예방조치 2. 수방자재 및 응급복구장비 동원체제 구축 및 지원계획 수립 <p><보건위생·환경 및 산림녹지 관련 부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해지역 의료·방역활동 체제 및 사상자 구호·처리 체제 구축 2. 재해지역 수해쓰레기 수거 대책 수립 3. 절개지 등 산사태 우려지역, 공원, 녹지시설물 사전점검 및 재해예방조치 <p><사회복지 및 여성정책 관련 부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재민 수용시설 사전점검 및 재해구호 비축물자 관리 2. 자원봉사자 협조체제 및 여성단체 응급지원체제 구축 <p><경제·통상 및 노사 관련 부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유통업체·외국인투자시설 및 공장시설 피해예방 홍보 및 지원대책 수립 <p><농·축산업 및 수산업 관련 부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경지·농작물·수산증양식시설 등 피해 사전 예방조치
유관기관 지원팀 (1인)	<p><농업기반공사 산청출장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저수지 관리현황 파악·분석 및 전파 등 <p><국립공원관리공단 백무분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립공원 입산통제 및 등산객 관리 등 <p><한전산청지점,(주)KT산청지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기 및 통신시설 피해 사전예방조치

2)비상1단계

분		담 당 업 무
반 장		재난안전대책본부 종합상황실 업무 총괄(종합상황실장)
상황총괄반	정보 수집 및 보고 서작성반 (3인)	1.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난에 대한 정보의 수집·전파, 상황관리 및 총괄조정 2. 기상상황 등 재난진행상황 파악 및 전달·처리 3. 재난정보 수집·분석 4. 재난 대응·응급복구 상황에 관한 자료수집·관리 5. 기타 재난예방대책에 필요한 사항
	홍수 대책 팀 (1인)	1. 상시 모니터링시스템 구축·운영 2. 재난의 예측 및 분석관리
	상황 관리 지원 팀 (2인)	1. 상시 모니터링시스템 구축·운영 2. 재난의 예측 및 분석관리 3. 재난피해정보의 수집·분석 및 전파 4. 국내 언론보도 등 재난정보 수집·분석
비상 지원반 (6인)	건설 관련 부서)	1. 붕괴우려 시설물, 방재시설물, 재해우려지역 사전점검 및 재해예방조치 2. 수방자재 및 응급복구장비 동원체제 구축 및 지원계획 수립
	환경 및 산림녹지 관련 부서)	1. 수해지역 의료·방역활동 체제 및 사상자 구호·처리 체제 구축 2. 재해지역 수해쓰레기 수거 대책 수립 3. 절개지 등 산사태 우려지역, 공원, 녹지시설물 사전점검 및 재해예방조치
유관 기관 지원반 (2)	사회복지 및 여성정책 관련 부서)	1. 이재민 수용시설 사전점검 및 재해구호 비축물자 관리 2. 자원봉사자 협조체제 및 여성단체 응급지원체제 구축
	경제·통상 및 노사 관련 부서)	1. 유통업체·외국인투자시설 및 공장시설 피해예방 홍보 및 지원대책 수립
구조 구급반(2)	농·축산업 및 수산업 관련 부서)	1. 농경지·농작물·수산증양식시설 등 피해 사전 예방조치
	농업기반공사 산청출장소)	1. 저수지 관리현황 파악·분석 및 전파 등
구조 구급반(2)	국립공원관리공단 백무분소)	1. 국립공원 입산통제 및 등산객 관리 등
	한전산청지점,(주)KT산청지점)	1. 전기 및 통신시설 피해 사전예방조치
구조 구급반(2)	구조 구급 업무 긴급구조통제단과 협력하여 추진	
	수해지역 사상자 구호·처리 체제 구축	

<p style="text-align: center;">원 봉 사 지원반 (3명)</p>	<p>자원봉사지원업무 총괄(반장)</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원봉사센터 설치 운영 및 지도·확인 2. 사유시설 응급복구 등 대민지원활동 추진 3. 수해주택 안전점검 및 무상수리 등 추진
<p style="text-align: center;">공 보 지원반 (1명)</p>	<p>보도지원 및 공보업무 총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재난상황별 국민행동요령 홍보 2. 재난 예·경보 발령사항 등의 전파 3. 재난수습을 위한 보도지원(현장대변인, 공동취재단구성 및 프레스센터 설치지원 등) 4. 각종 보도자료 작성 배포 및 재난현장 취재지원

3) II 단계

분	담당업무
반장	재난안전대책본부 종합상황실 업무 총괄(종합상황실장)
상황총괄반	정보수집 및 보고서작성반(4인) 1.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난에 대한 정보의 수집·전파, 상황관리 및 총괄조정 2. 기상상황 등 재난진행상황 파악 및 전달·처리 3. 재난정보 수집·분석 4. 재난 대응·응급복구 상황에 관한 자료수집·관리 5. 기타 재난예방대책에 필요한 사항
	홍수대책팀(1인) 1. 상시 모니터링시스템 구축·운영 2. 재난의 예측 및 분석관리
	상황관리지원팀(3인) 1. 상시 모니터링시스템 구축·운영 2. 재난의 예측 및 분석관리 3. 재난피해정보의 수집·분석 및 전파 4. 국내 언론보도 등 재난정보 수집·분석
비상지원반(8인)	건설 관련 부서 1. 붕괴우려 시설물, 방재시설물, 재해우려지역 사전점검 및 재해예방조치 2. 수방자재 및 응급복구장비 동원체제 구축 및 지원계획 수립 〈환경 및 산림녹지 관련 부서〉 1. 수해지역 의료·방역활동 체제 및 사상자 구호·처리 체제 구축 2. 재해지역 수해쓰레기 수거 대책 수립 3. 절개지 등 산사태 우려지역, 공원, 녹지시설물 사전점검 및 재해예방조치 〈사회복지 및 여성정책 관련 부서〉 1. 이재민 수용시설 사전점검 및 재해구호 비축물자 관리 2. 자원봉사자 협조체제 및 여성단체 응급지원체제 구축 〈경제·통상 및 노사 관련 부서〉 1. 유통업체·외국인투자시설 및 공장시설 피해예방 홍보 및 지원대책 수립 〈농·축산업 및 수산업 관련 부서〉 1. 농경지·농작물·수산증양식시설 등 피해 사전 예방조치
행정지원반(2)	행정지원업무 총괄 1. 주요인사 방문시 의전업무 2. 상황근무자 근무명령 및 복무단속
유관기관지원반(2)	〈농업기반공사 산청출장소〉 1. 저수지 관리현황 파악·분석 및 전파 등 〈국립공원관리공단 백무분소〉 1. 국립공원 입산통제 및 등산객 관리 등 〈한전산청지점,(주)KT산청지점〉 1. 전기 및 통신시설 피해 사전예방조치

<p>구급 반(2)</p>	<p>1. 구조·구급 업무 긴급구조통제단과 협력하여 추진 2. 수해지역 사상자 구호·처리 체제 구축</p>
<p>자 원 봉 사 지원반 (4명)</p>	<p>자원봉사지원업무 총괄(반장) 1. 자원봉사센터 설치 운영 및 지도·확인 2. 사유시설 응급복구 등 대민지원활동 추진 3. 수해주택 안전점검 및 무상수리 등 추진</p>
<p>공 보 지원반 (3명)</p>	<p>보도지원 및 공보업무 총괄 1. 재난상황별 국민행동요령 홍보 2. 재난 예·경보 발령사항 등의 전파 3. 재난수습을 위한 보도지원(현장대변인, 공동취재단구성 및 프레스센터 설치지원 등) 4. 각종 보도자료 작성 배포 및 재난현장 취재지원</p>

4) III 단계

분	담당 업무
반장	재난안전대책본부 종합상황실 업무 총괄(종합상황실장)
상황총괄반	정보수집 및 보고서작성반 (4인) 1.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난에 대한 정보의 수집·전파, 상황관리 및 총괄조정 2. 기상상황 등 재난진행상황 파악 및 전달·처리 3. 재난정보 수집·분석 4. 재난 대응·응급복구 상황에 관한 자료수집·관리 5. 기타 재난예방대책에 필요한 사항
	홍수대책팀 (1인) 1. 상시 모니터링시스템 구축·운영 2. 재난의 예측 및 분석관리
	상황관리지원팀 (3인) 1. 상시 모니터링시스템 구축·운영 2. 재난의 예측 및 분석관리 3. 재난피해정보의 수집·분석 및 전파 4. 국내 언론보도 등 재난정보 수집·분석
비상지원반 (8인)	건설 관련 부서 1. 붕괴우려 시설물, 방재시설물, 재해우려지역 사전점검 및 재해예방조치 2. 수방자재 및 응급복구장비 동원체제 구축 및 지원계획 수립 <환경 및 산림녹지 관련 부서> 1. 수해지역 의료·방역활동 체제 및 사상자 구호·처리 체제 구축 2. 재해지역 수해쓰레기 수거 대책 수립 3. 절개지 등 산사태 우려지역, 공원, 녹지시설물 사전점검 및 재해예방조치 <사회복지 및 여성정책 관련 부서> 1. 이재민 수용시설 사전점검 및 재해구호 비축물자 관리 2. 자원봉사자 협조체제 및 여성단체 응급지원체제 구축 <경제·통상 및 노사 관련 부서> 1. 유통업체·외국인투자시설 및 공장시설 피해예방 홍보 및 지원대책 수립 <농·축산업 및 수산업 관련 부서> 1. 농경지·농작물·수산증양식시설 등 피해 사전 예방조치
행정지원반 (2)	행정지원업무 총괄 1. 주요인사 방문시 의전업무 2. 상황근무자 근무명령 및 복무단속
유관기관지원반 (2)	<농업기반공사 산청출장소> 1. 저수지 관리현황 파악·분석 및 전파 등 <국립공원관리공단 백무분소> 1. 국립공원 입산통제 및 등산객 관리 등 <한전산청지점, (주)KT산청지점> 1. 전기 및 통신시설 피해 사전예방조치

구급 반(2)	1. 구조·구급 업무 긴급구조통제단과 협력하여 추진 2. 수해지역 사상자 구호·처리 체제 구축
자 원 봉 사 지 원 반 (4명)	자원봉사지원업무 총괄(반장) 1. 자원봉사센터 설치 운영 및 지도·확인 2. 사유시설 응급복구 등 대민지원활동 추진 3. 수해주택 안전점검 및 무상수리 등 추진
공 보 지 원 반 (3명)	보도지원 및 공보업무 총괄 1. 재난상황별 국민행동요령 홍보 2. 재난 예·경보 발령사항 등의 전파 3. 재난수습을 위한 보도지원(현장대변인, 공동취재단구성 및 프레스센터 설치지원 등) 4. 각종 보도자료 작성 배포 및 재난현장 취재지원

5. 유관기관 파견근무자 비상근무계획

가. 근무장소

※ 기상특보별(주의보, 경보, 재난발생시)비상근무 계획에 준하여 근무하되,

- 비상 I (주의보) : 사무실에서 각자 근무(연락체계유지)
- 비상 II·III 단계시 : 산청군 자연재해대책본부가 운영하는 상황실에 파견근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7조)
 - 산청소방서
 - 한국전력공사 산청지점
 - KT 산청지사
 - 한국농촌공사 진주시사 산청지소
 - 육군 제8962부대 3대대
 - 산청군 지역자율방재단

나. 근무요령

가) 상황단계별 보고 또는 통보내용

- (1) 예방단계보고 : 재난과 관련된 지역동향, 여론 등
- (2) 대비단계보고 : 재난과 관련된 구체적인 동향, 전망 및 조치사항

- (3) 대응단계보고 : 피해정도 및 대체자원의 투입여부 등 통합지원 상황
- (4) 수습복구단계보고 : 기능정상화여부 및 피해상황조사, 복구계획수립, 재발방지대책 등

나) 보고 또는 통보방법

- (1) 원칙적으로 공식·비공식 문서에 의하되, 각종 통신매체(전자우편 및 팩시밀리)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수·발신자의 성명 및 수·발신 시간이 기록되어야 한다.
- (2) 긴급을 요하는 사항의 경우 전화(유·무선)를 이용할 수 있다.
- (3) 그 밖의 재난상황을 감안하여 산청군 본부장이 통보방법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 파견기관별 임무

- 본부장이 유관기관(재난관리책임기관)에 행정 및 재정상의 조치나 그 밖의 필요한 업무협조를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 본부장이 유관기관(재난관리책임기관)에게 재난상황대응계획서를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된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22조)
 - ① 재난발생의 장소·일시·규모 및 원인
 - ② 재난대응조치에 관한 사항
 - ③ 재난의 예상 진행 상황
 - ④ 재난진행단계별 조치계획
 - ⑤ 그 밖에 지역본부장이 정하는 사항
 - 산청경찰서
 - 산청소방서
 - 한국전력공사 산청지점
 - KT 산청지사
 - 한국농촌공사 진주지사산청지소
 - 육군 제8962부대 3대대
 - 기타 본부장이 인정하는 기관
- ⇒ 재난유형별 대비계획 및 단계별 조치사항을 참고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본부장의 파견 요청시에는 신속하게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자를 파견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기 관 명	부 서	연 락 처
산청소방서	예방대응과	970 - 9264
산청경찰서	정보보안과	972 - 2903
육군 제8962부대 3대대	군수보급과	963 - 1113
산청교육지원청	협력지원과	970 - 3064
KT산청지사	고객서비스과	972 - 0060
한국도로공사산청지점		970 - 4241
산청양수발전소		970 - 2211
한전산청지점	영업운영과	970 - 4237
한국농촌공사 산청지소	산청지소	973 - 2090

6. 현장상황 지원관 운용계획

□ 목 적

- 태풍·호우 등 여름철 자연재난에 대비하여 현장상황지원관이 재난발생 예견 또는 발생시 군 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현장에 파견되어 신속한 현장상황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근 거 : 경상남도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제13조

□ 주요임무

- 산청군재난안전대책본부 애로점 파악 및 상황관리 지원
- 도종합재난상황실과 Hot-Line 구축, 신속한 현장상황 보고
- 중앙에서 파견된 중앙현장상황 관리관 업무지원 등

□ 운영방법

- 운영기간 : 파견일 ~ 상황종료 시까지
- 근무장소

<피해발생전>

- 피해예상지역의 점검·정비 등 재난 사전대비사항 지도

<피해발생시>

- 피해발생현장에서 애로점 및 도 지원사항 파악보고

- 보고체계

- 정기보고 : 오전 9시, 오후 6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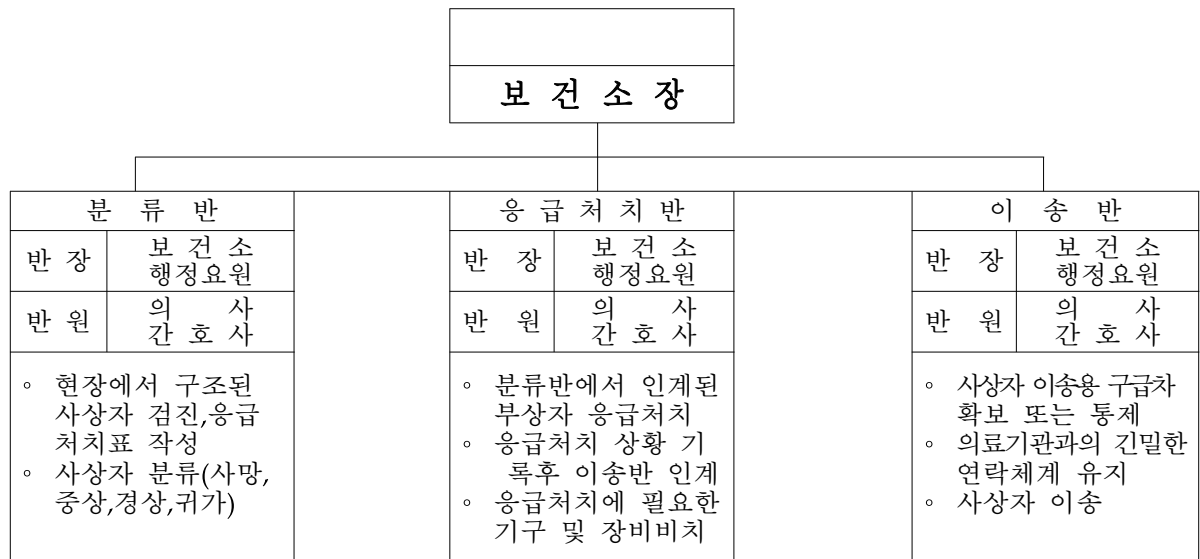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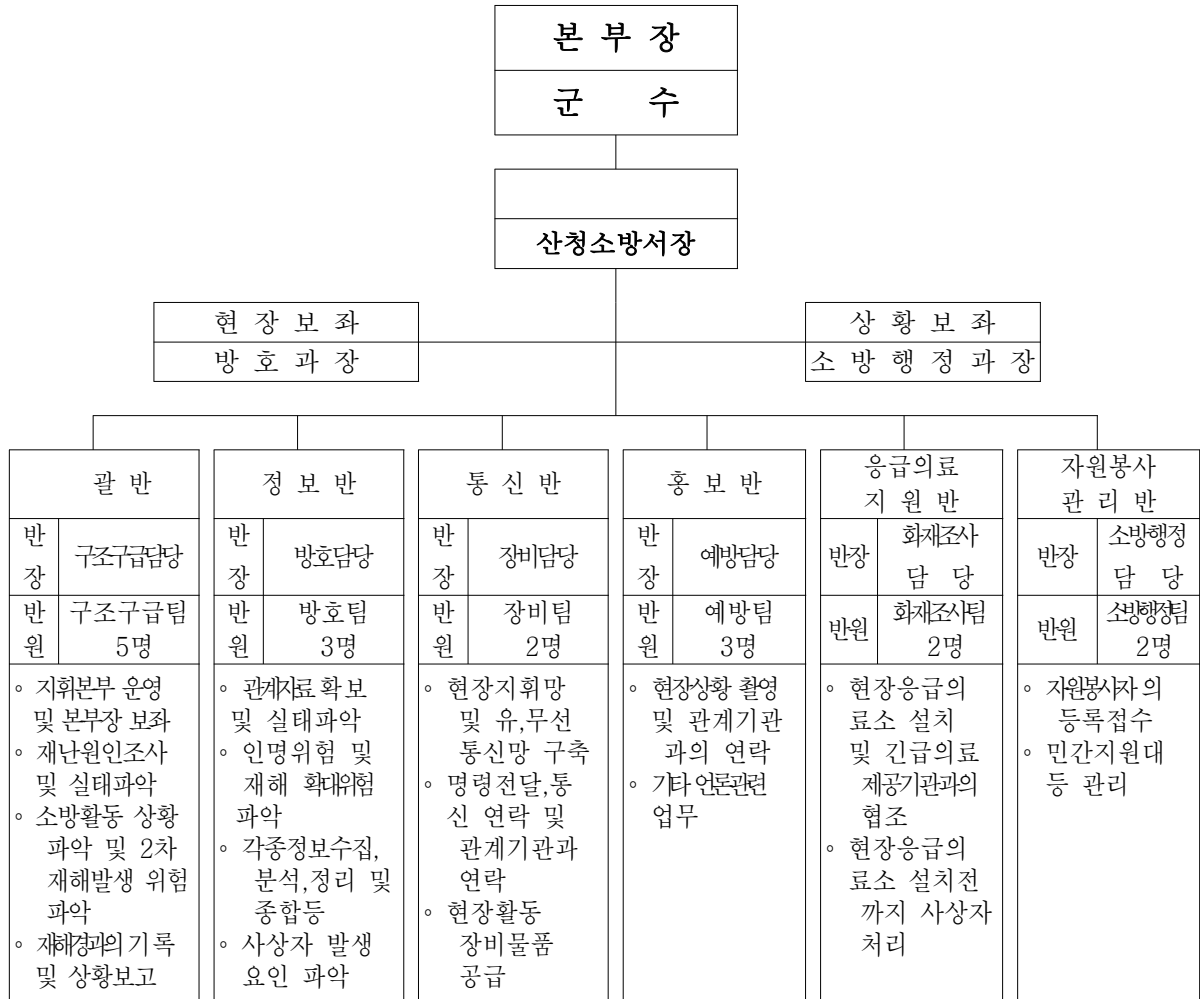
※ 특별한 사항 발생시 도 재난안전대책본부 통제관에게 직접 보고

○ 수시·정기 교육

- 현장상황지원관 대상자에 대하여 수시·정기 교육 실시

제2절 비상근무지원본부(C·P)설치 운영

1. 비상지원본부 운영 지원



· 긴급구조본부 설치 운영(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51조)

주 관 : 산청소방서

○ 설치장소

- 본 부 : 산청소방서 또는 사고현장
- 현장지휘소 : 사고현장

○ 설치시기 : 대형 재난상황 발생시

나. 현장지휘소 신속처리 운영방안

○ 현장지휘소 등의 필요장비·물자 확보

○ 신속설치운영 세부방안

- 사전 확보된 주요 장비·물자를 지휘차 및 파출소 출동차량에 상시 적재운영
- 적재방법에 있어서는 책상, 의자와 같은 대형 물자를 제외한 소형물자를 기존 「경계구역 설치 장비함」에 눈, 비등이 침투하지 않게하여 차량위에 적재

○ 현장지휘소

- 설치위치 : 재난 및 재해현장으로부터 화염, 붕괴, 폭발 등 2차 재해위험이 없고 현장지휘 및 상황파악이 용이한 곳
- 설치요령

→ 긴급구조본부 : 군청(본부장) 통보에 의하여 대형버스 또는 천막 등 설치

→ 현장지휘소 : 소방서 지휘본부 및 천막 1개를 설치하여 사전 준비된 「응급의료소」 현수막을 게첨하여, 내부에는 6개반(총괄, 정보, 통신, 홍보, 응급의료지원, 자원봉사관리반)을 구성

→ 급식소 : 필요시 천막 1개를 설치하고 급식재료, 물자 등을 사고대책본부에 의뢰

○ 현장응급의료소

- 설치위치

→ 구급차의 진입, 이송로를 쉽게 확보할 수 있는 곳

→ 2차 재해위험이 없고 지형이 평탄하여 구조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는 곳

- 설치요령

→ 필요시 천막(대형) 1개를 설치하고 「응급의료소」 프랑카드를 게첨하며, 내부에는 의료소장 아래 3개반(분류반, 응급처치반, 이송반)을 구성

→ 바닥은 습기가 올라오지 못하도록 대형비닐 또는 두꺼운 스티로폼을 깔고 그 위에 스폰지 이불, 담요 등을 깔며, 환자의 혈액 등 분비물을 쉽게 제거 할 수 있도록 재차 비닐을 도포

→ 환자의 회복을 돕기 위하여 동절기에는 난로를 설치하고 폭염기에는 선풍기를 준비

· 지휘소 설치 시 유관기관 협조 의뢰 사항

긴급구조본부 현장지휘소 설치 : 산청군 사고대책본부

- 대량 급식소 : 대한적십자사 산청군부녀봉사회, 산청군 새마을부녀회
- 응급 의료소 : 산청소방서, 산청군 보건의료원
- 통제선 설치 : 산청경찰서 경비교통과
- 전 기 가 설 : 한국전력공사 산청지점
- 전 화 가 설 : KT 산청지사

라. 긴급구조본부장의 권한

- 재난이 발생할 경우 긴급구조기관간 공조체제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해당기관·단체의 장에게 소속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청을 받는 기관·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본부장은 현장지휘를 하는 통제관이 지휘에 불응하거나 부여된 임무를 소홀히 한 긴급구조요원의 명단을 그 소속기관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마. 긴급구조 본부장의 임무

분	본 부 장	임	무
산청군	군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긴급구조대책의 총괄 조정 ○ 긴급구조기관간의 역할분담 ○ 긴급구조기관이 행하는 구조활동의 지휘 ○ 재난정보의 수집, 전파, 신속한 지휘 및 상황관리 → 상시 상황실 설치운영 ○ 재난발생시 관계기관 단체장에게 소속직원 파견 요청 * 긴급구조 본부장은 당해지역에 소재하는 기관에 대하여 총괄·조정 	

· 현장지휘소(통제단장)의 임무

분	통제단장	임무
	산청 소방서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현장에서의 인명의 탐색·구조 ○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인력 및 장비의 배치와 운용 ○ 추가 재난의 방지를 위한 응급조치 ○ 긴급구조지원기관 및 자원봉사자 등에 대한 임무의 부여 ○ 사상자의 응급처치 및 의료기관으로의 이송 ○ 긴급구조에 필요한 물자의 관리 ○ 현장접근 통제, 현장주변의 교통정리 그 밖에 효율적인 긴급구조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현장접근 통제를 위한 출입통제선 설치·운영 경찰서 협조 ○ 구조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인력, 장비만을 출입할 수 있도록 제 1통제선을 설치하고, 경찰서장은 구조·구급 차량의 출동이 원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 2 통제선을 설치운영 - 경찰서 협조 ○ 긴급구조활동이 종료된 후에는 사후수습복구와 관련한 모든사항을 사고대책본부에 인계 ○ 긴급구조기관의 요원, 자원봉사자에 임무부여 및 인력 관리 ○ 공동지휘통신망 구성 ○ 종합적 구조전략을 위한 전문기술팀 편성 ○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구조활동을 위한 구조기관과의 대책회의 ○ 사태별 전문구조요원 적정배치 ○ 현장 연락관 지정 공조체제 유지 ○ 현장 응급의료소 운영 - 보건소, 대한적십자사 등 협조 ○ 긴급구조장비 물품 등 수급관리 ○ 구조구급요원, 자원봉사자, 생필품, 숙식지원 요청 ○ 긴급구조 활동상황의 보도안내, 출입통제

긴급구조 관련 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9조 ~ 제58조

사. 유관기관. 단체 수습지원 및 역할분담

기 관 명	유관기관 및 단체 역할분담
산 청 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가족 및 환자관리:주민생활지원실· ,보건증진과 ○사고현장 수습총괄 : 관련업무부서 실과장
산청소방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고현장 사후수습 ○사고원인 조사
산 청 경 찰 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장출입통제선 설치 및 출입자통제와 경비 (사고감식이 끝날 때까지) ○사고원인 조사
한국가스 안전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산 공정 가스 분야에 대한 사고원인 조사 ○사후수습 대책추진
한국산업안전관리공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종업원 안전관리 실태파악 ○가스시설에 대한 사고원인 조사
근로 복지공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종업원에 대한 산재(고용)보험처리
산청군보건의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급차 지원, 환자이송 ○사상자 수용처리

3장 자연재난 유형 및 단계별 행동요령

제1절 태풍 · 호우

제2절 대 설

제3절 황 사

제4절 가 물

제5절 지 진

제6절 강 풍

제3장 자연재난유형 및 단계별 행동요령

제1절 태풍·호우

1) 준비단계() : 재난부서 2명 교대근무- 1 안준석, 차현식 2조 김기훈, 정회교

2) 보강단계(호우예비특보,태풍정보 발령시)

- 근무시기 : 호우·예비특보 발령 ~ 상황종료 시까지
- 근무방법 : 산청군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 합동근무
- 근무요령 : 해당실과별 2교대 근무
- 실과별 근무자 명단(2개반/10명) - 총괄 : 통제관

구 분	A 조		B 조	
	실 과 명	근 무 자	실 과 명	근 무 자
정보수집및 보고서작성반	건설과	7급 정둘순	건설과	6급 김기훈
상황관리 지원 반	건설과	7급 정회교	"	8급 차현식
비상지원반	주민생활지원실	6급 정인식	주민생활지원실	6급 천도영
	경제도시과	7급 우한석	경제도시과	6급 공동찬
	건설과	6급 안준석	건설과	6급 안준석
	산림녹지과	6급 박춘서	산림녹지과	8급 김광웅
	농축산과	6급 민영구	농축산과	6급 권영환
	농업지원과	지도사 최인락	농업지원과	지도사 정상섭
유관기관지원반	· 국립공원관리공단 지리산사무소		· 한국농어촌공사진주산청지사산청지소 · 국립공원관리공단 지리산사무소	

3) 비상 1 단계(호우 등 주의보, 태풍 예비특보 발령시)

- 근무시기 - 기상종합정보 중 호우 등 주의보 발령 ~ 상황종료 시까지
- 태풍 예비특보 발령 ~ 상황종료 시까지
- 근무방법 : 2층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 합동근무
- 근무요령 : 해당실과별 2교대 근무
- 실과별 근무자 명단(6개반/20명) - 총괄 : 통제관

구 분		A 조		B 조	
		실 과 명	근 무 자	실 과 명	근 무 자
상 황 총 괄 반	정 보 수 집 및 보 고 서 작 성 팀	건 설 과	6급 신현영	건 설 과	6급 김기훈
		건 설 과	7급 정돌순	건 설 과	7급 이덕화
		건 설 과	6급 김영옥	건 설 과	7급 홍순일
	홍 수 대 책 팀	건 설 과	8급 차현식	행 정 과	7급 김현수
	상 황 관 리 지 원 팀	건 설 과	6급 안준석	건 설 과	6급 이창규
		행 정 과	7급 최진봉	행 정 과	6급 진위용
행 정 지 원 반	기획감사실	6급 정종민	기획감사실	6급 정육진	
비 상 지 원 반	주민생활지원실	6급 정인식	주민생활지원실	6급 천도영	
	환경위생과	7급 김성환	환경위생과	6급 민정식	
	경제도시과	6급 공동찬	경제도시과	7급 강태환	
	건 설 과	7급 성지은	건 설 과	9급 임민섭	

구 분	A 조		B 조	
	실 과 명	근 무 자	실 과 명	근 무 자
비 상 지원반	산림녹지과	6급 박춘서	산림녹지과	8급 김진구
	보건증진과	6급 김선옥	보건증진과	6급 서용석
유관기관 지원반	제8962부대3대 대	기동대장	제8962부대3대 대	작전대장
	지역자율방재단	단장	지역자율방재단	부단장
구 조 구급반	행정과	7급 송희란	행정과	7급 김현수
자원봉사 지 원 반	주민생활지원실	6급 이순선	주민생활지원실	6급 조만선
	농축산과	6급 오수환	농축산과	8급 김광웅
	농업지원과	지도사 이양호	농업지원과	지도사 최인락
공 보 지원반	기획감사실	6급 정욱진	기획감사실	7급 정미숙

4) 비상 II 단계(호우 경보, 태풍 주의보 발령시)

- 근무시기 - 기상종합정보 중 호우 등 경보 발령 ~ 상황종료 시까지
- 태풍 주의보 발령 ~ 상황종료 시까지
- 근무방법 : 산청군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 합동근무
- 근무요령 : 해당실과별 2교대 근무
- 실과별 근무자 명단(6개반/29명) - 총괄 : 차장

구 분		A 조		B 조	
		실 과 명	근 무 자	실 과 명	근 무 자
상 황 총 괄 반	정 보 수 집 및 보고서 작성팀	건 설 과	6급 신현영	건 설 과	6급 김기훈
		"	7급 정돌순	"	7급 이덕화
		"	6급 김영옥	"	7급 성지은
		기획감사실	7급 박원생	기획감사실	6급 최규남
	홍 수 대책팀	건 설 과	8급 차현식	행 정 과	7급 김현수
	상 황 관 리 지원팀	건 설 과	6급 안준석	건 설 과	6급 이창규
		행 정 과	7급 최진봉	행 정 과	6급 고현숙
		상하수도사업소	8급 김성훈	상하수도사업소	6급 차상효
	행 정 지 원 반	기획감사실	6급 정종민	기획감사실	7급 정해자
		행 정 과	7급 송희란	행 정 과	6급 정병주

구 분	A 조		B 조	
	실 과 명	근 무 자	실 과 명	근 무 자
비 상 지 원 반	주민생활지원 실	6급 이순선	주민생활지원실	6급 조만선
	문화관광과	7급 한인자	문화관광과	6급 문병국
	환경위생과	7급 김성환	환경위생과	6급 민정식
	경제도시과	6급 이상인	경제도시과	7급 강태환
	보건증진과	6급 김선옥	보건증진과	6급 서용석
	건 설 과	7급 정춘기	건 설 과	7급 홍순일
	"	7급 정회교	"	8급 차현식
	산림녹지과	6급 박춘서	산림녹지과	8급 김진구
유관기관지원반	8962부대3대대	기동대장	제8962부대3대 대	작전대장
	지역자율방재단	단장	지역자율방재단	부단장
구 조 구 급 반	행정과	6급 이병혁	행정과	7급 이대인
	보건증진과	7급 박영순	보건증진과	6급 최화혜
자원봉사 지 원 반	주민생활지원 실	6급 조병식	주민생활지원 실	6급 권갑근
	한방산업과	6급 김명문	한방산업과	6급 이성안
	농축산과	6급 오수환	농축산과	8급 정길섭
	농업지원과	지도사 이양호	농업지원과	지도사 최인락
공 보 지 원 반	기획감사실	6급 오윤환	기획감사실	7급 정미숙
	"	8급 정승화	"	8급 오진선
	건 설 과	8급 김귀녀	건 설 과	8급 신민수

5) 비상Ⅲ단계(광역적 태풍경보 발령시)

- 근무시기 - 기상종합정보중 광역적 호우 등 경보 발령 ~ 상황종료 시까지
- 태풍경보 발령 ~ 상황종료 시까지
- 근무방법 : 2층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 합동근무
- 근무요령 : 해당실과별 2교대 근무
- 실과별 근무자 명단(6개반/29명) - 총괄 : 본부장

구 분		A 조		B 조	
		실 과 명	근 무 자	실 과 명	근 무 자
상 황 총 괄 반	정 보 수 집 및 보고서 작성팀	건 설 과	6급 신현영	건 설 과	6급 김기훈
		"	7급 정돌순	"	7급 이덕화
		"	6급 김영옥	"	7급 성지은
		기획감사실	7급 박원생	기획감사실	6급 최규남
	홍 수 대책팀	건 설 과	8급 차현식	행 정 과	7급 김현수
	상 황 관 리 지원팀	건 설 과	6급 안준석	건 설 과	6급 이창규
		행 정 과	7급 최진봉	행 정 과	6급 고현숙
		상하수도사업소	8급 김성훈	상하수도사업소	6급 차상효
	행 정 지 원 반	기획감사실	6급 정종민	기획감사실	7급 정해자
		행 정 과	7급 김수용	행 정 과	6급 정병주

구 분	A 조		B 조	
	실 과 명	근 무 자	실 과 명	근 무 자
비 상 지 원 반	주민생활지원 실	6급 조병식	주민생활지원 실	6급 권갑근
	문화관광과	7급 한인자	문화관광과	6급 문병국
	환경위생과	7급 김성환	환경위생과	6급 민정식
	경제도시과	6급 이상인	경제도시과	7급 강태환
	보건증진과	6급 김선옥	보건증진과	6급 서용석
	건 설 과	7급 정춘기	건 설 과	7급 홍순일
	"	7급 정회교	"	8급 차현식
	산림녹지과	6급 박춘서	산림녹지과	8급 김진구
유관기관지원반	8962부대3대대	기동대장	제8962부대3대 대	작전대장
	지역자율방재단	단장	지역자율방재단	부단장
구 조 구 급 반	행정과	6급 이병혁	행정과	7급 이대인
	보건증진과	7급 박영순	보건증진과	6급 최화혜
자원봉사 지 원 반	주민생활지원 실	6급 이순선	주민생활지원 실	6급 조만선
	한방산업과	6급 김명문	한방산업과	6급 이성안
	농축산과	6급 오수환	농축산과	8급 정길섭
	농업지원과	지도사 이양호	농업지원과	지도사 최인락
공 보 지 원 반	기획감사실	6급 오윤환	기획감사실	7급 정미숙
	"	8급 정승화	"	8급 오진선
	건 설 과	8급 김귀녀	건 설 과	9급 손재호

1. 대비단계

가. 재난취약시설 점검, 지정관리

- 방재시설물 청소, 잡초제거, 주유, 도색 등 일상정비.
- 재해 위험시설물 관리주체, 주민 및 관계공무원을 관리책임자로 복수 지정.
- 재해 위험시설물은 태풍이 발생시기 전까지 정비 완료.
- 방재시설물은 매년 3월초까지 일제점검 실시.
- 재해 사전대비기간(3~5월)중에는 매월1회 이상 일제점검 실시.
- 붕괴위험 제방 개·보수.
- 하천 내 유수소통 지장물(수목, 건물,야적골재, 하천점용시설물)제거.
- 댐 및 저수지의 주요구조물(수문,여수토,방수로 등) 상태 보수.
- 양수·배수 펌프장 주요구조물 일제 점검.
- 유수지 퇴적토사 준설 및 수초제거 점검.
- 하수도의 단면부족구간 개·보수 실시.
- 하수도의 퇴적물과 수초 제거작업 실시.
- 하수도의 부속시설물(암거 등) 정비점검.

1) 방재시설물 점검 정비 계획 및 현황

① 방재시설물 점검 정비 대상

옹벽·축대, 도로·교량, 저수지·소류지, 방조제, 하수도, 하천, 소하천 등 재해위험요인이 있는 시설물을 대상으로 매년 초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우기 전(5.14)까지 개·보수 완료										
구 분	하 천		소하천	도 로			저수지		배수 펌프장	수문
	국가	지방하천		국도	지방도	군도	농촌	군		
523	1	51	199	4	9	19	30	191	5	14

② 방재시설물 점검 정비 대책

- 축대·옹벽 : 도괴위험지구 보수, 강우침투방지 비닐보호막 설치 및 버팀목 설치.
- 도로·교량 : 낙석 사전제거, 배수로보강, 기초세굴부위 보강.
- 하 천 : 붕괴예상 제방 개·보수, 유수소통 지장물 제거.

- 저 수 지 : 여수토·방수로 등 구조물 균열 점검보수, 제당누수부분 보강.
- 양·배수장 : 기계 시험가동, 송·배전시설 점검.
- 하 수 도 : 단면부족구간 개보수 및 퇴적물 제거.

③ 방재시설물 점검 정비 추진

- 시설물 관리청별로 우기 전까지 정비완료.
- 예비비, 재해대책기금 등 가용재원 활용실시.
- 정비가 어려운 시설물은 응급조치 완료 후 특별관리.

④ 방재시설물 점검 정비 추진일정

-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일제조사 : 2~3월중 실시.
- 시설물 보수정비 실시 : 3~5월.
- 정비사항 확인 : 5월말까지.

2) 재해위험지구 지정 관리사항

가) 점검 정비 사항

- 군수는 재해위험지구를 매년 일제조사 후 재해위험지구를 지정하여 도지사에게 보고
- 위험방재시설물에 대한 점검결과 재해발생이 극히 우려된다고 판단될 때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및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정밀안전진단 실시.
- 민간관리시설(사유시설)은 소유자가 정비사업실시
- 상습침수·고립위험지구
 - 6월 ~ 10월 기간중 : 2주 1회이상
 - 11월 ~ 익년 5월 : 2개월 1회이상
- 붕괴위험·노후시설 위험지구
 - 해빙기(3 ~ 4월) : 2주1회이상
 - 6월 ~ 10월 : 매월 1회이상
 - 11월~ 익년 3월 : 2개월 1회이상
- 태풍경보 발효시 관리책임자는 현지 점검을 실시하고 가능한 상주 근무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기관의 장과 단체등의 장은 다음연도의 정비계획을 12월 말일까지 군수에게 통보
- 군수는 1월 15일까지 도지사에게 통보
- 재해위험지구(침수구역) 관리카드 작성 및 점검

- 우회도로 및 주민대피장소 등을 지정
- 지구별로 기상특보 발효에 따라 지역별·시간대별로 구분된 계획적인 주민대피계획을 수립 비치
- 주민 대피시에 대피지역의 치안을 맡을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 지구별로 수시 예찰활동 실시 및 하천 및 내수배제 시설에 대한 점검
- 응급복구용 비상통신 장비 등 장비투입계획 수립과 확보
- 태풍의 발생시기 전 재해대비완료가 어려운 지구는 가배수로 설치, 비탈면 비닐 덮기 등 응급대책을 강구하고, 필요한 수방자재 및 장비 확보.
- 산간계곡, 하천변, 유원지 등의 행락객대피 및 표지판 설치
- 재해위험지구의 방재책임자(군수)는 정비계획 수립 및 사업을 추진.

나) 재해위험지구 점검 정비 계획 및 현황

① 재해위험지구 지정관리규정

-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하고 재해위험 원인에 따라 침수위험지구,유실위험지구,고립위험지구,취약방재시설지구,붕괴위험지구,해일위험지구로 구분관리
- 군수는 재해위험지구 점검·정비조치 명령권 발동
- 재해위험지구의 등급, 기상특보의 종류와 발표기준에 따라 지역별, 시간대별 주민·재산 등의 계획적 대피계획 수립 관리
- 우기 중(6월 ~ 10월)재해위험지구 관리
 - 모든 재해위험지구 관리카드를 재정비하고, 점검결과에 대한 기록 관리 의무화
 - 침수구역도 작성, 우회도로 지정, 주민대피장소 지정 등
 - 주기적 점검실시 : 2주 1회이상
 - 각 지구별로 공무원, 관련기관, 주민, 복수관리책임자 지정 점검 실시
 - 통신두절에 대비 비상통신장비 확보
 - 가배수로 설치, 비닐덮개 등 응급대책을 강구하고, 이와 병행하여 지구별로 수방자재확보, 장비투입계획 수립 실시
- 비우기 중(11월 ~ 익년 5월) 지구 관리
 - 위험요인 해소 및 신규지구 선정여부 등을 위한 일제조사를 실시한 후 매년 10월말까지 재해위험지구 확정
 -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기록관리 의무화 2개월 1회이상(단, 해빙기의 붕괴 위험·위험방재시설은 주 1회이상)

② 재해위험지구 정비계획 수립

- 방재책임자는 매년 다음연도의 정비계획을 12월말까지 수립
- 정비계획에 포함될 사항
 - 재해위험지구의 정비에 관한 기본방침
 - 재해위험지구의 점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연도별 정비계획에 관한 사항
 - 기타 재해위험지구의 정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정비계획 수립방법
 - 정비의 시급성, 인명피해 발생도, 지역여건, 투자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수립
 - 재해유형별·시군별로 수립
 - 연도별 중기 정비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

③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계획

-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정비계획에 의거 연차적으로 추진
- 소규모 정비사업 지구는 군 자체사업으로 추진
- 대규모 정비사업 지구는 도 및 중앙지원요청

3) 고립예상지역 점검 관리사항

※ 산청군에는 고립예상지역이 없으나 추후 발생시에 점검·관리

가) 점검 정비 사항

- 재해 시 고립예상지역을 사전에 지정 및 대피계획 수립.
- 재해 시 고립예상지역을 인근에 헬기 착륙장소와 우회도로를 지정관리.
- 교통두절 예상지구에는 사전에 우회도로를 지정하여 주민고립을 예방.
- 하천변 등의 고립예상지역 주민들에게 지정된 대피장소, 대피로, 우회도로 등을 사전 홍보.
- 예상고립지역 헬기 좌표 확인. 및 침수 고립예상지역 대피자 수송 수단 확보.

나) 고립예상지역 긴급구조 계획

※ 고립지역 발생시 신속하게 긴급구조 현장지휘소를 설치 운영.

① 인명구조·구난을 위한 현장지휘소 설치

- 설치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52조
- 현장지휘소 조직
 - 통제관 : 산청소방서장

-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50조 규정에 의하여 시군구 긴급구조구난 본부의 통제관인 소방서장이 현장에서 긴급구조활동을 총괄 지휘
 - 구조·구난활동팀 구성 : 119구조대원, 군, 경, 자원봉사자로 혼합 편성
 - 인력·장비 부족시 긴급구조기관 및 민간단체로 부터 지원요청 활용

※ 산청군 재해대책 본부에 구조·구난분야 연락관 1명 파견

- 현장지휘소 임무
 - 고립자 구조 및 사상자의 응급처치 및 의료기관 이송
 - 현장 접근통제, 현장주변의 교통정리, 기타 효율적인 긴급구조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통제관은 긴급구조사항을 **군 재해대책 본부장에게 수시 보고**

② 고립 예상지역에 대한 헬기동원 계획

- 긴급 상황 대비 비상출동 대기조 편성 운용
-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산림청항공, 소방항공, 군부대 등)
- 헬기지원 가능업무
 - 인명구조 및 환자 이송 및 식료품음료수 및 생필품, 의약품 등 보급품 공수
 - 문서 및 통신연락
- 긴급 상황 시에는 구두 승인 또는 선조치 후보고
- 폭설·수해로 인한 고립예상지역 파악, 지형 숙지훈련
- 헬기를 이용한 인명구조
 - 홍수, 화재, 천재지변과 기타 긴급사태 발생시 경찰 헬기를 동원하여 신속, 안전하게 인명구조 임무를 수행
- 구조반 편성은 도 경찰청 항공대로 하고, 구조장비는 로프연결 장치(카고훅) 구조망, 구명대, 구명보트, 구명환, 기타 대민 무선방송 장비를 최대한 활용
- 헬기 지원요청 결과는 도 재해대책본부 경유 중앙재해대책본부에 보고
- 상황보고 시에는 정확한 사고위치, 사고내용, 구조 인원수, 구조장소의 상황, 사고지역 기상상태 등 사고 정황을 정확히 보고
- 인접 시·도간에는 상황에 따라 지원이 가능토록 협조체제 유지
- 헬기장 운용 기상조건은 경찰항공 운영규정에 준하는 기상상태에서 가능하며, 긴급 특수임무 수행 시는 지휘관 및 해당 정조종사의 판단에 따름
- 헬기장은 헬기 아착륙에 장애가 되는 전기줄, 높은나무, 지반 등을 고려하여 선정

4) 대규모 공사장 점검 관리사항

가) 점검 정비 사항

- 산사태 위험 지역 시설물건축 제한 조치
- 공사장별 관리카드 작성(공사지역, 위험시설)

- 태풍에 동반하는 호우에 대한 배수처리 기능 확보.
- 하류지역 토사유출 방지를 위한 침사지 설치.
- 절개지 비탈면 토사유출 방지시설 설치여부 점검.
- 피해우려 지역주민에 대한 대피계획 수립.
- 기타 수방자재 및 장비 사전확보 조치.
- 재해 사전대비 기간 중(3~5월중)에는 매월 1회 이상 재난관리부서와 합동으로 점검 실시.
- 우기 전 반드시 1회 이상 행정기관, 사업시행자, 시공사, 관리자 및 관계 주민 합동점검 실시.

나) 대규모 공사장 점검 정비 계획 및 현황

① 대규모 건설공사장 관리 계획

택지조성 등 기타 50억원이상 대규모 건설공사장과 소단위APT, 연립주택, 공사장 등 자연재해로 인하여 피해발생우려가 있는 일반공사장도 대규모건설 공사장에 준하여 관리

② 중점조치사항

- 가배수로 설치 등 배수처리 기능 확보
- 하류지역 토사유출 방지를 위한 충분한 침사지 설치
- 절개지의 비탈면에 토사유출 방지시설 설치
- 피해우려 예상지역 주민에 대한 대피계획 수립
- 기타 수방자재 및 장비 사전확보 조치

③ 행정조치 사항

- 관리주체별(행정기관, 사업시행자, 시공사, 관계주민 등) 업무분담 실시
- 공사장별 관리대장 작성 및 도·군 간부공무원 복수지정 특별관리
- 재해기간 중 주 2회이상 예찰활동 강화 및 강력한 행정규제 병행
- 사전조치 사항에 대한 우기 전 점검 및 보완조치

④ 추진일정

- 우기전 일제 정밀조사 및 현황파악 : 3. 10
- 재해취약요인의 분석 및 대책수립 : 3월중
- 사업장별로 재해취약요인 보완조치 : 5. 20완료
- 보완조치사항 확인 : 5월말까지

5) 농림, 축산시설 점검 관리사항

가) 점검 정비 사항

- 수리시설 점검·정비 및 수방자재 확보상황 점검 조치

- 재해취약시설(저수지, 배수장) 및 저지대 상습 침수 농경지 점검.
- 농업인의 재해예방대책 행동요령 계도 및 홍보 대책 점검
- 기상상황 신속입수 및 전파와 농업인에 대한 풍수해 예방대책 홍보 대책 점검
- 농어업과 및 한국농촌공사 산청지사 비상근무체제 점검 및 정비
- 관리책임자 현장배치 및 양배수장 점검·정비 등 수리시설 관리강화
- 재난발생대비 민·관·군 인력지원 계획 점검 및 정비
- 침수피해 방지를 위한 현지점검 강화 등 관리대책 추진
- 저수지의 예비방류 및 배수장 가동계획 등을 수립하고, 취약시설에 대한 순찰 및 시설관리자 근무 강화
- 논둑, 수로등 농경지의 안전여부 사전 점검·정비
- 침·관수 피해지역의 조기 퇴수를 위한 양수장비 동원 태세준비

나) 농림, 축산시설 점검 정비 계획 및 추진사항

□ 추진계획

- 예방·응급·복구의 단계별 재해예방대책 추진
- 우기전 배수시설 중점 점검·정비 및 시설관리자에 대한 교육실시
- 집중호우 등 위기상황에 대비한 배수장 등 비상대비 가상훈련 실시
- 응급활동을 위한 표준행동요령을 작성하여 비상대비 가상훈련 실시 및 자재, 장비 등 사용방법 숙지
- 설계기준을 강화 및 항구복구사업 추진으로 피해재발 방지
- 민·관·군 총력태세로 조기 응급복구하여 영농재개 도모
-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조기 완료로 피해확산 방지 및 영농재개

□ 추진사항

◆ 시설안전관리

- 저수지 여수토, 방수로의 물 흐름에 방해가 되는 나무가지, 토석 등 제거, 제방에 있는 나무, 풀을 제거하여 깨끗하게 관리
- 제당 비탈면의 사면붕괴 및 누수유무 점검·정비
- 통관의 균열 등으로 인한 누수유무 점검
- 여수토·방수로의 바닥 및 측벽 등 균열된 부분은 즉시 보수보강
- 취수탑 및 사통의 개폐조작 장애요인 점검·정비
- 텐타게이트 등 수문조작시는 예고 없는 급속방류로 인하여 하류부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하류주민, 관련기관에 통보
- 이상강우로 물이 제체를 넘어 대형재해 발생이 우려될 경우에는 관계기관

에 통보하고, 인근 주민에게 알려 대피하는 등 재해대비 요령에 의하여 조치

○ 수문홍통에 이물질이 투입되어 개폐에 지장이 있는지 여부를 수시 점검·정비

○ 수방자재를 충분히 확보 비치하여 항상 수해에 대비

◆ 수위관리

○ 수위는 홍수기와 비홍수기로 구분하여 관리

○ 홍수기는 영농급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홍수조절기능을 강화하도록 최대한 낮추어 관리

○ 비홍수기에는 영농급수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

○ 취 입 보

·배사문(排砂門)의 조작기능을 점검 정비

·언체균열 및 누수, 돌망태 등 점검정비에 철저

·취입보로 인한 하천제방이 유실되지 않도록 날개벽, 호안공, 제방 등 취약부 보강

·가동보는 작동에 문제없는지 사전 점검

○ 양배수장

·모타펌프·천정주행 기중기 등이 상시 정상 가동되도록 점검·정비

·이상홍수시 전기시설이 침수되지 않도록 수배전반 관리 철저

·송배전선로 및 수전시설의 이상유무를 수시확인하여 배수장 가동중에 단전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

·저지대에 위치한 양·배수장의 변전시설, 배전함 등은 높게 설치하여 침수되는 일이 없도록 보완

·양·배수장 토출암거가 통과하는 하천제방 접합부분의 누수 등을 상시

관찰하여 하천수위 상승으로 인한 제방 유실피해를 입지 않도록 점검보수

○ 용·배수로

·용·배수로의 사면붕괴 부분 정비

·용·배수로내의 잡초를 수시 제거하여 통수에 원활을 기하고 우기에 수로둑이 붕괴되지 않도록 정비

·부실한 용수로는 우기전 보강 완료

·분수문, 제수문, 방수문, 배수문 등 수문조작 여부를 사전 점검

·산측의 배수처리 구조물 및 용·배수로의 종횡단 구조물을 점검하여 통수단면이 부족한 곳은 사전 보완

◆ 원예작물 및 비닐하우스

○ 침수피해대책

·피해우려지역 점검 등 순찰강화

·수확기에 도달한 고추등 조기수확 및 지주보강과 결속보완

- 세력이 약한 어린나무, 열매가 많이 달린 가지는 지주 및 받침대를 설치하여 폭우로 인한 쓰러짐 방지
- 침관수지역은 조기 배수, 작물의 잎줄기에 묻은 흙양금 등 불순물 세척
- 배수후 표토를 긁어주어 토양의 공기유통을 촉진
- 병충해 방제 및 엽면시비 실시
- 침수피해 정도에 따라 보파, 보식 또는 대파 실시

○ 강풍피해대책

- 풍해 상습지역 방풍림·방풍벽 설치, 지주 재배작물은 지주대의 보강
- 과실 낙과방지제 살포 및 낙과시 상처방지를 위해 짚 등으로 표토 피복
- 수확기에 도달한 과실은 가능한 조기 수확
- 쓰러진 과수목은 일으켜 세우고 찢어진 가지는 제거후 약제를 살포하여 병해방지
- 파열된 비닐하우스는 보수하여 풍해 경감

◆ 가축·축사 및 초지관리

○ 축사·잠사

- 축사주위, 방목장, 분뇨처리장 등 배수로 정비
- 낡은 축사 및 사료창고 보수 및 비상사료 10일분 이상 사전에 비축
- 가마니, 마대, 모래, 새끼 등을 준비
- 홍수, 폭설 등에 의한 위험 예상지역의 축사 및 가축을 사전 조사하여 우회도로 및 대피장소, 수송수단 등을 사전에 확보
- 가축방역 및 위생관리
- 긴급 방역비(지방비) 확보로 소독약, 예방약등 사전에 비축
- 폐사가축은 매몰 후 축사에 대한 소독실시
- 가축 전염병 예찰을 강화하고 예방주사 실시

○ 초지 및 사료작물 관리

- 재해예방대책 지도 및 홍보
- 매몰 등 피해예상 지역은 배수로정비 등 예방조치 계획을 통보
- 피해지의 복구지원
- 피해복구를 위한 인력, 장비 등의 신속한 지원
- 재파종 대상지역은 소요종자를 알선하고 파종지도

6) 산지재배시설 점검 관리사항

□ 비닐하우스, 인삼재배시설, 버섯재배시설 등

- 비닐하우스의 피복 비닐이 날리지 않도록 비닐끈 등으로 견고히 묶음

- 찢어진 비닐은 즉시 보수 또는 교체하여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함.
- 표준 인삼 경작 방법에 의한 시설 설치
- 기상예보시 버팀목 보강 조치 및 피해예방조치

7) 산림개발지 점검 관리사항

가) 점검 정비 사항

- 우기전 대규모 산불 피해지역 순찰강화
- 숙아낸 나무의 처리 및 쌓아둔 상태 확인.
- 산사태 위험지역에 대한 주민 홍보 실시.
- 산사태 발생예상지역 사전조치
- 노후주택 주민 유사시 대피장소 지정 및 대피조치
- 임목 등 벌채지역 관리실태 확인
- 산림형질변경, 토석채취 허가지 점검

나) 추진일정

- 우기 전 일제 정밀조사 및 현황파악 : 3. 20
- 산사태 위험지역 분석 및 대책수립 : 3월중
- 지역별로 재해취약요인 보완조치 : 5. 20완료
- 보완조치사항 확인 : 5월말까지
- 기상 예보 시 담당자 현지 순찰 점검

8) 산사태위험지구 및 토사유출지역 점검 관리사항

가) 점검 정비 사항

- 산사태 붕괴 위험지역 점검 및 조치
- 토사 유출 위험지구 점검 및 조치
- 과거 사면붕괴지역 점검 및 조치
- 산불 피해지역 산사태 가능성 점검 조치

나) 추진일정

- 우기 전 일제 정밀조사 및 현황파악 : 3. 20
- 산사태 위험지역 분석 및 대책수립 : 3월중
- 지역별로 재해취약요인 보완조치 : 5. 20완료
- 보완조치사항 확인 : 5월말까지
- 기상 예보 시 담당자 현지 순찰 점검

9) 국민생활필수시설(전기,가스,상하수도 등) 점검 관리사항

가) 점검 정비 사항

- 통신 두절시 통신망 복구계획 점검
- 가스 두절시 복구계획 점검 및 상수도 두절시 복구계획 점검
- 통신시설 점검은 KT에서 점검 및 전기시설 점검은 한국전력공사에서 점검
- 가스시설 점검은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점검

나) 추진일정

- 우기 전 일제 정밀조사 및 현황파악 : 4. 10
- 산사태 위험지역 분석 및 대책수립 : 4 월중
- 지역별로 재해취약요인 보완조치 : 5. 20완료
- 보완조치사항 확인 : 5월말까지
- 기상예보 시 담당자 현지 순찰 점검

10) 기타 피해발생 우려 시설 점검(축대, 옹벽, 대형간판 등)

가) 점검 정비 사항

- 절토사면 및 축대 옹벽 점검사항
 - 파괴징후의 유무, 파손여부, 박리여부 등
 - 전반적인 외관상태
 - 인장균열 및 이완 암괴 유/무
 - 지반 및 구조물의 변형 유/무

나) 추진일정

- 우기 전 일제 정밀조사 및 현황파악 : 3. 20
- 붕괴 위험지역 분석 및 대책수립 : 3월중
- 지역별로 재해취약요인 보완조치 : 5. 20완료
- 보완조치사항 확인 : 5월말까지
- 기상 예보 시 담당자 현지 순찰 점검

나. 방재물자 확보·비축 및 동원장비의 지정관리

1) 수방자재 확보관리

가) 점검 사항

- 수방자재 사용가능여부를 수싯 점검하여 정비상태 확인

- 포대, 묶음줄, 말뚝, 비닐, 삼, 곡괭이, 흙관, 돌망태
- 수방자재 자재수불대장 비치 및 관리책임자 지정관리.
- 보관자재는 연초에 내구연한을 감안하여 상태를 점검.
- 보관자재는 비축계획 전량을 태풍의 발생시기 전까지 확보.

나) 수방자재 확보 추진일정

- 우기 전 일제 현황조사 및 현황파악 : 4월중
- 수방자재 구입 및 분배 : 4월하순
- 보완조치사항 확인 : 5월말까지
- 기상 예보 시 담당자 필요수량 파악 및 자재 상태 점검

2) 응급복구 동원장비 지정관리

가) 점검 정비 사항

- 관용장비, 유관기관 및 민간보유 장비의 관리자와 협의하여 재해발생시 신속하게 동원 가능하도록 조치
- 동원장비는 최근 10년간 최대피해를 감안한 소요량 산정하여 지정.
- 동원장비의 사전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동의서 취득 후 지정.
- 침수피해 시 동원 가능한 청소차, 집게차, 분뇨차 등 쓰레기 처리장비 지정 및 확보(인근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업체와 응원체계 구축)
- 시신운구용 차량확보(보건의료원 엠블런스 보유현황)
- 수운반 차량확보(소방차, 민간보유 급수운반차, 청수선 등)

나) 관내 동원순위

동원 순위	구분	비고
1	산청군 보유장비	확보
2	유관기관 장비	확보
3	군부대 지원 장비	확보
4	민간장비의 순위	확보

다) 수난 구조용 장비 자재 확보

- 관내 유관기관 보유장비·자재(헬기, 선박, 구명복, 구조망, 구급차, 로프, 무전기, 싸이렌, 메가폰, 앰프 등)중 사용가능한 것을 사전협의하여 확보
- 통신기기 및 구명장비 상태 점검

다. 봉사단체 및 유관기관 협조체제 구축

1) 자원봉사단체 지원·협조체제 구축

가) 협조체제 구축 계획 수립 및 점검사항

- 의료종사자 확보(의료 분야별로)
- 긴급조치에 필요한 인력 확보.
- 자원봉사의 활용 계획 수립(특기, 보유장비, 구성원파악, 부여할 업무내용)
- 봉사에 대한 대가성 프로그램 개발.
- 자원봉사에 대한 교육 실시(안전교육, 주의사항)
- 봉사활동에 필요한 물품이나 기자재 준비.
- 장기봉사에 따른 지원상황 점검.

나) 재난극복 자원봉사 총연합 현황

- 협약체결일 : '04. 9. 24
- 가입단체(7):대한적십자사, 새마을운동중앙회, 전국재해구호 ,
재해극복범시민연합, 한국구조연합회, 한국자원봉사
협의회, 한국자원봉사센터협의회

[평상시]

- 1) 상호 정보공유를 통해 인적, 물적 자원에 대한 D/B 구축
- 2)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워크샵, 교육, 연찬회, 훈련 등 실시
- 3)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자문회의의 구성·운영
- 4) 구호품 수요파악, 구호기관 간 업무분담, 구호품 구매 및 비축

[비상시]

- 1) 대규모 재난발생시 총연합의 구성원들이 확보한 인적·물적 자원이 재난 현장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지원 될 수 있도록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 합동 근무
- 2) 시도, 시군구 자원봉사단체와 유기적인 협조
- 3) 자원봉사활동의 대상지역, 소요인력, 장비 등을 파악하여 적절하고 신속한 자원봉사 유도

2) 유관기관 소관업무 지원·협조체제 구축

가) 지원 및 협조 사항

- 방송기관에 상황전달 협조요청
- 이동수단의 확보와 험력 요청(헬기)
- 교통종합정보센터를 운영하고 방송기관에 교통방송 유도
- 대한적십자사에 이재민 구호활동 요청
- 필요시 인근 지자체에 협조 요청
- 유관기관이나 사회단체에 협조요청
- 인근 군부대의 병력 및 장비지원 요청
- 공공시설물 복구순위 결정을 관계기관 협조요청
- 가축피해에 대한 응급대책 관련기관 협조요청
- 상하수도, 전기, 가스, 등 도로 점용시설의 피해를 도로관리자에게 통보

- 인명피해 발생시 인명의 구조와 실종자 수색을 소방·군경과 협조하여 신속 지원
- 군에서 동원된 병력과 장비, 예비군 등과 함께 도로복구
- KT는 피해를 입은 통신시설 복구(현장근무자는 협조 및 통제)
- 한국전력공사는 피해를 입은 전기시설 복구(현장근무자는 협조 및 통제)
- 한국가스안전공사는 피해를 입은 가스시설 복구 및 무상 안전점검 실시
(현장근무자는 협조 및 통제)
-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전기시설에 대한 무상안전점검 실시
(현장근무자는 협조 및 통제)

나) 유관기관별 세부 업무 지침

- 단계별 근무체계 참조.
- 불임의 유관기관현황 참조
- 불임의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참조.
- 업무별 표준행동절차 참조.

3) 인접 시·군·구간 상호협조체제 구축

가) 점검 사항

- 피해가 발생되어 자체능력으로 대처가 불가능하다고 본부장이 판단할 경우 인접 시군에 협조요청.
- 인접시군에서 협조 요청 시에는 본부장의 판단 하에 적극 협조.

나) 인접 시·군 자연재해 담당부서

구분	타 시·군·구	지원가능 장비	지원가능 인력	지원가능 자재	전화번호 (사무실)	비고
1	진주시	12	100	1,000	749-2119	
2	함양군	12	100	1,000	960-5202	
3	합천군	12	100	1,000	930-3452	
4	하동군	12	100	1,000	880-22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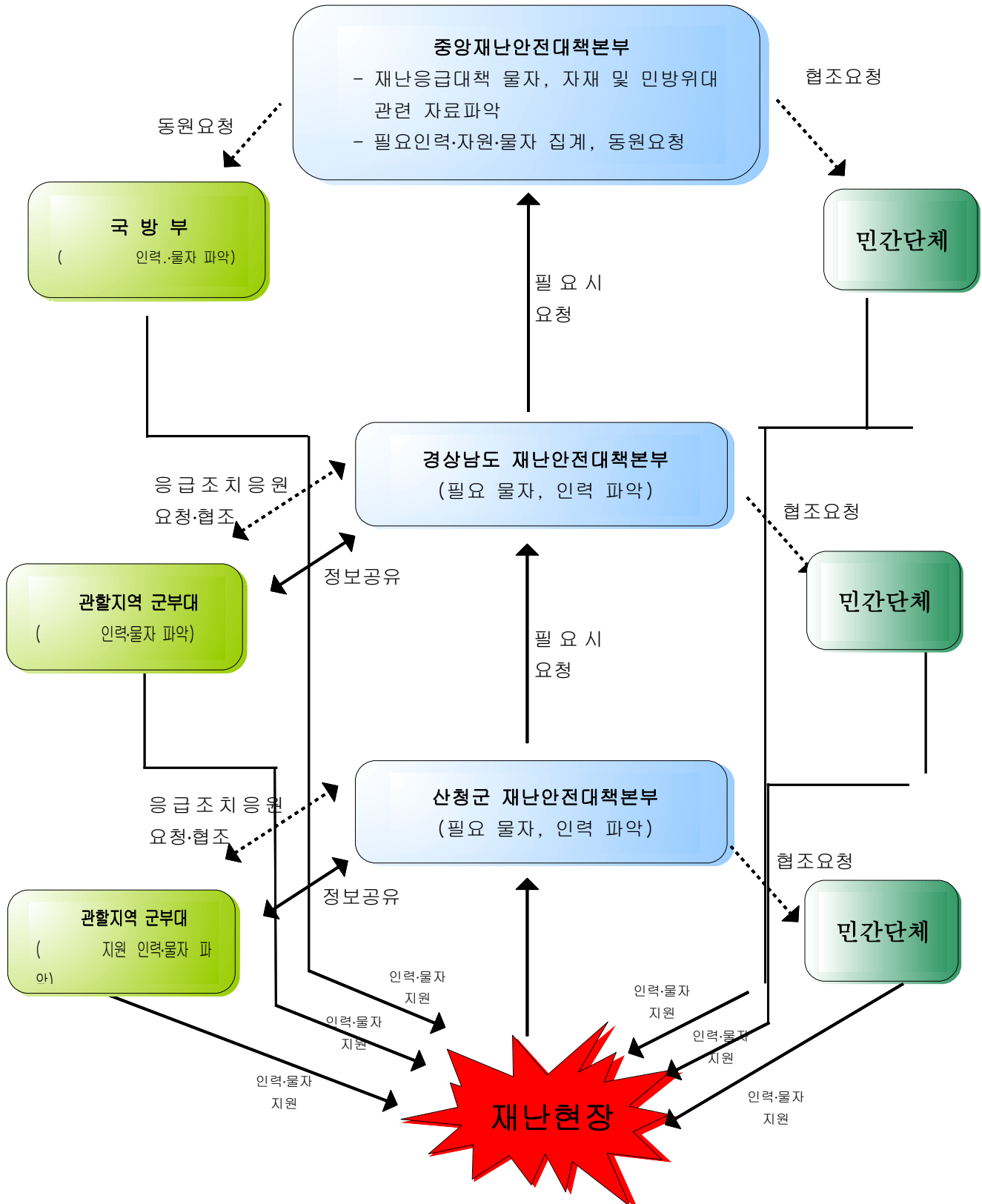
4) 관할 군부대 장비 및 병력 동원계획

※ 본부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적극 협조

○ 인근 군부대 현황

부대명	주 소	전화번호 (사무실)	비고
제8962부대 3대대	함양읍 용평리 524	963-1113	

5) 자원봉사단체, 군부대, 유관기관 간 업무체계도



6) 자원봉사단체, 군부대, 유관기관의 재난대응 조치 보고체계

가) 점검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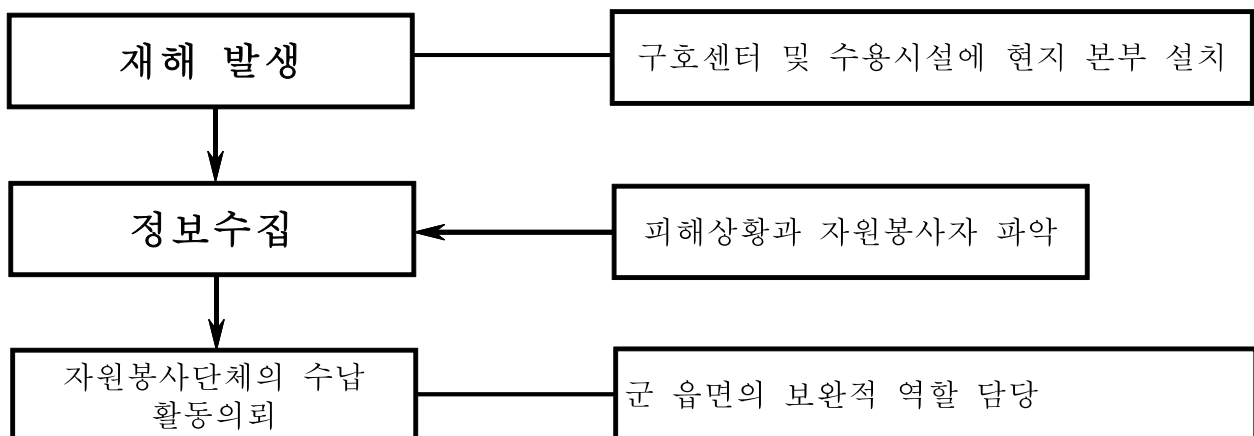
- 보건의료원 및 관내 병·의원 협조, 의료종사자 확보
- 자체 지역실정에 적합한 자원봉사 활용계획 수립
- 자원봉사에 대한 인력관리
- 자원봉사자의 안전교육, 주의사항 등 교육 실시
- 장기 자원봉사자에 대한 물품지원 등 협조 조치

나) 자원봉사 활동의 범위

- 부상자 응급 의료 활동에 관한 것
- 구호센터 및 수용시설에서의 봉사활동에 관한 것
-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곳에 집단급식, 차량배치 및 봉사활동에 관한 것
- 구호물품 접수 및 배분 시 운반, 운송에 관한 것

다) 자원봉사단체, 군부대, 유관기관의 보고체계

-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이 있을 경우
 - 사전에 준비한 비상체제로 업무를 전환하고, 즉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합류
 - 긴급을 요하는 곳에 본부장의 요구에 따라 지원 및 협조.
- 각종 업무 협조사항 및 지원협조요청시 보고
 - 원칙적으로 공식·비공식 문서에 의하되, 각종 통신매체(전자우편 및 팩시밀리)를 이용할수 있다. 다만, 수발신자의 성명 및 수발신시간이 기록되어야 한다.
 - 긴급을 요하는 사항의 경우 전화(유·무선)를 이용할 수 있다.
 - 그 밖의 재난상황을 감안하여 산청군 본부장이 통보방법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자원봉사 활용 계획 흐름도】

라. 재난상황 홍보방안 및 자율방재의식 고취

1) 예측 및 정보 전달체계 구축(예·경보)

가) 점검사항

- 강우량계 정상 작동 여부 검토.
- 인터넷 통신 정상 작동 여부 검토.
- 전화 및 팩스 정상 작동 여부 검토
- 비상연락망 체계 점검 및 검토

나) 예측 및 정보 전달체계 현황

- 우량경보시설 현황

구 분		계	경보국	우량국	통제국	감시국	중계국	우량 관측	비고
계		81	44	16	3	3	4	11	
산 청 군	소 계	67	34	14	3	1	4		
	중산리지구	13	8	4	-	-	1		
	대원사지구	17	13	3	-	-	1		
	거림지구	7	4	2	-	-	1		
	내원사지구	5	3	2	-	-	-		
	오봉지구	7	4	2	-	-	1		
	백운지구	3	2	1	-	-	-		
	시천면사무소	1	-	-	1	-	-		
	지리산사무소	1	-	-	1	-	-		
	군 청	2	-	-	1	1	-		
	전읍면	11						11	
국 립 공 원 관 리 사무소	소 계	14	10	2	-	2	-		
	중산리지구	3	2	-	-	1	-		
	대원사지구	5	4	1	-	-	-		
	거림지구	2	1	1	-	-	-		
	내원사지구	3	3	-	-	-	-		
지리산사무소	1	-	-	-	1	-			

- 위성전화기 현황

전화번호	설치장소	대수	비 고
계	-	6	
337881~3	재난종합상황실	3	
337885	군수실	1	
337886	부군수실	1	"
337884	행정정보담당부서	1	

2) 유관기관 및 방송사에 상황전파 및 보도요청

가) 점검사항

- 악 기상에 대한 사전 안내 홍보 실시 요청 : 유관기관 및 방송사
- 일몰시간 이전 등산객 하산 유도(야간 산행 통제).
- 도로 이용자의 위험방지 및 이해와 협력을 구하는데 필요한 사항 홍보 요청.
- 국민행동요령 등 홍보.

나) 추진계획 및 언론매체

- 기획감사실 홍보담당
- 홍보 방향
 - 신문·방송등 언론매체 및 정부 보유매체를 통한 홍보.
 - 방재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을 통한 일사불란한 상황전파.
- 언론매체를 통한 대국민홍보
 - 기상특보, 재해사태 예보 및 경보의 신속한 보도.
 - 방재의식 산청, 국민행동요령, 국민운동전개 등 보도협조.

3) 재난대비 교육 및 훈련 실시

가) 행정사항

- 재해 사전대비 추진사항의 최초보고를 2월말까지, 중간보고를 3월말까지, 최종보고를 4월말까지 완료.
- 재해정보의 신속한 전달 및 지역간 원활한 협조를 위하여 통신시설을 일제 정비.

나) 방재교육 · 훈련

- 주민 홍보 및 지도 계몽강화.
- 사업장별 안전·보건교육 실시.
- 자원봉사자 관리교육 실시.

【방재교육】

□ 교육목적

- 재해대책요원의 업무능력 배양과 재해사전대처능력 제고

□ 교육방법

- 중앙단위교육, 도교육, 군 자체교육, 전파교육으로 나누어 실시
- 전파교육은 민방위교육 계획과 연계 추진
- 주민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보급

- 중앙교육 : 지방행정연수원 민방위교육관에서 실시
- 방재관리자 과정
 - 교육대상 : 도 과장, 담당 및 군 과장
 - 교육기간 : 3~4월중
 - 교육내용 : 방재행정 주요시책 등 8과목
- 방재실무자 과정
 - 교육대상 : 도, 군 6급이하 방재담당공무원
 - 교육기간 : 3~4월중 2기로 구분실시
 - 교육내용 : 재해대책 일반, 법령해설, 방재전산, 재해사전대비, 재해대비 국민행동요령 및 안전의식 제고방안, 재해응급대책 및 복구계획 수립 등
- 도 교육 : 도 본청에서 실시
 - 교육대상 : 도 재해대책부서, 군 방재담당, 유관부서 직원등
 - 교육기간 : 4월중 1일선정 실시
 - 교육내용 : 재해대책일반, 방재전산, 재해사전대비, 재해응급대책 및 복구계획 수립, 재해대비국민행동요령 및 행락지야영객 안전수칙 등
- 군 자체교육 및 전파교육 : 군 본청 및 민방위교육장에서 실시
 - 교육대상 : 읍면 ·유관기관 실무자, 수방단, 인명구조대, 민방위대 등
 - 교육기간 : 4월중 1일 선정 실시
 - 교육방법 : 교재강의 및 VTR 상영 등
 - 교육내용 : 재해대책 일반, 재해사전대비, 재해응급대책, 인명구조, 응급복구, 재해대비국민행동요령 및 행락지 야영객 안전수칙 등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 훈련목적

- 지방화시대에 주민자치 정신을 총력 방재체제로 승화
- 기상 및 재해유형의 다변화에 따른 대응능력 제고
- 실시간(Real Time)대 재해상황 관리로 신속한 대응

□ 훈련방법 : 도상훈련(전산훈련 포함)과 실제훈련으로 구분하여 실시

□ 도상훈련

- 훈련기간(예정) : 4.25-4.27월중(3일)
- 훈련방법 : 사건메시지를 중심으로 한 유관기관과의 합동 공조 훈련
- 훈련기관 : 중앙, 도와 군에서 실시
- 참가기관 : 경찰서, 소방서, 군부대 등 유관기관

○ 훈련내용

- 신속한 상황대처, 사전조치 및 피해보고체제 구축
- 시가지 침수에 따른 분뇨, 쓰레기 처리능력 제고
- 재해대책 유관기관의 사건처리 및 협조체제 강화
- 재해발생시 민·관·군 재해수습역할 분담 및 임무수행
- 수난구조, 응급구호 및 응급복구 등 사태수습처리 능력 산청
- 야영객 안전대피 유도

□ 전산훈련

- 훈련일시(예정) : 4.25-4.27(현장훈련과 병행)
- 훈련대상 : 중앙·도 및 시군
- 훈련방법
 - 중 앙 : 훈련메시지 작성부여, 훈련상황 지도 및 자료분석
 - 도 : 입력내용 조회, 출력 및 자료분석
 - 군 : 훈련메시지 입력, 조회, 수정 및 자료분석

□ 합동현장훈련

- 훈련일시 : 4월25일
- 훈련주관 : 주관(하동군), 협력시군(산청군, 사천시)
- 훈련방법 : 일시, 장소, 내용 등 사전에 준비한 시나리오에 의거 실시
- 훈련내용
 - 집중호우에 따른 시군 통합 도상훈련 공조체제하에 인명구조활동 전개
 - 이재민 수용시설물 지정관리 및 구호방역활동
 - 인력,자재,장비 등을 동원한 응급복구 실시 등

※훈련장소 등 추후 결정

4) 자원봉사단체, 기업체 등 자율방재조직 활동지원

□ 계획 및 점검사항

- 관내 병·의원, 보건증진과 등 의료기관과 협조, 의료종사자 확보
- 자체 지역실정에 적합한 자원봉사 활용계획 수립
- 자원봉사에 대한 인력관리
- 자원봉사자의 안전교육, 주의사항 등 교육 실시
- 장기 자원봉사자에 대한 물품지원 등 협조 조치
- 자원봉사자 관리 및 자원봉사 지원전담반을 구성·운영
- 대한적십자사, 전국재해구호협회 등과 이재민 구호관련 협조 조치

2. 대응단계

가. 인명 구조 및 고립예상지역 대책

1) 인명구조 유관기관 협조(헬기지원 등)

가) 인명구조·구난을 위한 현장지휘소 설치

- 설치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52 및 시행령 제59조
- 현장지휘소 조직
 - 통제관 : 산청소방서장
 -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52의 규정에 의하여 군 긴급구조구난 본부의 통제관인 소방서장이 현장에서 긴급구조활동을 총괄 지휘
 - 구조·구난활동팀 구성 : 119구조대원, 군, 경, 자원봉사자로 혼합 편성
 - 인력·장비 부족시 긴급구조기관 및 민간단체로 부터 지원요청 활용
 - ※ 산청군 재난안전대책본부에 구조·구난분야 연락관 1명 파견
- 현장지휘소 임무
 - 고립자 구조
 - 사상자의 응급처치 및 의료기관 이송
 - 현장 접근통제, 현장주변의 교통정리, 기타 효율적인 긴급구조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통제관은 긴급구조사항을 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수시 보고

나) 고립 예상지역에 대한 헬기동원 계획

- 긴급 상황 대비 비상출동 대기조 편성 운용
-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산림청항공, 소방항공, 군부대 등)
- 헬기지원 가능업무
 - 인명구조 및 환자 이송
 - 식료품·음료수 및 생필품, 의약품 등 보급품 공수
 - 문서 및 통신연락
- 긴급 상황 시에는 구두 승인 또는 선 조치 후보고
(경찰항공운영규칙 제3장제6조제1항)
- 폭설·수해로 인한 고립예상지역 파악, 지형 숙지훈련
- 헬기를 이용한 인명구조
 - 홍수, 화재, 천재지변과 기타 긴급사태 발생시 경찰 헬기를 동원하여 신속, 안전하게 인명구조 임무를 수행
- 구조반 편성은 도 경찰청 항공대로 하고, 구조장비는 로프연결 장치(카고훅) 구조망, 구명대, 구명보트, 구명환, 기타 대민 무선방송 장비를 최대한 활용

- 헬기 지원요청 결과는 도 재해대책본부 경유 중앙재해대책본부에 보고
- 상황보고 시에는 정확한 사고위치, 사고내용, 구조 인원수, 구조장소의 상황, 사고지역 기상상태 등 사고 정황을 정확히 보고
- 인접 시·도간에는 상황에 따라 지원이 가능토록 협조체제 유지
- 헬기장 운용 기상조건은 경찰항공 운영규정에 준하는 기상상태에서 가능하며, 긴급 특수 임무 수행 시는 지휘관 및 해당 정조종사의 판단에 따름
- 헬기장은 헬기 아착륙에 장애가 되는 전기줄, 높은나무, 지반 등을 고려하여 선정

다) 지휘소 등의 설치시 유관기관 협조 의뢰할 사항

긴급구조본부 현장지휘소 설치 : 산청군 사고대책본부

- 대량 급식소 : 대한적십자사 산청군지부
- 응급 의료소 : 산청소방서, 산청군 보건의료원
- 통제선 설치 : 산청경찰서 경비과
- 전 기 가 설 : 한국전력공사 산청지점
- 전 화 가 설 : KT 산청지사

2) 고립예상지역 비상연락망 및 관리대책

※ 우리군에서는 2012년 현재 고립예상지역은 없음

- ⇒ 재해가 발생되어 고립예상지역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본부장은 진주소방서장에게 긴급구조본부 및 현장지휘소 설치를 요청.
- ⇒ 제2장 3절의 계획을 활용하여 재난 및 재해에 대응.
- ⇒ 고립지역의 현장대응의 긴급구조본부 및 현장지휘소에 연락관 1인을 파견하여 긴급협조사항 등을 협조한다.

3) 부상자 후송대책

) 대량환자 발생 시 구급차, 헬기 동원 및 이송협력체계 수립

- 구급차량 : 관내 의료기관 등 구급차량 활용
- 헬 기 : 소방서와 협조
- 이송협력체계 : 관내 응급의료기관 및 인근지역 응급의료기관활용

나) 119 구급대의 환자 이송 시 응급의료정보센터(1339)를 통한 이송의료 기관 선정 및 응급처치 지도 적극 활용

다) 대량환자 발생 현장통제 및 구급차 이송통로 확보 ⇒ 산청 경찰서 협조

※ 응급진료체계 전달과정



나. 응급진료·구호 및 이재민 보호대책

1) 응급진료 및 응급환자 수송대책

가. 기동 의료반 편성운영

① 임 무

- 부상자, 응급처리 및 환자 분류
- 대량 환자 발생지역의 긴급 의료지원
- 기타 필요한 의료지원

② 편성기준

- 인원 및 기관수

	편 성 기 준	1개반 편성기준	비 고
보 건 의 료 원	기동방역반경무 (6명)	의 사 1, 간호사 2 보건직 1,임상병리사 1 운전기사 1	

) 간이진료소 설치 운영

① 임 무

- 응급환자 치료 및 후송
- 전염병환자 색출 및 예방

② 편성기준

- 인 원

	의 사	간호사	행정요원	운전기사	임상병리사
6	1	2	1	1	1

- 장 비

구급셋	구급낭	천 막	차 량	비 고
1셋	1개	1조	1대	

③ 설치 장소

- 이재민 공동대피소
-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다) 환자이송 협조체계 구축

① 대량환자 발생 시 구급차, 헬기 동원 및 이송협력체계 수립

- 구급차량 : 관내 의료기관 등 구급차량 활용
- 헬 기 : 소방서와 협조
- 이송협력체계 : 관내 응급의료기관 및 인근지역 응급의료기관 활용

② 119 구급대의 환자 이송 시 응급의료정보센터(1339)를 통한 이송의료기관 선정 및 응급처치 지도 적극 활용

③ 대량환자 발생 현장통제 및 구급차 이송통로 확보 ⇒ 시·군 경찰서 협조

2) 응급의료기관 확보 및 협조사항

가) 기관협조 및 점검사항

- 응급구조대를 구성 점검.
- 의료소 설치의 장소, 시기, 규모 확인.
- 인근 의료기관 협조사항 확인 및 거점급수의 위치 설정.
- 부상자 응급수송에 필요한 교통수단 점검.
- 대피장소를 점검하고 비상식량 준비.

) 의료시설 현황

- 지역응급의료기관 : 1개소 (성심병원)

3) 사체처리 및 실종자 처리 대책

가) 기관협조 및 점검사항

- 사고원인 및 신원확인.
- 시신 운구 시 필요한 물품 확보.
- 사체에 관한 정보 공유

나) 사체처리

- 사체 운구시, 운구한 사체는 피해지역 인근의 병원에 안치하고 관계기관의 검안 절차를 거쳐 유족에 인계하거나 유족이 없는 경우 매장.
- 사체의 수, 위치 등에 대한 정보를 유관기관에 통보
- 사체의 수색 및 처리업무(운구, 신원확인, 검시, 매장, 의료처리, 의료기관 안치)
- 사망 또는 실종 유가족에게는 위로금을 지원기준에 의거 신속히 지급
- 인명피해 및 실종자 확인

다) 실종자 처리

- 실종자의 수색은 119구조대 주관으로 실시하되 실종자를 사망처리 할 경우에는 행방불명상태에 있는 자로서 여러 사정 등을 감안할 때 거의 사망한 것으로 추정 되는 자에 한하여 처리.

4) 생필품 등 구호물자 확보비축 및 공급대책

가) 점검사항

- 생필품 비축물자 관리. ⇒ 재난기금으로 대체
- 비상식량 공급 대책 확인.
- 지역 내 생필품관련 제조업체 확인.
- 생필품 운송 및 운반 경로, 하역장소 확인.
- 생필품 공중 투하용 낙하산 제작 보관.

- 구호물자 수불대장 및 관리책임자 지정관리.
- 지역 특성, 재해 유형에 맞는 구호세트 확인.

) 구호물자 구입 계획

- 구호물자(양곡, 비상식량, 의류품, 모포, 천막, 생필품 등) 중 부족물자는 우기 전(5.20)까지 전량 확보. ⇒ 재난기금으로 비축
- 구호물자 중 변질우려가 있는 양곡류 등은 현금으로 확보 후 유사시 즉시 구입 사용.
- 최근 10년간 사용실적을 기준하여 책정하되 지역실정 및 재해발생 빈도를 고려하여 책정 비축.

다) 생필품공급

- 생필품 중 필수품목만을 포장 피해발생 즉시 이재민에게 공급
- 기준에 의해 기 확보된 생필품의 긴급 수송시스템 확립
 - 관용차량을 이용하여 해당지역에 공급
 - 신속한 공급을 위한 산청경찰서 협조
- 대규모 재해발생으로 식료품 등에 대한 공급기능의 정지 또는 정체로 인한 확보곤란, 물가의 폭등 등으로 피해주민에 공급할 식품확보가 곤란할 것에 대비. 피해발생 즉시 유통체계 점검
 - 자체적으로 해결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인근 시군에 협조요청

5) 구호물품의 접수 및 배분계획

가) 구호품의 접수 지침

구호품을 접수 할 때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가급적 접수를 받지 않는다.

-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임박한 물품의 확인
- 이재민들에게 현실적으로 쓸모 없는 물품(예:수재민에게 걸레담는 그릇 등)
- 이재민의 지역 특성에 어울리지 않는 물품(예:농촌사람에게 허리 청바지 등)
- 먼지나 오물이 묻어있어 상점의 재고를 처리하는 느낌이 있는 물품

- 가전제품의 경우, 불량품의 확인
- 요즘은 사용 않는 구시대 물품
- 같은 종류와 크기를 무더기로 보내온 물품(특히 의류)
- 운반비를 지불하지 않은 물품
- 특정 지역이나 사람을 지정해 보내온 물품(관여하지 말고 직접 배달시킨다)
- 보관이 어려운 물품(쉽게 부패하는 것은 가급적 접수하지 말 것)

) 구호품 인도, 운송, 전달 전반에 관한 업무 내용

- 인도를 받는 장소와 일시 보관 장소를 확보한다.
- 인수책임자를 임명하고 이를 지원하는 조직을 구성한다.
-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물품의 종류와 수량을 파악한다.
- 전달 및 배분을 담당하는 책임자를 선정한다.
- 인도, 인수시 하역과 적재에 소요되는 인력의 확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한다.

6) 이재민 수용시설 및 대피소 지정 운영관리

가) 점검사항

- 학교, 교회, 마을회관 등 수용이 가능한 건물을 지정하되, 이재민 발생 가능성이 없는 지역은 가급적 지양
- 최근 10년간의 이재민 발생 수 등을 감안하되, 상습침수지역의 피해상황을 예측한 이재민 발생 가능수를 조사, 인근 지역에 수용시설 지정
 - 하천수계별, 지역별 현실성 있는 대피와 수용을 동시 운영이 가능한 시설지정 운영
 - 이재민 수용시설 지정시 홍수시 침수되지 않도록 제방보다 높은 곳을 선정하여 지정
 - 이재민 수용시설 지정시 전기(자가발전), 수도, 도로 등 지역여건과 부락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여 지정
- 지정 시 건물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사전협의를 철저히 하고 동의서에 사용 조건 등을 명확히 명시하여 분쟁소지 사전예방
 - 수용시설의 규모에 따라 이재민 대피 및 수용 가능계획 수립

- 집중호우 및 댐·저수지 붕괴 등에 대비한 등급별 침수예상지역 대피 계획서작성 보급
- 기상상황에 따른 단계별 대피계획 및 대응요령 숙지

) 점검사항

- 수요시설의 규모에 적합하도록 이재민 대피 및 수용계획수립.
- 이재민 발생시 즉시 수용가능 하도록 관리상태 수시 점검.
- 최근 3년간 이재민 발생수와 지역실정 및 재해발생빈도를 고려하여 수용 시설의 수를 결정.
- 대피소 기본시설 작동 확인.
- 대피소 관리자 지정.
- 이재민 수용시설 점검(목욕시설, 냉·난방)

7) 주민대피 및 유도계획

가) 점검사항

- 대피소 수용능력 확인.
- 노약자 강제 대피 방안 강구.
- 대피소 정전에 대비한 준비물, 대피명령 전달방안 강구.
- 대피명령 결정의 시기와 적절성에 대한 자문단 구성.
- 야간 대피에 대한 대책 강구.
- 대피에 필요한 사항 점검(경로, 위치, 구조물) 및 홍보.
- 주민 대피장소의 위치 확인 및 대피안내자의 신원 파악.

나) 주민대피 유도

- 군수는 관할구역 내에서 재해가 발생하였거나 극히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경찰서장·소방서장의 협조를 얻어 대피 권고
- 산청교육장도 학교장 책임하에 각 담당교사 중심으로 학생을 대피장소까지 안전하게 유도
- 장애자와 거동 불편 고령자에 대한 수용계획 수립 추진

) 대피장소 및 대피로 확보

○ 대피장소 및 대피로의 지정·관리

- 군수는 대피예상인원을 판단하여 대규모 재해발생시 피해가 예상되지 않는 장소의 학교·체육관등 공공시설을 대피장소로 지정관리
- 대피주민의 상황파악 관리
- 대피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대피소별·개인별 매뉴얼을 작성 활용

○ 대피유도용 통신장비 확보

- 경찰서장 및 소방서장은 재해발생시 기존의 통신장비인 소용무전기 등을 주민대피 유도용으로 전환 사용하되, 부족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 추가확보 관리
- ⇒ 경찰서 및 소방서의 확성기 등을 이용.

※ 각 지역의 대피장소는 임시수용시설과 병행 사용한다.

라) 재해사전계획 대피제 지속 추진

인명피해를 획기적으로 경감하기 위하여 기상정보 초기단계부터 재해우려 지역의 행락객 및 주민들을 사전대피토록 하는 『재해사전계획 대피제』 지속 추진

① 사전점검사항

○ 계절별, 피해발생 원인별 재해위험지구별 대피계획 수립사항

- 여름철 → 태풍, 호우, 폭풍
- 겨울철 → 대설, 폭풍설
- 재해위험지구별 대피유도 공무원 투입준비

○ 기상특보에 따른 권역별, 단계별, 계획적 대피준비

- 태풍영향권에 따라 행락객·야영객 및 조업어선 사전대피

○ 관련기관간 협조체제 구축사항

- 인명피해 발생에 대비 유관기관 인명구조 지원체제 사전점검
- 기구축된 현지 수방단, 인명구조대원 등에 대한 소재파악 대기조치
- 피해발생시 신속한 동원을 위하여 비상연락망 재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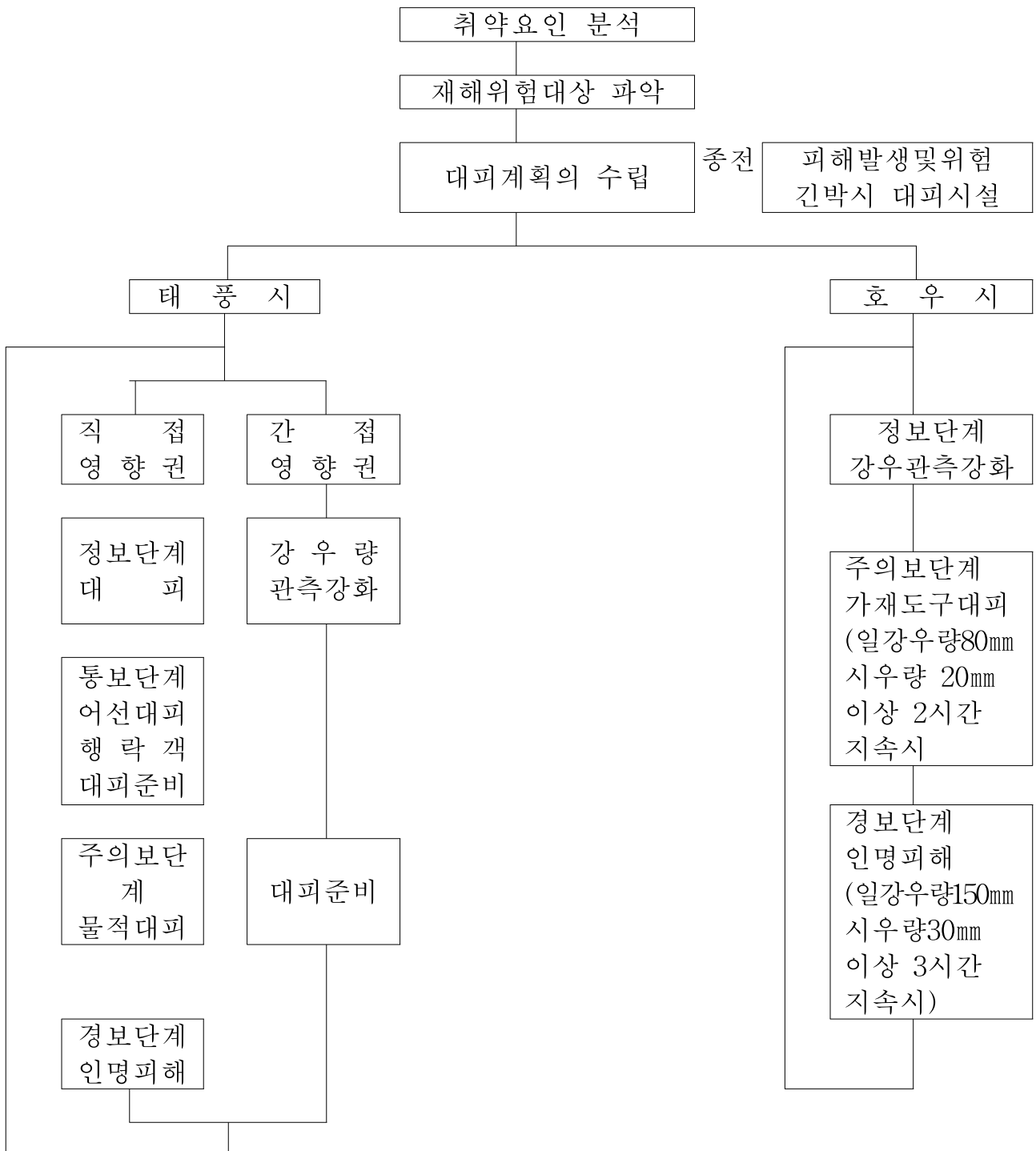
② 사태발생시

- 긴박한 상황시 민방공 경보시설을 이용 재해경보를 발령하여 주민대피
- 지역실정을 잘 아는 관계공무원을 현장에 즉시 파견 대피주민 안전지도
-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수난·구조장비 동원등 즉시 지원체제로 돌입
- 대피시는 지정된 대피로를 따라 이동하되 멀리 우회하여 안전한 도로 이용

○ 주민대피지역에 대한 방법활동 전개

- 주민대피지역 상가·주택·아파트 단지 등에 대한 순찰강화 및 검문 검색 철저
- 주민대피지역의 보안 및 방법은 산청경찰서에서 전담하되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근무인원을 지원.

<유형별 단계별 사전계획대피 체계도>



8) 대피소 및 이재민수용시설 운영 및 안전대책

※ 이재민 수용시설과 대피소의 대피시설은 같이 사용.

가) 이재민 수용시설 지정현황

◦ 재해이재민 수용시설 지정현황

계			학교			마을회관			경로당			관공서			기타		
개소	면적	수용능력	개소	면적	수용능력	개소	면적	수용능력	개소	면적	수용능력	개소	면적	수용능력	개소	면적	수용능력
38	24,149	6,189	12	19,443	4,766	18	1,626	492	1	56	17	3	869	263	4	2,155	651

- 학교급식시설 사용 및 학교장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측과 충분한 협의 이행
- 주민들이 대피장소를 사전에 알 수 있도록 군정 소식지, 면사무소 각종 직능단체 회의시 적극 홍보

나) 이재민 구호예산 및 물자확보 현황

- 구호예산의 확보
 - 2012년도 일반회계 중 예비비에서 사용
- 구호물자 확보

시·군	일시구호세트		응급구호세트					재가구호세트			
	비축기준	비축량	비축기준	비축량			비축기준	비축량			
				소계	기존(1종)	기본용		개인용	소계	기존(2종)	개인용
산청군	46	193	165	184	3	52	129	95	93	8	85

※ 재해구호물품은 재해구호물품창고에서 수령

- 계속적인 구호를 위하여 필요한 물품 중 부족분은 그 현황을 경남도청, 적십자사 및 전국재해대책협의회에 통보하여 지원 요청
- 방역물자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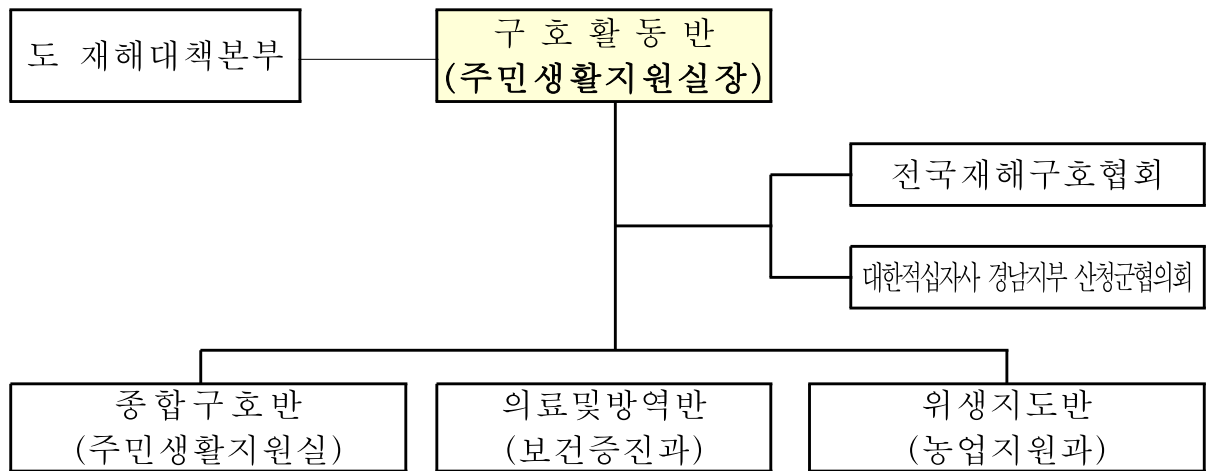
구분	살충제(ℓ)	살균제(ℓ)	우물소독약(kg)	비고
산청군	700	50	50	

다) 재해구호기구 설치 운영

- 중앙(소방방재청) : 중앙재해구호활동본부
- 경상남도 : 재해구호활동반
- 산 청 군 : 재해구호활동반

※ 군에서는 자체 구호 활동반을 편성 운영하여 재해발생시 비상근무체제로 즉시 전환토록 체계 확립

산청군재해구호활동반조직



« 산청군재해구호활동반 임무 »

종합구호반	의료 및 방역반	위생지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재민발생현황 파악 ○ 구호활동상황 취합 보고 ○ 중앙 및 도 재해대책본부와 업무연락 ○ 이재민수용시설 설치 및 운영지원 ○ 재해구호물품 구입·조달 지원 업무 ○ 재해관련 유관기관과 협조 체제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재협 - 구호물자지원 · 적십자사, 자원봉사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급구호품 지원 - 급식·세탁차 배치운영 - 자원봉사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증진과 의료지원반 편성·운영 ○ 무료이동진료반 운영 ○ 각 시도 및 보건증진과, 의료 기관에 대한 지원요청 ○ 의약품 구입 및 지원 ○ 이재민 수용시설 구급의약품 지원 ○ 의료지원 소요판단 및 인력배치 ○ 의료·방역 지원상황 파악 ○ 방역기동반 배치운영 ○ 재해 방역약품 구입 배부 ○ 재해지역 방역소독 및 전염병 예방 접종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접객업소에 대한위생 지도·점검 ○ 재해지역 안전식수 공급 ○ 재해지역 식중독 예방 ○ 이재민수용시설에 식품 위생감시원 고정배치 및 급식관리 ○ 기타 식품위생에 관한 사항

○ 재해구호 세부조치사항

구 분	조 치 사 항	비 고
1. 재해대책 상황실 근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준비체계 : 담당자 근무 ○경계체계 : 기획조정담당, 담당자 근무 (직원 1/3 상황근무) ○비상체계 : 개인임무별 근무 (직원1/2 상황근무) 	상황실 근무자 및 주민생활지원 과 전직원
2. 이재민 파악 및 발생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군 구호대책본부 	상황실근무자 및 재해구호담당자
3. 이재민수용 및 봉사활동 구호물품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까운 이재민 수용시설 사용 (이재민 수용시설 지정현황 참고) ○여성단체 및 부녀봉사회등 연락(덧붙임) ○적십자사 연락 산청적십자봉사회, 아마무선봉사회 ○산청종합자원봉사센터 ○미수해지역 보관 물자 지원 요청 ○관내 봉사조직을 통한 구호물품 지원 (구호물자 보관은 지하창고 활용) 	상황실 근무자, 재해구호담당자
4. 수용시설 이재민구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호물자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급구호세트 지원 (세대 당-기본 1세트, 개인당 개인 1세트) ○스티로폼 구입 - 2인당 1매 지급 ※ 구호물자 확보 상황에 따라 변동가능 ○이재민 수용시설에 집단급식소 설치 (학교 내 과학실 등 넓은 탁자가 있는 교실 활용) ○응급 구호비 활용 ○응급구호물품, 부식류 등 구입 	
5. 사망자 및 실종자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군 종합구호대책반 ○도 복지부서 	
6. 구호대상자 보고 및 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택 반파·전파 세대, 농경지 침수세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생계구호 대상 ○기초수급자 세대 또는 전략 우려세대 파악 	

구 분	조 치 사 항	비 고
7. 의료지원 및 방역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해를 당한 이재민에 대한 구호기간 중 의료급여 1종 책정 ○ 방역소독 : 침수지역 1일 1회이상 ○ 재해지역 순회 식중독 예방 	
8. 침수주택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된 주거용 방이 침수되어 수리되지 않고는 사용하기 불가능 한 경우 (방출입문 윗부분까지 침수) ○ 세입자 입주 보조비 지원 대상자 파악 및 보고 (전, 월세 거주자가 주거용 건물의 일부 또는 전부가 파손 유실되었을 경우) 	

라) 대규모 재해발생시 민·관 합동 현장구호반 설치운영

- 설치장소 : 주민생활지원실(필요시 현장인근 읍면사무소)
- 구 성 : 재해구호 활동반, 적십자구호봉사센터, 자원봉사센터, 민간기관등
- 운영방법 : 통합설치, 구호반(행정, 적십자사 등)역할분담
- ① 기관별 구호업무 분담
 - 행정기관 (군청)
 - 재해구호 활동반 운영

구 분	임 무
재 해 구 호	- 구호대책 총괄
	- 이재민 현황파악
	- 이재민구호에 대한 각종물자 구입
	- 적십자사, 경남도청, 인근 지역에 재해구호 물자 수송
	- 의연금의 접수 및 관리
	- 보급품, 구호품의 재고파악 및 관리
	- 침수지역 및 이재민 수용상황파악보고
	- 의료지원 및 방역실시 대상 파악관리
구 호	- 기타 구호대책반 운영에 관한 일반사항은 사회담당과 재해구호 담당자가 처리
활동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재민 수용시설지정·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해이재민의 거주지역과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수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건물, 교회, 회관, 학교강당 등 ·화장실, 간이목욕실 확보·설치 및 급수시설 설치 및 급수차량 운영 ○ 구호센터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필요시 단체급식소, 긴급 방역소독 및 응급의료처치실, 구호품 보관소 등 설치 ·구호물자 접수·관리·배포 및 이에 수반된 행정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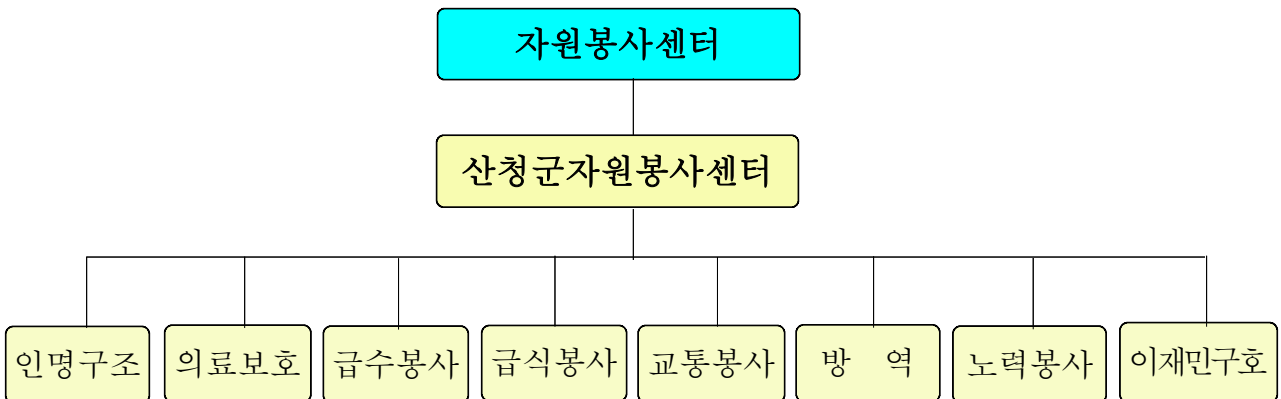
○ 대한적십자사 경남지부 산청군협의회

- 이재민구호를 위해 도 및 군과 보완적 역할담당
- 수용시설에 집단급식 및 이동세탁차량 신속배치 운영
- 구호센터 및 수용시설에 봉사요원 배치관리
-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긴급구호물자 지원
- 십자봉사센터 운영 : 어린이, 임산부, 노약자, 환자, 장애인을 위한 특별활동 실시

○ 산청군자원봉사센터

- 기 구축한 「재해대비 자원봉사지휘 통합시스템」 확대정비
- 자원봉사센터를 중심으로 재해대비 네트워크 구축
- 단체별 특성을 파악하여 자원봉사분야별 봉사대 구성
- 재해대비 기관·단체별 역할분담을 통한 체계적인 봉사활동 전개
- 자원봉사대별 전문교육으로 재해대비 봉사활동능력 제고

【재해대비 자원봉사대 조직도】



<자원봉사분야 구분>

- 인명구조대 : 고립자 구조 등 인명구조활동 전개
- 의료봉사대 : 이재민 진료 등 의료활동 전개
- 급수봉사대 : 급수불통지역 주민에 대한 식수지원
- 급식봉사대 : 이재민 및 자원봉사자 급식지원
- 교통봉사대 : 수해복구 진입로 혼잡지역 교통정리
- 방역봉사대 :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활동 전개
- 노력봉사대 : 가재도구 정리, 농작물 복구, 수해잔재물 정리
- 이재민구호 : 이재민에 대한 구호물품 전달

) 의연금품 및 구호물품의 신속전달

○ 의연금품의 모집대행

- 대규모의 재해 발생시에는 전국재해구호협회가 소정의 절차를 거쳐 의연금품 모집을 주관
- 의연금품 모집 중앙 일원화에 따라 시에서는 접수대행하며 의연금품이 전국재해 구호협회에서 허가받은 기부금품 모집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즉시 도에 이관하거나 협의처리

○ 구호물품의 신속전달

- 도 구호물품 지원(이재민 1가구당)
 - 응급구호 및 재가구호 1세트
 - 개별구호물품: 쌀(10kg) 1포, 부식류 (, 간장, 고추장, 참치통조림, 구운 김, 단무지, 부탄가스등) 1세트, 생수 등

바) 집단급식소 운영

- 설치지역 : 이재민 공동수용시설 및 대피소
- 구 성 : 대한적십자사 및 자원봉사자 혼합 편성
- 지휘통제 : 대한적십자사 산청군 지부
- 임 무 : 수용이재민에 대한 집단급식

사) 비상급수 계획

- 대상지역
 - 송배수관 파손으로 단수된 지역
 - 상수도시설의 침수·유실로 단수된 지역
 - 이재민 공동수용시설 등
- 공급계획
 - 이재민 공동수용시설 : 응급 급수조 설치 운용
 - 수도법 제26조(긴급급수지원)의 규정에 따라 천재지변, 기타 비상시에 도지사가 피해지역 인근 수도업자에게, 수도업자가 도지사인 경우 환경부장관이 인근의 다른 수도업자에게 비상 급수토록 지시하여 공급
 - 민방위기본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개인정호, 비상 급수시설, 담수된 배수지 활용
 - 인근정수장 또는 지역으로부터 운반급수
 - 생수생산업체로부터 지원 공급

) 안전관리 대책

① 방역활동

- 폭우 및 침수지역의 방역소독은 상황에 따라 실시하되 주 2회 이상을 원칙으로 함
- 예방약품 및 방역소독약품 부족시 긴급지원
- 재해지역의 하수구, 화장실, 쓰레기장 등의 해충 서식처나 발생원에 정기적 살충 살균 소독 실시
- 고열 또는 설사환자 등 전염성 질환자는 발생 즉시 보건기관에 신고토록 홍보

② 의료구호

- 재해로 인해 부상을 당한 이재민은 의료보호법에 의거 의료보호 1종대상자로 책정, 국고부담으로 치료
- 재해발생지역의 전염병 예방 및 진료활동 전개
 - 기동의료반 편성·운영
 - 이재민 공동수용소 의료진 상주근무
 - 보건증진과 및 보건지소 등에 비상대기조 편성·운영

③ 식품위생관리

- 식품접객업소
 - 침수된 원재료는 폐기처분
 - 날음식 및 부패·변질 우려가 있는 식품은 판매금지
 - 무표시, 무허가 식품은 사용금지
 - 급수는 수돗물을 사용하고 식수는 끓여서 제공하되 지하수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수질검사를 반드시 실시한 후 급수 실시
- 집단급식소 및 이재민 수용소
 - 수해지역에는 식품위생감시원이 정기 순회하여 식중독 예방
 - 집단 수용시설에는 식품 위생 감시원을 고정 배치하여 급식관리 철저
 - 식수는 반드시 끓여서 제공
 - 오염된 식기류, 도마 등은 차아염소산나트륨을 사용하여 소독하거나 반드시 햇볕에 건조한 후 사용

9) 자원봉사단체의 협조 및 역할분담

가) 행정기관

기관별	주요내용	비고
재해지역(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해종합상황실 자원봉사활동 지원 근무조 편성 근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원봉사담당부서 및 시군종합자원봉사센터 합동근무 재해복구 자원봉사 참여지시(요청)→읍면, 군센터 재해복구 자원봉사 상황관리 및 지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 단체, 자원봉사센터 총괄지휘 도 및 非 수해지역 군에 피해상황전파 및 지원요청 임시자원봉사센터 설치요청 및 지원 군센터 및 임시센터에 대한 인력보강 지원 자원봉사 활동현황 제출(군→도) 	
非재해지역(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해복구 자원봉사 지원요청 → 읍면, RS센터 도 및 수해지역 시·군의 요청에 따라 자원봉사자 모집 자원봉사자 수송, 도시락, 장비 등 편의제공 재해복구 자원봉사 참여자에 대한 상해보험 가입지원 자원봉사 활동현황 제출(군→도) 	

나) 민간단체

기관별	주요내용	비고
군단위 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군 요청에 따라 분야별 복구활동전개 도지회(부)의 지도에 따라 지역별 배분인원에 따라 참여 	

다) 자원봉사센터

기관별	주요내용	비고
재해지역 자원봉사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민간단체에 대한 분야별 재해복구 참여 독려 전산등록봉사자에게는 이메일로 자원봉사참여요청 행정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체제 구축 자원봉사자 접수, 배치 재해의연금(물)품의 공식채널과 연계 → 군 사회복지과 재해규모가 큰 지역 중심으로 임시자원봉사센터 설치 임시 센터의 기록에 따른 인증서 발급 	

기관별	주요내용	비고
<p style="text-align: center;">임시 자원봉사센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치지역 : 이재민수용시설, 수해요충지역 ▪ 설치장소 : 교통통제구역 밖 자원봉사자가 많이 유입되는 길목 ▪ 설치지원 : 자원봉사 담당부서, 시군 자원봉사센터 ▪ 인 력 : 11명(상주인력 5, 의료인 1, 안내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주인력 : 총괄, 접수, 배치, 상황관리 등 - 안내인력 : 복구지역 안내·인솔·자원봉사 수요 및 피해 상황 파악 등 ▪ 설비 및 비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막, 현수막, 책상, 의자, 전화, 라디오, 렌턴, 초 - 봉고차 등 장비 및 인력 긴급 수송용 차량 - 기타 삼, 장갑, 빗자루, 간단한 급식도구 등 <p>※ 피해규모에 따라 여러 곳에 설치하고 가급적 자원봉사 단체가 운영토록 유도</p>	
<p>非수해지역 자원봉사센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道·재해지역과 연계 → 자원봉사 수요파악 및 모집 ▪ 전산등록 봉사자에게는 이메일로 자원봉사 참여요청 	

다. 생활필수시설 긴급복구 대책

1) 통신두절 대책

※ KT 산청지사

가) 점검사항

- 통화량 폭주에 따른 대처 방안 수립
- 방재행정 전용회선 확보
- 야간 정전시 통신확보
- 긴급통신시설 확보(유관기관, 아마추어무선, 위성전화)
- 통신구 및 국사건축물 등 재난관리 대상시설 안전관리 철저
- 태풍, 호우, 폭풍 시 피해원인의 면밀한 분석
- 기상특보(주의보, 경보)에 따른 지역별 통신시설 보호대책 강구
- 계수동, 방산동 일원 외곽 취약지구 순회점검 강화
- 통신시설 주변 타부처 공사장 특별 관리 및 통신소통 고립 예상지역 대책 강구
- 분기국사 이원화 전송로 관리 철저
- 재난대책용 지휘회선 구성

- 집단 이재민 수용시설 회선 공급
- 재난 단계별 복구반 편성
- 재난발생 즉시 재난대책본부 구성 상황실 운용

나) 통신구 점검 주기

점검구간	점 검 주 기				비 고
	선로시설	전원시설	토목시설	정밀점검	
국내외 통신구	주1회이상	주2회	월1회	5년 1회	

다) 건축물의 점검

◎ 점검사항

- 점검결과 기록 유지
- 안전이상 발견시 상급기관 신속보고 및 보존 관리
- 이상징후에 대한 개선대책 강구 추진
- 취약시기 대비 특별점검

·대상시설 : 통신시설 및 통신구, 건축물, 공사현장

·점검시기 : 3월(해빙기 안전사고 예방), 11월(동절기 재난대책)

◎ 중점 점검사항

- 해빙기 대비 : 침하, 전도, 붕괴우려 개소
- 우기 대비 : 침수, 누수, 유실, 낙뢰피해 우려시설
- 동절기 대비 : 화재피해 우려시설, 동파로 인한 피해 우려시설

◎ 보고체계 및 보고사항

- 재난 대책본부 편성 보고체계 수립
- 사회적인 재난발생시 긴급통신 지원 사항
- 통신구 통신시설 관련 사고 및 고장조치 현황
- 구조물의 붕괴등 재난발생 및 시급조치가 필요한 사항

마) KT 응급복구 대책본부의 구성 및 임무

담당별	분장임무
본부장	1. 재난대책본부 총괄 지휘 및 재난대책 회의 주관
상황실장	1. 재난대책본부장 보좌 및 본부장 유고시 업무 대행 2. 대책본부 조직운영 및 상황 관리
고객시설반장 전송전용시설반장	1. 통신시설 피해상황 집계 및 복구대책 수립 2. 통신불통지역 파악 재해지역 통신망 구성 3. 피해복구 자재 소요량 산출 및 조치 4. 각종 건설용 장비 지원책 강구 5. 긴급복구반 및 복구지원반 현장 지휘
고객서비스반장	1. 가입전화 업무 불가능 지역 파악 2. 통신불통지역 및 공사구간 안내 3. 긴급 통신지원 업무 처리(이동용 공중전화 지원) 4. 재난지역 보안, 경비 5. 언론보도기관 협조체제 구축 6. 현장 복구요원 안전관리 7. 각종 구호대책 강구

바) KT 단계별 비상근무

단계별	상황별	근무요령	근무요원
1단계 (대비단계)	○ 폭풍, 호우, 대설 주의보 발효시 ○ 태풍경보 발효시 ○ 급박한 사회적 재난 예상시	○ 근무자 교대 근무	고객시설
2단계 (대응단계)	○ 폭풍, 호우, 대설경보 발효시 ○ 홍수주의보, 태풍경보 발효시 ○ 태풍으로 고장발생 48시간 이상 고장으로 복구지연 및 기타 돌발적인 사고로 사회적 물의 예상시	○ 근무인원 보강 ○ 망건설국 및 광역국등 인근국간 유기적인 연락망 구성	고객시설 가입자 전송
3단계 (복구단계)	○ 홍수경보 발효시 ○ 태풍경보(주의보) 발효시 ○ 지역적 막심한 피해발생시 ○ 기타 돌발적인 사고로 사회적 물의 예상시	○ 상황실 합동근무 편성 ○ 필요시 현장출동 복구 지원	고객시설 가입자 전송

사) KT 대책본부 상황실 운영

○ 재난대책 근무체제를 3단계 상황별 구분운영하고 평시에는 당직계통에서 운영

○ 상황실 근무편성

- 1단계 : 기상특보 발령에 따른 경보(선로 비상 대기요원)
- 2,3단계 : 특보발표에 따라 경계체제 돌입(선로 전직원)

○ 근무시간

- 평일 : 24시간 교대근무
- 휴일 : 주야 교대근무

○ 운영장소

- 1단계 : 당직실
- 2,4단계 : 재난상황실

○ 운영방법

- 비상특보 발효시 즉시 비상 근무체제 돌입
- 상황실 근무요원에 대한 상황 단계별 임무 및 근무요령을 숙지
- 상황발생시 비상연락망 현행화 점검

○ 기상 특보 시 재난단계별 근무요령

단 계 별	상 황 별	근무요령	근무요원
평시 및 준비체제 (주의보 발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폭풍, 호우 및 대설 주의보 발효시 ○ 태풍경보 발효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직원 대상 비상특보 전파 ○ 공사현장 작업 중단 ○ 긴급복구 자재 확인 점검 ○ 긴급복구반 편성 및 복구 지원반 운용준비 	선로분야 (1단계)
경계체제 (경보 발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폭풍, 호우 및 대설 경보 발효시 ○ 대형고장 발생으로 48시간 이상 복구 지연 예상시 ○ 기타 돌발적인 사고 로 사회적 물의예상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상황실 가동 ○ 전직원 비상근무조 운용 ○ 긴급복구반 운용 ○ 비상복구자재 및 기동장비 운용 ○ 순회점검 강화 	선로분야 (2단계)
비상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우경보 발효시 ○ 태풍(주의, 경계) 특보 발효시 ○ 지역적인 피해 발생시 ○ 기타 돌발적인 사고 로 사회적 물의발생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현장 출동 조치 ○ 비상근무조 및 복구반 관리 ○ 유관기관 연락망 가동 ○ 재해상황 자료 수합 및 보고 	전분야 (3단계)

아) 긴급복구대책

□ 복구단계

- 고립지역 우선 해소 ▶ 긴급복구 후 항구시설로 복구
- 피해재발이 예상되는 지역 피해 최소화 대책강구

□ 시설별 긴급복구 우선순위

우선순위	항별	복 구 순 위	최저복구수준
제1순위	가 나 다 라 마 바	국가안보 통신 군사 및 치안 통신 재해대책용 통신 민방위경보 전달 통신 전파관리 통신 고립지역 우선해소 통신	100%
제2순위	가 나 다 라	재해구호기관 공중용 전기통신, 기상, 소방, 언론기관통신 주한 외국공관 및 연합기관 금융업체 통신	50%
제3순위	가 나	자원관리 대상업체 통신 정부투자기관 및 의료업체 통신	50%
제4순위	가	제1,2,3순위 이외 통신	

자) 산청군 재난안전대책본부와 협조체제

□ 재난시 통신지원대책 추진

- 중앙 및 지역 재해대책본부에서 요청된 회선 최우선 구성
- 회선구성에 따른 제반사항 협조 및 구성완료시 재해본부 보고

□ 이재민 대피소 통신지원

- 이재민 대피소에는 이재민의 편익을 위하여 무료전화 및 이동용 공중전화 개설 지원
- 침수로 인한 재난지역 내 댁내 정비는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전화기 및 장비 A/S업체 동원 정비

2) 전기시설 대책

※ 한국전력공사 산청지점에서 담당.

가) 점검사항

□ 재난의 사전예방 및 수습복구능력 제고

- 재난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 점검결과 부적합 설비의 개수유도
- 재난발생상황 신속 보고
- 재난응급조치 활동 실시
- 응급조치상황 결과 보고
- 관할자치단체와 응급조치에 필요한 사항 협의

□ 재난취약시기 사고예방활동

- 계절별 전기안전기간
 - 해빙기(3월) : 지반침하 등에 의한 전기사고 예방
 - 장마철(6~7월) : 침수 등에 의한 감전사고 예방
 - 동절기(11월) : 난방용 전열기 사용증가에 따른 전기화재 예방
- 활동내용
 - 사고취약요소 중점 점검
 - 전기사용자에 대한 계몽 홍보 강화
 - 비상근무 실시
 - 시장·유흥업소·숙박업소등 다중이용시설 특별안전점검 실시
 - 사고발생시 신속한 복구지원

□ 재난관리 대상시설물의 지정 관리

- 재난관리 대상시설물의 지정기준
 - 안전관리대상 수용가로 전기용량 300kW이상인 다중이용 시설

○ 관리방법

- 관리카드 작성 및 기록 유지
- 월 1회 이상 안전점검 실시

□ 전기사업법에 의한 정기검사 및 점검

- 신설·증설중인 전기설비는 공사 완료전 사용전 점검 실시
- 운영중인 전기설비는 1~3년 주기로 정기검사 실시
- 검사결과 부적합 설비는 소유자에게 통지하여 신속한 개보수 추진

□ 재난발생시 응급조치 및 피해복구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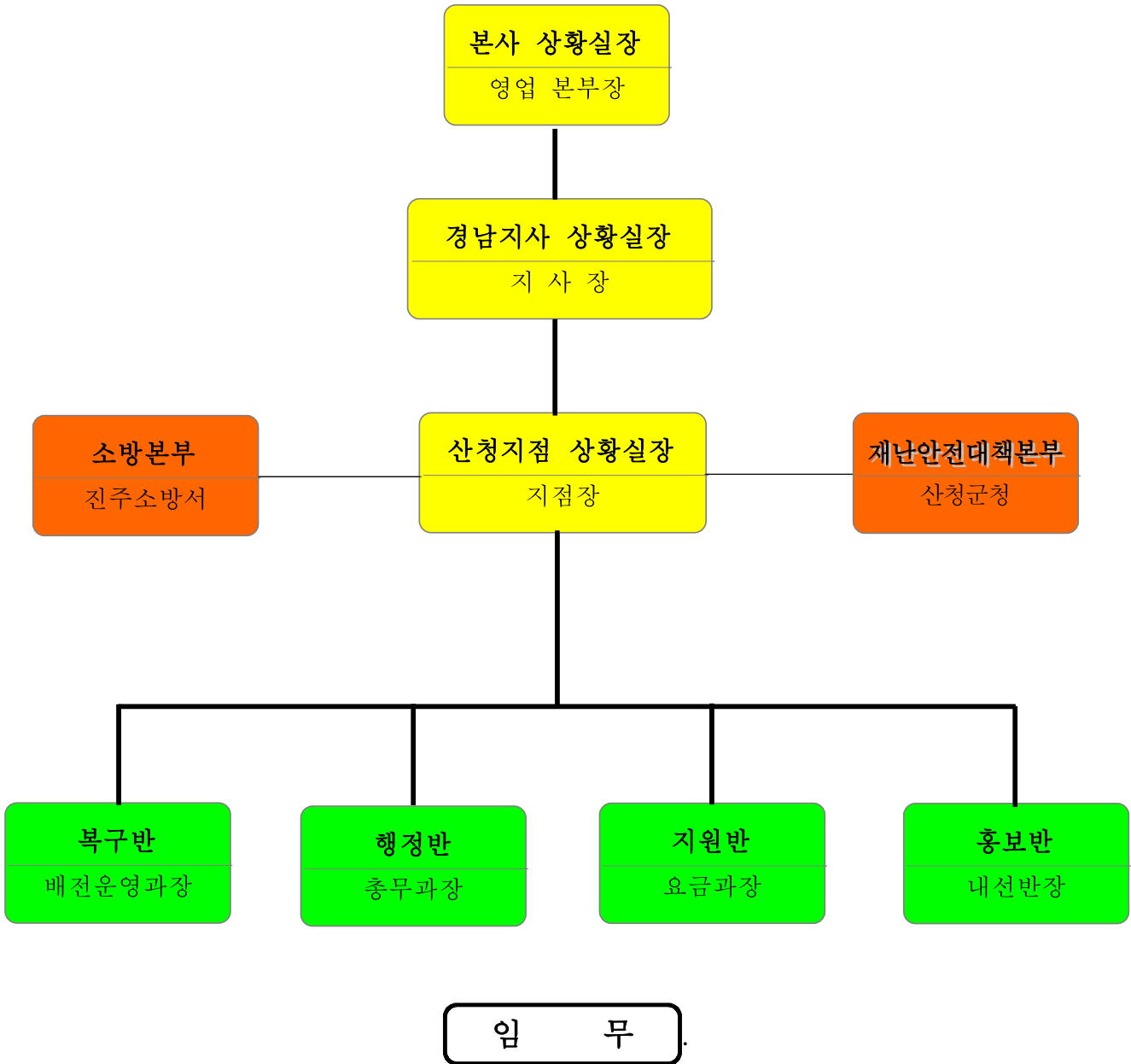
○ 재난발생시 초동 출동

- 재난현장에서 비상전원공급 및 안전시설 안전조치 시행
- 출동인원 : 4명(24시간 비상대기반)
- 출동장비 : 차량 및 비상출동장비
- ※ 사고 규모에 따라 출동인력 및 협력업체 장비 보강

○ 사고대책기구의 설치 운영

- 사고대책기구 편성
 - 본 부 장 : 지점장
 - 반 장 : 배전과장, 고객지원과장, 요금과장, 내선반장
 - 반 원 : 직원
- 사고대책기구의 운영

나) 한전 산청지점 상황실 편성 조직도



임 무

- **상황실장** : 재해상황실 운영에 관한 업무 총괄
- **행 정 반** : 정보파악, 비상발령, 상황실 운영지원, 일반행정지원, 장비 및 자재지원
- **복 구 반** : 공사업체 동원계획 수립시행, 설비피해 파악 및 긴급복구
- **홍 보 반** : 피해복구 안내 및 전기안전 홍보
- **지 원 반** : 자재수급, 비상동원 및 복구지원, 관련기관 업무협조

다) 재난상황실 세부 임무

□ 비상발령 및 사업소 상황실 개설(행정반)

- 비상발령에 대한 비상소집 지시(야간: 당직자)
- 재난종합상황실과 복구대응에 대한 사전 공조체제 구축
- 기상상황, 정전 및 설비피해 발생 여부에 대한 상황보고 접수

□ 현장투입 직원 및 협력업체 안전교육 시행(복구반)

- 차량, 장비 이동간의 교통안전수칙 준수 및 방어운전 시행
- 개인용 보호용구 착용철저 및 안전작업 수칙에 따른 작업시행
- 복구작업은 2인 1조로 투입하여 총전부 작업시 지상감시 철저 시행
- 강풍에 의한 구조물 도괴 및 비산물에 의한 안전사고에 유의
- 침수도로, 교량범람 등으로 상습 고립되는 원거리 지역의 복구인력 고정배치

□ 저지대 침수예상지역, 연약지반 개소 중심의 안전순시 시행(복구반원)

- 관할지역을 적정권역으로 분할하여 Patrol조 편성운영
- 안전순시시 착안 및 조치사항
 - 집중호우, 하천범람 등에 따른 침수지역 발생여부 및 배전선로 차단여부
 - 산사태, 도로유실등이 우려되는 개소의 배전선로 안전상태 점검
 - 기상악화 시 일반인 및 배전설비에 위해가 예상되는 타 시설물의 시정요구 등

□ 재해 상황전파 및 재난 위해설비 신고사항의 신속대응 교육(홍보반)

- 안내부서에 기상상황 및 배전설비 피해현황 자료 수시통보하여 고객안내
 - 지역별 정전현황, 배전설비 피해현황, 복구작업 현황, 예상송전 시간등
- 위해설비 신고접수분 신속처리에 대한 안내부서 종사자 교육
 - 설비피해, 재난에 의한 위해개소 신고 접수분은 신속하게 상황실로 보고하여 일반인 안전사고 및 고장파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교육 강화
 - 긴급조치 신고사항 : 전주도괴 위험, 단선된 전선, 늘어진 전선, 수목접촉으로 아크발생, 침수에 따른 감전위험등

□ 상황보고(복구반)

- 보고시간 : 1일 4회 (06:00, 11:00, 17:00, 21:00)
- 2차 사업소 상황을 종합집계하여 자체 상황실장 보고 및 본사보고
- 주요 보고내용 : 재해상황 보고서식 참조

라) 배전설비 안전관리 및 복구

배전운영부서

- 예상되는 재해에 대한 사업소내 상황전파 및 조치사항에 대한 진척파악
- 직원 비상연락망 점검 및 협력업체(통신업체 포함) 비상출동 태세 확립
- 응급복구용 자재(전주, 전선, 변압기등 주자재) 및 장비, 차량가동상태 점검
- 배전선로 운전계통의 상태점검 및 계통 복구조치
 - 타선로로 부하전환 구간여부, 보호계전기 기능정지 여부등 점검 및 계통복귀
 - 비상상황에서 개폐기 신속조작이 가능토록 자동화개폐기 Locking 해제
- 배전선로 안전순시 강화 및 재해 취약개소 긴급 보강
 - 재해 취약지역 전 배전선로에 대한 긴급 안전순시 시행
 - 강풍시 수목접촉 우려개소 긴급 수목전지 시행
 - 건설공사장, 굴착개소 인근 배전선로의 지지물 안전상태 점검 및 보강
- 배전SOP 점검 및 피해복구 도상 모의훈련 시행

□ 배전부서

- 진행중 공사현장 점검 및 재해대비 안전조치 시행
 - 가선중 전선, 철거작업중 기기등 강풍시 선로고장 및 낙하우려 개소 정비
 - 지중굴착개소, 전주철거 구덩이등 호우시 지반유실·도괴 우려개소 보강
- 지장전주이설공사 현장점검 및 일반인 안전사고 방지활동 전개
 - 진행중인 지장전주 이설공사 조기 시공완료하여 안전확보
 - 기상악화시 일반인감전이 우려되는 개소 적정 안전조치 시행

□ 배전자동화, 통신부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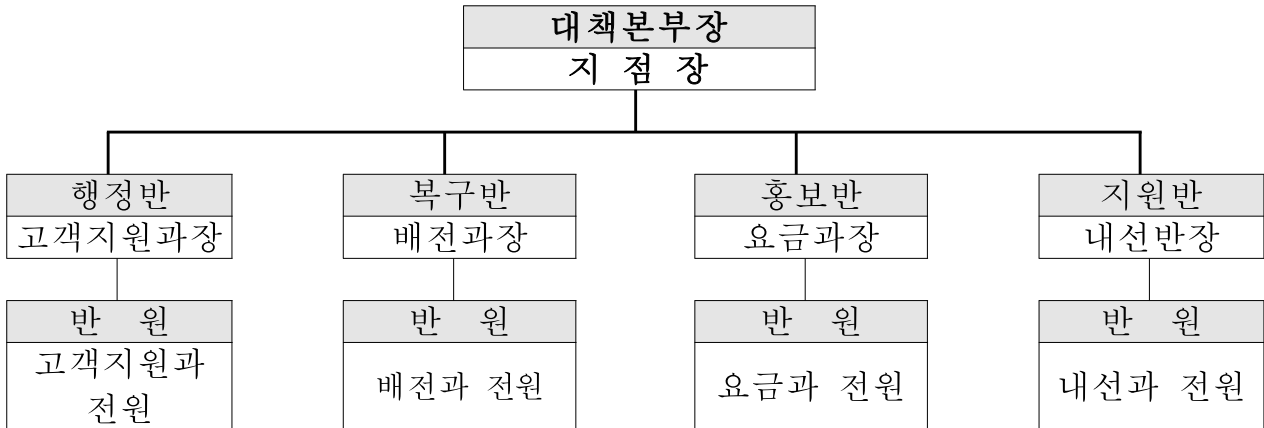
- 배전자동화시스템 통신망 및 원격조작 작동상태 점검
- 장시간 정전시대비 TRS기지국 점검 및 휴대용단말기 충전상태 확인

마) 긴급조치 및 비상 복구반 편성

① 재해대책상황실 긴급 편성

- 관련근거 : 사규 비상근무규정(총무08:00)에 의함
- 상황실 운영 시기 : 집중호우, 홍수, 태풍, 화재 등 자연재해 및 재난으로 인한 전력계통의 중대한 사고발생 또는 발생 우려

○ 조 직



○ 임 무

- 행정반 : 비상발령, 상황실 운영지원, 유관기관 업무협조 및 행정지원
- 복구반 : 공사업체 동원, 설비피해 파악 및 긴급복구, 자재수급
- 홍보반 : 피해복구 안내 및 전기안전 홍보
- 지원반 : 내선설비 피해복구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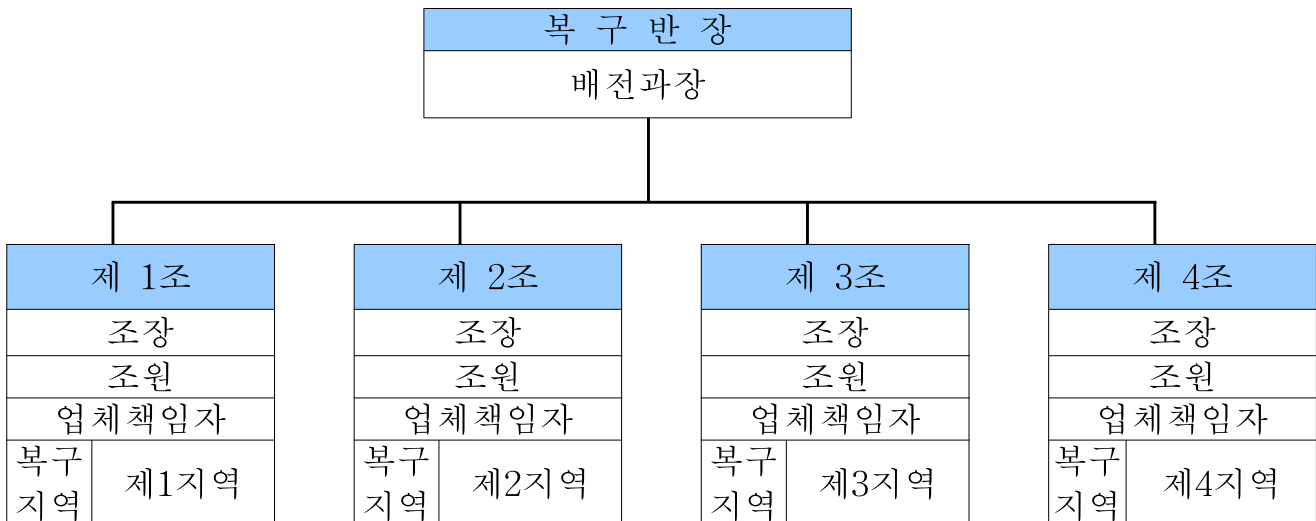
※ 반별 인원구성은 각 반장이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

② 피해구간 분리를 위한 현장출동

- 출동인원 : 배전운영실 근무인원 3개조 9명
- 출동차량 : 3대(활선 바켓트럭 - 일상조1, 저압보수차 - 일상조2, 더블캡 - 휴무조)
- 장 비 : 개인용 안전장구, 기기조작봉, 투광등, 무전기, 휴대폰 등
- 활동내용 : 피해구간 분리(상황실에서 SOP에 따라 조작지시 - 현장 임의조작 금지) 및 배전설비 피해내역 파악 후 상황실 보고

③ 배전설비 피해 복구반 긴급 편성

○ 조 직



○ 임 무

- 복구반장 : 배전설비 피해복구 총괄 지휘
- 각 조장 : 담당지역 피해설비 복구공사 감독
- 각 조원 : 조장 업무 보조 및 자재수급 지원
- 연락책임자 : 공사지시 전달 및 공사내용 수시 보고

※ 담당지역의 피해설비 미 발생시 인근지역 피해복구 지원 가능

바) 중요고객 정전안내 및 언론전파, 설비, 운영

① 중요고객 정전안내

- 고객추출 : 판매SI 시스템의 정전구간 내 중요고객 추출
- 정전정보 안내자 : 고객지원과 직원
- 안내방법 : 정전고객 개별 전화안내

② 정전관련 언론대응

- 보도내용 : 정전내용 안내 및 신속복구 노력에 대한 언론홍보
- 언론기관 : 한국방송(케이블TV 자막방송), 산청신문, 고향신문

③ 설비측면

- 선로용 보호기기 수시점검을 통한 배전선로 보호협조체제 구축
- 배전자동화 시스템의 최적 운전상태 유지
- 배전선로별 연계성 확대

④ 운영측면

- 배전선로 계통변경 사항을 포함한 SOP 관리 철저
- 배전선로별 최대부하 및 선로구간별 부하관리 철저
- 유관기관 및 협력업체와의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
- 수시로 모의훈련을 실시하여 긴급 대응능력 배양

사) 비상시 긴급복구 동원인력 및 장비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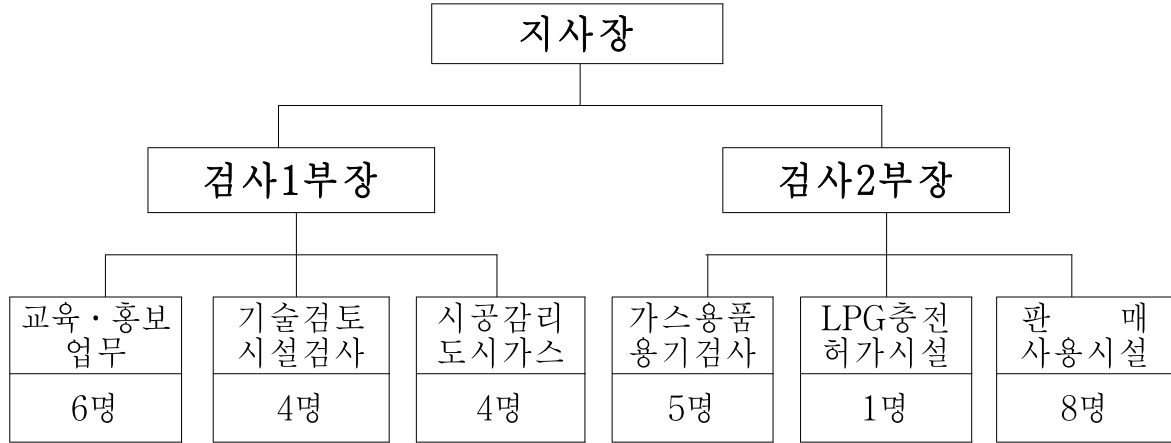
□ 한국전력공사 산청지점 연락처

위 치(주 소)	산청읍 지리
기관장(대표자)	한국전력공사 산청지점장
전화 : 970-4235 Fax : 970-4240	

3) 가스시설 대책

※ 한국가스안전공사 진주시사에 담당

○



가) 점검사항

□ 가스안전 점검의날 행사 추진

-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일제점검·안전의식 고취
- 시기 : 매월 4일
- 대상 : 지자체, 가스공급자 및 사용자

□ 방재의날 행사 추진

- 자연재난에 대한 주민의 방재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재난에 대한 교육·홍보 등의 관련 행사를 실시
- 시기 : 매년 5. 25일 전후

□ 범국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교육 추진

- 매스컴을 통한 홍보(T/V, 라디오, 신문·잡지, 유선T/V)
- 대중광고물, 유인물 제작·배포를 통한 홍보
- 이동용 홍보용 차량 등을 이용한 순회계몽교육
- 거리캠페인 등 행사와 연계한 가스안전 홍보
- 법정교육을 통한 안전관리자 가스안전교육의 실시

□ 가스시설점검 학생봉사활동 운영

- 중·고교생 가스시설 점검 학생봉사활동 운영으로 가스안전 조기교육을 통한 자율점검 의식 확산
- 대 상 : 관내 중·고교 중·고교생

나) 지정·관리

수시·일제조사 및 지정

○ 조사 시기

- 수시조사 : 매분기별 정기·수시검사 및 특별점검
- 일제조사 : 매년 11월

○ 조사방법 : 서류검사를 실시하여 신규조사시설을 파악하고, 최근 실시한 법정검사(정기, 자율검사) 및 특별점검(동절기, 해빙기, 우기 등) 결과를 조사결과로 같음

○ 지정통보 : 대상시설 추가지정 또는 변경(위험⇔중점관리대상)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업소 및 지자체에 지정사실을 통보(보고)

□ 특정관리대상시설 점검

○ 점검종류 및 주기

점검부분	재난위험시설 (D,E등급시설)	중점관리대상시설 (A,B,C등급 시설)	
정기점검	월1회 이상	A등급	반기1회 이상
		B, C 등급	분기1회 이상
수시점검	동절기, 해빙기, 우기 등 취약시기		

○ 점검방법

- 정기점검 : 시설 및 등급에서 규정한 기일 내에 점검을 실시하되 법정 검사(완성, 정기, 우리공사가 실시하는 자율검사)와 병행 실시
- 수시점검 : 안전관리상 필요시에 실시하되 취약시설·특별점검(동절기, 해빙기, 우기 등)과 병행 실시

○ 점검내용

- 해당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 안전점검결과 사후조치사항

- 점검결과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점검결과를 통보하고, 재난관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토록 관련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장을 포함한다)의 장에게 통보

-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 보수 또는 보강등 정비
- 재난을 발생시킬 위험요인의 제거
- 기타 안전조치에 관련된 사항
- 재난위험시설(D, E급)로 구분된 시설에 대하여는 그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시설의 보수·정비 등 장·단기계획을 수립, 개선토록 통보

) 취약시기·시설 안전점검 및 법정검사 실시

□ 취약시기별 안전점검 실시

- 계절적 취약요인 사전점검 실시
- 해빙기점검
 - 추진기간 : 2~4월
 - 점검내용 : 지반의 부등 침하 등으로 위해요인 점검
 - 점검대상 : 타공사 현장, LP가스저장시설등
- 우기대비점검
 - 추진기간 : 6~7월
 - 점검내용 : 집중호우, 침수로 인한 지반손실 등 위해요인 점검
 - 점검대상 : LPG충전소 등 지하설치 가스공급시설
- 동절기점검
 - 추진기간 : 11~12월
 - 점검내용 : 가스사용량 급증 및 결빙에 따른 위해요인 점검
 - 점검대상 : LPG충전소, LPG판매업소 및 시장 등 다중이용시설
- 가스공급자·사용자의 안전의식 강화를 위한 특별점검 실시
 - 명절연말분위기에 편승한 안전의식 해이 등으로 인한 사고의 개연성이 높은 설날추석 및 연말 연시에 주요 가스공급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대상 으로 실시

□ 취약시설 무료점검 실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소규모 요식업소 등 법정검사에서 제외되는 소규모 가스시설에 대한 사고예방차원의 무료 안전점검 추진

□ 법정검사 실시

- 가스시설 부실시공 원천 봉쇄 및 안전유지·보수에 대한 확인 등 법정 정기·완성검사 실시

□ LP가스안전공급계약제 조기정착 추진

- LPG판매업소의 LP가스안전공급계약제도 이행실태 지도·단속, 부적합 LP가스소비시설 개선 독려 및 우수판매업소 인증 등을 통한 LP가스소비시설의 안전관리 향상 도모

) 재난대비대책

□ 재난상황 관리체계 구축·운영

- 비상연락체계 구축
 - SMS를 통한 직원 비상연락체계 구축(크로샷)
 - 지자체, 소방서 등 유관기관 비상연락체계 구축
- 재난상황의 신속한 파악 및 정보전달을 위한 HOT-LINE 설치 운영
 - 인근 소방서, 도시가스사 및 본사
- 명예지사장을 통한 신속한 원거리 재난상황 파악체계 구축

□ 유관기관과 긴급구조 합동훈련 실시(요청시)

- 가스폭발, 지진등 각종 재난에 대비, 긴급구조기관 합동훈련을 통해 상호 공조체계 구축과 신속한 인명구조 활동 및 사고 수습체계 확립
 - 회 수 : 합동훈련(연1회) 및 자체훈련(필요시)
 - 내 용 : 가상시나리오에 의한 훈련 실시

□ 긴급구조요원 교육 참석

- 교육대상 : 재난관리업무 담당자·관리자 및 현장 활동요원
- 교육내용 : 재난대응행정실무, 긴급재난대응 이론 및 기술 등
- 교육주기 : '05년부터 연1회

□ 지자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 지원

- 민간 안전관리자문단 참여를 통한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향상 기여
- 안전관리자문단 업무내용
 - 지역 재난 및 안전관리종합대책에 관한 사항
 - 재난 및 안전관리의 장·단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 새로운 정책건의 및 행정개선에 관한 사항 등

마) 재난수습대책

□ 재난상황의 접수·전파

- 상황전파
 - 우리공사 본사 및 관할지역 지자체에 재난상황 전파
- 보고구분 : 최초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 보고내용

- 재난발생의 일시·장소와 재난의 원인, 재난으로 인한 피해내역
- 응급조치사항, 대응 및 복구활동사항, 향후 조치계획 등

○ 재난상황의 기록관리

- 소관시설에 관한 재난발생시 피해상황 기록·보관 및 군수에게 통보

□ 사고조사반 운영

- 가스시설에서 발생한 재난에 대한 신속, 정확한 사고조사를 위하여 사고조사반 및 2차출동반 구성, 24시간 운영으로 상시 대기함

□ 재난상황에 따른 비상근무체계 확립

- 평시 상황근무
 - 주·야간 1인 이상 상황근무
- 비상시 상황근무

종 류	내 용	근무인원	비고
비상근무 제1호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소속직원의 1/3이상	
비상근무 제2호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징후가 노후하거나,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불안이 조성되고 사회 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	소속직원의 1/5이상	
비상근무 제3호	가스사고로 인하여 대외적으로 영향을 끼쳐 상황 실 근무자로서 처리가 불가능한 이유	소속직원의 1/6이상	
비상근무 제4호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의 비상근무가 필요한 경우	소속직원의 1/10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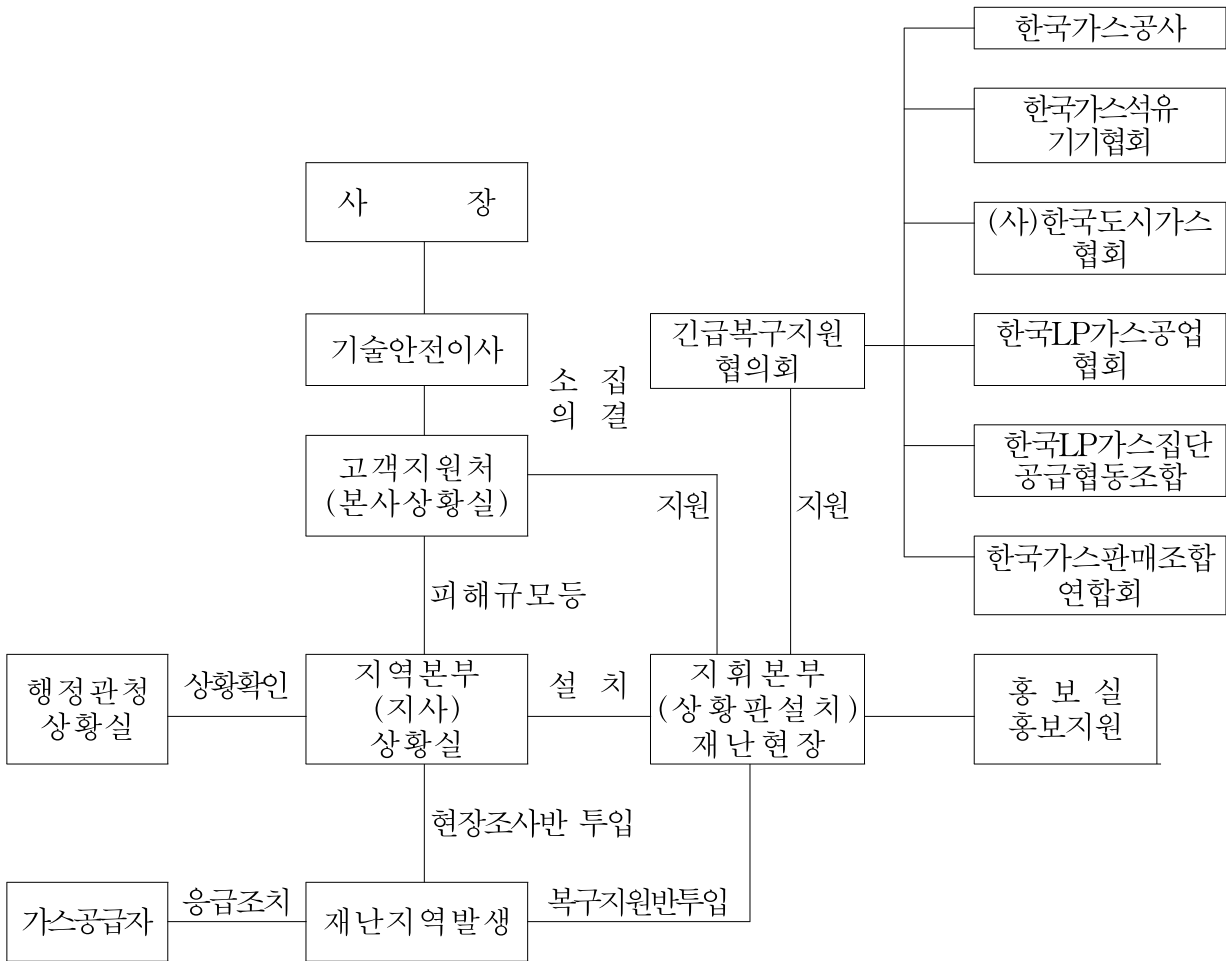
□ 가용인력·장비 동원을 통한 피해최소화 및 조기수습

동원인력		동원장비	
초동출동	총출동	장비명	수량
3명	29명	계	32종 123점
		긴급출동장비	8종 9점
		용기검사장비	2종 4점
		제품검사장비	5종 9점
		시설검사장비	8종 76점
		도시가스장비	6종 17점
		공구류	4종 8점

□ 재해지역 긴급복구협의회 구성

- 수해, 산불 등 재해발생시 관내 가스업체와 연계한 긴급복구협의회 구성

긴급복구지원·협조 체계도



□ 현장지휘소 운영지원

- 가스분야 대형재난 발생시 지자체 등 긴급구조기관 주관 구조활동 지원을 위한 연락관 파견(요청시)
 - 밸브차단 등 임시조치 및 주변 가스시설 안전점검 계획수립
 - 이재민 임시수용시설의 가스시설 설치계획 수립
 - 재난 발생시설(지역) 복구지원 및 가스안전조치요령 홍보 등

) 재난복구대책

□ 재난발생 원인조사 및 복구대책 수립

- 가스사고 조사반 운영
 - 사고원인 및 피해현황 조사

- 피해시설에 대한 응급복구 및 2차 피해유발요인 점검 및 안전조치
- 원인규명 및 유사사례 재발방지대책 수립 등

※ 대형사고는 본사차원의 『사고조사위원회』 운영

□ 복구지원반 편성·운영

○ 편성·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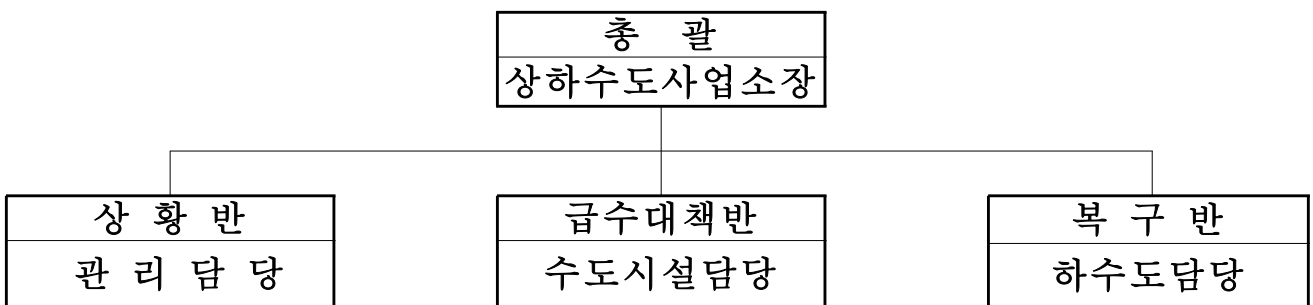
- 가스관련업체와 합동으로 복구지원반 편성·운영
- 시설복구반 : 우리공사, 가스공급자 인력으로 편성(2인1조)
- 용품수리반 : 가스기기 제조사 A/S인력으로 편성

○ 주요 활동내용

- 이재민 임시수용시설의 가스시설 설치
- 재난지역 주민에 대한 안전사용요령 홍보
- 이재민 임시수용시설 가스시설 설치 및 재해지역 가스시설 점검· 복구지원
- 시설복구반 : 가스시설 점검, 수리·보수, 기술지원 및 안전사용요령 홍보 등
- 용품수리반 : 가스용품 A/S 및 부품교체 등

4) 급수 및 상하수도시설 응급복구 체계

1) 자체 비상근무 체계구축



나) 상수도 응급 복구 계획

○ 상수도시설 복구 계획

- 피해시설의 신속한 복구
- 수도사업자별로 긴급복구반 편성·운영
- 지방상수도 → 산청군
- 복구에 필요한 건설장비, 수도관등 평시에 일정량을 확보하고 긴급조달 체계 구축
- 수도사업자별로 복구동원업체 등을 지정 관리
- 복구 우선시설을 지정하여 피해발생시 우선순위에 의해 복구
- 수도시설의 도면관리 철저 및 분산보관으로 긴급복구시 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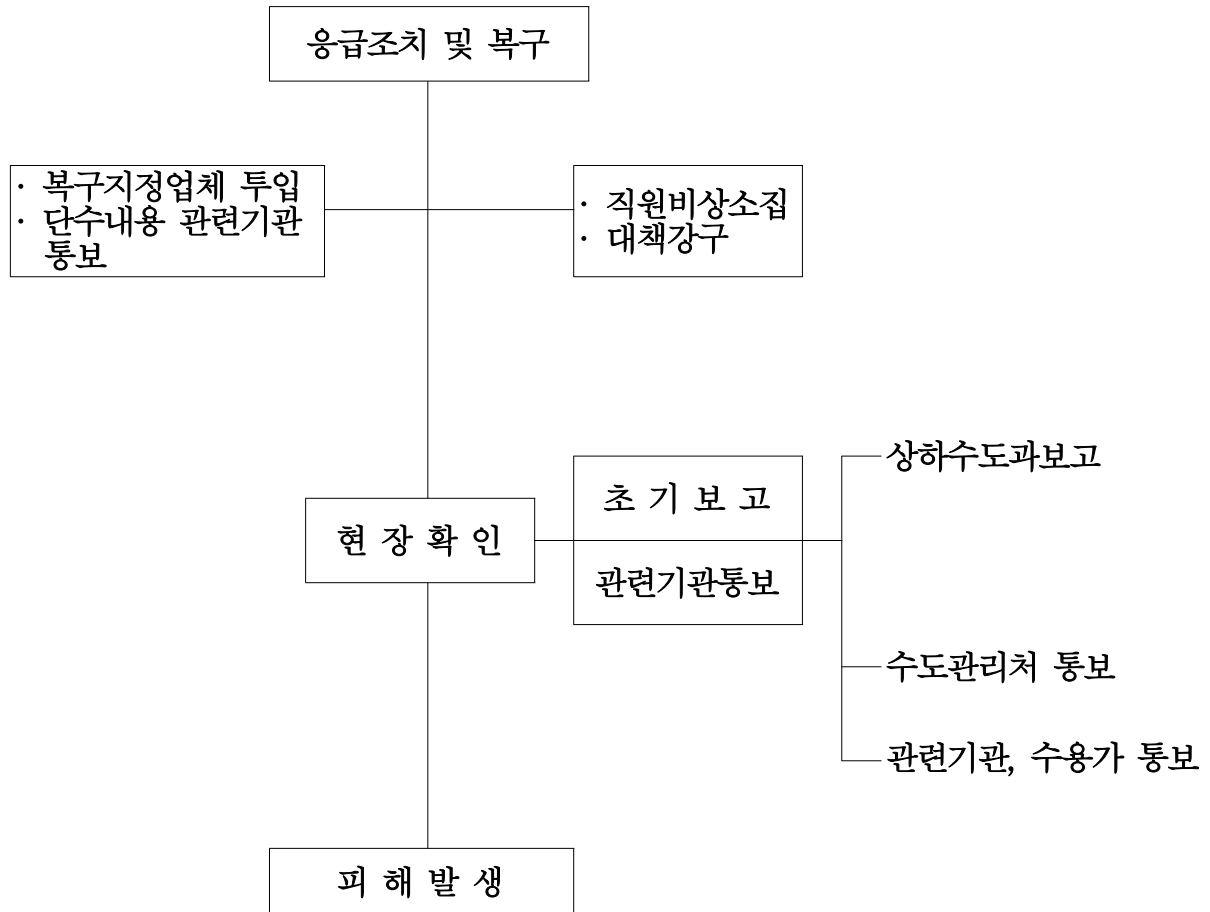
○ 수도사업자간의 상호지원체계 수립

- 비상급수, 피해복구 등을 위한 기술자 공무원간의 상호파견제 운영
- 광역적 지원체제 구축

○ 수도물 공급시스템 개선

- 조기복구가 용이하도록 공급시설 정비
- 시설정보의 다원관리 추진
- 비상연결관로 등에 의한 인근지역간 상호급수 지원

○ 지방상수도 응급 복구 계획



) 비상급수 계획

○ 대상지역

- 송배수관 파손으로 단수된 지역
- 상수도시설의 침수·유실로 단수된 지역 및 이재민 공동수용시설 등

○ 공급계획

- 이재민 공동수용시설 : 응급 급수조 설치 운용
- 수도법 제26조(긴급급수지원)의 규정에 따라 천재지변, 기타 비상시에 도지사가 피해지역 인근 수도업자에게, 수도업자가 도지사인 경우 환경부장관이 인근의 다른 수도업자에게 비상 급수토록 지시하여 공급

- 민방위기본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개인정호, 비상 급수시설, 담수된 배수지 활용
- 인근정수장 또는 지역으로부터 운반급수
- 생수생산업체로부터 지원 공급

) 하수도시설

- 하수도 관리책임자는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복구반을 편성 운영
- 양수기, 공기압축기, 수중펌프, 콘크리트 브레카 등 응급조치를 위한 장비 비치
- 하수처리장의 피해유무를 파악하고 정전에 대비하여 비상용 발전기 현장 비치
- 하수도 시설의 복구순서는 하수처리장, 펌프장, 관거 등 중요도에 따라 실시

5) 교통두절 및 구조 및 지원 대책

가) 점검사항

- 교통두절 예상지구에는 사전에 우회도로를 지정하여 주민고립을 예방
- 방재물자 의약품 수송에 필요한 인력과 차량 확보
- 신속한 교통통제로 인명피해 최소화
 - 피해발생시 교통통제가 필요한 지역의 구간을 설정 차량 통제
 - 교통통제 입간판 또는 바리케이트 등 차단시설 설치
 - 상황에 따라 인력 및 장비증가 배치
- 차량통제 시 신속한 우회도로 확보 등 소통대책 마련
 - 사고 발생지역 중심으로 원거리 차단 우회조치로 교통 혼잡 해소
 - 차량통행량에 따른 소통확보
 - 교통외근근무자 신속 배치, 교통량에 따른 신호주가 조정 등
- 신속한 지휘보고체제 확립
 - 재해발생으로 인한 교통통제 시 신속한 지휘보고
 - 교통두절상황 신속·정확히 파악 보고·통보(유관기관 등)
 - 첩보 즉시 현장지휘체제 구축 및 지휘관(경찰서장) 현장지휘
 - 교통간부(교통(경비)과장) 현장지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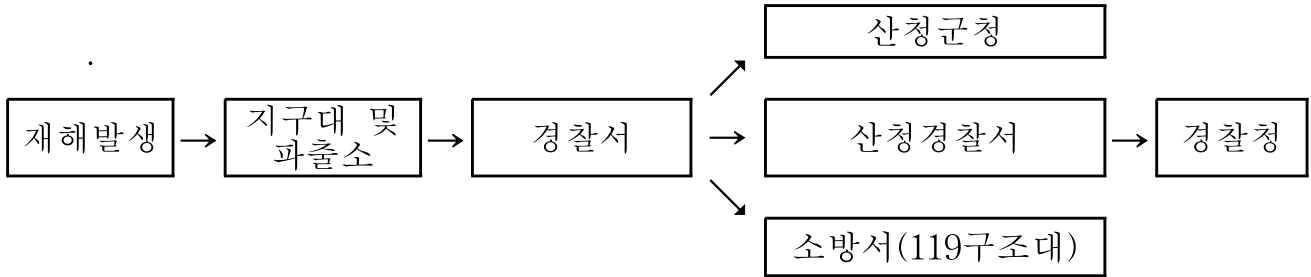
나) 세부계획

- 긴급 종합상황반 및 현장상황반 편성 운영
- 현장지휘본부 및 경찰정보 지원센터 운영
- 초동조치
 - 최초 신고접수자(지구대 및 파출소, 상황실)

- 정확한 발생장소 및 규모의 파악
- 접수와 동시 신속한 상황전파
- 유관기관 통보
- 직근상사 보고
- 현장출동 근무자와 계속적인 연락을 통한 상황의 보고·전파
- **최초 현장임장 근무자**
 - 신속한 사태파악후 상황실 무전보고
(사태유형, 피해정도, 지원경력 필요여부)
 - 현장주변 교통통제(비상연락, 장비의 수송로 확보)
- **지구대장 및 파출소장 등 최초임장 간부 조치**
 - 추가인력·장비의 필요여부 판단 및 요청
 - 지휘보고(대략적인 피해·향후전망, 현장지휘본부 설치 필요성)
 - 적절한 현장 지휘본부 장소의 물색
 - 후속증원 경력에 대한 임무 부여
 - 지휘관 도착 전까지 인명구조, 교통통제, 주민대피 등 제반활동 지휘
- **교통 외근간부 조치**
 - 비상출동로 확보 등 교통관리
 - 사고현장 주변에 교통 외근요원을 배치하여 긴급차량의 현장 진입로 및 주차장 확보(필요시 레카동원, 차량이동 조치)
 - 수시로 교통상황 파악, 비상출동로 적정여부를 상황실(지령실)로 통보
(필요한 경우 헬기 지원요청)
- **상황실장 조치**
 - 112·교통순찰차, 재난관리부대, 5분대기대, 형기대 등 출동 조치
 - 지휘관 및 상급기관 보고, 유관기관 통보
 - 현장근무자 요청사항 지원(추가 경력 및 장비)
 - ※ 필요시 전직원 비상소집

다) 구조 및 지원

○ 재해발생시 보고(통보) 체계도



※ 비상연락망

- 산청경찰서 대표전화 : 972-7000
- 경비작전계 : 972-2903

6) 각급 유관기관 소관업무 협조·지원사항

○ 방송기관에 상황전달 협조요청(홍보 및 대피방송, 대국민 홍보)

언 론 매 체	주 소	전 화 번 호
지역 KBS	진주시 신안동 13-22	741-7364
지역 MBC	진주시 가좌동 700-1	771-2114
라디오(KBS)	진주시 신안동 13-22	741-7364
라디오(MBC)	진주시 가좌동 700-1	771-2114
케이블 TV	진주시 동성동 9-9 삼광빌딩	740-3001
기타 방송매체	-	-

- 대한적십자사에 이재민 구호활동 요청
 - 이재민구호를 위해 도 및 시·군과 보완적 역할담당
 - 수용시설에 집단급식 및 이동세탁차량 신속배치 운영
- 인근 군부대의 병력 및 장비지원 요청
- 군에서 동원된 병력과 장비, 예비군 등과 함께 도로 및 철도 복구
- 인명피해 발생시 인명의 구조와 실종자 수색을 소방군경과 협조하여 신속 지원

- KT는 피해를 입은 통신시설 복구(현장근무자는 협조 및 통제)
 - 한국전력공사는 피해를 입은 전기시설 복구(현장근무자는 협조 및 통제)
 - 상수도시설 복구(현장근무자는 협조 및 통제)
 - 한국가스안전공사는 피해를 입은 가스시설 복구 및 무상 안전점검 실시
(현장근무자는 협조 및 통제)
 -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전기시설에 대한 무상안전점검 실시(현장근무자는
협조 및 통제)
 - 공공시설물 복구순위 결정을 위한 관계기관 협조요청
 - 가축피해에 대한 응급대책 관련기관 협조요청
 - 단계별 근무체계 및 업무별 표준행동절차 참조.
- ※ 각 해당 유관기관은 담당업무별로 수립된 계획에 의하여 추진하며
산청군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연락체계 유지.

7) 주민협조요청 및 상황전파(복구상황 등)

- 가) SMS 문자 및 음성정보시스템을 통한 11개 읍면사무소 직원, 이장에게
상황전파 및 주민협조요청.
- 나) 유관기관 및 재난관련기관에게 협조요청

3. 복구단계

가. 시설물 응급복구 대책

※ 방재관련 시설물을 최우선 복구

1) 응급복구 인력 및 장비 동원체계

가) 응급복구 인력

- 산청군 공무원 전직원 교대근무 및 유관기관 가용인원 교대근무
- 자원봉사단체 지원인력 및 군부대 지원인력.
- 인근지역 지자체 지원인력

나) 응급복구 장비동원 순위 : 동원장비현황 참고

- ① 산청군 보유 관용장비
- ② 유관기관 보유 장비
- ③ 군부대 지원 장비
- ④ 민간보유 장비

2) 기타시설물

- 기업시설의 피해상황 파악 및 복구
- 하천시설 피해상황 파악 및 복구
- 주택의 피해상황 파악 및 복구 및 응급대책용

3) 공공시설물 복구 순서

- 도로, 교량, 공공시설물 피해상황 파악 → 응급복구, 항구복구, 응급대책수립
→ 복구반 및 장비 동원 → 복구 실시 → 2차 재해대비책 마련
- 가스, 상수도, 하수도, 기타 라이프라인 시설피해상황 파악 → 작업순서결정 → 복구실시
- 재해발생시는 즉시 응급복구 대상시설물에 대한 응급복구계획을 수립.

나. 방역 및 보건위생 대책

1) 방역 실시계획(방역물자 확보 등)

가) 취약지 방역소독(살충, 살균)

□ 방역시기

- 유충구제사업 실시 : 3 ~ 5 월
- 하절기 방역소독 : 5 ~ 10월
- 재해 및 재난 발생지역 : 수시

□ 운영 방식

- 방역반 편성, 운영
- 보건증진과 및 각 동별 방역반 : 11반 22명
- 민간방역업체 방역활동 참여 협조

나) 방역비상근무 실시

- 근무기간 : 2012. 5. 1 ~ 10. 31(6개월)
- 근무시간 : 평일 오후 20:00까지 (토요일 16:00, 공휴일 09:00~16:00)
- 근무인원 : 2인 이상 (보건증진과 2)
- ※ 근무내용

- 전염병 집단발생이 우려되는 집단생활시설 등에 대한 순회점검 및 상주 근무
- 병·의원, 약국 등에 대한 모니터링 확행
- 비상근무기간 중 전염병 관리요원 및 장비의 타 업무 차출 금지

다) 방역소독반별 운영방법

- 보건증진과 방역반 : 관내 취약지 순회 1일 3회 방역소독 실시
- 동방역반 : 지역단위로 주 3회 이상 실시
- 민간자율방역반 : 각 방역반과 중복되지 않도록 관내 지역별 방역반별 소독일정 확인실시
- 민간방역업체 : 취약지 집중방역시 지원 협조(유류 및 방역약품 지원)
- 폭우 및 침수지역의 방역소독은 상황에 따라 실시하되 주 2회 이상을 원칙으로 함
- 예방약품 및 방역소독약품 부족시 긴급지원
- 재해지역의 하수구, 화장실, 쓰레기장 등의 해충 서식처나 발생원에 정기적 살충·살균 소독 실시
- 고열 또는 설사환자 등 전염성 질환자는 발생 즉시 보건기관에 신고토록 홍보

라) 의료구호

- 재해로 인해 부상을 당한 이재민은 의료보호법에 의거 의료보호 1종대상자로 책정, 국고부담으로 치료
- 재해발생지역의 전염병 예방 및 진료활동 전개
 - 기동의료반 편성·운영
 - 이재민 공동수용소 의료진 상주근무
 - 보건증진과 및 보건지소 등에 비상대기조 편성·운영

마) 식품위생관리

○ 식품접객업소

- 침수된 원재료는 폐기처분
- 날음식 및 부패·변질 우려가 있는 식품은 판매금지
- 무표시, 무허가 식품은 사용금지
- 급수는 수돗물을 사용하고 식수는 끓여서 제공하되 지하수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수질검사를 반드시 실시한 후 급수 실시

○ 집단급식소 및 이재민 수용소

- 수해지역에는 식품위생감시원이 정기 순회하여 식중독 예방
- 집단 수용시설에는 식품 위생 감시원을 고정 배치하여 급식관리 철저
- 식수는 반드시 끓여서 제공
- 오염된 식기류, 도마 등은 차아염소산나트륨을 사용하여 소독하거나 반드시 햇볕에 건조한 후 사용

2) 의약품 확보 및 관리대책

가) 확보 및 관리대책

- 보건의료원 및 지역응급의료기관 보관. 부족분은 재난기금으로 대체
- 의약품의 수급 및 관리는 보건증진과에서 담당하며 현황 및 수량 관리
- 일반 방역약품과 분리하여 보관.
- 전년도 보관 분은 금년도 일반 방역약품으로 사용하고, 금년도 방역약품은 새로 구입하여 변질방지.
- 방역물자를 정기적으로 보관상태 점검, 정전시 의약품 보관 대책 수립.
- 방역기자재 조달, 확보, 보관 상태 확인(세탁, 소독장비 등)
- 방역의약품 확보(수질분석, 소독, 세탁, 탈취, 동물용 등)
- 5월 이전에 방역물자 전량 확보

나) 수해지역 필수약품 목록

□ 외용제

- 피부질환치료제
 - 항생제, 항진균제 함유 연고

- 가려움증 치료를 위한 항히스타민 연고제
- 습진치료제(스테로이드함유 연고 등)
- 창상 감염, 부스럼 등의 치료제(후시딘 연고 등)

- 안약, 안연고
- 파스류(근육이완, 타박상 등)
- 소독약(과산화수소수 등)

□ 위생용품

- 탄력붕대, 일반붕대, 거즈, 탈지면, 일회용 밴드 및 마스크 등

□ 해열·두통·진통·소염약 및 감기약 등

- 종합감기약, 해열제, 두통약, 진통제 및 소염제

□ 기타

- 위궤양 치료제, 겔포스 등 위장보호제, 주사기, 생리 식염수 등,
- 기타 만성질환자(고혈압, 당뇨약 등)용 의약품

3) 침수지역 분뇨 및 쓰레기 처리대책

가) 점검사항

- 분뇨유출에 필요한 응급조치 장비와 방법 확인.
- 유송쓰레기 수거지역 선정 및 차단망 점검.
- 동물사체 매립 장소 확보.
- 가축 분뇨 방출에 대한 대책 협의.
- 쓰레기 운반 차량 확인에 필요한 제반 서류 및 표지판 준비.
- 상습침수지역은 피해발생 즉시 사용가능한 위치에 쓰레기 임시적환장 지정 확보
- 쓰레기를 제거하기 위한 처리시설과 필요한 장비 및 기자재의 보유상황 파악

나) 쓰레기 처리 대책

□ 쓰레기처리

- 피해상황 신속한 파악하고 쓰레기의 배출량을 추산
- 임시적환장 설치시 주민계도
- 부패하기 쉬운 쓰레기는 방역처리하여 수집 운반.
- 긴급수거지역 선정(인구 밀집지역) : 재난발생지역에서 선정
- 임시적환장 설치 운영 및 관리 : 업무별 표준행동요령 참고

□ 분뇨처리

- 이재민 수용소등 집단수용시설에 대한 분뇨처리는 가설화장실 등을 설치하여 처리

- 주택 및 축사 파괴로 분뇨 유출시 신속한 확산방지.
- 분뇨 처리 완료시 즉시 방역 실시.
- 분뇨 발생량이 처리능력 이상으로 배출시 인근 지자체에 지원요청
- 기타 추진사항 : 업무별 표준행동요령 참고

□ 지장물의 제거 및 유송쓰레기 처리

- 건물과 도로 등 사회간접시설의 파괴로 발생한 장애물의 정리는 자치단체 주관으로 우선 처리하고 국가에서 처리 비용의 일부를 지원
- 부유쓰레기 및 유송쓰레기 사전 차단방법 강구.
- 부유쓰레기 및 유송쓰레기 처리방안 강구.

4) 폐사가축 처리방안

- 폐산된 가축은 폐기물관리법 및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거 소각 또는 매몰.
- 긴급 방역비를 확보하여 소독약, 예방약 등을 사전에 비축
- 가축전염병 예찰 강화 및 예방주사 실시 및 동물사체 매립 장소 : 임시적환장 활용.

5) 부상자 진료 및 예방접종

가) 기동 의료반 편성운영

□ 임 무

- 부상자, 응급처리 및 환자 분류
- 대량 환자 발생지역의 긴급 의료지원
- 기타 필요한 의료지원

나) 간이진료소 설치 운영

□ 임 무

- 응급환자 치료 및 후송
- 전염병환자 색출 및 예방

□ 편성기준

○ 인 원

계	의 사	간호사	행정요원	운전기사	임상병리사
6	1	2	1	1	1

○ 장 비

구 급 셋	구급낭	천 막	차 량	비 고
1셋	1개	1조	1대	

□ 설치 장소

- 이재민 공동대피소
-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6) 이재민 수용시설의 보건위생 대책

※ 방역 및 보건위생대책에 준하여 실시하되, 전염병 및 집단환자 발생시 아래와 같이 시행

가) 전염병 환자 발생시 신고·보고 체계

① 보고체계

: 민간의료기관 등 ⇒ 보건의료원 ⇒ 도

※ 법정전염병 신고·보고에 따른 보건증진과의 역할

- 전염병환자, 집단환자 신고 접수 및 전염병환자, 집단환자 발생 보고
- 전염병환자 사례조사 및 전염병 발생수준 및 유행여부 파악
- 자료분석 및 정보환류, 유행발생시 기초조사 실시 및 기초조사 결과 보고
- 지역사회 홍보

② 보고방법

* 즉 시

▶ 유행 발생시

⇒ 2명 이상의 환자가 시간적 공간적으로 밀집되어 발생할 경우

▶ 의사환자 발생시

⇒ 5명 이상 집단환자 발생시 환자발생 상황을 우선 질병관리 본부에 유선보고

▶ 콜레라 등 특수질환이나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 발생시

⇒ 1명이라도 보고

※ 특수질환 : 최근 5년간 국내 발생이 없었던 질환이나 신종질환 등

- 제1군, 제4군 전염병 : 즉시 보고
- 제2군, 제3군 전염병 : 매주 1회(월) 보고
- 2명 이상의 전염병환자 발생이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

나) 집단환자 발생시 대처

① 전염병 『퇴치사업단』 지속운영

- 군 : 방역대책반 (대책반장 - 보건의료원장)
- 읍면 : 주민자율방역단 운영

② 집단환자 발생시 조치요령

- 제1단계 : 조기치료 및 확산방지를 위한 환자관리
 - 적절한 치료 제공(필요시 항생제 내성검사 의뢰)
 - 입원 및 격리조치
 - 확진 전이라도 필요시 입원치료 및 격리조치
 - 환자관리
 - 환자의 장내배설물 및 사용물품의 철저한 관리
 - 개인위생 철저 -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 씻기 등
 - 완치 시까지 음식조리 및 육아 금지
- 제2단계 : 확산 방지를 위해 접촉자 및 공동폭로자 관리
 - 주기적 발병여부 감시
 - 의심되는 질병의 최대 잠복기까지 발병여부 확인·조사
 - 고위험군에 대한 필요시 격리조치
 - 설사증상 발생시 즉시 보건의료원 내소 지도 등 보건교육 실시
 - 질병 확진 시에는 해당 질병에 대한 접촉자 관리 실시
- 제3단계 : 추정원인 혹은 전파경로에 대한 관리
 - 추정원인 음식물 폐기, 오염 가능 식수원 공급 차단 등 조치
 - 취약지역에 대한 살균, 살충 소독
 - 안전이 확보된 음식물 및 음용수 제공 조치
- ③ 전염병환자 : 격리수용 치료기관 지정 및 관리
 - 지정현황 : 성심병원
- ④ 전염병 발생요인 사전 관리
 - 취약시설 등에 대한 중점관리
 - 학교, 사회복지시설등 전염병의 전파가 우려되는 집단시설에 대한 방역소독 강화 - 자체 방역실시로 약품지원
 - 설사환자 등 콜레라 감시초소 운영
 - 기 간 : 4월 ~ 10월
 - 장 소 : 상황에 따라 설치운영
 - 운영방법 : 해수, 어패류 수거검사
(주 1회 이상) --- 해수온도 17℃이하일 때까지
 -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시설 등 종사자 관리

다.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1) 자체피해조사 및 합동조사

가) 피해조사반 구성

- 본부장의 지시에 따라 해당업무 실과별로 피해조사반을 구성.

- 피해조사반장은 해당실과소장이 되며, 반원은 업무담당 실무자로 구성.
- 피해조사항목을 면밀히 파악하여 조사.

나) 피해조사 일반적 유의사항

□ 피해금액 산정 및 조사방법

- 피해조사는 현지답사후 시설별로 조사하고 개소별로 피해액을 산정
- 항구복구계획과 상관없이 순수한 피해부분에 대해서만 피해물량 및 피해금액 산정
- 세부공종별로 산출기초를 작성하여 재해대장에 기재 또는 별지로 첨부
- 자연재해조사 및 복구계획수립지침에서 정한 피해시설은 조사대상에서 제외
- 시설물 노후 및 관리소홀로 인한 재해지구는 대상에서 제외시킬 것.
- 도로대장, 하천기성제 대장 및 각종 시설물관리대장 등을 참조하여 관리등급 등을 조사하고 피해확인이 애매모호한 시설은 시설물관리대장을 재해대장에 첨부
- 공사하자기간내 시설물은 부실시공으로 인한 하자여부를 엄밀히 검토한 후 결정
- 피해현지 조사양식은 사전에 별도 작성하여 비치
- 피해액 산정 : 시설별 세부공종별 피해물량 × 기준단가
 - ※ 특히 복구소요에 필요한 금액을 피해액으로 계상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부대공, 자재대, 부과세, 관리비, 이윤 등은 단가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중으로 산정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기 바람.

□ 사진촬영방법

- 피해전경을 가능한 자세히 촬영하여 향후 기록보존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하천제방 피해등 피해연장이 긴 지구는 가능한 연속사진 촬영
- 우선 전반적인 피해상황이 잘 나타나도록 원경을 촬영
- 세부적으로 피해부분이 설명될 수 있는 근경을 부분별로 촬영
- 재해대장에 3*5인치의 크기로부착
- 사진만으로 피해유무, 물량, 피해종류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촬영
- 피해물량이 많은 지구는 연결사진 촬영을 실시
- 피해사진은 디지털카메라로 촬영
- 피해범위가 큰 것 등에 대해서는 점모를 표시하는 것 외에, 적당히 중간의 피해상황이 보이는 사진을 첨부한다. 사태 등의 전모를 나타내는 경우는, 수매를 연결해 합쳐도 좋다.
- 와이드 촬영을 하면 양 사이드(기종점)가 불선명해지기 쉽기 때문에 피해야 한다.
- 횡단지형이 쉽게 판단되도록 노력할 것, 또한 공중 및 복구공법에 따라 부분촬영을 행할 것.
- 비슷한 지점을 일괄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모를 나타내는 것 이외에, 개개의 장소가 판정 가능한 사진이 필요하다.
- 전후시설 등의 상황이 판명되도록 하고, 기종점으로부터 상하류(전후) 방향의 사진을 촬영해 둘 것.
- 촬영할 때에는 피해장소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초목 등이 벌채를 행할 것. 또한 환경보전의 관점에서부터, 크히 합동조사상 또는 공사의 실시상 지장

- 을 받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 남기도록 할 것.
- 피해 전 연장을 알 수 있도록 하며 기중점에는 반드시 폴 등을 세워 촬영할 것.
- 옹벽, 호안 등의 구조물의 피해에 대해서는 파괴상황을 스타프, 폴 등으로 표시하여 촬영할 것. 특히 균열 등은 치수를 알 수 있도록 할 것. 또 옹벽의 경사변경 등에 대해서는 폴 등으로 표시하여 촬영할 것.
- 범람 등에 따른 일반피해의 사진을 첨부할 것.
- 재해로부터 합동조사를 하기까지는 어느 정도의 시일을 요하기 때문에 특히 피해의 사실이 분간하기 어려운 부분은 재해 직후 가능한 빠른 기회에 촬영해 둘 것.
- 응급공사 등 합동조사 전에 착공하는 경우는, 피해의 사실, 형상, 치수, 수량 등이 판정 가능한 사진을 촬영하여 확인한 후 착수할 것. 특히 기중점에 대해서는 사진만으로 그 위치가 확인 가능하도록 충분히 배려하여 촬영할 것.
- 붕토를 제거하기 전에 사진을 촬영할 것
- 필름 또는 메모리는 재해대장과 함께 보관할 것.
- 감조부 및 취수언 상류부의 사진은 수위가 낮을 때에 촬영할 것.
- 사면 등의 경사면에는 계단 상으로 폴, 축척을 사용하여 단면의 폭, 길이가 판명될 수 있도록 촬영할 것.

2) 피해유형별 복구비 지원

□ 기본방침

현행 재해복구비용 산정기준 상에 제시된 공공시설물의 종류는 도로, 교량, 하천, 상하수도시설, 환경시설, 국립공원시설, 농업시설, 항만어항시설, 학교시설, 산림시설, 철도시설, 소규모시설, 소하천, 군시설, 문화재시설, 기타시설, 우정시설 등으로 구분되나, 공학적으로 공종판단이 불필요하거나 재해복구비용 산정기준상에 단위품목, 기계류 등으로 분류되어 있는 사항들, 조사상의 어려움이 미미한 것, 군시설과 같은 특수한 경우이거나, 문화재시설등과 같이 매우 전문화된 지식을 가진 인원이 조사하여야만 하는 경우 등은 기존의 피해조사기법 및 복구비용 산정기준을 사용한다.

□ 복구비 지원 참고사항.

- 이재민 구호비 지원기준 참고
- 국고 및 의연금 지원기준 참고
- 행정자치부 국립방재연구소 피해조사체계 개선방안 지침서 참고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자연재난복구비용 산정기준 참고

3) 피해유형별 복구계획 수립

가) 응급복구

- 자연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유형별 복구계획은 별도로 수립하지 않고 상기에 수립된 복구계획을 사용.
- 응급복구는 임시로 복구하여 차량통행 등 피해시설의 사용목적에 어긋남이 없도록 조치

나) 완전복구

- 재난발생 후 피해조사 계획 및 절차에 따라 조사된 결과를 근거하여 복구 계획을 해당업무 실과별로 수립
- 재난상황 종료 후 자체 피해조사반을 편성하여 상세히 조사하고 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재난발생 시에는 재난이 재발되지 않도록 복구함.

다) 복구대상

- 주택복구
- 농경지 및 염전 복구
- 농림시설·농작물 및 산림작물의 복구
- 축산물 증식시설의 복구와 가축등의 입식
- 수산물의 증식 및 양식시설의 복구와 수산생물등의 입식
- 공공시설의 복구
 - 도로, 교량 , 상하수도시설
 - 환경시설, 국립공원시설, 농업시설, 항만어항시설
 - 학교시설, 산림시설
 - 소규모시설, 소하천, 하천, 군사시설, 문화재시설
 - 우정시설, 기타시설

제2절 대 설

1) 준비단계() : 재난부서 2명 교대근무- 1 이창규 정희교 2조 김기훈, 차현식

2) 보강단계(대설예비특보)

- 근무시기 : 대설특보 발령 ~ 상황종료 시까지
- 근무방법 : 산청군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 합동근무
- 근무요령 : 해당실과별 2교대 근무
- 실과별 근무자 명단(2개반/10명) - 총괄 : 통제관

구 분	A 조		B 조	
	실 과 명	근 무 자	실 과 명	근 무 자
정보수집및 보고서작성반	건설과	7급 정둘순	건설과	6급 김기훈
상황관리 지 원 반	건설과	8급 차현식	”	7급 정희교
비상지원반	주민생활지원실	6급 정인식	주민생활지원실	6급 천도영
	경제도시과	7급 우한석	경제도시과	6급 공동찬
	건설과	6급 안준석	건설과	6급 이창규
	산림녹지과	6급 박춘서	산림녹지과	8급 김진구
	농축산과	6급 민영구	농축산과	6급 권영환
	농업지원과	지도사 최인락	농업지원과	지도사 정상섭
유관기관지원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립공원관리공단 지리산사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농어촌공사진주산청지사산청지소 · 국립공원관리공단 지리산사무소 	

3) 비상 I 단계(대설 주의보)

- 근무시기 - 기상종합정보 중 **대설** 주의보 발령 ~ 상황종료 시까지
- 근무방법 : 2층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 합동근무
- 근무요령 : 해당실과별 2교대 근무
- 실과별 근무자 명단(6개반/20명) - 총괄 : 통제관

구 분		A 조		B 조	
		실 과 명	근 무 자	실 과 명	근 무 자
상 황 총 괄 반	정 보 수 집 및 보 고 서 작 성 팀	건 설 과	6급 신현영	건 설 과	6급 김기훈
		건 설 과	7급 정둘순	건 설 과	7급 이덕화
		건 설 과	6급 김영옥	건 설 과	7급 홍순일
	대 설 대 책 팀	건 설 과	8급 차현식	행 정 과	8급 김현수
	상 황 관 리 지 원 팀	건 설 과	6급 안준석	건 설 과	6급 이창규
		행 정 과	7급 최진봉	행 정 과	6급 진위용
행 정 지 원 반	기획감사실	6급 정종민	기획감사실	6급 민영춘	
비 상 지 원 반	주민생활지원실	6급 정인식	주민생활지원실	6급 천도영	
	환경위생과	7급 김성환	환경위생과	6급 민정식	
	경제도시과	6급 공동찬	경제도시과	7급 강태환	
	건 설 과	7급 성지은	건 설 과	9급 김종현	

구 분	A 조		B 조	
	실 과 명	근 무 자	실 과 명	근 무 자
비 상 지원반	산림녹지과	6급 박춘서	산림녹지과	8급 김진구
	보건증진과	6급 김선옥	보건증진과	6급 서용석
유관기관 지원반	제8962부대3대대	기동대장	제8962부대3대대	작전대장
	지역자율방재단	단장	지역자율방재단	부단장
구 조 구급반	행정과	7급 송희란	행정과	7급 김현수
자원봉사 지 원 반	주민생활지원실	6급 이순선	주민생활지원실	6급 조만선
	농축산과	6급 오수환	농축산과	8급 김광응
	농업지원과	지도사 이양호	농업지원과	지도사 최인탁
공 보 지원반	기획감사실	6급 정육진	기획감사실	8급 정승화

4) 비상 II 단계(대설 경보)

- 근무시기 - 기상종합정보 중 대설 등 경보 발령 ~ 상황종료 시까지
- 근무방법 : 산청군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 합동근무
- 근무요령 : 해당실과별 2교대 근무
- 실과별 근무자 명단(6개반/29명) - 총괄 : 차장

구 분		A 조		B 조	
		실 과 명	근 무 자	실 과 명	근 무 자
상 황 총 괄 반	정 보 수 집 및 보고서 작성팀	건 설 과	6급 신현영	건 설 과	6급 김기훈
		"	7급 정돌순	"	7급 이덕화
		"	6급 김영옥	"	7급 성지은
		기획감사실	7급 박원생	기획감사실	7급 최규남
	대 설 대책팀	건 설 과	8급 차현식	행 정 과	7급 김현수
	상 황 관 리 지원팀	건 설 과	6급 안준석	건 설 과	6급 이창규
		행 정 과	7급 최진봉	행 정 과	6급 고현숙
		상하수도사업소	8급 김성훈	상하수도사업소	6급 차상효
	행 정 지 원 반	기획감사실	6급 정종민	기획감사실	7급 정해자
		행 정 과	7급 송희란	행 정 과	6급 정병주

구 분	A 조		B 조	
	실 과 명	근 무 자	실 과 명	근 무 자
비 상 지 원 반	주민생활 지원실	6급 조병식	주민생활지원실	6급 권갑근
	문화관광과	7급 한인자	문화관광과	6급 문병국
	환경위생과	7급 김성환	환경위생과	6급 민정식
	경제도시과	6급 이상인	경제도시과	7급 강태환
	보건증진과	6급 김선옥	보건증진과	6급 서용석
	건 설 과	7급 정춘기	건 설 과	7급 홍순일
	”	8급 차현식	”	7급 정희교
	산림녹지과	6급 박춘서	산림녹지과	8급 김진구
유관기관지원반	8962부대3대대	기동대장	제8962부대3대대	작전대장
	지역자율방재단	단장	지역자율방재단	부단장
구 조 구 급 반	행정과	6급 이병혁	행정과	7급 이대인
	보건증진과	7급 박영순	보건증진과	6급 최화혜
자원봉사 지 원 반	주민생활지원 실	6급 이순선	주민생활지원 실	6급 조만선
	한방산업과	6급 김명문	한방산업과	6급 이성안
	농축산과	6급 오수환	농축산과	8급 정길섭
	농업지원과	지도사 이양호	농업지원과	지도사 최인락
공 보 지원반	기획감사실	6급 정육진	기획감사실	7급 정미숙
	”	8급 정승화	”	8급 오진선
	건 설 과	8급 김귀녀	건 설 과	9급 손재호

1. 대비단계

가. 재난취약시설 점검, 지정관리

□ 방재시설물 점검 정비사항

- 방재시설물에 대한 점검결과 재해위험이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해당재난업무 담당과장의 책임하에 폭설전까지 정비완료
- 폭설전 정비가 어려운 시설물에 대해서는 응급복구용 장비확보 등 재해응급대책 강구후 특별관리
- 결빙될 위험이 있는 국도나 지방도로에 대해서는 대책 수립
- 도로 결빙에 대비해 염화나트륨 등 해빙제 및 모래 비축등 제설장비 확보
- 재해발생시를 대비하여 비상전원을 설치하며 배선관계의 이상 유무를 점검
- 제설장비 동원에 따른 임대료등 소요예산확보(해당부서)

□ 재해위험지구 지정 관리사항

- 재해위험지구 관리카드 작성
- 결빙구역도 작성 및 결빙구간 안내판 설치
- 우회도로 및 주민대피장소 등을 지정
- 응급복구용 비상통신장비 확보
- 동절기전 재해대비완료가 어려운 지구는 응급대책을 강구
- 산간계곡·등산로 등의 행락객 대피 필요지구 설정 및 표지판 설치

□ 고립예상지역 점검 관리사항

- 재해시 고립예상지역을 사전에 지정 및 대피계획 수립
- 재해시 고립예상지역 인근에 우회도로를 지정관리
- 고립예상지역 주민들에게 지정된 대피장소, 대피로, 우회도로 등을 사전 홍보
- 고립예상지역 대피자 수송 수단 확보

□ 대규모 공사장 점검·관리

- 산사태 위험 지역 시설물건축 제한 조치
- 공사장별 관리카드 작성(공사지역, 위험시설)
- 간부공무원으로 관리책임자를 복수 지정하여 특별관리

○ 읍·면·동 간부공무원으로 지역분담 책임제 실시

□ 농림, 축산시설 점검 관리사항

- 피해우려지역 점검 등 순찰강화
- 낡은 축사 및 사료창고 보수 및 비규격 시설물 지원대상 제외 홍보
- 비상사료 10일분 이상 사전에 비축
- 위험예상지역의 축사 및 가축을 사전조사하여 우회도로 및 대피장소, 수송수단 등을 사전에 확보

□ 산지재배시설 점검 관리사항

- 표준모델에서 정한 규격에 맞지 않는 표고재배시설은 자연재해시 국가 지원 복구대상에서 제외됨을 적극 홍보
- 결속·버팀목세우기 등 사전예방조치 실시

□ 기타 피해발생 우려 시설 점검(축대,옹벽,대형간판등)

- 위험지역내 접근금지 및 위험표지판 등 안전시설 설치
- 위험시설의 응급 보수·보강 등 조치
- 노후간판은 사전에 철거조치나 결박토록 홍보

나. 방재물자 확보·비축 및 동원장비의 지정관리

1) 제설장비, 인원, 자재 배치현황

- 제설자재

물자명	보관장소	보관량	연락처	비고
염화칼슘	군 청	2,500포	970-6723	
모래	전 노선	350/700m ³		

- 제설인력

위치	인원수	연락처	비고
군청(수로원)	14	970-6725	
군청(미화원)	22	970-7132	
군청(기타)	550	970-6732	

2) 장비현황

장비명	보관장소	대수	연락처	비고
덤프	군청	1	970-6723	
백호우	군청	1		
삼날(탈부착용)	읍면	45 (트랙트용)		

3) 점검 및 관리

- 보관자재는 내구연한 및 보관상태를 수시 점검하여 불량자재의 폐기처분 및 부족자재는 강설기 전까지 확보
- 자재의 관리
 - 자재의 보관상태를 수시 점검, 부패예방
 - 보관창고내에 자재수불대장 비치 및 관리책임자 지정 관리

4) 점검시기

- 상시대비체제 기간중 : 10월부터 익년 4월까지, 1회 이상
- 사전대비체제 및 비상단계 기간중 : 11월부터 3월까지, 수시점검

다. 봉사단체 및 유관기관 협조체제 구축

자원봉사단체 지원·협조체제 구축

- 의료종사자 확보(의료 분야별로)
- 긴급 대응에 필요한 인력 확보(분야별, 기능별, 지역별 등으로 구분)
- 자원봉사에 대한 사전교육 실시(안전교육, 주의사항)

유관기관 소관업무 지원·협조체제 구축

- 비상근무태세 확립 협조
- 도로 복구의 순서를 결정하고 관계기관 및 건설업협회 등과 협조
- 전기분야(감전, 누전, 정전 등)
- 통신분야(점검, 연결, 소통 등)

2. 대응단계

가. 인명구조 및 고립예상지역 대책

인명구조 유관기관 협조(헬기지원 등)

- 재난이 발생했을 때 최 인근 소재 119구조대, 산악구조대등이 즉각 동원될 수 있도록 협조체제 구축

부상자 후송대책

- 응급구조 대상·지역 및 조치사항 확인
- 의료소 설치의 장소, 시기, 규모 확인
- 인근 의료기관 협조사항 확인
- 거점급수의 위치 선정
- 부상자 응급수송에 필요한 교통수단 점검

나. 응급진료·구호 및 이재민 보호대책

응급진료 및 응급환자 수송대책

- 현장에 의료구호소를 설치하고 중상자에 대한 응급처치
- 후방의료기관에의 운송순위결정, 수송곤란자 및 경상자에 대한 의료실시
- 현장응급의료소의 소장이 119구급대, 의료기관구급차 등에 요청, 후방의료시설까지 운송 조치
- 통신망 단절로 피해지역 의료기관의 상황파악이 곤란할 경우에 대비 원활한 수송등을 위한 정보 수집

응급의료기관 확보 및 협조사항

- 보건복지부에서 지정관리하는 응급의료기관으로 한정하여 선정
- 단수, 정전등으로 인하여 의료활동 불가능에 대비 의료시설에 대한 라이프라인 대책 수립 추진

사체처리 대책

- 사고원인 및 신원확인
- 시신 운구시 운송방법·수단 등 강구
- 경찰서, 병원 등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

생필품 등 구호물자 확보비축 및 공급대책

- 구호물자(양곡, 비상식량, 의류품, 모포, 천막, 생필품 등)중 부족물

자는 폭설전 까지 전량 확보

- 구호물자 중 변질우려가 있는 양곡류 등은 현금으로 확보후 유사시 즉시 구입 사용
- 구호물자 수불대장 및 관리책임자 지정관리
- 지역 특성, 재해 유형에 맞는 구호세트 확보조치

□ 구호물품의 접수 및 배분계획

【접수계획】

-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임박한 물품의 확인
- 이재민들에게 현실적으로 쓸모없는 물품 여부
- 이재민의 지역특성에 어울리지 않는 물품 여부
- 먼지나 오물이 묻어 있어 상점의 재고를 정리하는 느낌의 물품
- 가전제품의 경우, 불량품 확인 및 요즘 사용하지 않는 구시대 물품
- 같은 종류와 크기를 무더기로 보내온 경우(의류등)
- 운반비를 지불하지 않은 물품
- 보관이 어려운 물품(쉽게 부패하는 물품 접수하지 말것)
- 특정 지역이나 사람이 지정해 보내온 물품(직접배달)

【배분계획】

- 부패하기 쉬운 품목은 재해발생 즉시 조달
- 가구별 구호세트는 세대단위로 작성

□ 이재민 수용시설 지정 운영관리

- 건물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사전 협의 후 지정
- 수용시설의 규모에 적합하도록 이재민 대피 및 수용계획수립
- 이재민 발생시 즉시 수용가능 하도록 관리상태 수시 점검
- 최근 10년간의 이재민발생수를 기준으로 책정하되, 지역실정과 재해발생빈도 등을 고려하여 지정
- 이재민수용시설의 수도·세면시설, 화장실, 샤워장등 기본생활시설 설치·작동상태 확인
- 이재민수용시설의 관리자 지정 및 비상연락체계 구축

□ 주민대피 및 유도계획

- 대피소 수용인원 등 실태 확인
- 노약자, 환자의 강제·우선대피 등 대책 강구

- 대피소 정전에 대비한 준비물, 대피명령 전달방안 강구
- 대피명령 결정의 시기와 적절성에 대한 지휘부 구성
- 야간 대피에 대한 대책 강구(대피소 위치, 이동방법 등)
- 대피에 필요한 사항 점검(경로, 위치, 준비물) 및 홍보
- 주민 대피장소의 위치 확인 및 대피안내자(지역 지도자, 담당공무원 등)의 신원 파악

□ 대피소 운영 및 안전대책

- 대피소 이용에 대한 상황 파악(유관기관 통보, 경계 순찰)
- 대피소시설 설비 피해상황 파악(화장실, 전기, 수도, 가스, 냉난방)
- 이재민의 수용 및 관리에 대한 업무추진(세대원 수, 이재민 수)
- 응급주택 관리(용지선정, 수량과 규모, 입주자 선정, 사유지 사용 협조)
- 이재민의 대피소 생활지도 및 통제

□ 자원봉사단체의 협조 및 역할분담 방안

- 자원봉사의 활용 계획 수립(특기, 보유장비, 구성원 파악, 부여할업무내용)
- 봉사활동에 필요한 개인소지 필요물품 및 휴대가능 자재 준비
- 장기봉사에 따른 지원상황 점검
- 내 집앞 및 골목길 제설작업 동참

다. 생활필수시설 긴급복구 대책

□ 통신두절 대책

- 방재행정 전용회선 확보
- 야간 정전시 대체 통신수단의 확보
- 긴급통신시설 확보(유관기관, 아마추어무선, 위성전화)

□ 전기시설 대책

- 자연재해 취약시설 안전진단 및 항구보강대책 수립
- 주요 전력시설 침수예방 및 배수펌프장 안전가동 대책 확립
- 유사시 전력시설의 원활한 가동을 위한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강화

□ 가스시설 대책

- 재난 대비 사항 포함한 비상대응계획 작성
- 기상특보 발령시 가스시설에 대한 홍보 강화

- 취약시설 안전점검·순찰·보수 강화
- 가스배관망 안전관리 정보시스템 확대구축

□ 급수 및 상하수도시설 대책

- 급수, 상수도 시설피해 파악
- 상수도시설 피해발생시 수도대행업체에서 우선복구
- 급수운반차량을 관계기관에 협조 요청
- 의료시설, 대피소 등 중요시설의 급수상태 확인

□ 교통두절 대책

- 교통두절 예상지구에는 사전에 우회도로를 지정하여 주민고립 예방
- 방재물자 의약품 수송에 필요한 인력과 차량 확보

□ 각급 유관기관 소관업무 협조·지원사항

- 비상근무태세 확립 협조
- 도로 복구의 순서를 결정하고 관계기관 및 건설업협회 등과 협조
- 가스분야(점검, 공급, 밸브작동 등)
- 전기분야(감전, 누전, 정전 등)

□ 주민협조요청 및 상황전파(복구상황 등)

- 읍면동 또는 이장 책임 하에 사전에 비축한 수방자재와 지역주민을 동원하여 제설 작업 실시
- 내 집앞 및 이면도로 제설작업에 동참

라. 대설대책

1) 도로별 제설대책

가) 공통사항

- 제설장비의 확보 및 사전 점검·정비 철저
 - 제설차, 덤프트럭, 모래살포기, 제설삽날(덤프트럭, 트랙터용), 굴삭기, 청소차 등
- 제설작업요원의 제설취약구간현장 적정 배치
 - 조종원, 도로보수원, 미화원 등 기타 제설요원
- 제설자재의 확보·비축 및 적사항 설치 관리
 - 염화칼슘, 모래주머니, 모래 등 제설자재의 적정량 확보

- 교량 또는 노건이 협소하여 적사함 설치가 곤란한 지점은 영화칼슘, 모래주머니 등으로 현장 비축
- 적사함은 응달부, 고갯길, 곡선부, 등 제설취약지점에 설치하고 영화칼슘, 모래, 삽 등 비치

○ 도로등급별 제설작업 우선순위 선정 및 집중 제설관리

- 일반국도, 지방도 및 군도(건교부 및 도, 군)
 - 국도 및 대로와 시·군간 연결도로
 - 지방도 및 군도로서 읍면간 연결도로
 - 농어촌도로등 기타도로로서 마을간 연결도로

□ 제설지연 원인

- 상습 정체구간은 폭설시 제설차량과 통행차량이 서로 뒤엉켜 제설작업이 어려움
- 도로경계구간에서 제설작업이 동시에 실시되지 않고 한쪽 구간만 제설작업 실시로 도로경계 구간의 교통소통이 지연되고 제설효과도 낮음

□ 인근 자치단체 조치사항

- 유관기관 제설 공조체제 구축
 - 경상남도 ⇔ 산청군 ⇔ 산청군, 거창군, 남원시
- 강설전 또는 시작단계부터 영화칼슘 살포 및 초동단계에서부터 교통대책을 강구하고 사전 제설작업 실시
- 대설시 통행차량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시가지 진출·입도로 등 제설취약구간에 대하여 우선 제설 실시
- 도로경계구간의 동시 소통을 위하여 도로경계 인접 시군과 공동으로 제설작업 실시
 - 합동제설작업을 위한 제설자재 비축 및 제설장비 급유 등 공동사용 검토
- 교통소통 취약개소 기동순찰반 운영 및 교통통제 입간판 설치
- 야간강설 예보시 사전조치
 - 제설 필수요원 교통취약지점 인근 사무실, 여관 등 합숙대기
 - 제설차 배치 및 영화칼슘 등 현장비치
 - 마을앰프방송 등 방송매체를 적극 활용하여 홍보강화

- 대설주의보 발령시 대중교통 대책
 - 자가용 이용억제 및 대중교통수단 이용계도(마을앰프 등)
 - 교통통제 및 흐름 조정(경찰서)
- 대설경보 발령시 대중교통 대책
 - 자가용 이용억제 및 대중교통수단 이용계도(마을앰프 등)
 - 교통통제 및 흐름 조정(경찰서)
- 내집 앞, 내점포 앞 도로의 눈은 내가 치우는 주민의식 제고
 -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 적설량 등 기상상황에 따른 단계별 교통통제

- 1단계 : 적설량 2cm미만, 시거장애 100m미만
 - 교통제한 : 평상시 운행속도의 20% 감속운행
 - 조치계획
 - 인근 시군과 협조하여 도로정보 홍보
 - 안내전단 배부 및 안내간판 설치
 - 기타 홍보활동
- 2단계 : 적설량 2cm이상, 강설·안개 등으로 시거장애 20m미만
 - 교통제한 : 평상시 운행속도의 50% 감속운행
 - 조치계획
 - 인근 시군과 협조하여 도로정보 홍보
 - 안내전단 배부 및 안내간판 설치 및 기타 홍보활동
- 3단계 : 적설량 10cm이상, 시간당 적설량 3cm이상이 6시간 이상 지속, 강설·안개 등으로 시거장애 10m 미만
 - 교통제한 : 교통제한 및 운행정지
 - 조치계획
 - 제설, 노면상태, 기상 및 교통 상황에 따라 긴급통행제한 시행 후 경찰서 통보
 - 안내전단 배부 및 안내간판 설치
 - 읍면 장은 관내상황을 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 수시보고
 - 인근 시군과 협조하여 도로정보 홍보

나) 일반국도 기타도로 등 제설대책

□ 제설지연 원인

- 제설기관의 관할구역과 노선연장이 방대하고 인력 및 장비부족으로 신속한 제설작업 곤란
- 교통두절 취약구간에 대한 제설작업 우선 실시로 외각 간선도로의 제설작업 지연
- 관내 구간의 교통 혼잡으로 제설작업이 어려움

□ 조 치 사 항

- 대설, 결빙 등으로 인한 교통두절 예상구간 특별관리 및 취약구간 집중관리
 - 고지대 급커브 및 경사도로로서 폭설시 교통소통에 지장이 있는 취약구간을 지정하여 집중관리
 - 우회도로 사전지정 및 제설인원, 장비 자재 등 사전확보
- 신설 도로 및 확장개통구간에 대한 제설대책 강구
- 상황별 교통통제 실시(전면 또는 부분통제)
 - 강설 초기단계부터 교통제한을 실시하고, 적설량 10cm이상 또는 교통통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현지상황에 따라 경찰서 등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통제실시
- 교통량 및 지역 여건 등 중요도에 따른 제설우선 순위
 - ① 국도 및 대로 등 구간 연결도로
 - ② 지방도 및 군도로써 읍·면간 연결도로
 - ③ 농어촌도로등 기타도로로서 마을간 연결도로
- 폭설시 농·축·수산물 수송지연에 따른 물가폭등 방지를 위한 간선 및 지선수송도로 제설방안 강구
- 군 및 유관기관 제설 공조체제 구축
 - 군 ⇔ 도로관리사업소 ⇔ 국도유지건설사무소 ⇔ 군부대 등
- 도로등급별 제설 담당기관(도로관리청의 책임제설 원칙)
 - 일반국도 : 건교부 국도유지건설사무소 (진주)
 - 지방도 및 군도 : 도 및 군·읍·면사무소

2) 주택가 등 제설대책

- 중요대상지역 : 주거 및 상가밀집지역, 시내 간선도로

- 강설확률 80%이상시 초동단계에서 교통대책 강구
 - 영화칼슘 사전 살포
 - 시내 가로변 주,정차 통제
 - 시내 중심에 있는 학교운동장을 주차시설로 사전 협의 지정운영
- 교통두절 취약지점에 기동순찰조 편성운영 및 교통안내 입간판 설치
- 야간 강설예상시 사전조치 강화
 - 제설 필수요원(장비운전원, 수로원등)의 교통두절 취약지점 인근지역 대기
 - 제설장비 및 자재현장 기동 배치
 - 지역방송등 언론매체를 적극 활용하여 주민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홍보활동 강화
- 도로노면 적설량 10cm이상시
 - 자가용 이용을 억제하고 대중 교통수단을 이용토록 계도활동 강화
 - 신속한 제설작업을 위해 경찰합동으로 도로변 주정차 억제 및 견인조치
 - 제설작업 구간 교통통제 및 흐름조정(지역 경찰서 협조사항)
- 내 집, 내 점포앞 눈은 내가 치우기 홍보

3) 농어촌 등 시설피해 방지대책 지도

가) 비닐하우스시설 피해경감대책

□ 피해발생 원인

- 비닐하우스 시설의 구조적 취약성 ⇒ 하중지지 불가(적설, 강풍시)
 - 농가 보급형 표준설계도가 보급되어 있으나 비용이 많이 들어 일부 농가를 제외하고 규격을 무시하고 설치
 - ┌ 표준설계서 : 폭 4.8~7.5m 높이 2.3~3.9m 서까래간격 50~120cm
 - └ 실제설치 : “ 8~10m “ 2.5~3.5m ” 80~90cm
 - 재래식 비닐하우스시설은 대부분 영세농가에서 투자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치하고 있으며, 고정식시설 보다는 단기간 임시 사용할 수 있는 이동식으로 설치
- 휴작시에는 난방보온을 하지 않고 있어, 비닐하우스시설의 눈이 녹지 않아 적설하중으로 인한 피해 가중

□ 농업지원과 조치사항

《단기대책》

- 폭설시 비닐하우스시설의 눈 쓸어내리기, 난방기 가동, 커튼이나 2중비닐을 열어 외부필름에 열이 빨리 전달되도록 하는 등 사전대비 철저
- 하우스 밴드(끈)등 느슨해진 것은 팽팽하게 당겨매기
- 특히 연동식 비닐하우스는 적설 피해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강설 초기부터 적극 가온을 실시하고 폭설로부터 시설물 보호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비닐을 찢어서 눈 제거
- 보조지지대의 활용으로 폭설에 의한 피해 대비
- 비닐하우스 설치기준 및 행정지도 강화
 - 새로 설치하는 비닐하우스는 반드시 「표준설계도」에 의한 규격 설치를 준수하도록 지도강화
 - 대국민 교육실시
 - 비닐하우스 설치요령, 재료구입방법, 재난예방관리 등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계몽 및 홍보실시

《장기대책》

- 비닐하우스시설 설치기준 강화
 - 재래식하우스에서 농가보급형 비닐하우스 설치로 개량권장
 - 300평 이상 비닐하우스 시설은 읍·면·동 신고제 실시
 - 이동형 비닐하우스 시설에 대한 표준도 개발·보급
 - 미신고 또는 무허가시설물 피해발생시 복구비 지원 제한
 - 간이축사용 등의 비닐하우스 설치 억제
- 첨단기술농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고부가가치,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 구축
- 지시불이행 농가에 대한 피해 발생시 복구비지원 제한 방안 강구

4) 폭설대처 및 대국민 행동요령 홍보

(1) 차량운전자는

- 자가용 차량이용을 억제하고 버스등 대중교통을 이용합시다.

- 설해대비용 안전장구(체인, 모래주머니, 삽 등)를 휴대합시다.
- 라디오, TV등을 항상 청취하여 교통상황을 수시파악 운행합시다.
- 간선도로의 주차는 제설작업에 지장이 되니 도로변 주차를 삼갑시다.
- 브레이크 사용시에는 엔진브레이크를 사용합시다.
- 차간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브레이크 사용을 자제합시다.

(2) 보행자는

- 눈길을 걸을 때에는 미끄러우니 주머니에 손을 넣지 맙시다.
- 운동화등 가급적 미끄럽지 않은 신발을 착용합시다.
- 보행중에는 휴대전화 통화를 삼갑시다.
- 야간보행은 위험하니, 조속히 귀가합시다.

(3) 가정에서는

- 내 집앞, 내 점포앞의 눈은 내가 치워 건전한 시민정신을 발휘합시다.
- 어린이, 노약자는 외출을 삼갑시다.
- 30cm이상 적설시 차량, 대문, 지붕 및 옥상위에 눈을 치웁시다.
- 집 주위 빙판길에는 모래등을 뿌려서 미끄럼사고를 예방합시다.
- 내 집앞, 내 점포 앞 도로의 눈은 내가 치우는 건전한 주민정신을 발휘합시다.
- 노후 가옥은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붕괴사고를 예방합시다.

(4) 직장에서는

- 평상시보다 조금 일찍 출근하고 일찍 귀가합시다.
- 출,퇴근시에는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합시다.
- 자가용 운행을 억제합시다.
- 내 직장 주변의 눈은 내가 치워 건전한 시민 정신을 발휘합시다
- 차도쪽으로 나와서 차량에 승차하여 타 차량의 주행을 방해하지 맙시다.

(5) 농촌에서는

- 붕괴가 우려되는 비닐하우스등 농작물재배시설은 받침대보강 또는 비닐 찢기등의 보호조치를 합니다.
- 비닐찢기 작업시 안전사고 유의
- 작물을 재배하지 않는 빈 비닐하우스 비닐을 걷어냅니다.
- 라디오, TV등을 청취, 폭설등 기상상황을 수시로 청취

3. 복구단계

가. 시설물 응급복구 대책

※ 방재관련 시설물을 최우선 복구

1) 응급복구 인력 및 장비 동원체계

가) 응급복구 인력

- 산청군 공무원 전직원 교대근무 및 유관기관 가용인원 교대근무
- 자원봉사단체 지원인력 및 군부대 지원인력.
- 인근지역 지자체 지원인력

나) 응급복구 장비동원 순위 : 동원장비현황 참고.

- ① 산청군 보유 관용장비
- ② 유관기관 보유 장비
- ③ 군부대 지원 장비
- ④ 민간보유 장비

2) 기타시설물

- 기업시설의 피해상황 파악 및 복구
- 하천시설 피해상황 파악 및 복구
- 주택의 피해상황 파악 및 복구
- 응급대책용

3) 공공시설물 복구 순서

- 도로, 교량, 공공시설물 피해상황 파악 → 응급복구, 항구복구, 응급대책수립 → 복구반 및 장비 동원 → 복구 실시 → 2차 재해대비책 마련
- 가스, 상수도, 하수도, 기타 라이프라인 시설피해상황 파악 → 작업순서결정 → 복구 실시
- 재해발생시는 즉시 응급복구 대상시설물에 대한 응급복구계획을 수립.

나. 방역 및 보건위생 대책

1) 폐사가축 처리방안

- 폐산된 가축은 폐기물관리법 및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거 소각 또는 매몰.
- 긴급 방역비를 확보하여 소독약, 예방약 등을 사전에 비축
- 가축전염병 예찰 강화 및 예방주사 실시
- 동물사체 매립 장소 : 임시적환장 활용.

2) 부상자 진료 및 예방접종

가) 기동 의료반 편성운영

□ 임 무

- 부상자, 응급처리 및 환자 분류
- 대량 환자 발생지역의 긴급 의료지원
- 기타 필요한 의료지원

나) 간이진료소 설치 운영

□ 임 무

- 응급환자 치료 및 후송
- 전염병환자 색출 및 예방

□ 편성기준

- 인 원

계	의 사	간호사	행정요원	운전기사	임상병리사
6	1	2	1	1	1

- 장 비

구 급 세트	구급침낭	천 막	차 량	비 고
1	1개	1조	1대	

□ 설치 장소

- 이재민 공동대피소
-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다.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1) 자체피해조사 및 합동조사

가) 피해조사반 구성

- 본부장의 지시에 따라 해당업무 실과별로 피해조사반을 구성.
- 피해조사반장은 해당실과소장이 되며, 반원은 업무담당 실무자로 구성.
- 피해조사항목을 면밀히 파악하여 조사.

나) 피해조사 일반적 유의사항

□ 피해금액 산정 및 조사방법

- 피해조사는 현지 답사 후 시설별로 조사하고 개소별로 피해액을 산정
- 항구복구계획과 상관없이 순수한 피해부분에 대해서만 피해물량 및 피해금액 산정
- 세부공종별로 산출기초를 작성하여 재해대장에 기재 또는 별지로 첨부
- 자연재해조사 및 복구계획수립지침에서 정한 피해시설은 조사대상에서 제외
- 시설물 노후 및 관리소홀로 인한 재해지구는 대상에서 제외시킬 것.
- 도로대장, 하천 기성제 대장 및 각종 시설물관리대장 등을 참조하여 관리 등급 등을 조사하고 피해확인이 애매모호한 시설은 시설물관리대장을 재해대장에 첨부
- 공사하자 기간내 시설물은 부실시공으로 인한 하자여부를 엄밀히 검토한 후 결정
- 피해현지 조사양식은 사전에 별도 작성하여 비치
- 피해액 산정 : 시설별 세부공종별 피해물량 × 기준단가
 - ※ 특히 복구소요에 필요한 금액을 피해액으로 계상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부대공, 자재대, 부과세, 관리비, 이윤 등은 단가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중으로 산정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기 바람.

□ 사진촬영방법

- 피해전경을 가능한 자세히 촬영하여 향후 기록보존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연장이 긴 지구는 가능한 연속사진 촬영
- 우선 전반적인 피해상황이 잘 나타나도록 원경을 촬영
- 세부적으로 피해부분이 설명될 수 있는 근경을 부분별로 촬영
- 재해대장에 3*5인치의 크기로 부착
- 사진만으로 피해유무, 물량, 피해종류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촬영
- 피해물량이 많은 지구는 연결사진 촬영을 실시
- 피해사진은 디지털카메라로 촬영
- 피해범위가 큰 것 등에는 점모를 표시하는 것 외에, 적당히 종간의 피해상황이 보이는 사진을 첨부한다. 사태 등의 전모를 나타내는 경우는, 수매를 연결해 합쳐도 좋다.
- 와이드 촬영을 하면 양 사이드(기종점)가 불선명해지기 쉽기 때문에 피해야 한다.
- 횡단지형이 쉽게 판단되도록 노력할 것, 또한 공중 및 복구 공법에 따라 부분 촬영을 행할 것.
- 비슷한 지점을 일괄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모를 나타내는 것 이외에, 개개의 장소가 판정 가능한 사진이 필요하다.
- 전후시설 등의 상황이 판명되도록 하고, 기종점으로부터 상 하류(전후) 방향의 사진을 촬영해 둘 것.
- 촬영할 때에는 피해장소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초목 등이 벌채를 행할 것. 또한 환경보전의 관점으로 부터, 크히 합동조사상 또는 공사의 실시상 지장을 받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 남기도록 할 것.

- 피해 전 연장을 알 수 있도록 하며 기종점에는 반드시 폴 등을 세워 촬영할 것.
- 옹벽, 호안 등의 구조물의 피해에 대해서는 파괴상황을 스타프, 폴 등으로 표시하여 촬영할 것. 특히 균열 등은 치수를 알 수 있도록 할 것. 또 옹벽의 경사변경 등에 대해서는 폴 등으로 표시하여 촬영할 것.
- 범람 등에 따른 일반피해의 사진을 첨부할 것.
- 재해로부터 합동조사를 하기까지는 어느 정도의 시일을 요하기 때문에 특히 피해의 사실이 분간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재해 직후 가능한 빠른 기회에 촬영해 둘 것.
- 응급공사 등 합동조사 전에 착공하는 경우는, 피해의 사실, 형상, 치수, 수량 등이 판정 가능한 사진을 촬영하여 확인한 후 착수할 것. 특히 기종점에 대해서는 사진만으로 그 위치가 확인 가능하도록 충분히 배려하여 촬영할 것.
- 붕토를 제거하기 전에 사진을 촬영할 것
- 필름 또는 메모리는 재해대장과 함께 보관할 것.
- 감조부 및 취수언 상류부의 사진은 수위가 낮을 때에 촬영할 것.
- 사면 등의 경사면에는 계단상으로 폴, 축척을 사용하여 단면의 폭, 길이가 판명될 수 있도록 촬영할 것.

2) 피해유형별 복구비 지원

□ 기본방침

현행 재해복구비용 산정기준 상에 제시된 공공시설물의 종류는 도로, 교량, 하천, 상하수도시설, 환경시설, 국립공원시설, 농업시설, 항만어항시설, 학교시설, 산림시설, 철도시설, 소규모시설, 소하천, 군시설, 문화재시설, 기타시설, 우정시설 등으로 구분되나, 공학적으로 공종판단이 불필요하거나 재해복구비용 산정기준상에 단위품목, 기계류 등으로 분류되어 있는 사항들, 조사상의 어려움이 미미한 것, 군시설과 같은 특수한 경우이거나, 문화재시설등과 같이 매우 전문화된 지식을 가진 인원이 조사하여야만 하는 경우 등은 기존의 피해조사기법 및 복구비용 산정기준을 사용한다.

□ 복구비 지원 참고사항.

- 이재민 구호비 지원기준 참고
- 국고 및 의연금 지원기준 참고
- 행정자치부 국립방재연구소 피해조사체계 개선방안 지침서 참고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자연재난복구비용 산정기준 참고

3) 피해유형별 복구계획 수립

가) 응급복구

- 자연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유형별 복구계획은 별도로 수립하지 않고 상기에 수립된 복구계획을 사용.
- 응급복구는 임시로 복구하여 차량통행 등 피해시설의 사용목적에 어긋남이 없도록 조치

나) 완전복구

- 재난발생 후 피해조사 계획 및 절차에 따라 조사된 결과를 근거하여 복구 계획을 해당업무 실과별로 수립
- 재난상황 종료 후 자체 피해조사반을 편성하여 상세히 조사하고 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재난발생 시에는 재난이 재발되지 않도록 복구함.

다) 복구대상

- 주택복구
- 농림시설·농작물 및 산림작물의 복구
- 축산물 증식시설의 복구와 가축등의 입식
- 공공시설의 복구
 - 농업시설
 - 학교시설
 - 산림시설
 - 군사시설, 문화재시설
 - 우정시설, 기타시설

제3절 황사

1. 대비단계

가. 재난상황 홍보방안 및 자율방재의식 고취

1) 예측 및 정보 전달체계 구축(예·경보)

가) 점검사항

- 인터넷 및 전화, 팩스 정상 작동 여부 검토
- 비상연락망 체계 점검 및 검토

나) 예측 및 정보 전달체계 현황

- 전화를 통하여 확인
 - 기상청 : 국번 없이 131
- 기상청 황사 정보 홈페이지 (<http://yellow.metri.re.kr>)
- 인터넷 통신 현황
 - 소방방재청 : <http://www.nema.go.kr/>
 - 기상청 : <http://www.kma.go.kr/index.jsp3>
 - SMS 서비스 : <http://sms.siheung.go.kr>

2) 유관기관 및 방송사에 상황전파 및 보도요청

가) 점검사항

- 약 기상에 대한 사전 안내 홍보 실시 요청 : 유관기관 및 방송사
- 일몰시간 이전 등산객 하산 유도(야간 산행 통제).
- 도로 이용자의 위험방지 및 이해와 협력을 구하는데 필요한 사항 홍보 요청.
- 국민행동요령 등 홍보.

나) 추진계획 및 언론매체

- 기획감사실 공보담당
- 홍보 방향
 - 신문·방송등 언론매체 및 정부 보유매체를 통한 홍보.
 - 방재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을 통한 일사불란한 상황전파.
- 언론매체를 통한 대국민홍보
 - 기상특보 및 경보의 신속한 보도.
 - 방재의식 산청, 국민행동요령, 국민운동전개 등 보도협조.

나. 황사대처 국민행동요령 홍보물전파(가정, 학교등)

- 주 관 : 기상청
- 발령권자 : 기상청장
- 발령시기 : 미세 먼지 오염도 예측

종류	주 의 보	경 보
황 사	황사로 인해 1시간평균 미세 먼지(PM ₁₀) 농도 400 μ g/m ³ 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황사로 인해 1시간평균 미세 먼지(PM ₁₀) 농도 800 μ g/m ³ 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 황사발생 확인 3가지 방법
 - ⇒ TV, 라디오 방송매체의 일기예보를 주의깊게 시청(청취)합니다.
 - ⇒ 홈페이지를 이용
 - 기상청(www.kma.go.kr)
 - ⇒ 전화를 통한 확인
 - 기상청 02)841-0011, 02)831-0365 국번없이131
(타지역지역번호 + 131)
- 반상회 회보에 『황사대비 국민행동요령』 게재
- 『황사대비 국민행동요령』 팸플릿, 스티커, 포스터 배부
- 『황사대비 국민행동요령』 홍보 비디오 활용 독려
- 각급 기관 홈페이지에 『황사대비 국민행동요령』 게재
- 재해대비 전광판을 이용한 『황사대비 국민행동요령』 홍보

2. 대응단계

가. 방역 및 보건위생 대책

1) 방역 실시계획(방역물자 확보 등)

가) 취약지 방역소독(살충, 살균)

□ 방역시기

- 유충구제사업 실시 : 3 ~ 5 월
- 하절기 방역소독 : 5 ~ 10월
- 재해 및 재난 발생지역 : 수시

□ 운영 방식

- 방역반 편성, 운영
- 보건증진과 및 각 읍면별 방역반 : 11반 22명
- 민간방역업체 방역활동 참여 협조

나) 방역비상근무 실시

- 근무기간 : 2012. 5. 1 ~ 10. 31(6개월)
- 근무시간 : 평일 오후 20:00까지 (토요일 16:00, 공휴일 09:00~16:00)
- 근무인원 : 2인 이상 (보건증진과 2)

※ 근무내용

- 전염병 집단발생이 우려되는 집단생활시설 등에 대한 순회점검 및 상주 근무
- 병·의원, 약국 등에 대한 모니터링 확행
- 비상근무기간 중 전염병 관리요원 및 장비의 타 업무 차출 금지

다) 방역소독반별 운영방법

- 산청군보건의료원 방역반 : 관내 취약지 순회 1일 3회 방역소독 실시
- 읍면방역반 : 지역단위로 주 3회 이상 실시
- 민간자율방역반 : 각 방역반과 중복되지 않도록 관내 지역별 방역반별 소독일정 확인실시
- 민간방역업체 : 취약지 집중방역시 지원 협조(유류 및 방역약품 지원)
- 폭우 및 침수지역의 방역소독은 상황에 따라 실시하되 주 2회 이상을 원칙으로 함
- 예방약품 및 방역소독약품 부족시 긴급지원
- 재해지역의 하수구, 화장실, 쓰레기장 등의 해충 서식처나 발생원에 정기적 살충·살균 소독 실시
- 고열 또는 설사환자 등 전염성 질환자는 발생 즉시 보건기관에 신고토록 홍보

라) 방역물자 확보 현황

구 분	살충제(ℓ)	살균제(ℓ)	우물소독약(kg)	비고
산청군	700	50	50	

마) 의료구호

- 재해로 인해 부상을 당한 이재민은 의료보호법에 의거 의료보호 1종대상자로 책정, 국고부담으로 치료
- 재해발생지역의 전염병 예방 및 진료활동 전개
 - 기동의료반 편성·운영
 - 이재민 공동수용소 의료진 상주근무
 - 보건증진과 및 보건지소 등에 비상대기조 편성·운영

바) 식품위생관리

- 식품접객업소
 - 침수된 원재료는 폐기처분
 - 날음식 및 부패·변질 우려가 있는 식품은 판매금지
 - 무표시, 무허가 식품은 사용금지
 - 급수는 수돗물을 사용하고 식수는 끓여서 제공하되 지하수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수질검사를 반드시 실시한 후 급수 실시
- 집단급식소 및 이재민 수용소
 - 수해지역에는 식품위생감시원이 정기 순회하여 식중독 예방
 - 집단 수용시설에는 식품 위생 감시원을 고정 배치하여 급식관리 철저
 - 식수는 반드시 끓여서 제공
 - 오염된 식기류, 도마 등은 차아염소산나트륨을 사용하여 소독하거나 반드시 햇볕에 건조한 후 사용

나. 황사대책

1) 황사 발생 전

가) 노약자 응급대책

- 황사가 실내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창문 등을 점검.
- 실내 공기정화기 및 가습기 등을 준비.
- 외출 시 필요한 보호안경, 마스크, 긴소매 의복 등을 준비.
- 포장되지 않은 식품 등은 운반 시 오염되지 않도록 위생용기 등을 준비.

나)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의 응급대책

- 기상청 등에서 발표한 기상예보를 청취·분석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휴업 또는 단축수업 등을 신중히 검토.
- 학생 비상연락망 점검 및 연락체계 유지.
- 휴업 조치 시 맞벌이 부부자녀에 대한 자율학습대책 등을 수립.
-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황사발생대피 피해예방을 위한 행동요령 지도 및 홍보 실시.

다) 농림 축산

- 목초지 및 방목장에 있는 가축 대피 준비.
- 노지에 방치, 야적된 사료용 벼짚 등에 대한 피복물 준비.
- 동력분무기 등 황사세척용 장비 점검.
- 비닐하우스, 온실 등 시설물의 출입문 및 환기창 점검.

라) 점검사항

- 환자 및 재해약자를 위한 시설 확인.
- 노약자, 환자, 정신지체아의 신원파악 및 강제 대피 방안 강구.
- 전염병에 감염되지 않도록 예방 대책 수립.
- 사회 복지 단체, 마을 노인회 단위 집단대피 계획 수립.
- 지역주민에게 실내공기 정화를 위한 가습기 공기청정기 등을 준비 시킨다.

2) 황사 발생 중

가) 노약자 응급대책

- 가급적 외출을 삼가되, 외출 시 보호안경, 마스크, 긴소매 의복을 착용하고, 귀가 후 손과 발 등을 깨끗이 씻고 양치질.
- 황사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창문을 닫고 실내공기의 정화 및 가습기를 사용하여 실내 적정습도를 유지.
- 황사에 노출된 채소, 과일 등 농수산물은 충분히 세척 후 섭취.
- 식품가공, 조리 시 철저한 손 씻기 등 위생관리로 2차 오염 방지.

나)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의 응급대책

-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실내 활동 금지 및 단축수업 또는 휴업.
- 황사 발생 기간 중 실외학습, 운동경기 등 중지 및 연기 조치.

다) 농림 축산

- 운동장, 방목장에 있는 가축은 축사 안에서 신속히 대피시켜 황사에 노출방지.
- 축사의 출입문 및 창문을 닫아 황사유입을 최소화하여 외부의 공기와 접촉을 가능한 적게 할 것.
- 노지에 방치된 사료용 건조, 볏짚 등을 비닐, 천막 등으로 덮기.
- 비닐하우스, 온실 등 시설물의 출입문 및 환기창 닫기.

라) 점검사항

- 이장, 면장 지역주민과 협력하여 재해약자의 수용상황, 자택체류 상황 파악.
- 대피소에 보건원이나 자원봉사자 파견.
- 재해 상황에 따라 2차 피해가 없는 곳으로 대피시키고 시·도에 통보.
- 기상예보를 이용하여 지역 설정에 맞게 휴업 또는 단축수업을 검토한다.
- 등교 중인 학생의 건강, 피해상황을 파악하여 조치한다.
- 실내로 황사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조치할 것을 홍보한다.
- 황사노출 및 오염된 물품은 세척하고 음식물 소독을 홍보, 교육한다.

3) 황사 종료 후

가) 노약자 응급대책

- 실내공기의 환기 및 환경 정화.
- 황사에 노출 및 오염된 물품 등은 충분히 세척 후 사용.

나)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의 응급대책

- 학교 실내·외 방역 및 청소를 통한 먼지 제거
- 학생건강 등 피해상황 파악 및 사후조치.
- 감기, 안질 등 환자는 쉬게 하거나 일찍 귀가 조치.
- 황사 발생 후 발생할 수 있는 전염병에 대한 예방접종 등 실시.

다) 농림 축산

- 비닐하우스, 축사 등 시설물, 방목장 사료 및 가축과 접촉되는 기구류 등은 세척 및 소독 실시.
- 가축이 황사에 노출되었을 때는 몸체에 묻은 황사를 털어낸 후 구연산 소독제

등을 이용 분무소독 실시.

- 황사가 끝난 후 2주일정도 질병의 발생유무 관찰.
- 구제역 증상과 유사한 병든 가축 발견 시 신고

라) 점검사항

- 피해상황을 도지사에게 보고한다.

다. 황사대비 대국민행동요령 TV등 홍보

- 단계별 국민행동요령을 작성, 각종매체를 통하여 적극 홍보하여 국민 스스로가 황사로부터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국민의식 제고 주력
 - TV·라디오방송, 신문, 반상회 회보, 홍보 전광판, 마을앰프 등을 통한 국민과 함께하는 홍보
 - 자체 팸플릿, 스티커, 포스터 등 홍보물 제작 주민 홍보

3. 복구단계

가.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1) 자체피해조사 및 합동조사

가) 피해조사반 구성

- 본부장의 지시에 따라 해당업무 실과별로 피해조사반을 구성.
- 피해조사반장은 해당실과소장이 되며, 반원은 업무담당 실무자로 구성.
- 피해조사항목을 면밀히 파악하여 조사.

나) 시설별 피해조사 항목

- 사유시설 및 인명 피해조사
- 공공시설 조사

다) 피해조사 일반적 유의사항

피해금액 산정 및 조사방법

- 피해조사는 현지 답사후 시설별로 조사하고 개소별로 피해액을 산정
- 항구복구계획과 상관없이 순수한 피해부분에 대해서만 피해물량 및 해피금액 산정
- 세부공종별로 산출기초를 작성하여 재해대장에 기재 또는 별지로 첨부
- 자연재해조사 및 복구계획수립지침에서 정한 피해시설은 조사대상에서 제외
- 시설물 노후 및 관리소홀로 인한 재해지구는 대상에서 제외시킬 것.
- 피해현지 조사양식은 사전에 별도 작성하여 비치
- 피해액 산정 : 시설별 세부공종별 피해물량 × 기준단가
 - ※ 특히 복구소요에 필요한 금액을 피해액으로 계상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부대공, 자재대, 부과세, 관리비, 이윤 등은 단가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중으로 산정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기 바람.

2) 피해유형별 복구비 지원

- ※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참고
(일부개정 2004. 7. 24. 대통령령 제18480호)

□ 기본방침

현행 재해복구비용 산정기준 상에 제시된 공공시설물의 종류는 도로, 교량, 하천, 상하수도시설, 환경시설, 국립공원시설, 농업시설, 항만어항시설, 학교 시설, 산림시설, 철도시설, 소규모시설, 소하천, 군시설, 문화재시설, 기타시설, 우정시설 등으로 구분되나, 공학적으로 공종판단이 불필요하거나 “재해복구비용 산정기준” 상에 단위품목, 기계류 등으로 분류되어 있는 사항들, 조사상의 어려움이 미미한 것, 군시설과 같은 특수한 경우이거나, 문화재 시설등과 같이 매우 전문화된 지식을 가진 인원이 조사하여야만 하는 경우 등은 기존의 피해조사기법 및 복구비용 산정기준을 사용한다.

□ 복구비 지원 참고사항.

- 불임의 이재민 구호비 지원기준 참고
- 불임의 국고 및 의연금 지원기준 참고
- 행정자치부 국립방재연구소 피해조사체계 개선방안 지침서(2003.11) 참고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자연재난복구비용 산정기준 참고

3) 피해유형별 복구계획 수립

가) 응급복구

- 자연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유형별 복구계획은 별도로 수립하지 않고 상기에 수립된 복구계획을 사용.
- 응급복구는 임시로 복구하여 차량통행 등 피해시설의 사용목적에 어긋남이 없도록 조치

나) 완전복구

- 재난발생 후 피해조사 계획 및 절차에 따라 조사된 결과를 근거하여 복구 계획을 해당업무 실과별로 수립
- 재난상황 종료 후 자체 피해조사반을 편성하여 상세히 조사하고 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재난발생 시에는 재난이 재발되지 않도록 복구함.

제4절 가 목

1. 대비단계

가. 유관기관 협조체제 구축

1) 유관기관 소관업무 지원·협조체제 구축

가) 지원 및 협조 사항

- 방송기관에 상황전달 협조요청
- 이동수단의 확보와 협력 요청(헬기)
- 교통종합정보센터를 운영하고 방송기관에 교통방송 유도
- 대한적십자사에 이재민 구호활동 요청
- 필요시 인근 지자체에 협조 요청
- 유관기관이나 사회단체에 협조요청
- 인근 군부대의 병력 및 장비지원 요청
- 공공시설물 복구순위 결정을 관계기관 협조요청
- 가축피해에 대한 응급대책 관련기관 협조요청
- 상하수도, 전기, 가스, 등 도로 점용시설의 피해를 도로관리자에게 통보
- 인명피해 발생시 인명의 구조와 실종자 수색을 소방·군경과 협조하여 신속 지원
- 군에서 동원된 병력과 장비, 예비군 등과 함께 도로복구
- KT는 피해를 입은 통신시설 복구(현장근무자는 협조 및 통제)
- 한국전력 공사는 피해를 입은 전기시설 복구(현장근무자는 협조 및 통제)
- 한국가스안전공사는 피해를 입은 가스시설 복구 및 무상 안전점검 실시
(현장근무자는 협조 및 통제)
-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전기시설에 대한 무상안전점검 실시
(현장근무자는 협조 및 통제)

나) 유관기관별 세부 업무 지침

- 단계별 근무체계 참조.
- 불임의 유관기관현황 참조
- 불임의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참조.
- 업무별 표준행동절차 참조.

2) 인접 시·군·구간 상호협조체제 구축

가) 점검 사항

- 피해가 발생되어 자체능력으로 대처가 불가능하다고 본부장이 판단할 경우 인접 시군에 협조요청.
- 인접시군에서 협조 요청 시에는 본부장의 판단 하에 적극 협조.

3) 관할 군부대 장비 및 병력 동원계획

※ 본부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적극 협조

○ 인근 군부대 현황

부대명	주소	전화번호 (사무실)	비고
제8962부대 3대대	함양읍 용평리 524	963-1113	

4) 자원봉사단체, 군부대, 유관기관의 재난대응 조치 보고체계

가) 점검 사항

- 보건의료원 및 관내 병·의원 협조, 의료종사자 확보
- 자체 지역실정에 적합한 자원봉사 활용계획 수립
- 자원봉사에 대한 인력관리
- 자원봉사자의 안전교육, 주의사항 등 교육 실시
- 장기 자원봉사자에 대한 물품지원 등 협조 조치

나) 자원봉사 활동의 범위

- 부상자 응급 의료 활동에 관한 것
- 구호센터 및 수용시설에서의 봉사활동에 관한 것
-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곳에 집단급식, 차량배치 및 봉사활동에 관한 것
- 구호물품 접수 및 배분 시 운반, 운송에 관한 것

다) 자원봉사단체, 군부대, 유관기관의 보고체계

-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이 있을 경우
 - 사전에 준비한 비상체제로 업무를 전환하고, 즉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합류
 - 긴급을 요하는 곳에 본부장의 요구에 따라 지원 및 협조.
- 각종 업무 협조사항 및 지원협조 요청시 보고
 - 원칙적으로 공식·비공식 문서에 의하되, 각종 통신매체(전자우편 및 팩시밀리)

- 이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수발신자의 성명 및 수발신시간이 기록되어야 한다.
- 긴급을 요하는 사항의 경우 전화(유·무선)를 이용할 수 있다.
- 그 밖의 재난상황을 감안하여 신청군 본부장이 통보방법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자원봉사 활용 계획 흐름도】

나. 재난상황 홍보방안 및 자율방재의식 고취

1) 예측 및 정보 전달체계 구축(예·경보)

가) 점검사항

- 강우량 계 정상 작동 여부 검토.
- 인터넷 통신 정상 작동 여부 검토.
- 전화 및 팩스 정상 작동 여부 검토
- 비상연락망 체계 점검 및 검토

나) 예측 및 정보 전달체계 현황

- 강우량계 현황

구분	계	경보국	우량국	통제국	감시국	중계국	우량관측	비고
계	86	44	16	3	3	4	16	
산청군	소계	67	34	14	3	1	4	
	중산리지구	13	8	4	-	-	1	
	대원사지구	17	13	3	-	-	1	
	거림지구	7	4	2	-	-	1	
	내원사지구	5	3	2	-	-	-	
	오봉지구	7	4	2	-	-	1	
	백운지구	3	2	1	-	-	-	
	시천면사무소	1	-	-	1	-	-	
	지리산사무소	1	-	-	1	-	-	
	군청	2	-	-	1	1	-	
	전읍면	16						16

○ 인터넷 통신 현황

- 소방방재청 : <http://www.nema.go.kr/>
- 기상청 : <http://www.kma.go.kr/index.jsp3>
- SMS 서비스 : <http://sms.siheung.go.kr>

○ 위성전화기 현황

전화번호	설치장소	대수	비 고
계	-	6	
337881~3	재난종합상황실	3	
337885	군수실	1	
337886	부군수실	1	"
337884	행정정보담당부서	1	

2) 유관기관 및 방송사에 상황전파 및 보도요청

가) 점검사항

- 약 기상에 대한 사전 안내 홍보 실시 요청 : 유관기관 및 방송사
- 일몰시간 이전 등산객 하산 유도(야간 산행 통제).
- 도로 이용자의 위험방지 및 이해와 협력을 구하는데 필요한 사항 홍보 요청.
- 국민행동요령 등 홍보.

나) 추진계획 및 언론매체

- 기획 감사실 공보담당 담당
- 홍보 방향
 - 신문·방송 등 언론매체 및 정부 보유매체를 통한 홍보.
 - 방재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을 통한 일사불란한 상황전파.
- 언론매체를 통한 대국민홍보
 - 기상특보, 재해사태 예보 및 경보의 신속한 보도.
 - 방재의식 산청, 국민행동요령, 국민운동전개 등 보도협조.

3) 재난대비 교육 및 훈련 실시

가) 행정사항

- 재해 사전대비 추진사항의 최초보고를 2월말까지, 중간보고를 3월말까지, 최종보고를 4월말까지 완료.
- 재해정보의 신속한 전달 및 지역간 원활한 협조를 위하여 통신시설을 일제 정비.

나) 방재교육 · 훈련

- 주민 홍보 및 지도 계몽강화.
- 사업장별 안전·보건교육 실시.
- 자원봉사자 관리교육 실시.

【방재교육】

□ 교육목적

- 재해대책요원의 업무능력 배양과 재해사전대처능력 제고

□ 교육방법

- 중앙단위교육, 도교육, 군 자체교육, 전파교육으로 나누어 실시
- 전파교육은 민방위교육 계획과 연계 추진
- 주민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보급
- 중앙교육 : 지방행정연수원 민방위교육관에서 실시
- 방재관리자 과정
 - 교육대상 : 도 과장, 담당 및 군 과장
 - 교육기간 : 3~4월중
 - 교육내용 : 방재행정 주요시책 등 8과목
- 방재실무자 과정
 - 교육대상 : 도, 군 6급이하 방재담당공무원
 - 교육기간 : 3~4월중 2기로 구분실시
 - 교육내용 : 재해대책 일반, 법령해설, 방재전산, 재해사전대비, 재해대비 국민행동요령 및 안전의식 제고방안, 재해응급대책 및 복구계획 수립 등
- 도 교육 : 도 본청에서 실시
 - 교육대상 : 도 재해대책부서, 군 방재담당, 유관부서 직원등
 - 교육기간 : 4월중 1일선정 실시
 - 교육내용 : 재해대책일반, 방재전산, 재해사전대비, 재해응급대책 및 복구계획 수립, 재해대비국민행동요령 및 행락지야영객 안전수칙 등
- 군 자체교육 및 전파교육 : 군 본청 및 민방위교육장에서 실시
 - 교육대상 : 읍면 ·유관기관 실무자, 수방단, 인명구조대, 민방위대 등
 - 교육기간 : 4월중 1일 선정 실시
 - 교육방법 : 교재강의 및 VTR 상영 등
 - 교육내용 : 재해대책 일반, 재해사전대비, 재해응급대책, 인명구조, 응급복구, 재해대비국민행동요령 및 행락지 야영객 안전수칙 등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 훈련목적

- 지방화시대에 주민자치 정신을 총력 방재체제로 승화
- 기상 및 재해유형의 다변화에 따른 대응능력 제고
- 실시간(Real Time)대 재해상황 관리로 신속한 대응

□ 훈련방법 : 도상훈련(전산훈련 포함)과 실제훈련으로 구분하여 실시

□ 도상훈련

- 훈련기간(예정) : 5.2-5.4월중(3일)
- 훈련방법 : 사건메시지를 중심으로 한 유관기관과의 합동 공조 훈련
- 훈련기관 : 중앙, 도와 군에서 실시
- 참가기관 : 경찰서, 소방서, 군부대 등 유관기관
- 훈련내용
 - 신속한 상황대처, 사전조치 및 피해보고체제 구축
 - 시가지 침수에 따른 분뇨, 쓰레기 처리능력 제고
 - 재해대책 유관기관의 사건처리 및 협조체제 강화
 - 재해발생시 민·관·군 재해수습역할 분담 및 임무수행
 - 수난구조, 응급구호 및 응급복구 등 사태수습처리 능력 산청
 - 야영객 안전대피 유도

□ 전산훈련

- 훈련일시(예정) : 5.2-5.4(현장훈련과 병행)
- 훈련대상 : 중앙·도 및 시군
- 훈련방법
 - 중 앙 : 훈련메시지 작성부여, 훈련상황 지도 및 자료분석
 - 도 : 입력내용 조회, 출력 및 자료분석
 - 군 : 훈련메시지 입력, 조회, 수정 및 자료분석

□ 합동현장훈련

- 훈련일시 : 5월2일
- 훈련주관 : 군, 소방서 합동
- 훈련방법 : 일시, 장소, 내용 등 사전에 준비한 시나리오에 의거 실시
- 훈련내용
 - 유관기관 공조체제하에 인명구조활동 전개
 - 이재민 수용시설물 지정관리 및 구호방역활동

·인력,자재,장비 등을 동원한 응급복구 실시 등

※훈련장소 등 추후 결정

- 재해 사전대비 추진사항의 최초보고를 2월말까지, 중간보고를 3월말까지, 최종보고를 4월말까지 완료.
- 재해정보의 신속한 전달 및 지역간 원활한 협조를 위하여 통신시설을 일제 정비.

나) 방재교육 · 훈련

- 주민 홍보 및 지도 계몽강화.
- 사업장별 안전·보건교육 실시.
- 자원봉사자 관리교육 실시.

【방재교육】

□ 교육목적

- 재해대책요원의 업무능력 배양과 재해사전대처능력 제고

□ 교육방법

- 중앙단위교육, 도 교육, 군 자체교육, 전파교육으로 나누어 실시
- 전파교육은 민방위교육 계획과 연계 추진
- 주민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보급
- 중앙교육 : 지방행정연수원 민방위교육관에서 실시
- 방재관리자 과정

·교육대상 : 도 과장, 담당 및 군 과장

·교육기간 : 3~4월중

·교육내용 : 방재행정 주요시책 등 8과목

- 방재실무자 과정

·교육대상 : 도, 군 6급 이하 방재담당공무원

·교육기간 : 3~4월중 2기로 구분실시

·교육내용 : 재해대책 일반, 법령해설, 방재전산, 재해사전대비, 재해대비 국민행동요령 및 안전의식 제고방안, 재해응급대책 및 복구계획 수립 등

- 도 교육 : 도 본청에서 실시

·교육대상 : 도 재해대책부서, 시군 방재담당, 유관부서 직원등

·교육기간 : 4월중 1일선정 실시

·교육내용 : 재해대책일반, 방재전산, 재해사전대비, 재해응급대책 및 복구계획 수립, 재해대비국민행동요령 및 행락지야영객 안전수칙 등

- 군 자체교육 및 전파교육 : 군 본청 및 민방위교육장에서 실시
- 교육대상 : 읍면 ·유관기관 실무자, 지역자율방재단, 인명구조대, 민방위대 등
- 교육기간 : 4월중 1일 선정 실시
- 교육방법 : 교재강의 및 VTR 상영 등
- 교육내용 : 재해대책 일반, 재해사전대비, 재해응급대책, 인명구조, 응급복구, 재해대비국민행동요령 및 행락지 야영객 안전수칙 등

【방재훈련】

□ 훈련목적

- 지방화시대에 주민자치 정신을 총력 방재체제로 승화
- 기상 및 재해유형의 다변화에 따른 대응능력 제고
- 실시간(Real Time)대 재해상황 관리로 신속한 대응

□ **훈련방법** : 도상훈련(전산훈련 포함)과 실제훈련으로 구분하여 실시

□ 도상훈련

- 훈련기간(예정) : 3월중(3일)
- 훈련방법 : 사건메시지를 중심으로 한 토론방식
- 훈련기관 : 중앙, 도와 군에서 실시
- 참가기관 : 경찰서, 소방서, 군부대 등 유관기관
- 훈련내용
 - 신속한 상황대처, 사전조치 및 피해보고체제 구축
 - 재해대책 유관기관의 사건처리 및 협조체제 강화
 - 재해발생시 민·관·군 재해수습역할 분담 및 임무수행
 - 응급구호 및 응급복구 등 사태수습처리 능력 산정
 - 야영객 안전대피 유도

□ 전산훈련

- 훈련일시(예정) : 3 ~ 4월중(도상훈련과 병행)
- 훈련대상 : 중앙·도 및 군
- 훈련방법
 - 중 앙 : 훈련메시지 작성부여, 훈련상황 지도 및 자료분석
 - 도 : 입력내용 조회, 출력 및 자료분석
 - 군 : 훈련메시지 입력, 조회, 수정 및 자료분석

□ 지역 특성훈련

- 훈련일시(예정) : 5월 중
 - 훈련주관 : 군, 소방서 합동
 - 훈련방법 : 일시, 장소, 내용 등 사전에 준비한 시나리오에 의거 실시
 - 훈련내용
 - 유관기관 공조체제하에 인명구조활동 전개
 - 이재민 수용시설물 지정관리 및 구호방역활동
 - 인력,자재,장비 등을 동원한 응급복구 실시 등
- ※훈련장소 등 추후 결정

4) 자원봉사단체, 기업체 등 자율방재조직 활동지원

□ 계획 및 점검사항

- 보건의료원 및 관내 병·의원 협조, 의료종사자 확보
- 자체 지역실정에 적합한 자원봉사 활용계획 수립
- 자원봉사에 대한 인력관리
- 자원봉사자의 안전교육, 주의사항 등 교육 실시
- 장기 자원봉사자에 대한 물품지원 등 협조 조치
- 자원봉사자 관리 및 자원봉사 지원전담반을 구성·운영
- 대한적십자사, 전국재해구호협회 등과 이재민 구호관련 협조 조치

다. 가뭄대책

1) 가뭄대처 대국민 행동요령 전파

가) 대중매체를 활용한 끊임없는 대국민 홍보 및 교육

- 방송매체를 통한 절수운동 전개
 - 유선방송을 통한 자막방송 홍보
- 가뭄극복 3대 운동의 전개 → 저수, 절수, 용수개발
- 범국민 생활용수 10% 절수운동 강화
 - 기존건물은 수세식 변기 물통에 벽돌 및 물주머니 넣기, 수도꼭지에 절수디스크 달기운동 등

- 물 부족의 심각성 부각(물 부족, 물 기근국가)
- 지속가능한 개발의 부각
- 우리 후손이 겪을 불이익의 인식
- 물 분쟁에 의한 전쟁의 가능성 등 홍보
- 일시적 홍보가 아닌 지속적인 캠페인의 필요
- 가뭄의 심각성 홍보(국민관심과 이목집중 캠페인, 포스터, 글짓기대회)
- 지속적인 물 절약 운동의 전개 - 관공서, 학교 및 매스컴을 통한 대민 교육
- 절수용 기기 보급 및 절수방법 소개
- 수돗물 값의 현실화(세계의 물 값과의 비교, 물 낭비 억제 효과)

나)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조

- 이웃한 자치단체간의 상호 협의대처방안 강구
- 자치단체내의 군부대, 레미콘회사 등 비상급수 가능한 차량 등의 확보 및 사전유대 강화 (방문, 서신전달, 친선 체육대회 등)
- 각 지자체간 가뭄대비 회의(연계대응방안)
- 각 지자체간 가뭄장비 파악·교환
- 비상급수차량운행 계획수립
- 양수기 및 호스의 확보 및 수리·점검

다) 구조적 가뭄대책

- 관정 등의 긴급 식수원 개발
- 지역 특성에 맞는 식수원 개발, 유지비 보조 등 협의
- 노후 상수관 교체
- 수돗물 누수방지
- 중수도(사용된 수돗물의 재사용) 확대
- 우수저류 및 침투시설의 장려(지하수 부족 지역, 島嶼지역)
- 저수지 준설

2) 생활용수 확보 및 긴급 급수대책

가) 용수대책

- 긴급 암반관정, 간이용수원 개발 추진.
- 민관군 보유 장비 총동원 양수급수 실시.
- 가뭄 영농대책 총력추진.
- 작물별 물 절약 대책 실시 및 비상급수 추진.
-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보유한 급수차량 이용하여 급수.
- 산청소방서에 급수 차량 지원을 요청하여 급수.

나) 응급 급수대책

① 긴급식수원 확보 및 생활용수 공급

- 유희우물 또는 농업용 관정 등 기존시설 최대 활용
- 민방위기본법에 의하여 설치된 비상급수시설, 인근 정수장, 간이 상수도, 전용상수도 등 활용
- 농업·공업·발전용수등 다른 수리시설 일시 전용
- 유관기관과 협조체제 구축 비상급수를 위한 시설장비 및 인력 확보(군, 소방서)
- 먹는 샘물업체의 협조를 받아 먹는 샘물 공급

② 절수 캠페인과 목욕탕, 수영장 등 영업시간 단축.

3) 농업용수 및 공업용수 확보대책

가) 점검 및 조치사항

- 논두렁 정비와 논물가두기 적극 시행.
- 점검과 정비가 완료된 관정·양수 장비를 활용, 지하수와 하천수를 최대한 이용.
- 관정을 사전 가동하여 논물가두기 지원.
- 논물가두기용 기자재 지원(논두렁 피복용 비닐 등)
- 긴급암반관정, 간이용수원 개발.
- 민관군보유 가뭄대책장비 동원.
- 지하수탐사 및 암반관정 개발.
- 양수장비 수리점검반 순회.
- 모내기 조기마무리를 위한 인력 지원.

- 모내기시기를 지역에 따라 앞당겨 신속적으로 조정.
- 농촌용수 개발지구 및 대단위 농업종합개발지구의 조기급수 추진.
- 하천굴착, 양수급수, 간이보 설치.

나) 한해장비 구입비 등의 지원

① 유류대 및 전기료

- 한해 예방용 용수확보를 위하여 사용한 유류 및 전기료의 50% 지원

② 장비구입비

- 한해대책용 양수기 및 양수용 발동기 구입비의 50% 지원

③ 시설비 지원

- 양수용 펌프 및 관정설치비의 50% 지원

다) 한해농가의 생계안정과 경영유지를 위한 지원

① 지원대상

- 재해구호 및 재해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1제1호(주)에 정한 대상자

② 지원항목

- 이재민구호, 중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영농자금의 상환연기 및 그 이자의 감면, 정부양곡 지급 등

2. 대응단계

가. 단계별 제한급수대책 추진

1) 단계별 제한급수대책 수립

- 지역실정에 따라 1단계(10% 감량공급) ~ 6단계(취수원고갈)로 구분 단계별 추진대책 수립 실시

구 분	기 준	내 용
I 단계	10% 감량 공급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지대 및 급수불량지역 운반급수 ○ 방송·캠페인 등을 통한 절수 홍보 ○ 상수도 수질관리 강화(배수지 소독, 급수전 검사)
II 단계	10~30% 감량 공급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하수도과에 『비상급수대책상황실』 운영 ○ 물다량사용업소의 영업시간 단축 자발적 유도 ○ 상수도 수질관리 강화(배수지 소독, 급수전 검사) ○ 공공건물, 대형빌딩 절수 확대 ○ 공업용수 절약사용 및 재활용 확대 ○ 각 가정 절수 적극 유도 ○ 격일제 또는 3일제 제한급수 실시 ○ 세차장 등 영업시간단축 또는 임시휴업
III 단계	30~50% 감량 공급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욕탕, 사우나 등 격일제 영업 ○ 농업, 공업용수원을 상수원으로 전환 ○ 수돗물 다량사용 공장 조업 단축
IV 단계	50~60% 감량 공급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정에 따라 3~5일제 급수 ○ 최소한의 생활용수만 공급 ○ 개인관정, 전용상수도 공동이용 확대
V 단계	60% 이상 감량 공급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소한의 생활용수만 공급 ○ 수돗물 다량사용공장 조업중단
VI 단계	취수원 고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근 지자체에서 운반급수 ○ 최소한의 식수배급제 실시

2) 가뭄 발생예상지역의 한해장비 점검·정비

- 자체보유중인 장비에 대해 월1회이상 점검·정비실시
- 양수장비 보유량이 정수에 미달될 경우 즉시 확보보충

3) 가뭄발생지역 긴급 용수원개발 추진

- 가뭄발생지역 또는 물부족 예상지역에 생활용수 및 농업용수 공급을 위하여 지하수, 간이용수원 등을 개발하고 물 부족지역에 대한 급수를 위하여 양수공급 실시
- 주요사업내용
 - 지하수 개발 : 암반관정 개발, 소형관정 개발, 집수정 개발 등
 - 간이용수원 개발 : 하천굴착, 포강, 이동식양수시설 등
 - 양수급수 : 양수장비를 동원한 용수공급 및 다단양수
- 사업비 재원 : 국고 또는 지방비

4) 지하수개발 및 사후관리

- 지하수법 개정 등 관련법령의 정비 착수
 - 지하수법을 지하수기본법으로 개정 추진
 - 지하수보전 위주의 제한적 개발·이용을 위하여 허가제 도입 검토
 - 지하수개발 관정의 사후관리 강화를 위하여 준공신고제 도입 검토
- 지하수 기초조사 확충 및 D/B 구축 추진
 - 효율적 업무추진과 중복조사 배제를 위하여 중앙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조사업무의 건교부 일원화 추진
 - 지하수 관련 제반자료를 종합하여 지하수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검토
- 전국적인 지하수 감시망 구축을 위한 관측소 설치
 - 전국적인 지하수 관측망과 연계 운영할 수 있도록 기 개발된 관정을 활용하여 보조관측망(시·군단위 30~40개소) 설치운영 검토
- 상습가뭄지역에 대한 중장기 대책수립 추진
 - 장기 용수문제 해결을 위한 다목적댐 및 광역상수도 개발계획 수립 추진
- 광역상수도 용수공급 체계의 확대 검토
 - 예비용수 공급시설 및 관로의 복선화

5) 농촌지역의 가뭄을 항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지방 상수도 확충

3. 복구단계

가.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1) 자체피해조사 및 합동조사

가) 피해조사반 구성

- 본부장의 지시에 따라 해당업무 실과별로 피해조사반을 구성.
- 피해조사반장은 해당실과소장이 되며, 반원은 업무담당 실무자로 구성.
- 피해조사항목을 면밀히 파악하여 조사.

나) 시설별 피해조사 항목

- 사유시설 및 인명 피해조사
- 공공시설 조사

다) 피해조사 일반적 유의사항

피해금액 산정 및 조사방법

- 피해조사는 현지 답사후 시설별로 조사하고 개소별로 피해액을 산정
- 항구복구계획과 상관없이 순수한 피해부분에 대해서만 피해물량 및 해피금액 산정
- 세부공종별로 산출기초를 작성하여 재해대장에 기재 또는 별지로 첨부
- 자연재해조사 및 복구계획수립지침에서 정한 피해시설은 조사대상에서 제외
- 시설물 노후 및 관리소홀로 인한 재해지구는 대상에서 제외시킬 것.
- 도로대장, 하천 기성제 대장 및 각종 시설물관리대장 등을 참조하여 관리등급 등을 조사하고 피해확인이 애매모호한 시설은 시설물관리대장을 재해대장에 첨부
- 공사하자기간내 시설물은 부실시공으로 인한 하자여부를 엄밀히 검토한 후 결정
- 피해현지 조사양식은 사전에 별도 작성하여 비치
- 피해액 산정 : 시설별 세부공종별 피해물량 × 기준단가
 - ※ 특히 복구소요에 필요한 금액을 피해액으로 계상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부대공, 자재대, 부과세, 관리비, 이윤 등은 단가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중으로 산정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기 바람.

2) 피해유형별 복구계획 수립

가) 응급복구

- 자연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유형별 복구계획은 별도로 수립하지 않고 상기에 수립된 복구계획을 사용.
- 응급복구는 임시로 복구하여 차량통행 등 피해시설의 사용목적에 어긋남이 없도록 조치

나) 완전복구

- 재난발생 후 피해조사 계획 및 절차에 따라 조사된 결과를 근거하여 복구 계획을 해당업무 실과별로 수립
- 재난상황 종료 후 자체 피해조사반을 편성하여 상세히 조사하고 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재난발생 시에는 재난이 재발되지 않도록 복구함.

제5절 지 진

1. 대비단계

가. 재난취약시설 점검, 지정관리

□ 위험시설물 점검 관리

(1) 다중이용시설

- 5층이상 아파트 및 연면적 5,000㎡이상의 판매시설등 다중이용시설물은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및 각종 시설물의 관계 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정비 실시(5층미만 건축물 포함 : '99년 개정)
 - 공항청사, 철도역사, 자동차여객터미널, 종합여객시설, 종합병원 판매시설, 관광숙박시설, 관람집회시설 등

(2) 공공시설

- 도로, 철도, 댐, 하천 등 대규모 재해 유발요인이 있는 시설물은특별법 또는 각종 시설물의 관계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정비 실시
 - 산사태, 산지재해, 토석류 등의 피해가 예상되는 시설
 - 상·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시설 등 국민생활 필수 시설
 - 도로, 하천, 철도 등 사회 간접자본시설
 - 각종 집회시설 등 사회적 혼란이 예상되는 다중이용시설
 - 화약류 저장소, 취급업소 등 폭발로 피해가 예상되는 시설
 - 지하굴착작업장 등 붕괴우려가 있는 대형공사장

□ 생활필수시설(전기, 가스등) 점검관리 사항

- (1) 석유, 화학류, 화학약품 등의 보관시설, 가스보관, 독극물취급, 방사선 사용 시설등 화재발생이 예상되는 시설에 대한 조치

- 비축기지별, 유형별로 계획 수립
- 비축기지별로 자위소방대 편성·운영
- 긴급사태발생에 대비 유관기관과 협조체제 구축

- (2) 가스시설 누출방지대책

- 가스누출에 대비 수시 및 정기점검 실시
- 가스 누출시에 대비 자동 차단장치 설치확대 등

나. 봉사단체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

□ 자원봉사단체 지원·협조체제 구축

- 의료종사자 확보(의료 분야별로)
- 긴급한 대응에 필요한 인력 확보(분야별, 기능별, 지역별 등으로 구분)
- 자원봉사의 활용계획 수립(특기, 보유장비, 구성원 파악, 부여할 업무내용)
- 자원봉사에 대한 사전교육실시(안전교육, 주의사항)
- 봉사활동에 필요한 개인소지 필요물품 및 휴대가능 자재 준비
- 장기봉사에 따른 지원상황 점검

□ 유관기관 소관업무 지원·협조체제 구축

- 비상근무태세 확립 협조
- 도로 복구의 순서를 결정하고 관계기관 및 건설업협회 등과 협조
- 가스분야(점검, 공급, 밸브 작동 등)
- 전기분야(감전, 누전, 정전 등)

2. 대응단계

가. 인명구조 및 고립예상지역 대책(유관기관 협조)

- 통제관은 지진 발생시 신속한 인명구조, 환자 수송 등을 위하여 지진 발생지역에 현장지휘본부(소) 설치운영
- 구조·구급대 정비 및 보강
 - ※ 현장응급 의료소 역할
 - 응급조치가 완료된 부상자의 병원후송을 위하여 119구급대, 의료기관등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

나. 부상자 후송대책

- 현장응급의료소의 소장이 119구급대 또는 의료기관 구급차등에 요청, 후방의료시설까지 운송 조치
- 통신망의 단절로 피해지역 의료기관의 상황파악이 곤란할 경우에 대비하여 원활한 수송 등을 위한 정보 수집

다. 응급진료·구호 및 이재민 보호대책

□ 응급의료기관 확보 및 협조사항

- 의료기관의 시설·설비의 피해상황을 파악
- 진료시설의 가동 및 의료 기자재 등의 수급 상황을 파악
- 의료 종사자의 확보 상태를 파악
- 의료소 및 의료 기관의 교통 상황을 점검

□ 사체처리 대책

- 사체의 수색은 유관기관이나 단체에 협조를 받아 실시
- 사체는 가급적 빠른 시간 내 지정 의료 기관에 영치
- 사체의 신원 파악을 위해 매장이 지연되는 경우와 사망자수가 많아 매장할 수 없는 경우 시신을 안치하는 기관에 협조를 요청(시신을 다룰 때에는 공손하게 취급)
- 운송 차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에 협조를 요청
- 사체가 부패되지 않도록 드라이아이스 등을 사용하며, 부패로 인하

여 공중위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

- 사체의 검안 및 처리는 전문기관에 일임
- 사체를 안치 장소에서 반송하고 화장 또는 매장까지의 일련의 업무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수행
- 신원 불명의 사체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관할경찰서에 보고를 하고 이에 대한 조사를 의뢰
- 경찰은 신원을 파악 할수 있는 일련의 조치를 취하여 신속하게 신원을 확인

□ 생필품 등 구호물자 확보 비축 및 공급 대책

- 피해를 예상하여 필요한 생활필수품을 비축
- 주민거주의 분포상태와 장소 등을 고려하여 분산보관
- 생필품 조달은 사전에 품목, 조달장소, 운송방법에 대한 계획을 수립
- 자체적으로 충분한 조달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근의 사군 협조를 요청
- 운송수단이 부족하면 군부대나 소방서에 차량지원 요청을 하여 운송
- 필요한 경우 민간인에게도 차량 배송을 의뢰
- 도로 두절로 인하여 접근이 불가능한 지역은 헬기를 동원하여 공수
- 긴급배분이 될 품목은 하역작업을 하지 않고 차량자체로 일시 보관

□ 구호물품의 접수 및 배분계획

- 피해주민에게 현실적으로 어울리지 않는 물품
- 지역특성에 어울리지 않는 물품
- 요즈음 사용하지 않는 물품
- 보관이 어려운 물품(쉽게 부패하는 물품)
- 운반비를 지불하지 않은 물품
- 같은 종류와 크기를 무더기로 보내온 물품(특히 의류)
- 위험하거나 부패하기 쉬운 품목은 사전에 구매선을 확보하여 즉시 조달
- 가구별 구호세트는 사람 수를 기준으로 하는것 보다는 세대단위로 작성

《외부 기증 형식으로 생필품 반입시 반드시 확인 내용》

- 기증된 생필품이 피해지역 주민에게 수치심을 주는지 여부
- 의류의 경우 적절한 모양인가의 여부

-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임박한 물품의 확인
- 재고 상품을 처치하려는 의도로 보내온 물품 여부
- 가전제품의 경우 작동불량 확인

《생필품 배분 전달시 반드시 확인 할 사항》

- 배분된 것을 피해주민 모두가 공평하다고 만족하게 배분 할 것
- 적절한 양이 배분되어 다른 피해지역과 균형을 고려하여 배분
- 노약자 환자 등 재해약자에 대하여 고려하여 배분

□ 이재민 수용시설 지정 운영관리

- 건물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사전 협의 후 지정
- 수용시설의 규모에 적합하도록 이재민 대피 및 수용계획 수립
- 이재민 발생시 즉시 수용가능 하도록 관리상태 수시 점검
- 최근 10년간의 이재민발생수를 기준으로 책정하되, 지역실정과 재해 발생빈도 등을 고려하여 지정
- 이재민수용시설의 수도·세면시설, 화장실, 샤워장 등 기본생 시설 설치·작동상태 확인
- 이재민수용시설의 관리자 지정 및 비상연락체계 구축

□ 주민대피 및 유도계획

- 대피소 수용인원 등 실태 확인
- 노약자, 환자의 강제·우선대피 등 대책 강구
- 대피소 정전에 대비한 준비물, 대피명령 전달방안 강구
- 대피명령 결정의 시기와 적절성에 대한 지휘부 구성
- 야간 대피에 대한 대책 강구(대피소 위치, 이동방법 등)
- 대피에 필요한 사항 점검(경로, 위치, 준비물) 및 홍보
- 주민 대피장소의 위치 확인 및 대피안내자(지역 지도자, 담당공무원 등)의 신원 파악

□ 대피소 운영 및 안전대책

- 대피소 이용에 대한 상황 파악(유관기관 통보, 경계순찰)
- 대피소시설 설비 피해상황 파악(화장실, 전기, 수도, 가스, 냉난방)
- 임시 가옥, 화장실 침수상황 파악

- 이재민의 수용 및 관리에 대한 업무추진(세대원 수, 이재민 수)
- 응급주택 관리(용지선정, 수량과 규모, 입주자 선정, 사유지 사용협조)
- 이재민의 대피소 생활지도 및 통제

□ 자원봉사단체의 협조 및 역할분담 방안

- 의료종사자 확보(의료 분야별로)
- 긴급한 대응에 필요한 인력 확보(분야별, 기능별, 지역별 등으로 구분)
- 자원봉사의 활용 계획 수립(특기, 보유 장비, 구성원 파악, 부여할 업무내용)
- 자원봉사에 대한 사전교육실시(안전교육, 주의사항)
- 봉사활동에 필요한 개인소지 필요물품 및 휴대가능 자재 준비
- 장기봉사에 따른 지원상황 점검

라. 생활필수시설 긴급복구 대책

□ 통신두절 대책

- 방재행정 전용회선 확보
- 야간 정전시 대체 통신수단의 확보
- 긴급통신시설 확보(유관기관, 아마추어무선, 위성전화)

□ 전기시설 대책

- 자연재해 취약시설 안전진단 및 항구보강대책 수립
- 주요 전력시설 침수예방 및 배수펌프장 안전가동 대책확립
- 유사시 전력시설의 원활한 가동을 위한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강화

□ 가스시설 대책

- 재난 대비 사항 포함한 비상대응계획 작성
- 기상특보 발령시 가스시설에 대한 홍보 강화
- 취약시설 안전점검·순찰·보수 강화
- 가스배관망 안전관리 정보시스템 확대구축

□ 급수 및 상수도시설 대책

- 급수, 상수도 시설피해 파악
- 상수도시설 피해 발생시 상수도사업소 대행업체에서 우선 복구
- 급수운반차량을 관계기관에 협조 요청
- 의료시설, 대피소 등 중요시설의 급수상태 확인

□ **교통두절 대책**

- 교통두절 예상지구에는 사전에 우회도로를 지정하여 주민고립 예방
- 방재물자 의약품 수송에 필요한 인력과 차량 확보

□ **각급 유관기관 소관업무 협조·지원사항**

- 비상근무태세 확립 협조
- 도로 복구의 순서를 결정하고 관계기관 및 건설업협회 등과협조
- 가스분야(점검, 공급, 밸브 작동 등)
- 전기분야(감전, 누전, 정전 등)
- 급수분야(운반, 거점, 차량급수 등)

□ **주민협조요청 및 상황전파(복구상황 등)**

- 읍면동장 또는 이장 책임 하에 사전에 비축한 수방자재와 지역주민을 동원하여 응급복구 작업 실시

마. 지진 대책

□ **2차 피해 방지대책 추진**

- 규모(M) 5이상의 지진이 발생 피해가 발생 하였을 경우, 긴급현장 상황반, 5분 대기조등 초동조치부대를 현장에 출동하여 임무 수행
- 가용인력을 최대한 동원 현장에 투입하여 피해 실태파악, 대피유도, 구조·구난을 실시

□ **경비·방법 대책**

- 지진피해지역의 아파트, 주택 및 상가 등에 범죄 예방활동 전개
 - 순찰 강화 및 검문 검색 철저
 - 안전 활동 및 방법활동 강화
 - 미아 및 고아에 대한 전산수배 및 연고지 수배로 신속한 보호자 확인·인계

3. 복구단계

가. 시설물 응급복구 대책

응급복구 인력 및 장비 동원체계

- 군부대 및 유관기관 응급복구 인력 지원 요청
- 지진피해 시 동원 가능한 청소차, 집게차, 분뇨차등 쓰레기처리장비 지정 및 확보(인근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업체와 응원체계 구축)
- 시신 운구용 차량확보(보건의료원 엠블런스 보유현황 사전파악)
- 급수운반 차량확보(소방차, 민간보유 급수운반차 등 사전 파악)

공공시설물

- 상하수도 시설의 복구 계획 수립
- 교량, 터널등 주요한 도로 구조물의 이상 유무 점검
- 시설물별 복구 책임제를 지정

기타시설물

- 농축산 시설의 복구 계획 수립
- 수산 증양식 시설의 복구 계획 수립

나. 방역 및 보건위생 대책

방역실시 계획(방역물자 확보 등)

- 지진발생지역 및 집단수용소등에 발생할수 있는 전염병의 예방을 위해 방역반을 편성 운영
- 물자 및 장비의 부족에 대비 인접 시·군간 응원체제 구축

의약품 확보 및 관리대책

- 정전시 의약품 보관 대책 수립
- 방역의약품 확보(수질분석, 소독, 세탁, 탈취, 동물용 등)

폐사가축 처리방안

- 동물사체 매립 장소 확보
- 폐사 가축은 매몰 후 축사에 대한 소독 실시

부상자 진료 및 예방접종

- 의료기자재 수급상황 파악

- 의료반을 편성 가동(순회 진료, 의료진 상주, 비상대기조, 이재민 건강교육, 노약자 건강진단)
- 집단급식 시설의 위생상태 확인(위생관리사, 급수대책)
- 가축 전염병의 방지를 위한 예방접종 및 소독 실시
- 도로 청소, 분뇨수거, 급수, 방역 예방접종 등 피해 지역보건활동

□ 이재민 수용시설의 보건위생 대책

- 기동의료반 편성·운영, 의료진 상주 근무
- 보건증진과 및 보건지소 등에 비상대기조 편성·운영
- 주 2회이상 방역소독을 실시
- 식품위생감시원의 수시 순회로 급식관리 철저
- 식수는 반드시 끓여서 제공
- 오염된 식기류, 도마, 등은 차아염소산나트륨 사용하여 소독하거나 반드시 햇볕에 건조한 후 사용

다.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 자체피해조사 및 합동조사

- 피해조사반을 구성 피해조사 실시
- 복구계획을 수립, 복구계획을 상부에 제출하고 실행
- 재해대장을 기록하고 보관
- 피해상황 종료와 동시 합동조사실시 및 NDMS에 피해입력 기한은 상황종료후 7일이내며 중앙확인에 대비

□ 피해유형에 따라 소관청별 복구계획 수립

제6절 강 풍

1. 대비단계

가. 재난취약시설 점검, 지정관리

- 방재시설물의 일상정비.
- 재해 위험시설물 관리주체, 주민 및 관계공무원을 관리책임자로 복수 지정.
- 재해 위험시설물은 태풍이 발생시기 전까지 정비 완료.
- 방재시설물은 매년 3월초까지 일제점검 실시.
- 재해 사전대비기간(3~5월)중에는 매월1회 이상 일제점검 실시.

1) 농림, 축산시설 점검 관리사항

가) 점검 정비 사항

- 수방자재 확보상황 점검 조치
- 농업인의 재해예방대책 행동요령 계도 및 홍보 대책 점검
- 기상상황 신속입수 및 전파와 농업인에 대한 풍수해 예방대책 홍보 대책 점검
- 한국농촌공사 산청지사 비상근무체제 점검 및 정비
- 관리책임자 현장배치 농업시설 관리강화
- 재난발생대비 민·관·군 인력지원 계획 점검 및 정비
- 취약시설에 대한 순찰 및 시설관리자 근무 강화

나) 농림, 축산시설 점검 정비 계획 및 추진사항

□ 추진계획

- 예방·응급·복구의 단계별 재해예방대책 추진
- 시설관리자에 대한 교육실시 및 점검·정비
- 응급활동을 위한 표준행동요령을 작성하여 비상대비 가상훈련 실시 및 자재, 장비 등 사용방법 숙지
- 설계기준을 강화 및 항구복구사업 추진으로 피해재발 방지
- 민·관·군 총력태세로 조기 응급복구하여 영농재개 도모
-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조기 완료로 피해확산 방지 및 영농재개

□ 추진사항

◆ 원예작물 및 비닐하우스

○ 강풍피해대책

- 풍해 상습지역 방풍림·방풍벽 설치, 지주 재배작물은 지주대의 보강
- 과실 낙과방지제 살포 및 낙과시 상처방지를 위해 짚 등으로 표토 피복
- 수확기에 도달한 과실은 가능한 조기 수확
- 쓰러진 과수목은 일으켜 세우고 찢어진 가지는 제거후 약제를 살포하여 병해방지
- 파열된 비닐하우스는 보수하여 풍해 경감

◆ 가축·축사 및 초지관리

○ 축사·잠사

- 축사주위, 방목장, 분뇨처리장 등 배수로 정비
- 넓은 축사 및 사료창고 보수
- 비상사료 10일분 이상 사전에 비축
- 가마니, 마대, 모래, 새끼 등을 준비
- 가축방역 및 위생관리
- 긴급 방역비(지방비) 확보로 소독약, 예방약등 사전에 비축
- 폐사가축은 매몰 후 축사에 대한 소독실시
- 가축 전염병 예찰을 강화하고 예방주사 실시

○ 초지 및 사료작물 관리

- 재해예방대책 지도 및 홍보
- 피해지의 복구지원
- 피해복구를 위한 인력, 장비 등의 신속한 지원
- 재파종 대상지역은 소요종자를 알선하고 파종지도

2) 산지재배시설 점검 관리사항

□ 비닐하우스, 인삼재배시설, 버섯재배시설 등

- 비닐하우스의 피복 비닐이 날리지 않도록 비닐끈 등으로 견고히 묶음
- 찢어진 비닐은 즉시 보수 또는 교체하여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함.
- 표준 인삼 경작 방법에 의한 시설 설치
- 기상예보시 버팀목 보강 조치 및 피해예방조치

3) 국민생활필수시설(전기,가스,상하수도 등) 점검 관리사항

가) 점검 정비 사항

- 통신 두절시 통신망 복구계획 점검
- 가스 두절시 복구계획 점검
- 상수도 두절시 복구계획 점검
- 통신시설 점검은 KT에서 점검
- 전기시설 점검은 한국전력공사에서 점검
- 가스시설 점검은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점검

나) 추진일정

- 지역별로 재해취약요인 보완조치 : 5. 20완료
- 보완조치사항 확인 : 5월말까지
- 기상예보 시 담당자 현지 순찰 점검

4) 기타 피해발생 우려 시설 점검(축대, 옹벽, 대형간판 등)

가) 점검 정비 사항

- 절토사면 및 축대 옹벽 점검사항
 - 파괴징후의 유무, 파손여부, 박리여부 등
 - 전반적인 외관상태
 - 인장균열 및 이완 암괴 유/무
 - 지반 및 구조물의 변형 유/무

나) 추진일정

- 지역별로 재해취약요인 보완조치 : 5. 20완료
- 보완조치사항 확인 : 5월말까지
- 기상 예보 시 담당자 현지 순찰 점검

나. 방재물자 확보·비축 및 동원장비의 지정관리

1) 수방자재 확보관리

가) 점검 사항

- 수방자재 사용가능여부를 수시 점검하여 정비상태 확인
·포대, 묶음줄, 말뚝, 비닐, 삼, 곡괭이, 흙관, 돌망태
- 수방자재 자재수불대장 비치 및 관리책임자 지정관리.
- 보관자재는 연초에 내구연한을 감안하여 상태를 점검.
- 보관자재는 비축계획 전량을 태풍의 발생시기 전까지 확보.

나) 수방자재 확보 추진일정

- 우기 전 일제 현황조사 및 현황파악 : 4월중
- 수방자재 구입 및 분배 : 4월하순
- 보완조치사항 확인 : 5월말까지
- 기상 예보 시 담당자 필요수량 파악 및 자재 상태 점검

2) 응급복구 동원장비 지정관리

가) 점검 정비 사항

- 관용장비, 유관기관 및 민간보유 장비의 관리자와 협의하여 재해발생시 신속하게 동원 가능하도록 조치
- 동원장비는 최근 10년간 최대피해를 감안한 소요량 산정하여 지정.
- 동원장비의 사전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동의서 취득 후 지정.
- 침수피해 시 동원 가능한 청소차, 집게차, 분뇨차 등 쓰레기 처리장비 지정 및 확보(인근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업체와 응원체계 구축)
- 시신운구용 차량확보(보건의료원 등 병원 엠블런스 보유현황)
- 수운반 차량확보(소방차, 민간보유 급수운반차, 청수선 등)

나) 수난 구조용 장비 자재 확보

- 관내 유관기관 보유장비·자재(헬기, 선박, 구명복, 구조망, 구급차, 로프, 무전기, 싸이렌, 메가폰, 앰프 등)중 사용가능한 것을 사전협의하여 확보
- 통신기기 및 구명장비 상태 점검

다. 봉사단체 및 유관기관 협조체제 구축

1) 유관기관 소관업무 지원·협조체제 구축

가) 지원 및 협조 사항

- 방송기관에 상황전달 협조요청
- 이동수단의 확보와 협력 요청(헬기)
- 교통종합정보센터를 운영하고 방송기관에 교통방송 유도
- 대한적십자사에 이재민 구호활동 요청
- 필요시 인근 지자체에 협조 요청
- 유관기관이나 사회단체에 협조요청
- 인근 군부대의 병력 및 장비지원 요청
- 공공시설물 복구순위 결정을 관계기관 협조요청
- 가축피해에 대한 응급대책 관련기관 협조요청
- 상하수도, 전기, 가스, 등 도로 점용시설의 피해를 도로관리자에게 통보
- 인명피해 발생시 인명의 구조와 실종자 수색을 소방군경과 협조하여 신속 지원
- 군에서 동원된 병력과 장비, 예비군 등과 함께 도로복구
- KT는 피해를 입은 통신시설 복구(현장근무자는 협조 및 통제)
- 한국전력공사는 피해를 입은 전기시설 복구(현장근무자는 협조 및 통제)
- 한국가스안전공사는 피해를 입은 가스시설 복구 및 무상 안전점검 실시
(현장근무자는 협조 및 통제)
-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전기시설에 대한 무상안전점검 실시
(현장근무자는 협조 및 통제)

나) 유관기관별 세부 업무 지침

- 단계별 근무체계 참조.
- 불임의 유관기관현황 참조
- 불임의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참조.
- 업무별 표준행동절차 참조.

라. 재난상황 홍보방안 및 자율방재의식 고취

1) 예측 및 정보 전달체계 구축(예·경보)

가) 점검사항

- 인터넷 통신 정상 작동 여부 검토.
- 전화 및 팩스 정상 작동 여부 검토
- 비상연락망 체계 점검 및 검토

나) 예측 및 정보 전달체계 현황

- 인터넷 통신 현황
 - 소방방재청 : <http://www.nema.go.kr/>
 - 기상청 : <http://www.kma.go.kr/index.jsp3>
 - SMS 서비스 : <http:sms.siheung.go.kr>

2) 유관기관 및 방송사에 상황전파 및 보도요청

가) 점검사항

- 악 기상에 대한 사전 안내 홍보 실시 요청 : 유관기관 및 방송사
- 일몰시간 이전 등산객 하산 유도(야간 산행 통제).
- 도로 이용자의 위험방지 및 이해와 협력을 구하는데 필요한 사항 홍보 요청.
- 국민행동요령 등 홍보.

나) 추진계획 및 언론매체

- 기획감사실 홍보담당
- 홍보 방향
 - 신문·방송등 언론매체 및 정부 보유매체를 통한 홍보.
 - 방재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을 통한 일사불란한 상황전파.
- 언론매체를 통한 대국민홍보
 - 기상특보, 재해사태 예보 및 경보의 신속한 보도.
 - 방재의식 산청, 국민행동요령, 국민운동전개 등 보도협조.

3) 재난대비 교육 및 훈련 실시

가) 행정사항

- 재해 사전대비 추진사항의 최초보고를 2월말까지, 중간보고를 3월말까지, 최종보고를 4월말까지 완료.
- 재해정보의 신속한 전달 및 지역간 원활한 협조를 위하여 통신시설을 일제 정비.

나) 방재교육 · 훈련

- 주민 홍보 및 지도 계몽강화.
- 사업장별 안전·보건교육 실시.
- 자원봉사자 관리교육 실시.

4) 자원봉사단체, 기업체 등 자율방재조직 활동지원

□ 계획 및 점검사항

- 보건의료원 및 관내 병·의원 협조, 의료종사자 확보
- 자체 지역실정에 적합한 자원봉사 활용계획 수립
- 자원봉사에 대한 인력관리
- 자원봉사자의 안전교육, 주의사항 등 교육 실시
- 장기 자원봉사자에 대한 물품지원 등 협조 조치
- 자원봉사자 관리 및 자원봉사 지원전담반을 구성·운영
- 대한적십자사, 전국재해구호협회 등과 이재민 구호관련 협조 조치

2. 대응단계

가. 인명 구조 및 고립예상지역 대책

1) 인명구조 유관기관 협조(헬기지원 등)

가) 인명구조·구난을 위한 현장지휘소 설치

○ 설치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52 및 시행령 제59조

○ 현장지휘소 조직

·통제관 : 관할소방서장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52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구 긴급구조구난 본부의 통제관인 소방서장이 현장에서 긴급구조활동을 총괄 지휘

·구조·구난활동팀 구성 : 119구조대원, 군, 경, 자원봉사자로 혼합 편성

·인력·장비 부족시 긴급구조기관 및 민간단체로 부터 지원요청 활용

○ 현장지휘소 임무

·고립자 구조

·사상자의 응급처치 및 의료기관 이송

·현장 접근통제, 현장주변의 교통정리, 기타 효율적인 긴급구조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통제관은 긴급구조사항을 군재해대책 본부장에게 수시 보고

나) 고립 예상지역에 대한 헬기동원 계획

○ 긴급 상황 대비 비상출동 대기조 편성 운용

○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산림청항공, 소방항공, 군부대 등)

○ 헬기지원 가능업무

·인명구조 및 환자 이송

·식료품·음료수 및 생필품, 의약품 등 보급품 공수

·문서 및 통신연락

○ 긴급 상황 시에는 구두 승인 또는 선 조치 후보고

(경찰항공운영규칙 제3장제6조제1항)

○ 폭설·수해로 인한 고립예상지역 파악, 지형 숙지훈련

○ 헬기를 이용한 인명구조

·홍수, 화재, 천재지변과 기타 긴급사태 발생시 경찰 헬기를 동원하여 신속, 안전하게 인명구조 임무를 수행

○ 구조반 편성은 도 경찰청 항공대로 하고, 구조장비는 로프연결 장치(카고훅) 구조망, 구명대, 구명보트, 구명환, 기타 대민 무선방송 장비를 최대한 활용

- 헬기 지원요청 결과는 도 재해대책본부 경유 중앙재해대책본부에 보고
- 상황보고 시에는 정확한 사고위치, 사고내용, 구조 인원수, 구조장소의 상황, 사고지역 기상상태 등 사고 정황을 정확히 보고
- 인접 시·도간에는 상황에 따라 지원이 가능토록 협조체제 유지
- 헬기장 운용 기상조건은 경찰항공 운영규정에 준하는 기상상태에서 가능하며, 긴급 특수 임무 수행 시는 지휘관 및 해당 정조종사의 판단에 따름
- 헬기장은 헬기 아착륙에 장애가 되는 전기줄, 높은나무, 지반 등을 고려하여 선정

다) 지휘소 등의 설치시 유관기관 협조 의뢰할 사항

긴급구조본부 현장지휘소 설치 : 산청군 사고대책본부

- 대량 급식소 : 대한적십자사 산청군지부
- 응급 의료소 : 진주소방서산청119안전센터, 산청군 보건의료원
- 통제선 설치 : 산청경찰서 경비과
- 전 기 가 설 : 한국전력공사 산청지점
- 전 화 가 설 : KT 산청지사

2) 고립예상지역 비상연락망 및 관리대책

※ 우리군에서는 2012년 현재 고립예상지역은 없음

- ⇒ 재해가 발생되어 고립예상지역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본부장은 포항북부소방서장에게 긴급구조본부 및 현장지휘소 설치를 요청.
- ⇒ 제2장 3절의 계획을 활용하여 재난 및 재해에 대응.
- ⇒ 고립지역의 현장대응의 긴급구조본부 및 현장지휘소에 연락관 1인을 파견하여 긴급협조사항 등을 협조한다.

3) 부상자 후송대책

) 대량환자 발생 시 구급차, 헬기 동원 및 이송협력체계 수립

- 구급차량 : 관내 의료기관 등 구급차량 활용
 - 헬 기 : 소방서와 협조
 - 이송협력체계 : 관내 응급의료기관 및 인근지역 응급의료기관활용
- 나) 119 구급대의 환자 이송 시 응급의료정보센터(1339)를 통한 이송의료 기관 선정 및 응급처치 지도 적극 활용

다) 대량환자 발생 현장통제 및 구급차 이송통로 확보 ⇒ 산청 경찰서 협조

※ 응급진료체계 전달과정

I. 환자 발생

- 현장 응급진료소 설치
- 119 등 구급대원 환자 구조·구명



II. 응급처치, 환자분류 수행

- 응급처치 시행
- 중증 응급환자 분류



III. 구급차 동원 및 환자 이송

- 동원 구급차(헬기) 확보
- 119 및 응급의료기관 연락



IV. 응급의료기관 네트워크간 환자이송

- 응급의료정보센터 정보관리
- 대형사고 시 근접 응급의료기관 동원



V. 상황종료, 결과보고 및 평가

- 비상진료체계 종결시점 결정
- 최종 결과 취합 및 보고

나. 응급진료·구호 및 이재민 보호대책

1) 응급진료 및 응급환자 수송대책

가. 기동 의료반 편성운영

① 임 무

- 부상자, 응급처리 및 환자 분류
- 대량 환자 발생지역의 긴급 의료지원
- 기타 필요한 의료지원

나) 간이진료소 설치 운영

① 임 무

- 응급환자 치료 및 후송
- 전염병환자 색출 및 예방

② 편성기준

- 인 원

계	의 사	간호사	행정요원	운전기사	임상병리사
6	1	2	1	1	1

- 장 비

구급셋	구급낭	천 막	차 량	비 고
1셋	1개	1조	1대	

③ 설치 장소

- 이재민 공동대피소
-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 환자이송 협조체계 구축

① 대량환자 발생 시 구급차, 헬기 동원 및 이송협력체계 수립

- 구급차량 : 관내 의료기관 등 구급차량 활용
- 헬 기 : 소방서와 협조
- 이송협력체계 : 관내 응급의료기관 및 인근지역 응급의료기관 활용

② 119 구급대의 환자 이송 시 응급의료정보센터(1339)를 통한 이송의료기관 선정 및 응급처치 지도 적극 활용

③ 대량환자 발생 현장통제 및 구급차 이송통로 확보 ⇒ 시·군 경찰서 협조

2) 응급의료기관 확보 및 협조사항

가) 기관협조 및 점검사항

- 응급구조대를 구성 점검.
- 의료소 설치의 장소, 시기, 규모 확인.
- 인근 의료기관 협조사항 확인.
- 거점급수의 위치 설정.
- 부상자 응급수송에 필요한 교통수단 점검.
- 대피장소를 점검하고 비상식량 준비.

) 의료시설 현황

- 지역응급의료기관 : 성심병원

3) 사체처리 및 실종자 처리 대책

가) 기관협조 및 점검사항

- 사고원인 및 신원확인.
- 시신 운구 시 필요한 물품 확보.
- 사체에 관한 정보 공유

나) 사체처리

- 사체 운구시, 운구한 사체는 피해지역 인근의 병원에 안치하고 관계기관의 검안 절차를 거쳐 유족에 인계하거나 유족이 없는 경우 매장.
- 사체의 수, 위치 등에 대한 정보를 유관기관에 통보
- 사체의 수색 및 처리업무(운구, 신원확인, 검시, 매장, 의료처리, 의료기관 안치)
- 사망 또는 실종 유가족에게는 위로금을 지원기준에 의거 신속히 지급
- 인명피해 및 실종자 확인

다) 실종자 처리

- 실종자의 수색은 119구조대 주관으로 실시하되 실종자를 사망처리 할 경우에는 행방불명상태에 있는 자로서 여러 사정 등을 감안할 때 거의 사망한 것으로 추정 되는 자에 한하여 처리.

4) 생필품 등 구호물자 확보비축 및 공급대책

가) 점검사항

- 생필품 비축물자 관리. ⇒ 재난기금으로 대체
- 비상식량 공급 대책 확인.
- 지역 내 생필품관련 제조업체 확인.

- 생필품 운송 및 운반 경로, 하역장소 확인.
- 생필품 공중 투하용 낙하산 제작 보관.
- 구호물자 수불대장 및 관리책임자 지정관리.
- 지역 특성, 재해 유형에 맞는 구호세트 확인.

) 구호물자 구입 계획

- 구호물자(양곡, 비상식량, 의류품, 모포, 천막, 생필품 등) 중 부족물자는 전량 확보. ⇒ 재난기금으로 비축
- 구호물자 중 변질우려가 있는 양곡류 등은 현금으로 확보 후 유사시 즉시 구입 사용.
- 최근 10년간 사용실적을 기준하여 책정하되 지역실정 및 재해발생 빈도를 고려하여 책정 비축.

다) 생필품공급

- 생필품 중 필수품목만을 포장 피해발생 즉시 이재민에게 공급
- 기준에 의해 기 확보된 생필품의 긴급 수송시스템 확립
 - 관용차량을 이용하여 해당지역에 공급
 - 신속한 공급을 위한 산청경찰서 협조
- 대규모 재해발생으로 식료품 등에 대한 공급기능의 정지 또는 정체로 인한 확보곤란, 물가의 폭등 등으로 피해주민에 공급할 식품확보가 곤란할 것에 대비. 피해발생 즉시 유통체계 점검
 - 자체적으로 해결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인근 시군에 협조요청

5) 구호물품의 접수 및 배분계획

가) 구호품의 접수 지침

구호품을 접수 할 때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가급적 접수를 받지 않는다.

-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임박한 물품의 확인

- 이재민들에게 현실적으로 쓸모 없는 물품
- 이재민의 지역 특성에 어울리지 않는 물품
- 먼지나 오물이 묻어있어 상점의 재고를 처리하는 느낌이 있는 물품
- 가전제품의 경우, 불량품의 확인
- 요즘은 사용 않는 구시대 물품
- 같은 종류와 크기를 무더기로 보내온 물품(특히 의류)
- 운반비를 지불하지 않은 물품
- 특정 지역이나 사람을 지정해 보내온 물품
- 보관이 어려운 물품

) 구호품 인도, 운송, 전달 전반에 관한 업무 내용

- 인도를 받는 장소와 일시 보관장소를 확보한다.
- 인수책임자를 임명하고 이를 지원하는 조직을 구성한다.
-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물품의 종류와 수량을 파악한다.
- 전달 및 배분을 담당하는 책임자를 선정한다.
- 인도, 인수시 하역과 적재에 소요되는 인력의 확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한다.

6) 이재민 수용시설 및 대피소 지정 운영관리

가) 점검사항

- 수요시설의 규모에 적합하도록 이재민 대피 및 수용계획수립.
- 이재민 발생시 즉시 수용가능 하도록 관리상태 수시 점검.
- 최근 3년간 이재민 발생수와 지역실정 및 재해발생빈도를 고려하여 수용 시설의 수를 결정.
- 대피소 기본시설 작동 확인.
- 대피소 관리자 지정.
- 이재민 수용시설 점검(목욕시설, 냉·난방)

7) 주민대피 및 유도계획

가) 점검사항

- 대피소 수용능력 확인.
- 노약자 강제 대피 방안 강구.
- 대피소 정전에 대비한 준비물, 대피명령 전달방안 강구.
- 대피명령 결정의 시기와 적절성에 대한 자문단 구성.
- 야간 대피에 대한 대책 강구.
- 대피에 필요한 사항 점검(경로, 위치, 구조물) 및 홍보.
- 주민 대피장소의 위치 확인 및 대피안내자의 신원 파악.

나) 주민대피 유도

- 군수는 관할구역 내에서 재해가 발생하였거나 극히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경찰서장·소방서장의 협조를 얻어 대피 권고
- 산청교육장도 학교장 책임하에 각 담당교사 중심으로 학생을 대피장소까지 안전하게 유도
- 장애자와 거동 불편 고령자에 대한 수용계획 수립 추진

다) 대피장소 및 대피로 확보

- 대피장소 및 대피로의 지정·관리
 - 군수는 대피예상인원을 판단하여 대규모 재해발생시 피해가 예상되지 않는 장소의 학교·체육관등 공공시설을 대피장소로 지정관리
 - 대피주민의 상황파악 관리
 - 대피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대피소별·개인별 매뉴얼을 작성 활용
 - 대피유도용 통신장비 확보
 - 경찰서장 및 소방서장은 재해발생시 기존의 통신장비인 소용무전기 등을 주민대피 유도용으로 전환 사용하되, 부족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 추가확보 관리
 - ⇒ 경찰서 및 소방서의 확성기 등을 이용.
- ※ 각 지역의 대피장소는 임시수용시설과 병행 사용한다.

8) 대피소 및 이재민수용시설 운영 및 안전대책

※ 이재민 수용시설과 대피소의 대피시설은 같이 사용.

1) 이재민 수용시설 지정현황

○ 수용시설 지정현황

구분	계		학교		마을회관		경로당		관공서		기타	
	개소	수용 능력(명)	개소	수용 능력	개소	수용 능력	개소	수용 능력	개소	수용 능력	개소	수용 능력
산청군	33	3,301	7	3,301	18	492	1	17	3	263	4	651

- 학교급식시설 사용 및 학교장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측과 충분한 협의 이행
- 주민들이 대피장소를 사전에 알 수 있도록 군정 소식지, 면사무소 각종 직능단체 회의시 적극 홍보

나) 이재민 구호예산 및 물자확보 현황

- 구호예산의 확보
 - 2012년도 일반회계 중 예비비에서 사용
- 구호물자 확보

※ 재해구호물품은 재해구호물품창고에서 수령

- 구호를 위하여 필요한 물품 중 부족분은 그 현황을 경남도청, 적십자사 및 전국재해대책협의회에 통보하여 지원 요청

다) 재해구호기구 설치 운영

- 중앙(소방방재청) : 중앙재해구호활동본부
- 경상남도 : 재해구호활동반
- 산 청 군 : 재해구호활동반

다. 생활필수시설 긴급복구 대책

1) 통신두절 대책

※ KT 산청지사

가) 점검사항

- 통화량 폭주에 따른 대처 방안 수립
- 방재행정 전용회선 확보
- 야간 정전시 통신확보
- 긴급통신시설 확보(유관기관, 아마추어무선, 위성전화)
- 통신구 및 국사건축물 등 재난관리 대상시설 안전관리 철저
- 태풍, 호우, 폭풍 시 피해원인의 면밀한 분석
- 기상특보(주의보, 경보)에 따른 지역별 통신시설 보호대책 강구
- 통신시설 주변 타부처 공사장 특별 관리
- 통신소통 고립 예상지역 대책 강구
- 분기국사 이원화 전송로 관리 철저
- 재난대책용 지휘회선 구성
- 집단 이재민 수용시설 회선 공급
- 재난 단계별 복구반 편성
- 재난발생 즉시 재난대책본부 구성 상황실 운용

나) 통신구 점검 주기

점검구간	점검주기				비고
	선로시설	전원시설	토목시설	정밀점검	
국내외 통신구	주1회이상	주2회	월1회	5년 1회	

마) KT 응급복구 대책본부의 구성 및 임무

담 당 별	분 장 임 무
본 부 장	1. 재난대책본부 총괄 지휘 및 재난대책 회의 주관
상황실장	1. 재난대책본부장 보좌 및 본부장 유고시 업무 대행 2. 대책본부 조직운영 및 상황 관리
고객시설반장 전송전용시설반장	1. 통신시설 피해상황 집계 및 복구대책 수립 2. 통신불통지역 파악 재해지역 통신망 구성 3. 피해복구 자재 소요량 산출 및 조치 4. 각종 건설용 장비 지원책 강구 5. 긴급복구반 및 복구지원반 현장 지휘
고객서비스반장	1. 가입전화 업무 불가능 지역 파악 2. 통신불통지역 및 공사구간 안내 3. 긴급 통신지원 업무 처리(이동용 공중전화 지원) 4. 재난지역 보안, 경비 5. 언론보도기관 협조체제 구축 6. 현장 복구요원 안전관리 7. 각종 구호대책 강구

바) KT 대책본부 상황실 운영

- 재난대책 근무체제를 3단계 상황별 구분운영하고 평시에는 당직계통에서 운영
- 상황실 근무편성
 - 1단계 : 기상특보 발령에 따른 경보(선로 비상 대기요원)
 - 2,3단계 : 특보발표에 따라 경계체제 돌입(선로 전직원)
- 근무시간
 - 평일 : 24시간 교대근무
 - 휴일 : 주야 교대근무
- 운영장소
 - 1단계 : 당직실
 - 2,4단계 : 재난상황실
- 운영방법
 - 비상특보 발효시 즉시 비상 근무체제 돌입
 - 상황실 근무요원에 대한 상황 단계별 임무 및 근무요령을 숙지
 - 상황발생시 비상연락망 현행화 점검

○ 기상특보시 재난단계별 근무요령

단 계 별	상 황 별	근무요령	근무요원
평시 및 준비체계 (주의보 발효)	○ 강풍주의보 발효시 ○ 강풍경보 발효시	○ 전직원 대상 비상특보 전파 ○ 공사현장 작업 중단 ○ 긴급복구 자재 확인 점검 ○ 긴급복구반 편성 및 복구 지원반 운용준비	선로분야 (1단계)
경계체계 (경보 발효)	○ 강풍경보 발효시 ○ 대형고장 발생으로 48시간 이상 복구 지연 예상시 ○ 기타 돌발적인 사고 로 사회적 물의예상시	○ 재난상황실 가동 ○ 전직원 비상근무조 운용 ○ 긴급복구반 운용 ○ 비상복구자재 및 기동장비 운용 ○ 순회점검 강화	선로분야 (2단계)
비상체계	○ 강풍경보 발효시 ○ 지역적인 피해 발생시 ○ 기타 돌발적인 사고 로 사회적 물의발생시	○ 피해현장 출동 조치 ○ 비상근무조 및 복구반 관리 ○ 유관기관 연락망 가동 ○ 재해상황 자료 수합 및 보고	전분야 (3단계)

사) 긴급복구대책

□ 복구단계

- 고립지역 우선 해소 ▶ 긴급복구 후 항구시설로 복구
- 피해재발이 예상되는 지역 피해 최소화 대책강구

□ 시설별 긴급복구 우선순위

우선순위	항별	복 구 순 위	최저복구수준
제1순위	가 나 다 라 마 바	국가안보 통신 군사 및 치안 통신 재해대책용 통신 민방위경보 전달 통신 전과관리 통신 고립지역 우선해소 통신	100%
제2순위	가 나 다 라	재해구호기관 공중용 전기통신, 기상, 소방, 언론기관통신 주한 외국공관 및 연합기관 금융업체 통신	50%
제3순위	가 나	자원관리 대상업체 통신 정부투자기관 및 의료업체 통신	50%
제4순위	가	제1,2,3순위 이외 통신	

2) 전기시설 대책

※ 한국전력공사 산청지점에서 담당.

가) 점검사항

□ 재난의 사전예방 및 수습복구능력 제고

- 재난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 점검결과 부적합 설비의 개수유도
- 재난발생상황 신속 보고
- 재난응급조치 활동 실시
- 응급조치상황 결과 보고
- 관할자치단체와 응급조치에 필요한 사항 협의

□ 재난취약시기 사고예방활동

- 계절별 전기안전기간
 - 해빙기(3월) : 지반침하 등에 의한 전기사고 예방
 - 장마철(6~7월) : 침수 등에 의한 감전사고 예방
 - 동절기(11월) : 난방용 전열기 사용증가에 따른 전기화재 예방
- 활동내용
 - 사고취약요소 중점 점검
 - 전기사용자에 대한 계몽 홍보 강화
 - 비상근무 실시
 - 시장·유흥업소·숙박업소등 다중이용시설 특별안전점검 실시
 - 사고발생시 신속한 복구지원

□ 재난관리 대상시설물의 지정 관리

- 재난관리 대상시설물의 지정기준
 - 안전관리대상 수용가로 전기용량 300kW이상인 다중이용 시설
- 관리방법
 - 관리카드 작성 및 기록 유지
 - 월 1회 이상 안전점검 실시

□ 전기사업법에 의한 정기검사 및 점검

- 신설·증설중인 전기설비는 공사 완료전 사용전 점검 실시
- 운영중인 전기설비는 1~3년 주기로 정기검사 실시
- 검사결과 부적합 설비는 소유자에게 통지하여 신속한 개보수 추진

□ 재난발생시 응급조치 및 피해복구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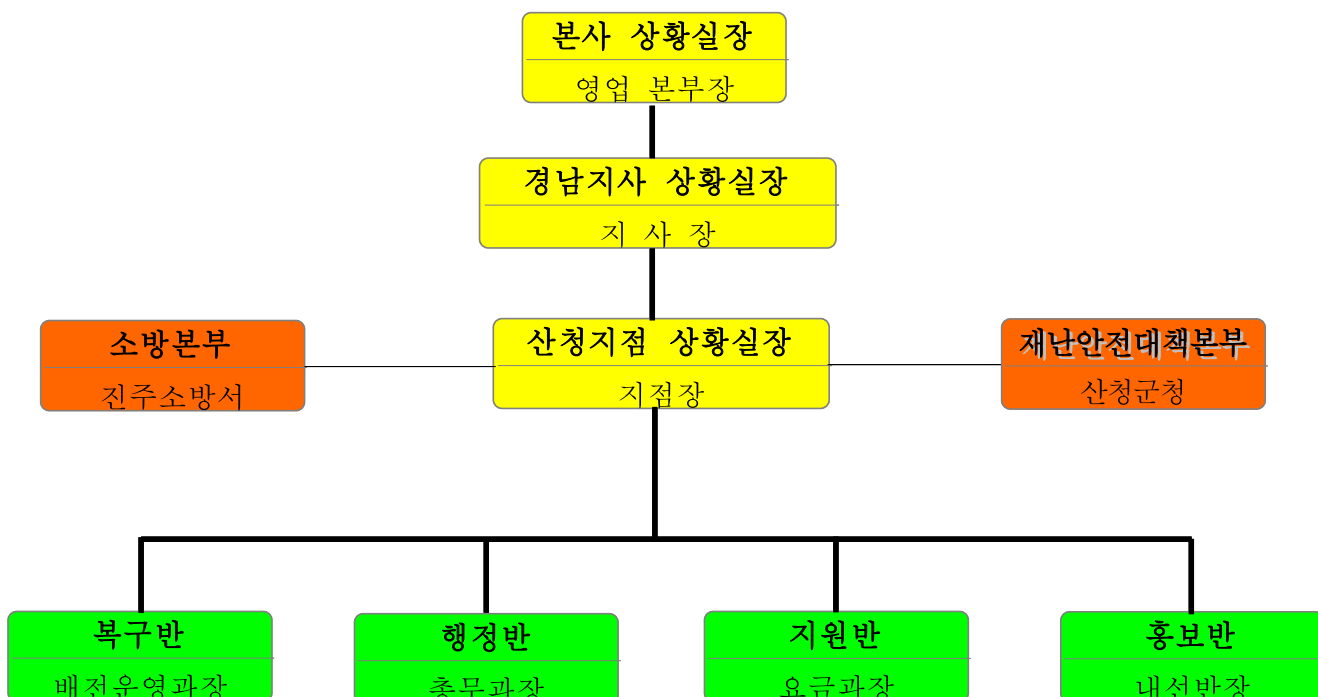
○ 재난발생시 초동 출동

- 재난현장에서 비상전원공급 및 안전시설 안전조치 시행
- 출동인원 : 4명(24시간 비상대기반)
- 출동장비 : 차량 및 비상출동장비
- ※ 사고 규모에 따라 출동인력 및 협력업체 장비 보강

○ 사고대책기구의 설치 운영

- 사고대책기구 편성
 - 본 부 장 : 지점장
 - 반 장 : 배전과장, 고객지원과장, 요금과장, 내선반장
 - 반 원 : 직원
- 사고대책기구의 운영

나) 한전 산청지점 상황실 편성 조직도



임 무

- **상황실장** : 재해상황실 운영에 관한 업무 총괄
- **행정반** : 정보파악, 비상발령, 상황실 운영지원, 일반행정지원, 장비 및 자재지원
- **복구반** : 공사업체 동원계획 수립시행, 설비피해 파악 및 긴급복구
- **홍보반** : 피해복구 안내 및 전기안전 홍보
- **지원반** : 자재수급, 비상동원 및 복구지원, 관련기관 업무협조

다) 재난상황실 세부 임무

▣ 비상발령 및 사업소 상황실 개설(행정반)

- 비상발령에 대한 비상소집 지시(야간: 당직자)
- 지자체 재해대책상황실과 복구대응에 대한 사전 공조체제 구축
- 기상상황, 정전 및 설비피해 발생 여부에 대한 상황보고 접수

▣ 현장투입 직원 및 협력업체 안전교육 시행(복구반)

- 차량, 장비 이동간의 교통안전수칙 준수 및 방어운전 시행
- 개인용 보호용구 착용철저 및 안전작업 수칙에 따른 작업시행
- 복구작업은 2인 1조로 투입하여 충전부 작업시 지상감시 철저히 시행
- 강풍에 의한 구조물 도괴 및 비산물에 의한 안전사고에 유의
- 침수도로, 교량범람 등으로 상습 고립되는 원거리 지역의 복구인력 고정배치

▣ 재해 상황전파 및 재난 위해설비 신고사항의 신속대응 교육(홍보반)

- 안내부서에 기상상황 및 배전설비 피해현황 자료 수시통보하여 고객안내
·지역별 정전현황, 배전설비 피해현황, 복구작업 현황, 예상송전 시간등
- 위해설비 신고접수분 신속처리에 대한 안내부서 종사자 교육
·설비피해, 재난에 의한 위해개소 신고 접수분은 신속하게 상황실로 보고하여 일반인 안전사고 및 고장파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교육 강화
- 긴급조치 신고사항 : 전주도괴 위험, 단선된 전선, 늘어진 전선, 수목접촉으로 아크발생, 침수에 따른 감전위험등

▣ 상황보고(복구반)

- 보고시간 : 1일 4회 (06:00, 11:00, 17:00, 21:00)
- 2차 사업소 상황을 종합집계하여 자체 상황실장 보고 및 본사보고
- 주요 보고내용 : 재해상황 보고서식 참조

라) 배전설비 안전관리 및 복구

배전운영부서

- 예상되는 재해에 대한 사업소내 상황전파 및 조치사항에 대한 진척파악
- 직원 비상연락망 점검 및 협력업체(통신업체 포함) 비상출동 태세 확립
- 응급복구용 자재(전주, 전선, 변압기등 주자재) 및 장비, 차량가동상태 점검
- 배전선로 운전계통의 상태점검 및 계통 복구조치
 - 타선로로 부하전환 구간여부, 보호계전기 기능정지 여부등 점검 및 계통복귀
 - 비상상황에서 개폐기 신속조작이 가능토록 자동화개폐기 Locking 해제
- 배전선로 안전순시 강화 및 재해 취약개소 긴급 보강
 - 강풍시 수목접촉 우려개소 긴급 수목전지 시행

□ 배전부서

- 진행중 공사현장 점검 및 재해대비 안전조치 시행
 - 가선중 전선, 철거작업중 기기등 강풍시 선로고장 및 낙하우려 개소 정비
 - 지중굴착개소, 전주철거 구덩이등 호우시 지반유실·도괴 우려개소 보강
- 지장전주이설공사 현장점검 및 일반인 안전사고 방지활동 전개
 - 진행중인 지장전주 이설공사 조기 시공완료하여 안전확보
 - 기상악화시 일반인감전이 우려되는 개소 적정 안전조치 시행

□ 배전자동화, 통신부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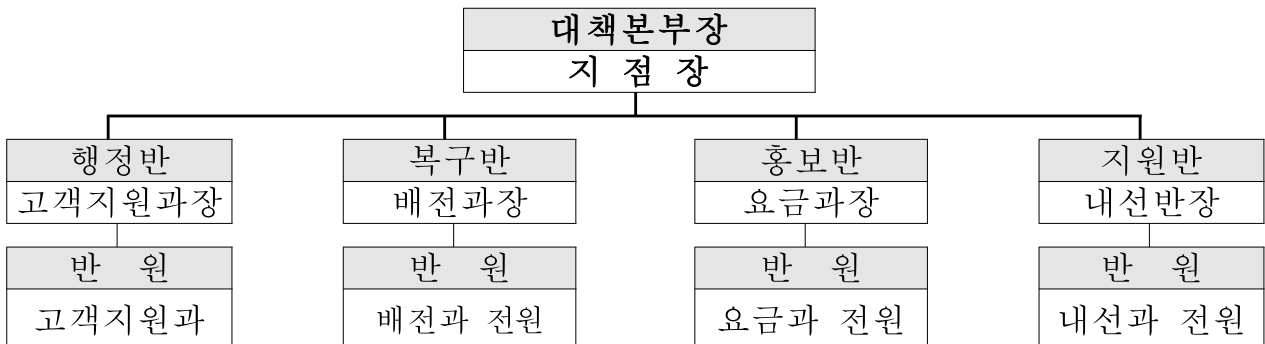
- 배전자동화시스템 통신망 및 원격조작 작동상태 점검
- 장시간 정전시대비 TRS기지국 점검 및 휴대용단말기 충전상태 확인

마) 긴급조치 및 비상 복구반 편성

① 재해대책상황실 긴급 편성

- 관련근거 : 사규 비상근무규정(총무0800)에 의함
- 상황실 운영 시기 : 집중호우, 홍수, 태풍, 화재 등 자연재해 및 재난으로 인한 전력계통의 중대한 사고발생 또는 발생 우려

○ 조 직



○ 임 무

- 행정반 : 비상발령, 상황실 운영지원, 유관기관 업무협조 및 행정지원
- 복구반 : 공사업체 동원, 설비피해 파악 및 긴급복구, 자재수급
- 홍보반 : 피해복구 안내 및 전기안전 홍보
- 지원반 : 내선설비 피해복구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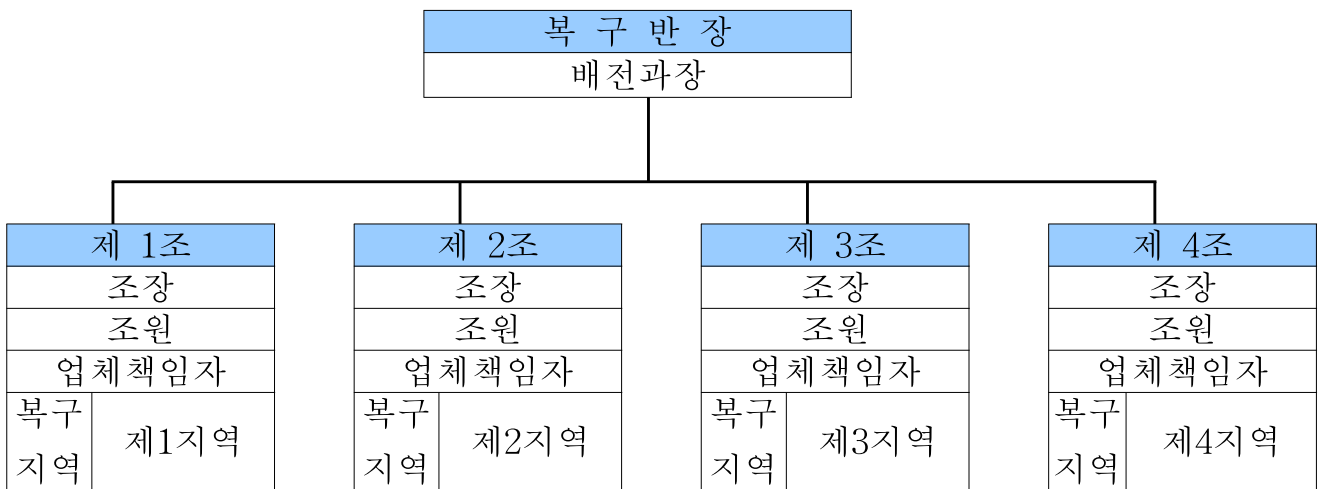
※ 반별 인원구성은 각 반장이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

② 피해구간 분리를 위한 현장출동

- 출동인원 : 배전운영실 근무인원 3개조 9명
- 출동차량 : 3대(활선 바켓트럭 - 일상조1, 저압보수차 - 일상조2, 더블캡 - 휴무조)
- 장 비 : 개인용 안전장구, 기기조작봉, 투광등, 무전기, 휴대폰 등
- 활동내용 : 피해구간 분리(상황실에서 SOP에 따라 조작지시 - 현장 임의조작 금지) 및 배전설비 피해내역 파악 후 상황실 보고

③ 배전설비 피해 복구반 긴급 편성

○ 조 직



○ 임 무

- 복구반장 : 배전설비 피해복구 총괄 지휘
- 각 조장 : 담당지역 피해설비 복구공사 감독
- 각 조원 : 조장 업무 보조 및 자재수급 지원
- 연락책임자 : 공사지시 전달 및 공사내용 수시 보고

※ 담당지역의 피해설비 미 발생시 인근지역 피해복구 지원 가능

바) 중요고객 정전안내 및 언론전파, 설비, 운영

① 중요고객 정전안내

- 고객추출 : 판매SI 시스템의 정전구간 내 중요고객 추출
- 정전정보 안내자 : 고객지원과 직원
- 안내방법 : 정전고객 개별 전화안내

② 정전관련 언론대응

- 보도내용 : 정전내용 안내 및 신속복구 노력에 대한 언론홍보
- 언론기관 : 한국방송(케이블TV 자막방송), 산청신문, 고향신문

③ 설비측면

- 선로용 보호기기 수시점검을 통한 배전선로 보호협조체제 구축
- 배전자동화 시스템의 최적 운전상태 유지
- 배전선로별 연계성 확대

④ 운영측면

- 배전선로 계통변경 사항을 포함한 SOP 관리 철저
- 배전선로별 최대부하 및 선로구간별 부하관리 철저
- 유관기관 및 협력업체와의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
- 수시로 모의훈련을 실시하여 긴급 대응능력 배양

3) 교통두절 및 구조 및 지원 대책

가) 점검사항

- 교통두절 예상지구에는 사전에 우회도로를 지정하여 주민고립을 예방
- 방재물자 의약품 수송에 필요한 인력과 차량 확보
- 신속한 교통통제로 인명피해 최소화
 - 피해발생시 교통통제가 필요한 지역의 구간을 설정 차량 통제
 - 교통통제 입간판 또는 바리케이트 등 차단시설 설치
 - 상황에 따라 인력 및 장비증가 배치
- 차량통제 시 신속한 우회도로 확보 등 소통대책 마련
 - 사고 발생지역 중심으로 원거리 차단 우회조치로 교통 혼잡 해소
 - 교통외근근무자 신속 배치, 교통량에 따른 신호주가 조정 등
- 신속한 지휘보고체제 확립
 - 재해발생으로 인한 교통통제 시 신속한 지휘보고
 - 교통두절상황 신속·정확히 파악 보고·통보(유관기관 등)
 - 첩보 즉시 현장지휘체제 구축 및 지휘관(경찰서장) 현장지휘

나) 세부계획

- 긴급 종합상황반 및 현장상황반 편성 운영
- 현장지휘본부 및 경찰정보 지원센터 운영
- 초동조치
 - 최초 신고접수자(지구대 및 파출소, 상황실)
 - 정확한 발생장소 및 규모의 파악
 - 접수와 동시 신속한 상황전파
 - 유관기관 통보
 - 직근상사 보고
 - 현장출동 근무자와 지속적인 연락을 통한 상황의 보고·전파
- 최초 현장임장 근무자
 - 신속한 사태파악후 상황실 무전보고
(사태유형, 피해정도, 지원경력 필요여부)
 - 현장주변 교통통제(비상연락, 장비의 수송로 확보)
- 지구대장 및 파출소장 등 최초임장 간부 조치
 - 추가인력·장비의 필요여부 판단 및 요청
 - 지휘보고(대략적인 피해·향후전망, 현장지휘본부 설치 필요성)
 - 적절한 현장 지휘본부 장소의 물색
 - 후속증원 경력에 대한 임무 부여
 - 지휘관 도착 전까지 인명구조, 교통통제, 주민대피 등 제반활동 지휘
- 교통 외근간부 조치
 - 비상출동로 확보 등 교통관리
 - 사고현장 주변에 교통 외근요원을 배치하여 긴급차량의 현장 진입로 및 주차장 확보(필요시 레카동원, 차량이동 조치)
 - 수시로 교통상황 파악, 비상출동로 걱정여부를 상황실(지령실)로 통보
(필요한 경우 헬기 지원요청)
- 상황실장 조치
 - 112·교통순찰차, 재난관리부대, 5분대기대, 형기대 등 출동 조치
 - 지휘관 및 상급기관 보고, 유관기관 통보
 - 현장근무자 요청사항 지원(추가 경력 및 장비)
 - ※ 필요시 전직원 비상소집

4) 각급 유관기관 소관업무 협조·지원사항

○ 방송기관에 상황전달 협조요청(홍보 및 대피방송, 대국민 홍보)

연 론 매 체	주 소	전화번호
지역 KBS	진주시 신안동 13-22	741-7364
지역 MBC	진주시 가좌동 700-1	771-2114
라디오(KBS)	진주시 신안동 13-22	741-7364
라디오(MBC)	진주시 가좌동 700-1	771-2114
케이블 TV	진주시 동성동 9-9 삼광빌딩	740-3001
기타 방송매체	-	-

○ 대한적십자사에 이재민 구호활동 요청

- 이재민구호를 위해 도 및 시·군과 보완적 역할담당
- 수용시설에 집단급식 및 이동세탁차량 신속배치 운영

○ 인근 군부대의 병력 및 장비지원 요청

○ 군에서 동원된 병력과 장비, 예비군 등과 함께 도로 및 철도 복구

○ 인명피해 발생시 인명의 구조와 실종자 수색을 소방·군·경과 협조하여 신속 지원

○ KT는 피해를 입은 통신시설 복구(현장근무자는 협조 및 통제)

○ 한국전력공사는 피해를 입은 전기시설 복구(현장근무자는 협조 및 통제)

○ 상수도시설 복구(현장근무자는 협조 및 통제)

○ 한국가스안전공사는 피해를 입은 가스시설 복구 및 무상 안전점검 실시(현장근무자는 협조 및 통제)

○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전기시설에 대한 무상안전점검 실시(현장근무자는 협조 및 통제)

○ 공공시설물 복구순위 결정을 위한 관계기관 협조요청

○ 가축피해에 대한 응급대책 관련기관 협조요청

○ 선박연료 등의 누출, 인화방지 및 확산방지 조치 및 관계기관에 협조 요청

○ 단계별 근무체계 및 업무별 표준행동절차 참조.

※ 각 해당 유관기관은 담당업무별로 수립된 계획에 의하여 추진하며 산청군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연락체계 유지.

3. 복구단계

가. 시설물 응급복구 대책

※ 방재관련 시설물을 최우선 복구

1) 응급복구 인력 및 장비 동원체계

가) 응급복구 인력

- 산청군 공무원 전직원 교대근무 및 유관기관 가용인원 교대근무
- 자원봉사단체 지원인력 및 군부대 지원인력.
- 인근지역 지자체 지원인력

나) 응급복구 장비동원 순위 : 동원장비현황 참고.

- ① 산청군 보유 관용장비
- ② 유관기관 보유 장비
- ③ 군부대 지원 장비
- ④ 민간보유 장비

2) 기타시설물

- 기업시설의 피해상황 파악 및 복구
- 하천시설 피해상황 파악 및 복구
- 주택의 피해상황 파악 및 복구
- 응급대책용

3) 공공시설물 복구 순서

- 도로, 교량, 공공시설물 피해상황 파악 → 응급복구, 항구복구, 응급대책수립 → 복구반 및 장비 동원 → 복구 실시 → 2차 재해대비책 마련
- 가스, 상수도, 하수도, 기타 라이프라인 시설피해상황 파악 → 작업순서결정 → 복구 실시
- 재해발생시는 즉시 응급복구 대상시설물에 대한 응급복구계획을 수립.

나. 방역 및 보건위생 대책

1) 방역 실시계획(방역물자 확보 등)

가) 취약지 방역소독(살충, 살균)

□ 방역시기

- 유충구제사업 실시 : 3 ~ 5 월
- 하절기 방역소독 : 5 ~ 10월
- 재해 및 재난 발생지역 : 수시

□ 운영 방식

- 방역반 편성, 운영
- 보건증진과 및 각 동별 방역반 : 11반 22명
- 민간방역업체 방역활동 참여 협조

나) 방역비상근무 실시

- 근무기간 : 2012. 5. 1 ~ 10. 31(6개월)
- 근무시간 : 평일 오후 20:00까지 (토요일 16:00, 공휴일 09:00~16:00)
- 근무인원 : 2인 이상 (보건증진과 2)

※ 근무내용

- 전염병 집단발생이 우려되는 집단생활시설 등에 대한 순회점검 및 상주 근무
- 병·의원, 약국 등에 대한 모니터링 확행
- 비상근무기간 중 전염병 관리요원 및 장비의 타 업무 차출 금지

다) 방역소독반별 운영방법

- 보건증진과 방역반 : 관내 취약지 순회 1일 3회 방역소독 실시
- 동방역반 : 지역단위로 주 3회 이상 실시
- 민간자율방역반 : 각 방역반과 중복되지 않도록 관내 지역별 방역반별 소독일정 확인실시
- 민간방역업체 : 취약지 집중방역시 지원 협조(유류 및 방역약품 지원)
- 폭우 및 침수지역의 방역소독은 상황에 따라 실시하되 주 2회 이상을 원칙으로 함
- 예방약품 및 방역소독약품 부족시 긴급지원
- 재해지역의 하수구, 화장실, 쓰레기장 등의 해충 서식처나 발생원에 정기적 살충·살균 소독 실시
- 고열 또는 설사환자 등 전염성 질환자는 발생 즉시 보건기관에 신고토록 홍보

라) 의료구호

- 재해로 인해 부상을 당한 이재민은 의료보호법에 의거 의료보호 1종대상자로 책정, 국고부담으로 치료
- 재해발생지역의 전염병 예방 및 진료활동 전개
 - 기동의료반 편성·운영
 - 이재민 공동수용소 의료진 상주근무
 - 보건증진과 및 보건지소 등에 비상대기조 편성·운영

마) 식품위생관리

- 식품접객업소
 - 침수된 원재료는 폐기처분
 - 날음식 및 부패·변질 우려가 있는 식품은 판매금지
 - 무표시, 무허가 식품은 사용금지
 - 급수는 수돗물을 사용하고 식수는 끓여서 제공하되 지하수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수질검사를 반드시 실시한 후 급수 실시
- 집단급식소 및 이재민 수용소
 - 수해지역에는 식품위생감시원이 정기 순회하여 식중독 예방
 - 집단 수용시설에는 식품 위생 감시원을 고정 배치하여 급식관리 철저
 - 식수는 반드시 끓여서 제공
 - 오염된 식기류, 도마 등은 차아염소산나트륨을 사용하여 소독하거나 반드시 햇볕에 건조한 후 사용

2) 의약품 확보 및 관리대책

가) 확보 및 관리대책

- 보건의료원 및 지역응급의료기관 보관.
- 부족분에 대해서는 재난기금으로 대체
- 의약품의 수급 및 관리는 보건증진과에서 담당하며 현황 및 수량 관리
- 일반 방역약품과 분리하여 보관.

- 전년도 보관 분은 금년도 일반 방역약품으로 사용하고, 금년도 방역약품은 새로 구입하여 변질방지.
- 방역물자를 정기적으로 보관상태 점검.
- 정전시 의약품 보관 대책 수립.
- 방역기자재 조달, 확보, 보관 상태 확인(세탁, 소독장비 등)
- 방역의약품 확보(수질분석, 소독, 세탁, 탈취, 동물용 등)
- 5월 이전에 방역물자 전량 확보

나) 수해지역 필수약품 목록

□ 외용제

- 피부질환치료제
 - 항생제, 항진균제 함유 연고
 - 가려움증 치료를 위한 항히스타민 연고제
 - 습진치료제(스테로이드함유 연고 등)
 - 창상 감염, 부스럼 등의 치료제(후시딘 연고 등)
- 안약, 안연고
- 파스류(근육이완, 타박상 등)
- 소독약(과산화수소수 등)

□ 위생용품

- 탄력붕대, 일반붕대, 거즈, 탈지면, 일회용 밴드 및 마스크 등

□ 해열·두통·진통·소염약 및 감기약 등

- 종합감기약, 해열제, 두통약, 진통제 및 소염제

□ 기타

- 위궤양 치료제, 겔포스 등 위장보호제, 주사기, 생리 식염수 등,
- 기타 만성질환자(고혈압, 당뇨약 등)용 의약품

3) 부상자 진료 및 예방접종

가) 기동 의료반 편성운영

□ 임 무

- 부상자, 응급처리 및 환자 분류
- 대량 환자 발생지역의 긴급 의료지원
- 기타 필요한 의료지원

나) 간이진료소 설치 운영

임 무

- 응급환자 치료 및 후송
- 전염병환자 색출 및 예방

편성기준

- 인 원

계	의 사	간호사	행정요원	운전기사	임상병리사
6	1	2	1	1	1

- 장 비

구 급 셋	구급낭	천 막	차 량	비 고
1셋	1개	1조	1대	

설치 장소

- 이재민 공동대피소
-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5) 이재민 수용시설의 보건위생 대책

※ 방역 및 보건위생대책에 준하여 실시하되, 전염병 및 집단환자 발생시 아래와 같이 시행

가) 전염병 환자 발생시 신고·보고 체계

① 보고체계

: 민간의료기관 등 ⇒ 보건의료원 ⇒ 도

※ 법정전염병 신고·보고에 따른 보건의료원의 역할

- 전염병환자, 집단환자 신고 접수
- 전염병환자, 집단환자 발생 보고
- 전염병환자 사례조사 및 전염병 발생수준 및 유행여부 파악
- 자료분석 및 정보환류
- 유행발생시 기초조사 실시 및 기초조사 결과 보고
- 지역사회 홍보

② 보고방법

* 즉 시

▶ 유행 발생시

⇒ 2명 이상의 환자가 시간적 공간적으로 밀집되어 발생할 경우

▶ 의사환자 발생시

⇒ 5명 이상 집단환자 발생시 환자발생 상황을 우선 질병관리
본부에 유선보고

▶ 콜레라 등 특수질환이나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 발생시

⇒ 1명이라도 보고

※ 특수질환 : 최근 5년간 국내 발생이 없었던 질환이나 신종질환 등

○ 제1군, 제4군 전염병 : 즉시 보고

○ 제2군, 제3군 전염병 : 매주 1회(월) 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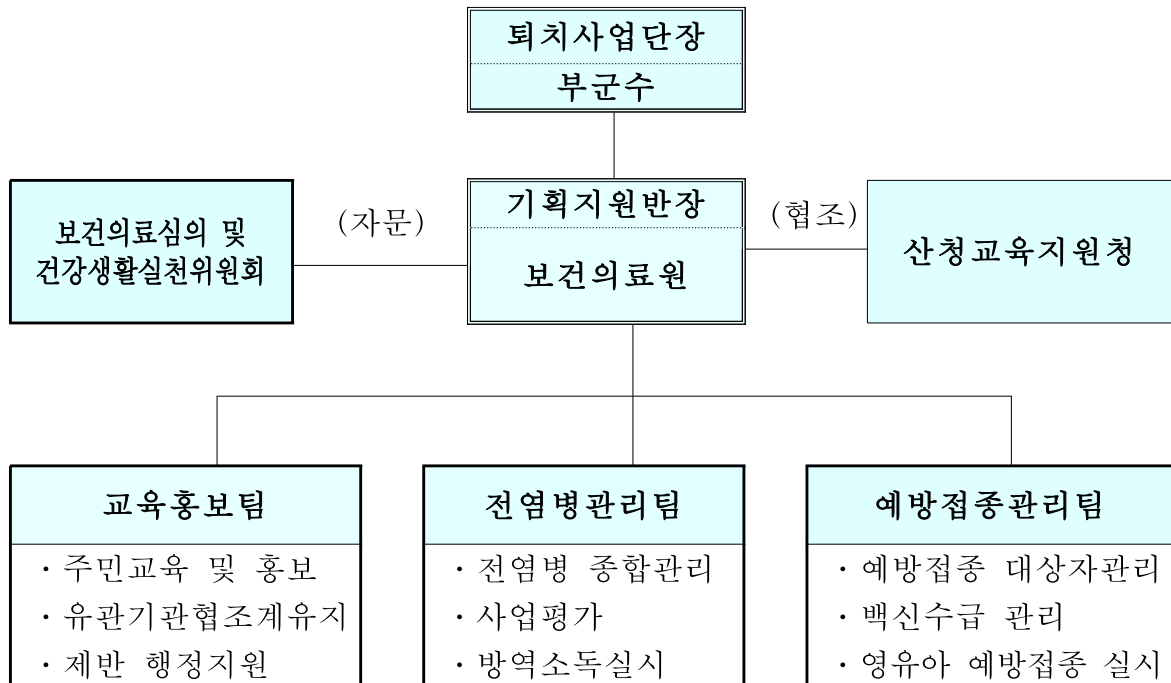
○ 2명 이상의 전염병환자 발생이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

나) 집단환자 발생시 대처

① 전염병 『퇴치사업단』 지속운영

○ 군 : 방역대책반 (대책반장 - 보건증진과장)

○ 읍면 : 주민자율방역단 운영



② 팀별 주요임무

구분	팀장	팀원	주요운영내용
기획지원반	보건행정담당	2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염병 추진계획 수립 - 사업감독 및 추진경과 평가 - 제반관리 방안 지원
교육·홍보팀	건강증진담당	2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교육 및 홍보 - 반상회, 지역언론 등을 통한 홍보 - 교육 및 읍·면·동사무소 등과의 협조유지
전염병 관리팀	위생관리담당	3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염병 발생 전반적인 관리 방역소독 및 역학조사 실시
예방접종관리팀	예방의약담당	3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방접종 대상자 파악 및 접종실시

③ 집단 환자 발생시 조치요령

- 제1단계 : 조기치료 및 확산방지를 위한 환자관리
 - 적절한 치료 제공(필요시 항생제 내성검사 의뢰)
 - 입원 및 격리조치
 - 확진 전이라도 필요시 입원치료 및 격리조치
 - 환자관리
 - 환자의 장내배설물 및 사용물품의 철저한 관리
 - 개인위생 철저 -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 씻기 등
 - 완치 시까지 음식조리 및 육아 금지
- 제2단계 : 확산 방지를 위해 접촉자 및 공동폭로자 관리
 - 주기적 발병여부 감시
 - 의심되는 질병의 최대 잠복기까지 발병여부 확인·조사
 - 고위험군에 대한 필요시 격리조치
 - 설사증상 발생시 즉시 보건의료원 내소 지도 등 보건교육 실시
 - 질병 확진 시에는 해당 질병에 대한 접촉자 관리 실시
- 제3단계 : 추정원인 혹은 전파경로에 대한 관리
 - 추정원인 음식물 폐기, 오염 가능 식수원 공급 차단 등 조치
 - 취약지역에 대한 살균, 살충 소독
 - 안전이 확보된 음식물 및 음용수 제공 조치

④ 전염병환자 : 격리수용 치료기관 지정 및 관리

- 지정현황 : 성심병원

⑤ 전염병 발생요인 사전 관리

□ 취약시설 등에 대한 중점관리

- 학교, 사회복지시설등 전염병의 전파가 우려되는 집단시설에 대한 방역소독 강화 - 자체 방역실시로 약품지원

□ 설사환자 등 콜레라 감시초소 운영

- 기 간 : 4월 ~ 10월
- 장 소 : 상황에 따라 설치운영
- 운영방법 : 해수, 어패류 수거검사
(주 1회 이상) --- 해수온도 17℃이하일 때까지
-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시설 등 종사자 관리

다.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1) 자체피해조사 및 합동조사

가) 피해조사반 구성

- 본부장의 지시에 따라 해당업무 실과별로 피해조사반을 구성.
- 피해조사반장은 해당실과소장이 되며, 반원은 업무담당 실무자로 구성.
- 피해조사항목을 면밀히 파악하여 조사.

나) 피해조사 일반적 유의사항

□ 피해금액 산정 및 조사방법

- 피해조사는 현지답사후 시설별로 조사하고 개소별로 피해액을 산정
- 항구복구계획과 상관없이 순수한 피해부분에 대해서만 피해물량 및 피해금액 산정
- 세부공종별로 산출기초를 작성하여 재해대장에 기재 또는 별지로 첨부
- 자연재해조사 및 복구계획수립지침에서 정한 피해시설은 조사대상에서 제외
- 시설물 노후 및 관리소홀로 인한 재해지구는 대상에서 제외시킬 것.
- 도로대장, 하천기성제 대장 및 각종 시설물관리대장 등을 참조하여 관리등급 등을 조사하고 피해확인이 애매모호한 시설은 시설물관리대장을 재해대장에 첨부
- 공사하자기간내 시설물은 부실시공으로 인한 하자여부를 엄밀히 검토한 후 결정
- 피해현지 조사양식은 사전에 별도 작성하여 비치
- 피해액 산정 : 시설별 세부공종별 피해물량 × 기준단가
 - ※ 특히 복구소요에 필요한 금액을 피해액으로 계상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부대공, 자재대, 부과세, 관리비, 이윤 등은 단가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중으로 산정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기 바람.

□ 사진촬영방법

- 피해전경을 가능한 자세히 촬영하여 향후 기록보존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하천제방 피해등 피해연장이 긴 지구는 가능한 연속사진 촬영
- 우선 전반적인 피해상황이 잘 나타나도록 원경을 촬영
- 세부적으로 피해부분이 설명될 수 있는 근경을 부분별로 촬영
- 재해대장에 3*5인치의 크기로부착
- 사진만으로 피해유무, 물량, 피해종류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촬영
- 피해물량이 많은 지구는 연결사진 촬영을 실시
- 피해사진은 디지털카메라로 촬영
- 피해범위가 큰 것 등에 대해서는 점모를 표시하는 것 외에, 적당히 중간의 피해상황이 보이는 사진을 첨부한다. 사태 등의 전모를 나타내는 경우는, 수매를 연결해 합쳐도 좋다.
- 와이드 촬영을 하면 양 사이드(기종점)가 불선명해지기 쉽기 때문에 피해야 한다.
- 횡단지형이 쉽게 판단되도록 노력할 것, 또한 공중 및 복구공법에 따라 부분 촬영을 행할 것.
- 비슷한 지점을 일괄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모를 나타내는 것 이외에, 개개의 장소가 판정 가능한 사진이 필요하다.
- 전후시설 등의 상황이 판명되도록 하고, 기종점으로부터 상하류(전후) 방향의 사진을 촬영해 둘 것.
- 촬영할 때에는 피해장소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초목 등이 벌채를 행할 것. 또한 환경보전의 관점으로부터, 크히 합동조사상 또는 공사의 실시상 지장을 받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 남기도록 할 것.
- 피해 전 연장을 알 수 있도록 하며 기종점에는 반드시 폴 등을 세워 촬영할 것.
- 옹벽, 호안 등의 구조물의 피해에 대해서는 파괴상황을 스타프, 폴 등으로 표시하여 촬영할 것. 특히 균열 등은 치수를 알 수 있도록 할 것. 또 옹벽의 경사변경 등에 대해서는 폴 등으로 표시하여 촬영할 것.
- 범람 등에 따른 일반피해의 사진을 첨부할 것.
- 재해로부터 합동조사를 하기까지는 어느 정도의 시일을 요하기 때문에 특히 피해의 사실이 분간하기 어려운 부분은 재해 직후 가능한 빠른 기회에 촬영해 둘 것.
- 응급공사 등 합동조사 전에 착공하는 경우는, 피해의 사실, 형상, 치수, 수량 등이 판정 가능한 사진을 촬영하여 확인한 후 착수할 것. 특히 기종점에 대해서는 사진만으로 그 위치가 확인 가능하도록 충분히 배려하여 촬영할 것.
- 붕토를 제거하기 전에 사진을 촬영할 것

- 필름 또는 메모리는 재해대장과 함께 보관할 것.
- 감조부 및 취수언 상류부의 사진은 수위가 낮을 때에 촬영할 것.
- 사면 등의 경사면에는 계단 상으로 폴, 축척을 사용하여 단면의 폭, 길이가 판명될 수 있도록 촬영할 것.

2) 피해유형별 복구비 지원

□ 기본방침

현행 재해복구비용 산정기준 상에 제시된 공공시설물의 종류는 도로, 교량, 하천, 상하수도시설, 환경시설, 국립공원시설, 농업시설, 항만어항시설, 학교시설, 산림시설, 철도시설, 소규모시설, 소하천, 군시설, 문화재시설, 기타시설, 우정시설 등으로 구분되나, 공학적으로 공종판단이 불필요하거나 재해복구비용 산정기준상에 단위품목, 기계류 등으로 분류되어 있는 사항들, 조사상의 어려움이 미미한 것, 군시설과 같은 특수한 경우이거나, 문화재시설등과 같이 매우 전문화된 지식을 가진 인원이 조사하여야만 하는 경우 등은 기존의 피해조사기법 및 복구비용 산정기준을 사용한다.

□ 복구비 지원 참고사항.

- 이재민 구호비 지원기준 참고
- 국고 및 의연금 지원기준 참고
- 행정자치부 국립방재연구소 피해조사체계 개선방안 지침서 참고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자연재난복구비용 산정기준 참고

3) 피해유형별 복구계획 수립

가) 응급복구

- 자연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유형별 복구계획은 별도로 수립하지 않고 상기에 수립된 복구계획을 사용.
- 응급복구는 임시로 복구하여 차량통행 등 피해시설의 사용목적에 어긋남이 없도록 조치

나) 완전복구

- 재난발생 후 피해조사 계획 및 절차에 따라 조사된 결과를 근거하여 복구계획을 해당업무 실과별로 수립

- 재난상황 종료 후 자체 피해조사반을 편성하여 상세히 조사하고 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재난발생 시에는 재난이 재발되지 않도록 복구함.

다) 복구대상

- 주택복구
- 농경지 복구
- 농림시설·농작물 및 산림작물의 복구
- 축산물 증식시설의 복구와 가축등의 입식
- 공공시설의 복구
 - 도로, 교량
 - 상하수도시설
 - 환경시설, 국립공원시설
 - 농업시설, 항만어항시설
 - 학교시설
 - 산림시설
 - 소규모시설, 소하천, 하천
 - 군사시설, 문화재시설
 - 우정시설, 기타시설

4장 업무유형별 표준 행동요령

제1절 풍수해 업무

제2절 기타 자연재난 업무

제4장 업무유형별 표준행동 요령

제1절 풍수해 업무(태풍,호우,강풍)

1. 재난취약시설 점검, 지정관리

가. 방재시설물점검 정비사항

○ 방재시설의 종류

- 소하천 및 하천시설 : 제방·수문·배수관·유수지 및 수위 관측시설 등
- 도로 및 철도시설 : 교량, 높이 5m이상의 옹벽·석축 등
- 상·하수도시설 : 취수배수정수시설, 송배수관로시설, 배수펌프장 및 하수관거 등
- 수리시설 : 저수지, 양수장·배수장, 방조제, 하구둑, 용수로·배수로 및 보 등
- 사방시설 : 사방댐 및 야계사방 등

○ 사전조치 및 점검사항

- 군 전체 방재시설물에 대하여 4월말까지 점검 실시
- 군의 시설물 관리부서 및 관련기관 합동으로 점검 실시
- 점검 결과를 군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보고
- 시설별 주요 점검사항
- 〈소하천 및 하천시설〉
- 제방의 누수, 세굴 등 붕괴위험 요인
- 홍수시 유수소통에 지장을 주는 수목·건물·야적 골재 제거상황, 각종 하천 전용시설물 정비
- 배수문 본체 및 날개벽 균열·파손부분 확인
- 스핀돌, 권양기 및 문비(부식, 도색)상태 점검
- 붕괴위험 제방의 개·보수 및 유지관리
- 유수지 퇴적토사 준설 및 수초제거 등
- 〈도로 및 산사태 위험지역〉
- 도로 및 철도시설, 사방시설(산사태 위험지역) 및 기타 방재시설은 지역의 재난 유형을 감안하여 점검(산사태 위험지역은 산림청 산사태 위험지 판정기준에 의하여 점검)
- 〈상·하수도시설〉
- 관측시설, 안전망, 동력, 비상전원, 배선관계 이상유무 등 확인
- 유수지 퇴적토 준설 및 기계·전기시설 정비
- 양·배수펌프장의 안전망 및 동력상태 이상유무 점검·정비

- 펌프장 등의 비상전원장치 및 배선상태 이상유무 확인
- 관리자 배치, 근무요령, 비상연락체계 등 정비
- 퇴적물 준설, 수초제거, 부속시설물(암거 등) 점검 등
〈수리시설〉
- 수문·여수토·방수로·취수탑, 저수지 등 주요 구조물 균열상태 및 해당 누수부
분 점검·정비·보수, 유수지 잡목제거
- 누수 및 파이핑, 기초 세굴부분 점검, 사석 및 피복석 탈락상태 확인 등
〈댐·저수지 시설〉
- 수문·여수토·방수로·취수탑 등 주요 구조물 균열상태 및 해당 누수부분 점검·정
비·보수 등
〈항만 및 어항시설〉
- 누수 및 파이핑, 기초 세굴부분 점검, 사석 및 피복석 탈락상태 확인 등
※ 지하상가 등 집중호우시 침수피해가 우려되는 지하공간 시설에 대하여
관계기관 등과 합동으로 점검·정비 실시 등 침수피해 예방대책 강구

○ 점검결과 조치사항

- 점검결과 위험요인이 있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시설관리기관의 예산으로 정비하고,
긴급 정비가 필요한 시설물은 재난관리기금 등 가용자원을 활용하여 우기 전까
지 보수·보강 등 정비완료
- 우기전 정비가 어려운 시설물은 비닐피복, 마대쌓기, 가배수로 설치, 주민대피
계획 수립 등 재난응급대책을 강구한 후 특별관리
- ※ 시설물관리기관 책임자와 행정기관의 간부공무원 등은 상시대비체제 기간과 사
전대비체제 및 비상단계 기간 중에는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현지 점검 실시

나.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 관리사항

○ 지정규정

- 상습침수지역·산사태위험지역 등 지형적인 여건 등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할 우려
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고시
※ 법적근거 :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 지정지구 : 총 8지구

- 유형별지정내역 : 침수위험 8지구

○ 사전조치 및 점검사항

- 군수가 수립·제출한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계획을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5년마다)
- 군수가 수립·제출한 자연재해위험지구 사업계획을 소방방재청장에게 보고(매년)

- 재해사전대비 기간 중 관리실태 점검
 - 관리카드 비치 및 점검·정비결과 기록여부
 - 피해지역 주민대피계획 수립여부 (대피로, 장소 등)
 - 공무원과 지역주민 등으로 관리자 지정 여부
 - 재해사전대비 계획수립 여부(자재, 장비, 인력, 비상연락망 등)
- 점검결과 조치사항
 - 점검결과 지구별 재해사전대비 준비실태가 부적합한 부분은 우기전까지 보완토록 조치

다. 고립예상지역 점검 관리사항

- 사전조치 및 점검사항
 - 군의 교통두절 및 고립예상지역 대책수립여부 확인 및 점검
 - 교통두절 및 고립예상지역 대책수립
 - 교통두절 예상지역은 우회도로를 사전에 지정, 주민고립 예방
 - 고립예상지역은 대피계획을 수립하고 인근에 헬기착륙장과 우회도로 등을 지정·관리
 - 인명구조 요청시 헬기 등이 신속하게 동원될 수 있도록 인근 군부대 및 경찰·소방관서와 사전에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관리
- 점검결과 조치사항
 - 점검결과 지적사항은 우기 전까지 정비토록 조치

라. 대규모 공사장 점검 관리사항

- 점검대상
 - 택지조성, 도로 및 관광단지개발 및 기타 50억원이상 대규모 건설공사장으로서 자연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발생이 우려되는 공사장
 - 규모가 그 이하인 공사장(소단위 아파트, 연립주택 공사장 등)도 피해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대규모 건설공사장에 준하여 관리
 -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시설(특정관리대상시설)의 지정·관리 및 정비
- 점검관리방법
 - 건설공사장별 관리카드 작성 및 관리책임자 지정
 - 관리카드작성 : 사업장별 시설현황, 관리책임자 연락처, 재난발생시 조치사항, 점검일지 기록
 - 관리책임자 : 공무원, 시공사, 감리원으로 복수지정

- 점검방법

·수시점검

상시대비체제 및 사전대비체제·비상단계 기간중에는 시공사와 현장감리원 합동으로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리책임 공무원에게 통보
담당과장 등 간부공무원은 재난위험 예측시 또는 출장시 점검

·정기점검

관리책임 공무원은 상시대비체제 및 사전대비체제·비상단계 기간 중 월 1회 이상 점검 실시
5월중에 행정기관, 사업시행자, 시공자, 감리원 및 관계주민 합동으로 종합점검을 1회이상 실시하고 미흡한 부분 보완조치

※ 상시대비체제 기간중(3~5월)에는 재난관리부서와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중복 점검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나 군민 불편사항 최소화 도모

○ 사전조치 및 점검사항

-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2 규정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점검실시
- 호우에 대비한 배수처리 기능(유수지, 가배수로 설치 등)확보
- 하류지역 토사유출 방지를 위한 충분한 침사지 설치
- 공사중인 골프장은 관리규정 준수 이행
- 절개지의 비탈면에 토사유출 방지시설 설치 및 사면안전 공법시공
- 피해우려 예상지역 주민에 대한 대피계획 수립 및 대피계획에 포함된 주민에게는 대피장소를 사전에 통보
- 기타 수방자재 및 장비 사전확보 조치

※ 재해영향평가 및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대상사업장은 평가사항 이행여부 확인

○ 점검결과 조치사항

- 점검결과 재해사전대비 준비실태가 부적합한 부분은 우기 전까지 보완토록 조치

마. 농림시설 점검 관리사항

○ 사전조치 및 점검사항

〈저수지〉

- 노후 및 재해취약시설 점검·정비
- 수위는 평상시와 우기, 수문이 있는 저수지와 없는 저수지로 구분 관리
- 장마철대비 비상근무조 편성

- 응급복구 및 항구복구에 필요한 인력, 자재, 장비 동원계획 수립
- 주요저수지 비상대처계획수립(파괴시 재산 및 인명피해 우려저수지)
- 유역이 넓어 집중호우시 홍수량이 많고 하류에 도시 및 인구밀집 지역
- 주민대피 홍보 및 대피장소 지정
- 인명 사고시 후송병원 지정
- 관련기관 비상연락망 및 보고체계 구축(군, 한국농촌공사)

〈배수장〉

- 노후 및 재해취약시설 점검·정비
 - 배수장을 수시 시험 가동하여 기계·전기 점검 관리
 - 하천변저지대 수문작동상태 및 제방과 토출관 접합부 안전상태 점검
 - 비상대비 배수장 가동 가상훈련 실시
 - 침수 및 정전시 비상대책 임무부여
 - ※ 배수장가동 조작요령을 잘 보이는 출입문 입구 등에 비치하여 숙지
 - 장마철 비상근무조 편성
 - 동일수계 저수지, 배수장 등 시설물 파악
 - 주요배수장 비상대처계획 수립
 - ※ 유역이 넓어 집중호우시 홍수량이 많은 지역
 - 주민대피 홍보 및 대피장소 지정
 - 인명사고시 후송병원 지정
 - 관련기관 비상연락망 및 보고체계 구축(시, 한국농촌공사)
- 점검결과 조치사항
- 점검결과 지적사항은 우기 전까지 조치

바. 하천 위험시설물 점검 관리사항

- 사전조치 및 점검사항
 - 우기전 관리부서와 합동으로 점검실시
 - 하수종말처리장 안전조치
 - 수문부에 퇴적물제거와 역류 억제기능 상태 확인
 - 하천 고수부지 주차차량의 대피계획 수립
 - 하천 횡단교 및 잠수교 안내표지, 경고표지 설치 확인
- 점검결과 조치사항
 - 점검결과 지적사항은 우기 전까지 조치

사. 산림개발지 점검 관리사항

○ 사전조치 및 점검사항

<임도>

- 임도시설지는 전 노선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피해우려지는 보수·보강 등 안전조치 철저
- 특히, 임도시설지 하부에 가옥이 있는 곳 등 재해취약지역에 대하여는 비닐피복 및 배수로정비, 유사시 주민대피 등 인명피해방지를 위한 사전 조치를 강구
- 절·성토사면이 집중호우로 무너질 우려가 있는 곳은 구조개량계획에 우선적으로 반영하여 구조물 보강설치 및 사면녹화피복 등 안전조치 강구(설계·시공 등은 “임도설치및관리등에관한규정”에 의함)
- 측구·배수관·박스교 등이 메워져 있거나 유목(流木) 등이 걸려 있는 곳 등은 정리·보수
- 공사 중 자연물길을 변경했거나 메운 곳은 자연상태대로 정비
- 피해발생 대비 응급복구용 수방자재 비축

<산림의 형질변경·토석채취허가지>

- 골프장·스키장 등 대규모 형질변경지의 절·성토사면이 집중호우로 무너질 우려가 있는 곳은 중간복구 및 그 하부에 사방댐 또는 침사지 등 방재시설 설치
- 군사시설 등의 형질변경지는 지속적인 안전점검 및 피해우려가 있는 곳은 우기 이전까지 보수·보강 조치
- 공사 중 자연물길을 변경했거나 재해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토록 조치
- 무리한 수직굴착으로 인한 낙석·붕괴위험지 등에 대하여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조치
- 토석채취 허가취소지·채취 완료된 곳은 조속히 복구하도록 조치
- 공사현장사무소, 인부막사 등 시설물은 산사태·계곡물 범람 등 위험이 없는 안전한 장소에 설치하도록 지도
- 산림형질변경·토석채취허가 개소별로 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고 담당자를 지정 책임관리 철저

<송전철탄시설부지 및 진입로>

- 송전철탄시설부지 및 진입로에 대하여는 우기이전까지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피해우려가 있는 지역은 복구를 실시하여 2차 피해를 방지
- 진입로 하단부에 주택·농경지·산업시설 등이 있어 인명·재산의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은 복구계획을 수립하여 사전 안전조치
- 시공 중인 지역에 대하여는 임시배수로시설 등 물흐름을 원활하게 한 후 시공 토록 공사지도·감독 철저

- 하자보수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한전 또는 시공자로 하여금 우기 전에 보수하도록 하고 하자보수기간이 만료된 지역은 시에서 직접 보수
- 시설하는 송전철탄시설부지 및 진입로에 대하여는 산림복구를 원칙으로하되 임도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도설계 및 시설기준과 송전탑시설에 따른 업무처리지침에 부합되도록 시설

○ 점검결과 조치사항

- 점검결과 지적사항은 우기 전까지 보완토록 조치

아. 산사태위험지역 및 산불피해지역 점검 관리사항

○ 사전조치 및 점검사항

〈산사태위험지역〉

- 산사태위험지의 대폭적 확대지정관리로 재해사전 예방대책 강구
- 산사태위험지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산사태위험이 있는 곳은 추가 지정하고 여건변동으로 위험요인이 소멸된 지역은 지정해제 조치
- 점검결과에 따라 위험등급별로 지정·고시하고, 소관별 관리책임자를 지정, 관리대장을 작성 주기적인 안전점검 등 특별관리
- 기존의 주택·산업시설주변 등 이외에 인명·재산피해 방지상 필요한 지역까지 대폭 확대 지정
- 산사태위험지는 현장에 위험지표지판을 설치하고 관리대장 작성,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주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 보수·보강하는 등 특별관리
- 산사태위험지는 연차적으로 예방사방을 실시하여 해소 추진
- 재해발생 우려지역은 우기 이전까지 비닐피복, 배수로정비 등으로 응급 보완 조치

〈산불피해지역〉

- 집중호우시 산사태·토사유출우려지는 사방사업 실시여부를 검토하여 보고하고 응급복구 등을 실시하여 2차피해 방지
- 주택가 뒷편 또는 급경사지로서 집중호우시 산사태무너짐 등 피해방지상 필요한 곳
- 임도시설지의 경우 집중호우시 무너짐·갈라짐이 우려되는 절·성토부위 등
- 사방복구를 완료한 곳이라도 취약지역은 집중호우 대비 보완조치 및 안전점검 등 사후관리 철저

○ 점검결과 조치사항

- 점검결과 지적사항은 우기 전까지 보완토록 조치

자. 국민생활 필수시설 점검 관리사항

○ 사전조치 및 점검사항

〈전기시설〉

- 변전소 환산망 구성으로 송전선로의 이중화사업 조기추진
- 변전소의 신·증설 및 노후설비 교체로 여유전력 확보(적정 예비율 : 15%)
- 변전소의 주요 변압기 및 기기 등의 소손시 긴급복구용 예비자재 확보와 기기 별 인력관리를 통한 문제점 파악 및 고장원인 사전 제거
- 발·변전설비의 일상·정기점검으로 피해예방 활동실시와 운용 요원에 대한 교육 및 가상 고장 모의훈련으로 위기대처 능력향상
- 소화취약장소에 예상 소화유형의 초기 진화용 방재시설 보강
- 이동 발전차, 예비용(이동)변압기 및 자가용 수용가의 비상발전기를 비상시 즉시 사용 가능토록 평상시 유지관리 철저
- 전력설비에 접근 시행하는 공사 장소에서 사전 선로감시 실시로 사전예방 및 안전 계몽활동 전개
-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배수, 펌프시설 등 수방시설 점검강화 및 수방 기초자재 비축관리
- 전력설비에 고장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신속히 대응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모니터 활동 전개
- 언론, 방송매체를 통한 정전안내 및 전기 안전의식 계도 실시

〈가스시설〉

- 점검방법 : 가스시설 유관기관 합동점검
- 점검반 편성 : 군, 한국가스안전공사
- 정기 가스시설 안전점검 2회
 - 점검시기 : 상반기 4 ~ 5월, 하반기 9 ~ 11월
 - 대상시설 상반기 : 고압가스 제조·저장 8개소
 - 하반기 : LPG충전소 3개소
- 중점점검 사항
 - 관련규정과 시설의 적합여부
 - 각종 법정검사 이행여부(정기, 자체, 완성)
 - 공급자 의무규정, 안전관리규정 준수여부
 - 안전관리자 확보상태
 -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 가입여부
 - 각종위해방지시설 확보여부(독성가스 중화장치, 제독장비 등)

〈상수도시설〉

- 대상시설 : 상수시설(취수정수배수시설 및 송배수관로) 및 급수분야 전반

- 점검시기 : 매년 5월
- 점검내용
 - 상수도분야 방재계획 수립여부
 - 정수장별 비상대비 정수약품확보 및 비축여부
 - 취·정수장 및 배수관 공사현장 재해대비 관리실태 점검
 - 시설별 수방자재 확보 및 비축·응급복구장비, 지정관리실태
 - 재해발생 취약시설별 관리책임자 지정 등 자체 점검·정비실태
 - 취·정수장별 비상연락망 정비현황
- 점검결과 조치사항
 - 점검결과 지적사항은 조속히 보완토록 조치

차. 가로등 및 교통신호등 점검 관리사항

- 사전조치 및 점검사항
 - 점검대상 : 관할지역내 시설물
 - 점검시기
 - ┌ 상시대비체제 기간중 : 3월부터 5월까지 1회이상
 - └ 사전대비체제 및 비상단계 기간중 : 5월부터 10월까지 수시 점검
 - ↳ 기 타 : 전기사업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점검
 - 점검방법
 - 저지대 시설의 가로등 점멸기함, 교통신호등 제어함, 안정기 점검구 등을 침수에 상높이 이상으로 재정비
 - 지중관로에 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관리 철저 및 유입된 물은 즉시 배수가 될 수 있도록 조치
 - 가로등 점멸기함 및 교통신호등 제어함, 등주에 접지시설이 미비한 곳은 제3종의 접지시설 설치
 - 신규로 설치하는 가로등·신호등에 대하여는 분점함 및 안정기함의 높이를 침수에 상높이 이상으로 제작 설치
- 점검결과 조치사항
 - 위험요인이 있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시설관리기관 주관하에 우기전까지 보수보강토록 조치
 - 노후케이블 교체 등 정비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어 우기전 정비가 어려운 경우에는 감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응급조치 및 재난대책기간중 특별관리

2. 방재물자 확보·비축 및 동원장비 등 지정관리

가. 수방자재 확보관리

- 종 류 : 흡수성 모래주머니(순간마대), 물매트, 포대류, 묶음줄, 말뚝, 덮개류(비닐), 배수관(흙관, PE관), 작업공구 등
 - ※ 수방자재 등 현대화 지속 추진
- 비축기준
 - 최근 10년간 평균사용량을 감안하되, 재해취약시설에 대한 피해를 예측한 소요량을 조사, 시설별로 일정량의 확보기준량을 확보
 - 긴급용으로 일정량만 보관하고 업체와 공급계약 체결로 보관창고 공간부족 현상 해소 및 내구연한경과 자재에 대한 폐기처분
 - 재해유형별, 지역별 특성에 적합한 방재물자 선정
- 비축장소 : 읍면 창고, 관내 고립예상지역, 수해상습지역 등
- 사전조치 및 점검사항
 - 시보유 수방자재 확보 점검
 - 점검시기
 - 상시대비체제 기간중 : 11월부터 4월까지 1회 이상
 - 사전대비체제 및 비상단계 기간중 : 5월부터 10월까지 수시점검
 - 점검내용
 - 보관자재는 내구연한 및 보관상태를 점검하여 불량자재의 폐기처분 및 부족 자재 확보여부
 - 자재의 보관상태를 수시 점검, 부패예방 조치여부
 - 보관 창고내에 자재수불대장 비치 및 관리책임자 지정 관리
- 점검결과 조치사항
 - 점검결과 비축기준에 미달한 자재 및 보관창고는 우기 전까지 확보토록 조치

나. 응급복구 동원장비 지정관리

- 대상장비 : 백호우, 덤프트럭, 집게차, 청소차, 분뇨수거차 등
 - ※ 침수피해시 쓰레기, 분뇨 등을 처리하기 위한 집게차, 청소차, 분뇨차를 필히 지정
- 지정기준 : 최근 10년간 최대 피해상황을 고려하여 재해취약시설 및 상습침수

지역 등에 대한 피해유형을 예측한 복구장비의 종류, 소요대수를 조사하여 시설별로 일정량을 산정·지정

○ 사전조치 및 점검사항

- 지정장비의 지정관리실태 점검 시기
 - 재해기간(5~10월) : 매월 파악
 - 비재해기간(11~익년4월) : 매분기 파악
- 인접 시·군간 장비동원 체계 확립
- 관용장비, 유관기관 및 민간보유 장비의 관리자와 협의하여 재난발생시 신속하게 동원 가능하도록 조치
- 응급복구용 장비의 사전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동의서 징구 후 지정 관리
- 침수피해시 동원 가능한 청소차, 집게차, 분뇨차 등 쓰레기처리장비 지정 및 확보(인근 유관기관과 응원체계 구축)
- 시신운구용 차량확보(보건의료원의 앰블런스)
- 급수운반 차량확보(소방차, 민간보유 급수운반차 등)
- 지정장비의 동원 우선순위 체계 확립
 - 1단계 : 자치단체 보유장비
 - 2단계 : 유관기관 보유장비
 - 3단계 : 군부대 장비
 - 4단계 : 민간장비

○ 점검결과 조치사항

- 점검결과 미진한 사항은 우기 전까지 보완토록 조치

다. 수난구조용 장비·자재 확보

○ 지정기준

- 재난발생시 신속한 구조활동이 될 수 있도록 관내 유관기관, 단체의 보유장비·자재중 사용이 가능한 것을 사전에 파악 확보지정
 - ※ 수난구조장비 : 헬기, 선박, 구명복, 구조망, 구급차, 로프, 무전기 등
 - ※ 수방신호기 : 사이렌, 메가폰, 앰프 등

○ 사전조치 및 점검사항

- 수난구조용 장비·자재 확보여부 확인 및 점검
- 소방재난본부, 지역 군부대, 민간구조기관등과 긴급 연락체계구축
- 점검결과 조치
 - 수난구조용 장비·자재 확보와 유관기관, 단체의 비상연락망 구축 등이 미진한 부분은 우기 전까지 보완토록 조치

라. 제설자재 확보관리

- 제설자재의 확보·비축 및 적사함 설치 관리
 - 영화칼슘, 모래주머니, 모래 등 제설자재의 적정량 확보
 - 교량 또는 노건이 협소하여 적사함 설치가 곤란한 어려운 지점은 영화칼슘, 모래주머니 등으로 현장 비축
 - 적사함은 응달부, 고갯길, 곡선부, 터널입출구 등 제설취약지점에 설치하고 영화칼슘, 모래, 삽 등 비치
- 제설자재, 인력, 적사함 확보

마. 제설장비 확보 및 지정관리

- 제설장비의 확보 및 사전 점검·정비 추진
 - 제설차, 덤프트럭, 모래(영화칼슘)살포기, 제설삽날(덤프트럭용), 그레이더, 로우더, 굴삭기, 카고트럭 등
 - 제설작업요원의 제설취약구간현장 적정 배치
 - 조종원, 도로보수원, 일용제설원, 미화원 등 기타 제설요원
 - 주요시설의 담당공무원 지정등 관리
- 제설장비 확보

3. 봉사단체 및 유관기관 협조체제 구축

가. 자원봉사단체 지원·협조체제 구축

- 의료봉사자 확보(의료 분야별로)
- 긴급조치에 필요한 인력 확보

- 자원봉사의 활용 계획수립(특기, 보유장비 구성원파악, 부여할 업무내용)
- 봉사에 대한 대가성 프로그램 개발
- 자원봉사에대한 교육실시(안전교육, 주의사항)
- 봉사활동에 필요한 물품이나 기자재 준비
- 장기봉사에 따른 지원사항 점검

나. 민·관·군 공동대응체제 구축

○ 목 적

- 재난예방 물자자재 비축 등에 대한 각 기관의 명확한 역할분담 및 협력체계 확립
-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인적·물적 동원체계 구축으로 재난발생시 신속한 지원 및 현장 대응능력 제고

○ 근 거

- 재난발생시 지역본부장이 취하여야 할 응급조치(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37조)
 - 경보의 발령 또는 전달이나 피난의 권고 또는 지시
 - 진화·수방·지진방재 그 밖의 응급조치와 구호
 -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방역과 방법, 그 밖의 질서의 유지
 - 긴급수송 및 구조수단의 확보
 - 급수수단의 확보, 긴급피난처 및 구호품의 확보
 - 현장 지휘통신체계의 확보
- 지역본부장은 응급조치를 위하여 관할구역안의 군부대 및 행정기관의 장에게 응원요청 가능(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44조)
- 중앙본부장 및 지역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민방위대 동원,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국방부에 물적·인적자원 동원요청 가능(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39조)

○ 협조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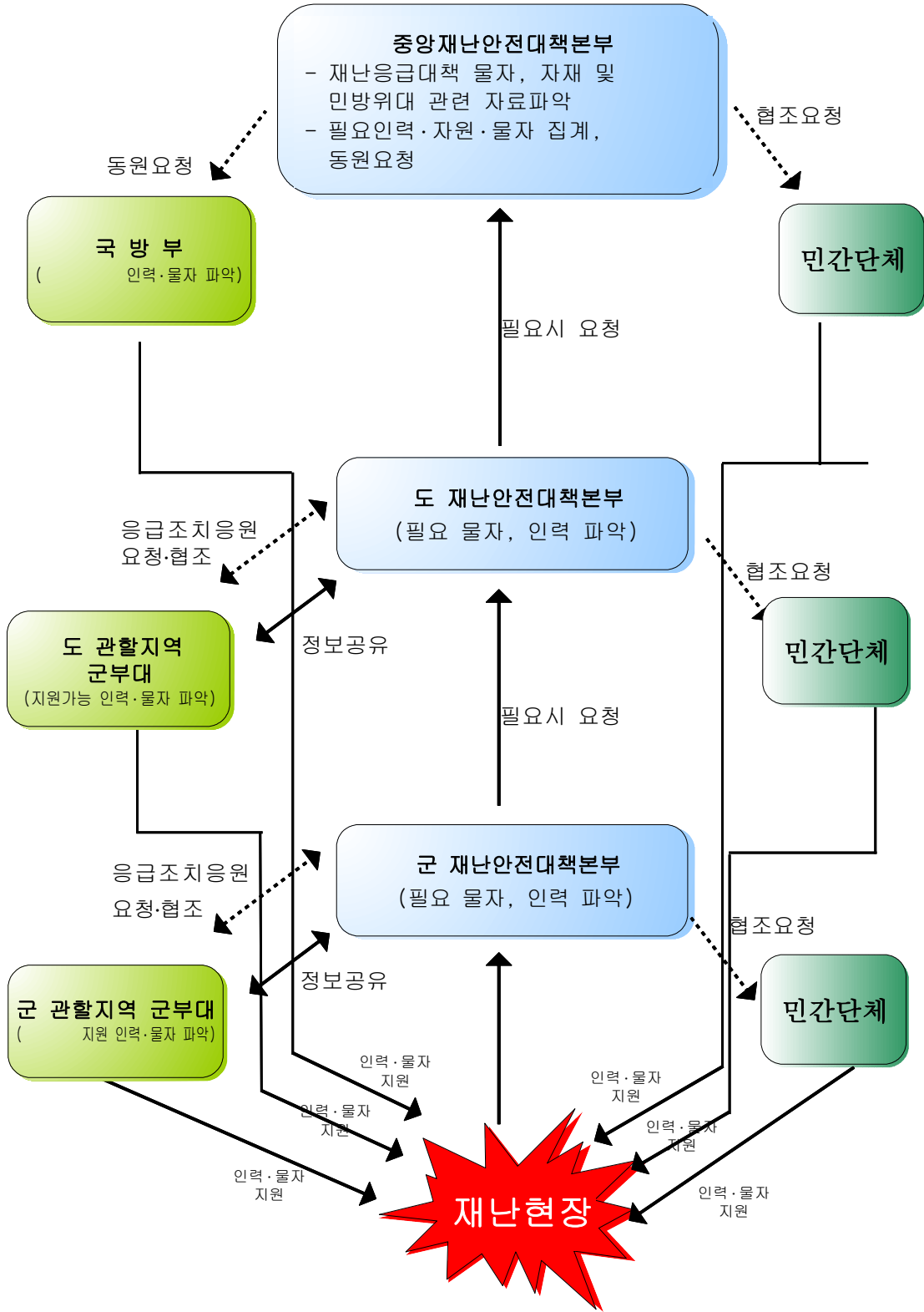
[산청군]

- 재난 응급물자에 대한 파악 및 정보공유
- 군부대와 응급조치 응원을 위한 협조체계 구축

[제8962부대 3대대]

- 군부대 인적·물적 자원 파악 및 정보공유
- 군대책본부장의 응급조치 응원요청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
- 도로·항만 등 공공시설 재난복구를 위한 인적·물적 동원
- 강제대피, 통행제한, 대피명령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인적자원 파견
- 재난지역의 질서유지를 위한 군부대 동원 등

<협력체계 구축도>



다. 민간모니터위원 활용

- 목 적
 - 재난발생시 지역주민들을 현장 모니터위원으로 활용, 신속하고 생생한 정보수집 등 상황대처 기능 강화
- 기본방향
 - 지역주민 및 자원봉사단체, 운전기사 등 지역실정에 밝고 활동성 있는 자들을 민간모니터 위원으로 확대 지정
 - 재난발생에 신속하고 생생한 현장 정보수집, 상황대처 기능강화
 - 재난위험시설 등 수시 순찰, 이상유무 확인 신고 등
- 확대지정 대상
 - 지역거주 통장, 새마을지도자, 자원봉사단체, 운전자, NGO 등 지역실정에 밝고 활동이 용이한 자 중 시군별 확대 위촉·운영
 - 상습침수지역 등 재난위험지구 주민
 - 택시기사, 자원봉사단체 회원
- 모니터위원 역할
 - 평시 재난예찰활동 및 정비, 가두캠페인안전단배부 등 사전 예방활동 및 홍보 캠페인 전개
 - 재난취약지구에 대한 제방누수, 슬라이딩, 파이핑 현상 등 육안검사 실시
 - 주민들에게 재난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재난대비 교육
 - 재난 사전대비 예찰활동 실시 위험상황 통보 등
- 보고방법
 - 비상연락망 변동사항 수시관리(휴대폰, 전화, 주소 등)
 - 모니터위원과 지역재난상황실간 상호 연락체계 구축
 - 당해지역 상황실 및 담당공무원과 모니터위원간 긴급통화가 가능하도록 상호 휴대폰에 상대방전화 입력 활용
 - 휴대폰을 이용한 기상정보, 사전대비 활동정보, 유익한 생활정보, 기타정보 등 제공

4. 재난상황 홍보방안 및 자율방재의식 고취

가. 예측 및 정보 전달체계 구축

- 재난정보전달 시스템
 - 자동우량경보시설 확충·운영
 - 재난상황 자동음성정보시스템 보강·운영
 - 재난문자전광판 확충·운영

- 지역 언론매체를 통한 재난경보시스템 가동
- 재난 종합상황관제시스템 구축사업 추진
-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 구축
- 사전조치 및 점검사항
 - 군 재난정보 전달체계 구축 및 시설 유지관리 실태 등 확인·점검
 - 신속한 정보전달을 위한 시설의 확충정바보강시험가동 등은 우기전까지 실시
 - 지역방송매체를 통한 홍보계획수립 추진 등
- 점검결과 조치사항
 - 점검결과 지적사항은 우기 전까지 시정·보완토록 조치

나. 유관기관 및 방송사에 상황전파 및 보도요청

- 재난홍보 방법
 - 대 상 : 지방일간지, 라디오, 전광판, 군정소식지 등
- 홍보내용(협조사항)
 - 재난 유형별 보도자료 사전 제공(관련부서 매뉴얼로 수록)
 - 재난 상황대응 요령, 재난의 예상에 대한 정보
 - 대피의 시기, 장소, 요령에 대한 정보
 - 식수, 식량, 생필품 등 구호물자를 전달 받을 수 있는 방법
 - 주거시설의 복구 지원과 계획에 관한 정보
 - 그 외 군민생활과 밀접한 정보

다. 재난대비 교육 및 훈련 실시

〈방재교육〉

- 교육체계
 - 3단계(중앙교육, 도 자체교육, 전파교육)로 실시
- 교육운영
 - 중앙교육 : 방재관리자, 자연재난실무자, 인적재난실무자, 방재전문요원, 상황관리실무자, 중앙합동조사 과정으로 구분 실시
 - 방재관리자 : 도 방재담당 및 시·군 방재과장, 2월중
 - 자연·인적재난실무자 : 도·군 6급이하 방재담당공무원, 3~4월중
 - 방재전문요원 : 도·군 6급이하 방재담당공무원, 8~9월중
 - 상황관리실무자 : 도·군 6급이하 방재담당공무원, 3~5월중
 - 중앙합동조사 : 도·군 6급이하 방재담당공무원, 4월중

- 도 자체교육 : 도 본청에서 실시
 - 교육대상 : 도 관련부서, 군 재난담당부서, 유관기관 등
 - 교육기간 : 4월중
- 전파교육 : 군 및 민방위교육장에서 실시
 - 교육대상 : 군, 읍면·유관기관 실무자, 수방단, 인명구조대, 민방위대 등
 - 교육기간 : 4월중

〈방재훈련〉

○ 훈련목적

- 재난발생에 따른 피해상황을 가정한 상황대처와 수습 등에 실제 필요한 도상훈련을 실시, 자치단체 대처능력 향상 도모
- 재난발생시 지역여건별, 특성별로 유관기관간 협조체제구축 및 합동 대응 능력향상 등 종합적 대비 태세 확립
- 피해대비, 피해발생, 사후수습의 단계별로 상황대처 및 수습 등 효과적인 훈련 실시로 비상시 신속한 대책수립 강구

○ 훈련구분

훈련 구분	훈련추진 내용	훈련시기	비 고
도상훈련	·주관 : 도 대책본부 ·실시 : 산청군	4월중	
전산훈련	·주관 : 도 대책본부 ·실시 : 산청군	5월중	현장훈련과 병행 실시
지역특성훈련	산청군 자체 실시 (자체 훈련계획에 의거)	5월중	

※ 2012년 : 중앙과 지자체가 공동으로 참여, 자연재난과 인적재난을 통합하여 도상훈련과 실제훈련을 병행 실시(3월중)

○ 훈련 실시

- 훈련기관
 - 도본청 : 도상훈련 및 전산훈련 주관
 - 산청군 : 현장훈련 및 도상훈련 실시
- 훈련대상 : 전 시군
- ※ 훈련대상 선정시 가급적 과거 10년간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한 군을 선정
- 훈련일정 : 5월중
- 훈련장소 : 산청군 재난안전대책 종합상황실

○ 방재도상훈련 주요 내용

- 제 1단계 (대비단계)
 - 기상상황 전파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
 - 비상대비태세 점검 및 유관기관 협조체제
 - 재난위험지역 예찰 및 신고체제 강화
- 제2단계 (대응단계)
 - 재난상황 전파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
 - 피해상황정보 전파 및 피해지역 주민대피 등
 - 재난위험지역 예찰 강화
 -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기관별 조치사항 등 협조체제
 - 피해지역에 인력 및 장비의 지원체제
- 제3단계 (복구단계)
 - 복구(응급, 항구) 추진의 조속한 계획수립 추진
 - 주민생활시설(Life-Line)시설의 최우선 복구대책
 - 이재민구호, 방역 및 분뇨·쓰레기 처리대책
 - 복구완료시까지 유관기관간 협조체제 유지 등

○ 방재전산훈련 주요 내용

- 재난상황관리 자동집계 프로그램 조작요령 숙지
- 도 주관하에 피해집계 등을 위한 재난유형별 피해상황 메시지 부여
- 피해 및 복구관리 전산시스템 활용능력 제고
- 도 및 군 인명피해, 교통두절 등 피해·복구관리 전산시스템 조작요령 숙지
- 신속한 상황관리·대처, 유관기관과 상황공조체제 강화 등

○ 지역특성훈련

- 일시 : 5월2일~4일 (3일)
- 주관 : 중앙 및 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
- 장소 : 자체선정
 - 재난위험지역 주민과 직결되는 장소를 선정, 훈련효과 거양
 - 민간 인명구조대, 수방기동대 등 유관기관단체 등과 합동훈련이 될 수 있는 장소
 - 지역주민, 학생 등 다수가 참관 할 수 있는 장소(다중이용시설 등)
- 훈련방법 : 일시, 장소, 내용 등 사전 시나리오 작성
- 훈련내용 : 재난발생에서부터 사태수습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종합한 훈련시나리오에 의거 실시
- 훈련참관
 - 군 자연재난대책부서 담당관, 유관기관 자연재난대책담당관, 수방기동대장,

- 인명구조대장, 주민 등
- 방재의식 산청과 홍보효과 극대화를 위해 관내 학생참관이 가능토록 교육청 등과 사전협조 조치

라. 자원봉사단체, 기업체 등 자율방재조직 활동 지원

- 방재지식 보급 및 홍보강화
 -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재난예방 홍보활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국민적 공감대 형성 및 자발적인 주민참여 도모
 - 지역 및 기관별 재난예방에 대한 토론회, 세미나, 워크샵 등을 개최하여 신뢰성 있는 방재행정 홍보 및 주민참여
-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운영
 - 목 적
 - 대규모 재난 발생시 정부의 대응 뿐 아니라 민간자율 방재활동을 통해 사전 대비 등 완벽한 재난대응체계 구축
 - 재난 사전예방활동 및 응급복구단계의 민간참여 활성화로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
 - 기본방침
 - 지역주민의 자발적 지역자율방재단 참여유도
 - 재난관련 자원봉사단체(NGO) 적극 활용
 - 다양한 인적계층의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운영
 - 인적·물적 자원분석을 통한 실천 가능한 방안 도입
 - 기 능
 - 민간차원의 재난대비, 대응, 복구활동 지원
 - 지역재난대비 주요 수방시설 사전점검·정비
 - 지역주민 방재교육 및 홍보활동 전개
 - 지역 재난 응급복구지원 등
 - 운영 및 활동
 - 자치단체장의 동원명령이나 협조요청, 방재단장의 지시에 의해 소집·활동
 - 단원에 대한 정기교육 실시
 - 실정에 밝은 청·장년층을 대상으로 지역방재전문가로 육성
 - 지역자율방재단 상시임무 부여(안전점검의 날 지정운영 등)
 - 지역실정에 맞는 조례를 정하여 운영
 - 지역자율방재 협의회 운영
 - 080무료전화 공동 이용

-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해 종합상황실에 합동근무 실시
-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회의 참석 및 의견제출 등

- 주요임무

- 유관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지역자율방재단원 상시관리
- 재난대비 사전점검·정비 및 방재물자·장비의 확보 비축
- 재난취약지구의 선정·관리 및 대책강구
- 방재단원의 주기적인 교육·훈련 실시 등
- 지역자율방재단의 적극적인 홍보 및 캠페인 전개
- 각종 공사현장 감시 등 건설시공을 유도하여 재난예방
- 방재관련 교육 및 연찬회, 안전점검의 날(매월4일) 참석 등
- 경보의 전달 및 주민대피유도, 질서유지를 위한 통제
- 이재민 관리,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
- 재난지역의 응급복구(전기, 통신, 상·하수도 등)
- 전염병 방재를 위한 방역활동 전개 등 공중보건관리 등

마. 국민행동요령 홍보대책

- 단계별 국민행동요령을 작성, 각종매체를 통하여 적극 홍보
- 홍보방법
 - 인터넷, TV·라디오 방송, 신문, 반상회 회보, 홍보 전광판 등
 - 홍보 비디오, 팸플릿, 스티커, 포스터 등 홍보물 제작 활용

5. 인명구조 및 고립예상지역 대책

가. 인명구조 유관기관 협조

- 인명구조 관련 유관기관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와 비상연락망 구축
 - 관할구역 내에서 재난발생시 119구조대 출동태세 구축
 - 119구조대, 군·경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등에서 조직·운영하고 있는 각종 인명구조대와 유기적인 협조체제 유지 및 합동훈련 실시
 - 지역의 소방(119구조대)서장이 유관기관 및 단체의 구조활동 총지휘
 - 상습침수나 고립위험이 있는 지역은 사태발생시 인근의 인명구조대를 즉각 동원, 사태수습에 임할 수 있도록 지역별 분담제 실시
- 도 긴급구조통제단(소방재난본부)의 기능
 - 경상남도 긴급구조대책의 총괄·조정
 - 긴급구조 활동의 지휘·통제

- 긴급구조 지원기관의 역할분담 등 현장 활동 계획의 수립
- 긴급구조 대응계획의 집행 등

○ 단계별 출동기준

- 대응1단계(소방서장)
 - 소규모 사고(재난)가 발생한 상황에서는 소방서 긴급구조지휘대가 현장 지휘기능 수행
 - 긴급구조통제단은 필요에 따라 부분적으로 운영
 - 대응2단계(소방재난본부장)
 - 긴급구조통제단의 대응능력을 초과한 상황에서 해당 긴급구조통제단을 전면적으로 운영
 - 도 긴급구조통제단은 필요에 따라 부분 또는 전면적으로 운영
- ※ 현장 지휘대장(통제단장, 진압대장 등)이 소방헬기, 소방정 등 특수차량 및 장비 요청시 긴급 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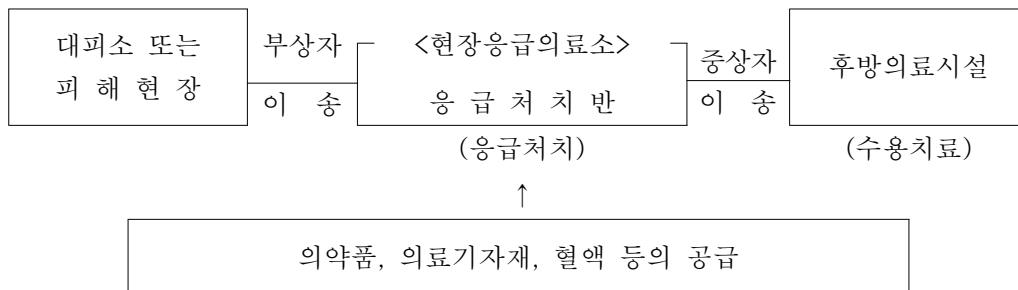
나. 고립예상지역 대책

- 관내지역의 교통두절 및 고립예상지역 대책수립
 - 교통두절 예상지역은 우회도로를 사전에 지정, 주민고립 예방
 - 고립예상지역은 대피계획을 수립하고 인근에 헬기착륙장과 우회도로 등을 지정·관리
 - 인명구조 요청시 헬기 등이 신속하게 동원될 수 있도록 인근 군부대 및 경찰·소방관서와 사전에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관리

6. 응급진료·구호 및 이재민 보호대책

가. 응급진료 및 응급환자 수송대책

<재난시 의료구호체계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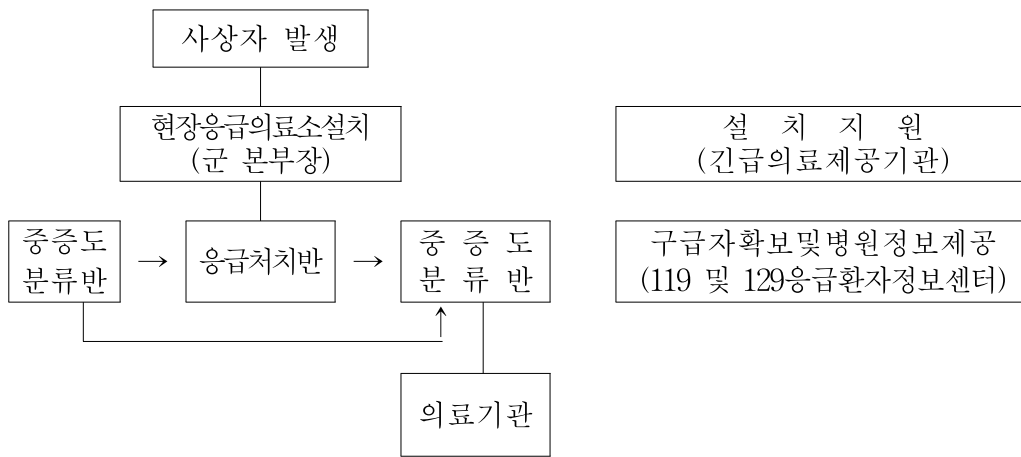
○ 현장의료구호소의 설치

- 의료구호반은 시장이 설치한 대피장소 또는 재해현장 등에 구호소를 설치하고
- 중상자에 대한 응급처치, 후방의료기관에의 운송순위결정, 수송곤란자 및 경상자에 대한 의료실시, 조산구호, 사망자의 확인, 사체의 검안 등을 실시

○ 중상자 후송 대책

- 현장 응급의료소의 소장이 119구급대 또는 의료기관 구급차 등에 요청, 후방 의료시설까지 운송 조치
- 통신망의 단절로 피해지역 의료기관의 상황파악이 곤란할 경우에 대비 원활한 수송 등을 위한 정보수집

<사상자처리체계도>



○ 의료시설에 대한 Life-line 대책

- 단수, 정전 등으로 인하여 의료활동 불가능에 대비 의료시설에 대한 라이프라인 대책 수립 추진

○ 긴급수송로의 지정(정부합동특별수송대책운영규정)

- 물자 등의 생산 및 보관지에서 피해예상지역을 연결하는 주요 도로를 긴급 수송로로 지정

○ 긴급운송루트의 확보(철도, 도로, 해로, 항로)

- 육·해·공으로 다중·교통 네트워크 수단 확보
- 긴급수송루트, 주요우회루트를 표시한 지도정보시스템 개발
- 헬기 임시 착륙장 지정
- 대형헬기 등으로 수송장비 지정

나. 응급의료기관 확보 및 협조사항

○ 기본방침

- 대량 환자 발생에 대비한 응급후송체계 확립
- 지역별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진료대책 추진

○ 의료시설 현황

- 응급의료기관 : 1개소(섬심병원)

○ 세부추진계획

- 환자이송 협조체계 구축
 - 대량환자 발생 시 구급차, 헬기 동원 및 이송협력체계 수립
 - 구급차량 : 관내 의료기관 등 구급차량 활용
 - 헬 기 : 소방본부와 협조
 - 이송협력체계 : 인근 응급의료기관 활용
 - 119 구급대의 환자 이송 시 응급의료정보센터(1339)를 통한 이송의료기관 선정 및 응급처치 지도 적극 활용
 - 대량환자 발생 현장통제 및 구급차 이송통로 확보
 - ⇒ 산청경찰서 협조
- 응급의료정보센터 운영 강화
 - 응급의료정보센터 : 1개소(성심병원)
 - 관내 무선망 및 정보시스템 관리 강화

다. 사체처리 대책

- 인명구조 유관기관과 협조체제 구축
- 사체의 수색
 - 사체의 수색은 군이 주도적으로 실시하되 유관기관이나 단체에서 협조를 받아 수색
- 사체의 운구와 보관
 - 사체는 가급적 빠른 시간 내 지정 의료기관에 영치
 - 사체의 신원 파악을 위해 매장이 지연되는 경우와 사망자 수가 많아 단시일내에 매장할 수 없는 경우는 시신을 안치하는 기관에 협조 요청
 - ※ 사망자의 시신을 다룰 때에는 이재민에게 시신을 공손히 취급한다는 이미지를 심어 주어야 함
 - 운송 차량이 부족한 경우는 의료기관에 협조 요청
 - 사체가 부패되지 않도록 드라이아이스 등을 사용하며 부패로 인하여 공중위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
- 사체의 검안 및 처리
 - 사체의 검시, 의학적 검사, 신원 확인 등의 업무와 사체식별을 위한 세척, 봉합, 소독까지의 의료활동은 전문기관에 업무를 일임
- 사체의 매장
 - 사체를 안치 장소에서 반송하고 화장 또는 매장까지의 일련의 업무는 군에서 수행
- 신원 불명 사체의 처리
 - 신원 불명의 사체는 군 관할 경찰에 통보하고 이에 대한 조사를 의뢰
 - 경찰은 신원을 파악할 수 있는 일련의 조치를 취하여 신속하게 신원을 확인

라. 생필품 등 구호물자 확보비축 및 공급대책

○ 재난구호물자 비축

- 최근 5년간의 재난발생 현황, 물자지원실적 및 지역실정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물량을 상시 확보하거나 즉시 조달할 수 있도록 하고 부족물자는 위기전까지 확보
- 최근 5년간의 재난시 이재민발생상황을 감안하여 현재의 보유량으로 대비하되 부족시 전국 재난구호협회 제작물품을 사전 협약 후 사용
- 재난구호물자 비축시에는 소요 물자별 비축량, 비축기간 등 비축기준을 설정 하되 생활필수품은 개인용, 세대용 등으로 패키지화 하여 보관
- ※ 변질우려가 있거나 보관이 어렵고 조달이 용이한 물품은 구매선을 사전 지정하여 재난발생시 즉시 조달 조치
(쌀, 장류, 통조림, 라면, 단무지, 구운김, 조미료, 부탄가스 등)
- 재난구호물자 중 사용연한에 이르러 다음 재난발생시까지 비축할 경우 폐기될 우려가 있거나 활용도가 떨어지는 물품은 재난이 발생한 타 시도 또는 사회복지 시설에 기부하거나 매각 후 그 대금을 재난구호기금으로 편입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불용처분하고 새로운 물품으로 대체하여야 함
- ※ 보관물품 상태를 수시로 파악관리
- ☞ 재난구호물품 세트 권고안

구 분	1종 구호물품	단위	수량	구 분	2종 구호물품	단위	수량	
의류	체육복(남)	벌(점)	1(2)	버너	버너	대	1	
	체육복(여)	벌	1(2)		수세미	매	2	
	팬티(남)	매	1	생필품	고무장갑	켈레	1	
	런닝(남)	매	1		면장갑	켈레	1	
	런닝(여)	매	1		세제류	세탁비누	점	1
침구류	이불	매	1	세탁세제		점	1	
	모포	매	1	주방세제		점	1	
생필품	수건	매	2	식기류	코펠	세트	1	
	치약	점	1		수저	벌(점)	4(8점)	
	칫솔	점	2					
	화장지	롤	2					
	면도기	점	1					
	생리대	조(점)	1(2)					
	세제류	세면비누	점		2			

- 보관창고 설치 및 물자의 보관

- 최근 5년간의 구호실적을 감안하여 교통, 재난상습지역 등을 고려한 전용 창고를 설치운영하고, 재난구호물자 비축창고가 협소한 경우에는 전국재난구호협회가 운영하는 비축창고 등을

임차하여 보관

- 전지구호물자는 재난구호물자와 함께 보관·사용하되 그 내역을 비치·관리하고 사용즉시 재비축하여 비축수준을 유지
-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물자의 입·출고 및 보관물자의 망실, 훼손, 보관상태 등 점검 후 적의 조치

○ 물자의 사용

- 재난이 발생한 경우 이재민 구호를 위하여 필요한 물품은 보관중인 물자로 우선 지원하되 선입선출로 재고누적 최소화
- 계속적인 구호를 위하여 필요한 물품 중 부족분은 그 현황을 대한적십자사 및 전국재난구호협회 등에 통보하여 지원 요청하거나 업체에서 구매 조달
- 재난발생지역에 소재하는 창고의 보관물자가 부족하거나 수송이 곤란한 경우에는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물자를 상호 협의사용

※ 대형 운송업체를 사전 지정하여 재난시 신속한 구호물품 운반조치

○ 민간단체와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한 구호체계 확립

- 대한적십자사 등 응급구호에 참여할 수 있는 단체 파악
- 적십자사지회 또는 민간단체현황 관리
- 적십자사 봉사요원과 시 재난실무자 합동 Work-shop 실시
- 군 자원봉사센터에 구성된 재난대비 자원봉사대 지원
- 자연재난대비 자원봉사대 구성에 따른 교육 등 협조
- 자연재난대비 자원봉사대와 군 담당공무원합동 Work-Shop 개최 등 협조체계 구축

마. 구호물품의 접수 및 배분계획

○ 구호품 배분시 유의사항

<<생필품 배분 전달시 반드시 확인 할 점>>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배분된 것을 주민 모두가 공평하다고 만족하는가?- 적절한 양이 배분되어 다른 재해지역과 균형을 이루는가?- 노약자, 환자 등 재해약자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있는가? |
|---|

- 피해자는 신경이 날카로우므로 작은 차별대우도 크게 반발을 한다. 그러므로 주민 모두가 공평하게 받았다는 생각을 가지게 만들어야 한다.
- 다른 지역에 비하여 품질이나 수량이 차이가 있다고 생각되면 이에 대한 불만이 집단행동으로 표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를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 건강한 사람과 재해약자를 똑같이 나누어 주면 안 된다. 상황이 악화되어 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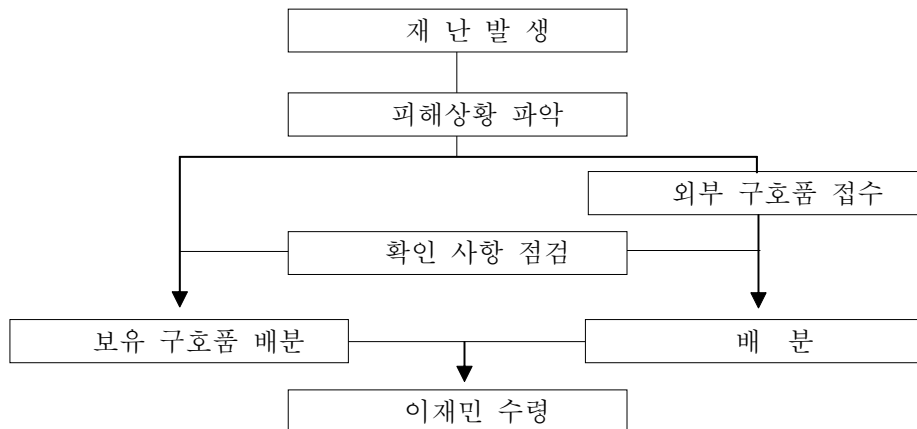
품의 공급이 중단되면 재해약자는 상황을 극복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재해약자에게는 여유분을 충분히 확보해 주어야 한다.

○ 구호품 관리

- 군이 보유한 운송수단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외부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
- 군부대나 소방서에 차량 등을 요청한다.
- 필요한 경우, 민간인에게도 차량배송을 의뢰한다.
- 도로 두절로 인하여 접근이 불가능한 지역은 헬기를 동원하여 공수한다.
- 헬기착륙이 불가능한 지역은 공수방법을 계획한다.
- 긴급배분이 될 품목은 하역작업을 하지 않고 차량 자체로 일시 보관한다.

○ 구호품 접수, 배분

- 재난이 발생하면 이재민은 생활물품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 계획은 구호품이 접수되고 이를 다시 적절한 시기에 배분하는 과정을 제시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방안을 수립하는데 목적이 있다.



【구호품 접수 배분 흐름도】

- 구호품의 접수 지침

- 구호품은 종류와 수량이 다양하여 구호품을 접수할 때 정량적인 접수는 상당한 시간과 인력을 필요로 한다. 구호품을 기다리는 이재민의 어려움을 고려하면 신속한 접수와 배분이 매우 중요하므로 접수는 현실적으로 효과 있게 처리해야한다. 구호품을 접수 할 때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가급적 접수를 받지 않는다.
-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임박한 물품의 확인
- 이재민들에게 현실적으로 쓸모 없는 물품 (예 : 수재민에게 걸레 담는 그릇 등)
- 이재민의 지역 특성에 어울리지 않는 물품 (예 : 농촌사람에게 허리 청바지 등)
- 먼지나 오물이 묻어있어 상점의 재고를 처리하는 느낌이 있는 물품

- 가전제품의 경우, 불량품의 확인
- 요즘은 사용 않는 구시대 물품
- 같은 종류와 크기를 무더기로 보내온 물품 (특히 의류)
- 운반비를 지불하지 않은 물품
- 특정 지역이나 사람을 지정해 보내온 물품 (관여하지 말고 직접 배달시킨다)
- 보관이 어려운 물품(쉽게 부패하는 것은 가급적 접수하지 말 것)
- 재해 구호물품 배분지침
- 모집된 의연금품은 전국재해구호협회(광역구호물품창고)에서 배분하고 각 군으로 전달한다.
- 위험하거나 부패하기 쉬운 품목은 사전에 구매선을 확보하여 재난발생 즉시 조달하여야 한다.(예 : 김치 등)
- 가구별 구호세트는 사람 수를 기준하는 것보다 세대단위로 작성하는 것이 편리하다.

바. 이재민 수용시설 지정 운영관리

○ 지정기준

- 지역별 최근 10년간의 이재민 발생 수, 과거 자연재해발생 빈도,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수용시설의 규모와 장소 지정
- 공공건물, 학교, 교회, 마을회관 등 수용이 용이한 건물로 지정
- 수용시설면적은 1인1평 이상을 원칙으로 함.
- 수용시설은 지진해일, 상습침수 등 재해로부터 안전한 고지대로 지정하되, 저지대 등 상습 재해발생지역내의 시설은 지정하지 아니함.
- 모든 방향에서 접근이 양호한 지역 선정
- 건물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사전협의 지정

○ 점검 및 관리

- 이재민 발생시 즉시 수용 가능하도록 우기전 관리상태 점검
- 환기, 조명, 보온 등 생활환경을 양호하게 유지하기 위한 설비 확보
- 화장실, 간이목욕실, 급수시설 상태점검 및 급수차량 확보
- 대피시설 또는 동별 응급구호품과 장비(재해구호물품세트, 고무보트 등) 및 단전, 단수에 대비한 최소시설 확충
- 주민들이 대피장소를 사전에 알 수 있도록 반상회 등을 통하여 홍보
- 수용 이재민의 급식을 위하여 민간구호기관과 사전협의
- 수용시설 안내도 및 지정시설별 구호대상자 인적사항 작성·비치

사. 주민대피 및 유도계획

- 정보수집
 - 각급 기관은 피해가 예상되면 관계기관에 정확하게 정보를 전달한다.
 - 피해예상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위험요소의 조기 발견과 주민에게 경계를 당부한다.
 - 대피를 준비하도록 주민에게 홍보한다.
 - 대피가 불가피한 상황에 이르면 즉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 보고한다.
- 대피 홍보
 - 순찰차·확성기·무선통신기·라디오·TV 등 통신장비를 이용하여 주민의 대피에 신속한 안내와 홍보를 한다.
 - 노약자의 대피와 안내는 지역의 민방위대 등을 이용한다.
- 대피유도
 - 신속하면서도 안전한 대피를 위해 안내자의 파견, 안전 대피로의 확보, 대피 및 교통의 통제, 대피로내 장애물제거 등을 실시하여 대피가 원활하도록 한다.
 - 필요한 경우 경찰서, 소방서와 협조하고 요소요소에 안내원을 배치함과 동시에 모터보트, 헬리콥터 등을 요청한다.
 - 정전과 야간대피에 대비하여 조명탄과 신호탄 사용을 계획한다.

아. 대피소 운영 및 안전대책

- 대피예상인원을 판단하여 대규모 지진발생시 피해가 예상되지 않는 장소의 학교·체육관 등 공공시설을 대피장소로 지정관리
- 대피주민의 상황파악 관리
 - 대피소에 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한다. 관리책임자는 대피자의 신원을 파악하여 신속하게 군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연락
- 대피유도용 통신장비 확보
 - 경찰서장 및 소방서장은 지진발생시 기존의 통신장비인 소형무전기 등을 주민 대피 유도용으로 전환 사용하되, 부족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 추가확보 관리
- 대피소의 안전확보
 - 대피소 주변은 재산의 보호나 그 밖의 범죄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자. 자원봉사단체의 협조 및 역할분담 방안

- 행정기관
 - 재난안전대책본부와 긴밀한 협조 하에 이재민 현황을 정확히 파악

- 이재민 수용시설 지정·운영
 - 피해 이재민의 거주지역과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수용 (공공건물, 교회, 회관, 학교강당 등)
 - 화장실, 간이목욕실 확보·설치
 - 급수시설 설치 및 급수차량 운영
- 구호센터 운영
 - 필요시 단체급식소, 긴급 방역소독 및 응급의료 처치실, 구호품 보관소 등 설치
 - 구호물자 접수·관리·배포 및 이에 수반된 행정조치

○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

- 이재민구호를 위해 도 및 시·군과 보완적 역할담당
 - 유기적인 협조체제 유지
- 수용시설에 집단급식 및 이동세탁차량 신속배치 운영
 - 이재민 및 구호요원에 대한 급식 및 세탁 지원
- 구호센터 및 수용시설에 봉사요원 배치관리
-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긴급구호물자 지원
- 적십자봉사센터 운영 : 어린이, 임산부, 노약자, 환자, 장애인을 위한 특별활동 실시

○ 전국재해구호협회

-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재해구호물자 위탁보관
- 행정기관의 비축물자 부족 시 협회비축 재해구호물자 긴급지원
- 대규모 재해의 경우 재해의연금품 모집
 - 재해의연금품 모집은 도, 군(주민생활지원실) 접수 대행

○ 산청군 자원봉사센터

- 기 구축한 「재난대비 자원봉사지휘 통합시스템」 확대정비
- 자원봉사센터를 중심으로 재난대비 네트워크 구축
- 단체별 특성을 파악하여 자원봉사분야별 봉사대 구성
- 재난대비 기관·단체별 역할분담을 통한 체계적인 봉사활동 전개

< 자원봉사분야 구분>

- 인명구조대 : 고립자 구조 등 인명구조활동 전개
- 의료봉사대 : 이재민 진료 등 의료활동 전개
- 급수봉사대 : 급수불통지역 주민에 대한 식수지원

- 급식봉사대 : 이재민 및 자원봉사자 급식지원
- 교통봉사대 : 수해복구 진입로 혼잡지역 교통정리
- 방역봉사대 :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활동 전개
- 노력봉사대 : 가재도구 정리, 농작물 복구, 수해잔재물 정리
- 이재민구호 : 이재민에 대한 구호물품 전달

7. 생활필수시설 긴급복구 대책

가. 통신두절 대책

- 도와 군간 비상연락 통신수단 확보 및 한국통신공사간 업무협조
 - 재난안전대책상황실 통신수단 증설 등 긴급 통신 업무지원
- 재난안전대책상황실내 방재무선통신, 화상회의, 위성전화기 시스템 운영
 - 재난발생시 : 도 상황실과 군 현장간 직통망 확보로 신속한 상황처리
 - 평 상 시 : 행정업무로 활용
- 자연재난지역 통신지원 대책
 - 지휘 및 통제를 위한 지휘용 통신망 지원
 - 비상통신망(위성전화, TRS)를 자연재난지역에 지원
 - 이재민 대피소 등 집단수용시설에 무료 공중전화 설치 및 자연재난지역 통신 장비 무상수리 및 교체 지원
 - 기간통신사업자(KT 등)에 요청
 - 기타 자연재난지역에 필요한 지원사항을 파악
 - 기간통신사업자(KT 등)에 요청
- 자연재난피해시설 응급복구
 -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17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실시하고 피해지역 지휘통제를 위한 통신망 회선을 기간통신 사업자(KT 등)과 협조하여 최우선으로 복구
 - 제1순위 : 자연재난관계기관, 소방기관, 경찰서, 기상기관, 군 관계시설, 수송 확보에 직접 관계있는 기관
 - 제2순위 : 선거관리기관, 통신기관, 금융기관
 - 제3순위 : 지방공공단체

나. 전기시설 대책

○ 사고 수습대책본부 구성운영

- 대책반 구성

- 전기사고 중 중형사고 이상 발생하면 즉시 대책본부를 구성운영
- 사고대책 본부에는 본부장(군수), 부분부장(부군수), 상황실장(건설과장), 현장 지휘소 및 3개반으로 편성하고 전기사고 사전예방 및 수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실무협의 위원회를 두며 동 위원회는 평시에도 사고예방활동을 위하여 운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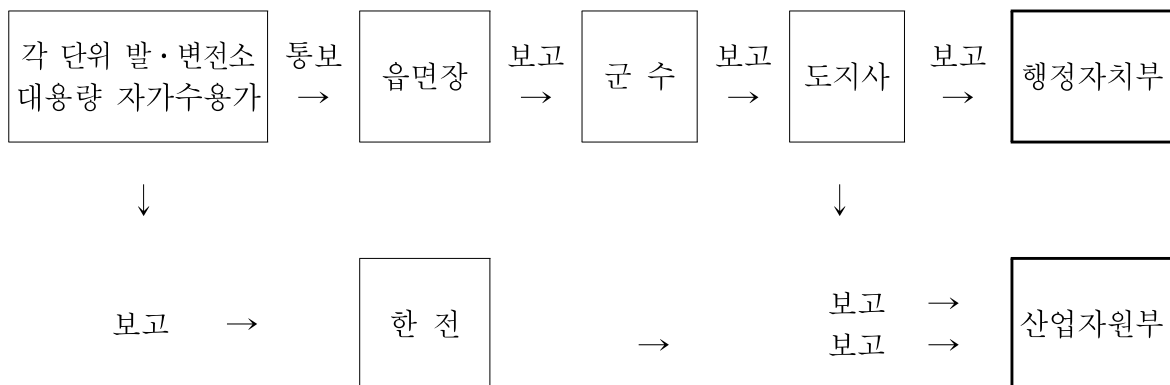
- 운영

- 사고 발생시 규모와 예상피해정도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 사고의 전파 및 수습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사항은 각반별, 업무소관별로 책임수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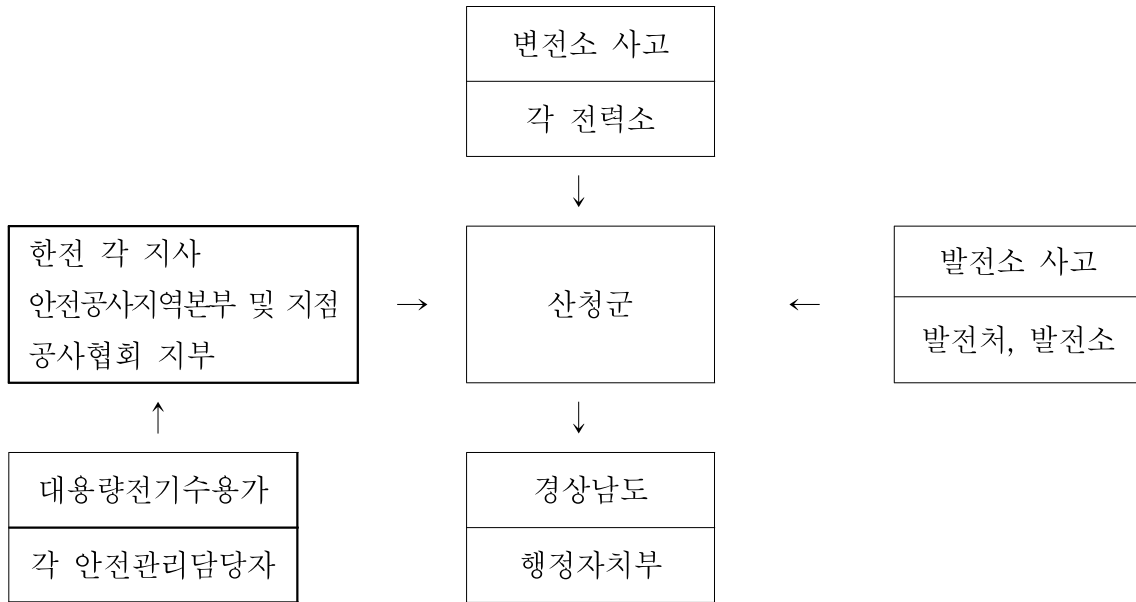
- 반별 임무

- 총괄 및 행정반 : 상황관리, 보고체제유지(상급, 유관기관) 사고전파 및 비상소집, 유관기관 협조체제 구축
- 수습반 : 전기사고발생 상황파악, 사태별 대책지시, 각종상황 기록 유지
- 통신·홍보반 : 유·무선 통신망관리, 각종보고 및 홍보의 통신망 유지, 전기사고 상황에 따라 주민전력공급 방안 및 절전 등 수습대책 홍보

《신고 및 보고체제》



《유관기관 비상연락체계》



○ 유관기관별 임무

- 한국전력공사

- 각종 재해방지를 위한 예방활동 강화 및 전력보강사업 확행
- 신속한 상황판단과 통제조정으로 정전지역 최소화
- 사고원인조사 및 긴급복구 실시
- 복구에 필요한 전기공사업체 비상동원과 행정기관에 지원 요청

- 한국전기안전공사

- 전기안전에 관한 홍보·자문 및 검사
- 자가수용가의 사고원인조사 및 복구협조
- 자가용 수용가 사고시 기술지원

- 한국전기공사협회

- 전기공사업체 동원에 대한 협조
- 동원업체의 인력, 장비 관리

다. 가스시설 대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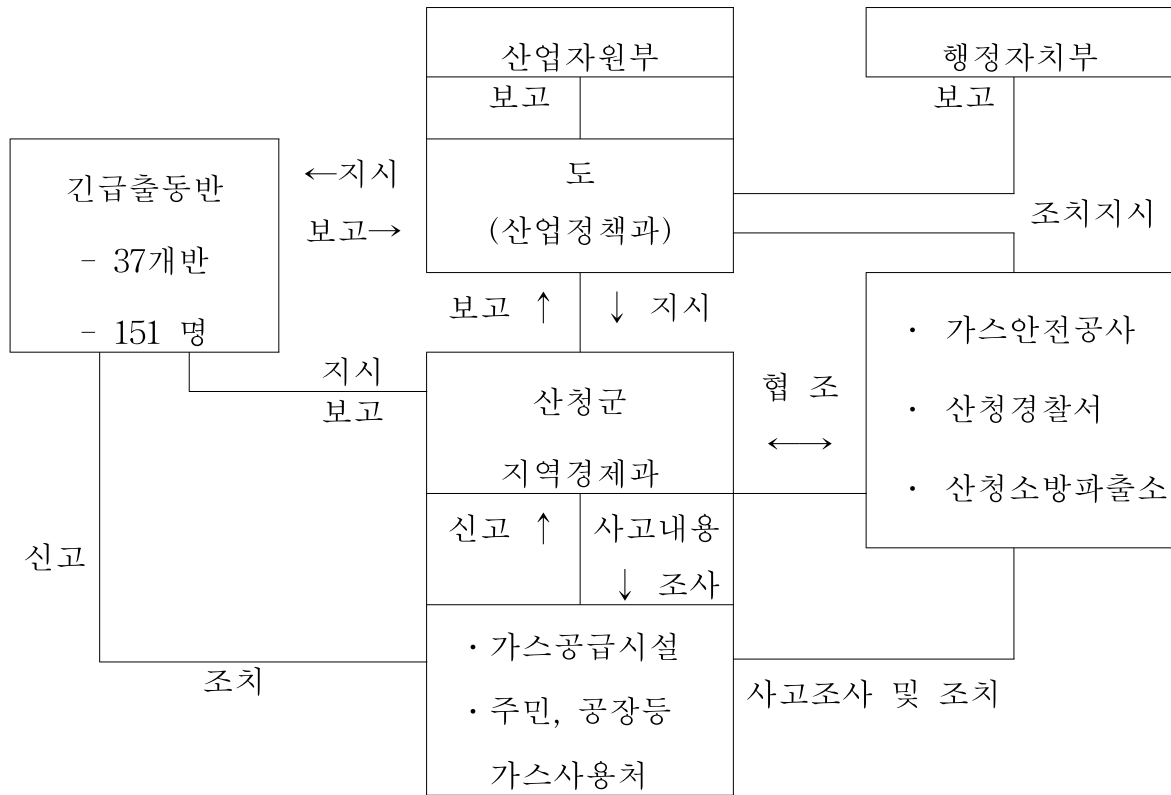
○ 가스사고 수습대책본부 구성 운영

- 구 성 : 도 본청 및 협조기관

- 대책본부장 : 군 수
- 부 본부장 : 부군수
- 상황 실장 : 경제도시과장
- 대 책 반 : 3개반(행정반, 수습반, 홍보반)

- 협조 기관 : 3개기관(경찰서, 소방서, 가스안전공사 포함지사 각1인)
- 기능
 - 대형사고 발생시 총괄지휘 (긴급출동반, 사고수습대책본부, 복구반)
 - 유관기관간 협조체계구축 및 인원, 장비동원
 - 사고 전파 및 수습 등 제반사항은 각 반별로 책임 수행
- 가스사고 신고센터 설치 운영
 - 군 : (주간)경제도시과 055-970-6803, (야간) 055-970-6222 당직실
 - 긴급출동반이 편성된 가스공급사(3개반, 25명)
 - ※ 신고접수기관은 유관기관에 신속히 유선통보

【신고(보고) 및 조치 체계도】



- 유관기관별 임무
 - 한국가스안전공사 진주지사
 - 가스시설 안전점검 및 복구활동 저해요인 조사
 - 가스사고 수습 및 복구요령, 기술지원
 - 산청경찰서
 - 인명 및 재산피해 조사

- 사고원인 조사, 주민동향 관리
- 사고지역 경계강화
- 산청소방파출소
 - 복구요령 및 기술, 장비, 인원지원
 - 화재진압
- 사고 발생시 복구요령
 - 단계별 조치(행동)사항
 - 1단계 : 사고발생후 ~ 2일이내
 - 행정반
 - ┌ 사고원인 및 피해상황 파악
 - └ 피해주민 대피 및 후송조치
 - └ 2단계 수습, 복구대책
 - └ 산청군재난안전대책본부, 복구반, 긴급출동반 총괄지휘, 통솔
 - └ 사고현장 피해인명 구출
 - 수습반
 - ┌ 사고현장 정리정돈
 - └ 가스누설 차단 및 재폭발 방지조치
 - └ 기타 피해범위확산 방지 및 긴급사항 조치
 - 홍보반
 - ┌ 유관기관 상황전파 및 인력 장비동원
 - └ 각종 동향파악
 - 2단계 : 사고발생 2일이후 ~ 복구 완료시까지
 - 행정반
 - ┌ 1단계 수습결과에 따라 세부 복구계획 수립
 - └ 주택사용불가능 가구의 임시거주지 마련 및 7일간의 기초
 - └ 생필품 지급
 - └ 부상자 치료, 의약품지급 및 방역활동(관할 보건의료원)
 - └ 사상자및 유족등에 대한 생활보호대상자 지정
 - └ 기타 원활한 복구를 위한 유관부서(기관)간 협조체제 유지
 - └ 주택복구작업 지원 및 자재수송
 - └ 급수 및 하수, 전기시설 복구지원
 - 수습·홍보반
 - ┌ 각종 가재도구 정리정돈
 - └ 가스공급중단에 따른 연료공급 추진
 - └ 기타 주거환경 복구 및 개선사항 지원등
 - └ 연료공급 추진요령
 - LPG충전소 사고시 : LPG판매소는 타충전소 이용조치
 - LPG비상공급에 따른 인력부족시 공무원 활용

라. 급수 및 상하수도시설 대책

○ 수습대책본부 설치 운영

- 구 성

·평상시 상·하수도시설물 사고대비 비상연락망을 편성하여 사고발생 즉시 대책본부운영

·사고대책본부에는 본부장(군수), 차장(부군수), 상황실장(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장지휘소 및 3개 대책반으로 편성

- 운 영

·재난사고 발생시 피해규모와 피해정도에 따라 자체 결정시행

·사고의 전파 및 수습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상황을 각반별, 업무소관별로 책임수행

- 반별임무

·총괄행정반

- 상황관리, 보고체계유지(상급, 유관기관), 사고전파 및 비상소집, 유관기관 협조체제 구축

·수 습 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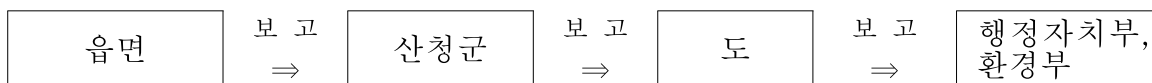
- 상하수도 시설물 사고발생 상황 파악, 사태별 대책지시, 각종 상황기록 유지

·통 신 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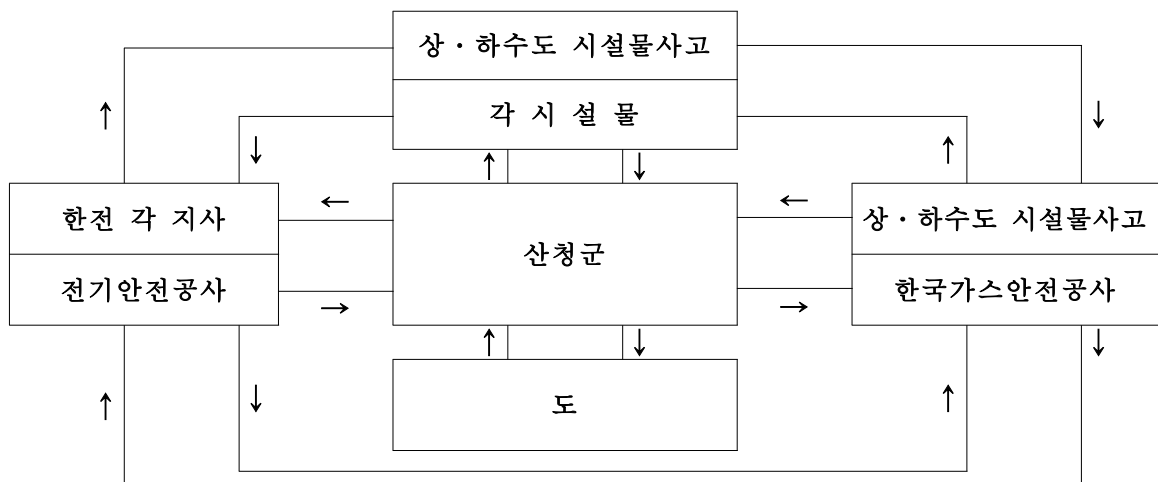
- 유무선 통신망 유지, 각종 보고 및 홍보의 통신망 지원

○ 사태발생시 신고체계 확립

- 신고 및 보고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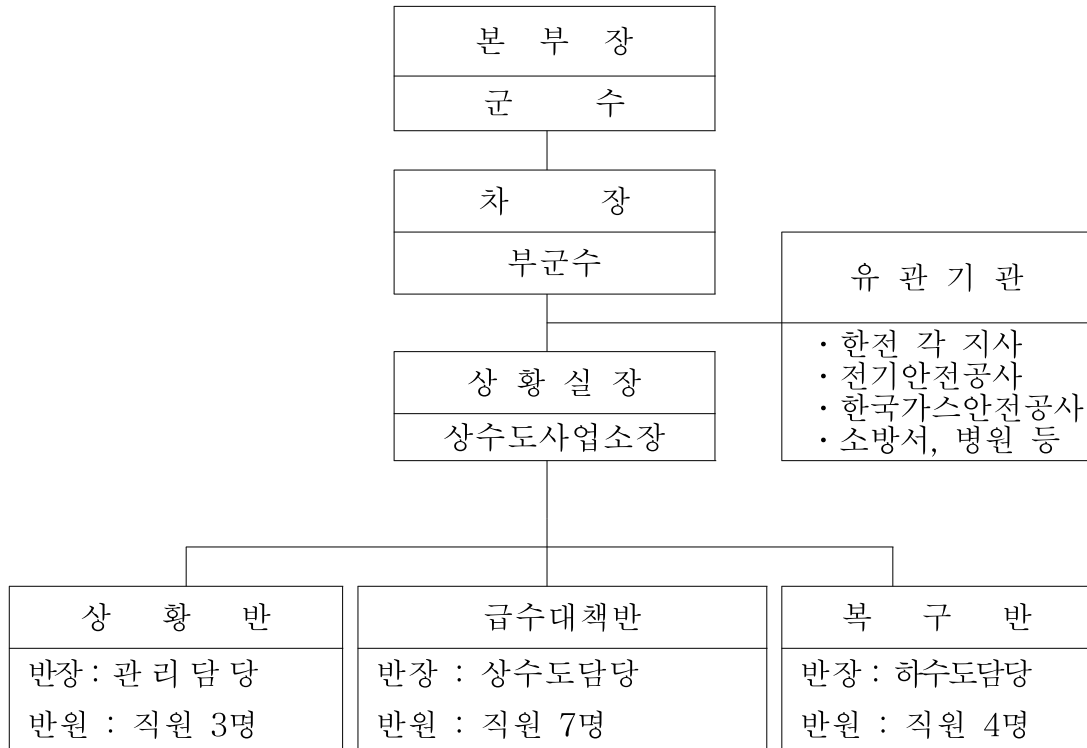


- 유관기관 비상연락체계



- 자체 및 유관기관 상황파악 유지와 정보교환

- 근무실시 및 보유장비로 신속한 응급복구 실시
 - 상습침수 지역을 중점관리 및 지속적 점검
 - 상·하수도유지관리지침에 의거 장마철 정수장 안전관리 철저
 - 상·하수도 사고수습대책본부



마. 교통두절 대책

- 긴급수송지원체제 구축
 - 합동 특별수송대책본부 설치
 - 설치근거 : 교통체계효율화법 제11조의 2
 - 설치시기 : 지진 등으로 교통수단 운행이 전면 또는 일부 중단되어 국가적 차원의 긴급수송대책이 필요할때
 - 구 성 : 본부장(부군수), 부분부장(지역경제과장)
 - 자체 특별수송대책본부 설치·운영
 - 설치시기 : 자연재난 규모가 지역적이고 정부차원의 긴급 수송대책이 불필요한 경우에는 군 자체구성
 - 참여기관 : 단체 및 업체
- ※ 관련기관별 특별수송대책본부는 자연재난의 규모에 관계없이 협조·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구성

○ 특별수송대책의 내용

- 자연재난 대책에 따른 교통시설물 현황파악 및 수송장애요인 분석
- 긴급수송을 위한 우회도로 확보
 - 자연재난으로 인한 교통중절시, 도에 설치된 자체 특별수송대책본부에서 즉시 우회도로를 지정하고 정부합동수송특별대책본부에 보고
 - 우회도로 지정이 불가능하고 철도·해운·항공로 등의 대체 교통수단 필요시 즉시 정부합동수송대책 본부에 조치 의뢰하여 연계수송 대책 마련
- 수송량 조정을 위한 불요불급한 인원·차량 통행제한
 - 피해정도에 따라 아래 순위에 따라 우선 통행 조치
 1. 응급차량 및 재난복구차량 2. 공공용 차량
 3. 대중교통(버스, 택시)차량 4. 자가용 등
 - ※ 자동차 관리법 제25조에 의거 통행제한
- 우회교통망 안내 및 홍보
 - 우회도로 지정내용에 대한 안내 입간판 설치 및 대국민 홍보
 - 건설교통종합정보센터를 활용, TV 등의 특별방송 유도
 - 교통정보 전화안내 및 자동응답시스템 이용 홍보
 - ⇒ 고속도로·국도·산청시내 교통정보 및 철도·항공기상정보 24시간 안내(1333번)
-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운행 방안 강구 및 시행
- 피해 교통시설의 응급복구 방안 강구 및 시행 등

8. 시설물 응급복구 대책

가. 응급복구 인력 및 장비 동원체계

- 피해지역의 응급조치 등 노동력이 필요할 경우 시장은 전문인력과 기타 인력으로 구분하여
 - 기술이 필요한 전문인력은 노동부에 지원 요청
 - 기타 인력은 군인, 민방위대, 수방단 등 동원이 가능한 인력 지원 요청
- 장비는 민수, 관수, 기관보유 등으로 피해규모에 따라 단계별 동원
 -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해 군부대 장비 지원 요청
- 대규모 재난발생에 따른 각종 방재물자장바·인력 등이 부족할 경우 인접 자치단체와 상호 응원체계 구축
- 관내 군부대, 민간단체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계 구축
-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인적·물적 동원을 위한 민·관·군 공동 협력

나. 공공시설물

- 도로·교량
 - 각 도로 관리자는 소관 도로·교량의 피해사항을 신속히 파악,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교통규제 등 조치
 - 우회도로를 선정하여 통행자의 안전대책 강구
 - 복구에 필요한 각종 자재를 사전에 확보하고 수시로 점검
 - 피해발생시에는 복구반을 즉시 현장에 파견하고 점검 및 복구 실시
 - 복구순서는 긴급도로를 최우선으로 하고 일반도로 및 장애물 반출 등의 순서로 복구
- 하천 및 내수 배제시설
 - 응급복구계획 수립
 - 재난발생시 제방호안 등의 하천시설이 파손붕괴될 경우 피해시설의 응급조치를 위하여 지역 자율방재조직을 활용하여 공사장 또는 위험한 시설 순찰 강화
 - 피해 시설에 대하여는 이미 확보한 자재와 장비를 동원하여 즉시 응급복구 실시

다. 기타시설물

- 사방·산사태 및 급경사지 붕괴방지시설 등
 - 사방·산사태 및 급경사지 붕괴방지시설 등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시설관리책임자는 피해사항을 신속히 파악 적절한 조치 등
- 사회공공시설
 - 병원, 사회복지시설, 학교 등 사회공공시설 관리자는 인명의 안전확보와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아래의 조치계획을 수립시행 등
- 국민생활 필수시설(Life-line)
 - 상수도, 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시설 등 국민생활 필수시설 관리책임자는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긴급복구반을 편성하는 등 긴급 복구방안 강구

9. 방역 및 보건위생 대책

- 방역물자 확보·비축
 - 대상물자 : 살충제, 살균제, 우물소독약, 예방주사약 등
 - 비축기준 : 국립보건원의 전염병관리 사업지침에 의거 비축관리
 - 보관장소 : 일반 방역약품과 같이 보건증진과에 비축 관리
- 방역물자 관리
 - 최소한의 비축 관리량을 상시 유지하고 관리책임자를 지정, 정기적으로 보관상태 점검
 - 유효기간이 있는 소독약품은 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그 기간내에 일반 소독용으로 대체 사용하여 변질방지

○ 사전 점검사항

- 수도, 전기, 가스 등 기초생활시설의 피해상황
- 이재민 대피소의 보건환경 및 수용 상황
- 임시 화장실의 위생상태 및 침수 가옥의 상황
- 방역 의약품 보관 장소의 피해상황
- 식품 및 식품생산 보관 관련시설의 피해상황
- 집단급식 시설의 위생상태

○ 집단 환자 발생시 대처요령

〈방역대책반 운영〉

- 방역대책상황실 설치

·초기 역학조사 및 상황 처리반 운영

- 방역조치

·1단계 : 조기치료 및 확산방지를 위한 환자관리

- 적절한 치료 제공(필요시 항생제 내성검사의뢰)

- 입원 및 격리 조치

- 확진 전이라도 필요시 입원치료 또는 격리조치

- 환자관리

→ 환자의 장내배설물 및 사용물품의 철저한 관리

→ 개인위생 :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씻기 등

→ 치료 완치시까지 음식조리 및 육아 금지

위험군은 필요시 격리조치(집안격리 또는 입원격리)

→ 식품위생 접촉업소, 집단급식시설, 사회복지시설 등 종사자, 상수관리자 등

- 질병 확진 시에는 해당 질병에 대한 환자관리 실시

·제2단계 : 확산 방지를 위해 접촉자 및 공동폭로자 관리.

- 주기적 발병여부 감시

→ 의심되는 질병의 최대 잠복기간까지 발병여부 확인·조사

- 위험군에 대한 필요시 격리조치

- 보건교육 : 설사증상 발생시 즉시 보건의료원내소 지도

- 질병 확진 시에는 해당 질병에 대한 접촉자 관리 실시(전염병역학조사지침 참조)

·제3단계 : 추정 원인 혹은 전파 경로에 대한 관리

- 추정원인 음식물 폐기, 오염가능 식수원 공급 차단조치 등

- 취약지역에 대한 살균, 살충 소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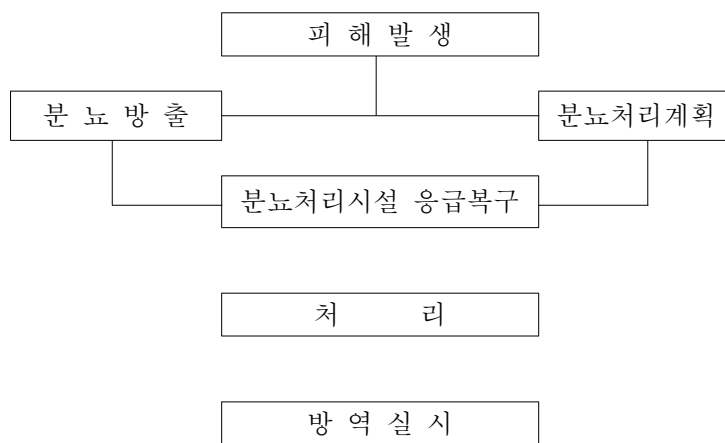
- 안전이 확보된 음식물 및 음용수 제공 조치

나. 침수지역 분뇨 및 쓰레기 처리대책

〈분 뇨〉

- 침수피해 발생시 시 분뇨처리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사전협의 협조
- 분뇨는 쓰레기와 처리방향을 달리해야 한다. 분뇨는 처리 후에 물 세척과 동시에 반드시 방역 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분뇨처리 흐름도】



○ 분뇨처리 업무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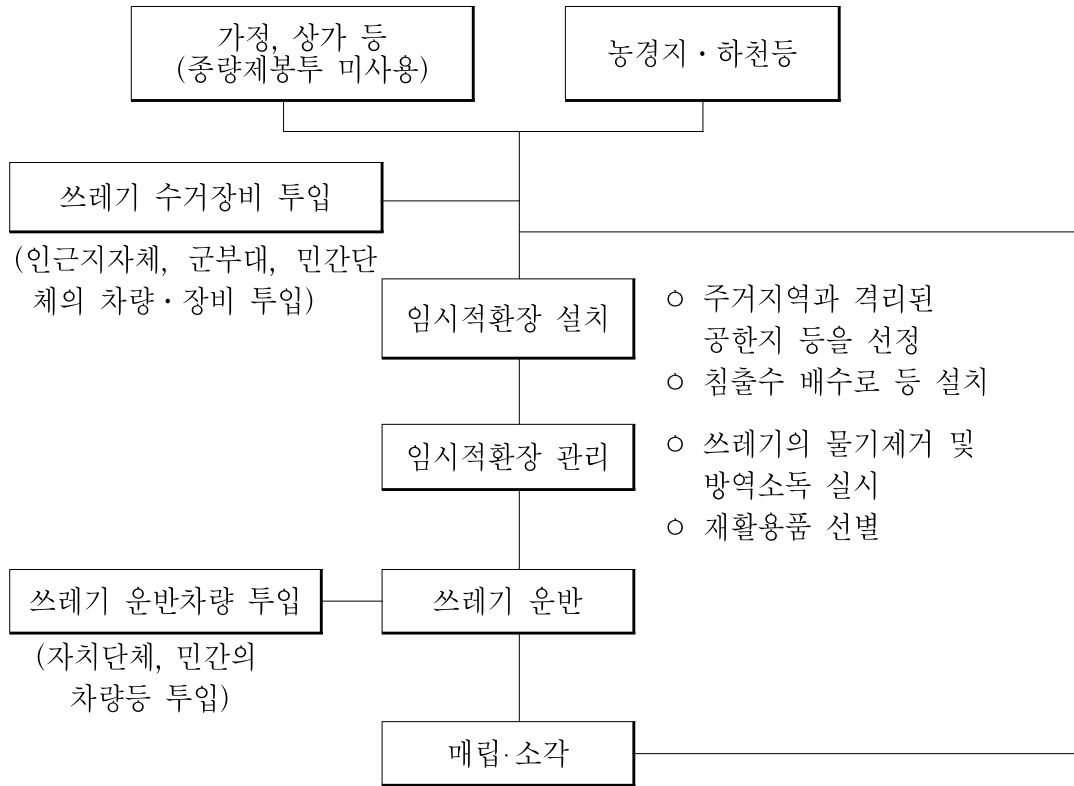
- 피해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분뇨처리시설을 점검하여 처리 능력을 확인한 후 분뇨의 수집, 운반, 처리에 대한 대책을 수립한다.
- 주택 및 축사 파괴로 분뇨가 유출되면 확산을 막는 응급조치를 취한다.
- 분뇨처리에 필요한 인원, 장비 등의 확보에 노력하고, 처리 능력 이상의 배출량이 예상되거나 다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인근 시군에 요청한다.
- 분뇨의 처리와 수거가 완료되면 즉시 보건증진과에 연락하여 방역작업을 수행하게 한다.

〈쓰레기〉

○ 수해쓰레기 발생량 파악

- 쓰레기 발생량은 수해지역의 특징 및 수해정도 등에 따라 가변적이므로 가옥, 구조물 등 피해정도에 따라 추정 산정

○ 수해지역 쓰레기 배출에 관한 임시 조치사항



- 긴급 수거지역 선정 및 임시 적환장 설치
 - 쓰레기 장기 적체로 인한 수인성 전염병 발생 우려지역, 교통소통 및 피해 복구 장애지역쓰레기를 최우선 수거지역으로 선정
 - 수거 즉시 쓰레기 매립지에 반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운송장비 부족, 쓰레기 물기제거 등 불가피하게 야적시켜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해지역 인근에 임시적환장을 설치
 - 임시적환장은 재침수로 인해 유실될 우려가 없고 주거지역과 격리된 지역을 선정
 - 임시적환장은 매일 2~3회 소독 및 탈취제를 살포하여 위생적 관리
 - 임시적환장 바닥은 침출수 수집이 가능토록 2%이상의 구배와 주변배수로를 설치하고, 고밀도 PE 필름을 바닥에 포설함
- 긴급 수거를 위한 운송장비·인력확보 조치
 - 자체 수거·운송장비 부족시 인근 자치단체 및 관련 민간단체에 수거·운송장비 및 인력지원 요청
 - 침수쓰레기 수거는 재활용품 수집업체의 집게 차량을 우선적으로 지원 받아 수거조치
 - 수거된 쓰레기의 매립지 운송은 건설폐기물처리업체 등의 중장비를 지원 받아 수거·운송 조치
- 수해쓰레기의 쓰레기매립지 반입·처리
 - 수해지역 침수쓰레기, 종량제 봉투 미사용 쓰레기의 반입을 위하여 쓰레기 매립지 운영·관리기관과 임시 반입허용에 관한 협의를 우선 실시

- 타 기관에서 지원된 차량으로 쓰레기매립지에 반입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임시차량 등록을 실시하여 차량출입이 가능토록 조치 후 반입
- 타기관 등의 지원차량의 경우 매립지 운영기관에 등록신청 및 수해쓰레기 수송 차량 스티커 부착 등 행정적인 절차를 우선 시행하여 혼선초래 사전방지
- 매립지 관리운영기관은 임시차량이 수해쓰레기 이외의 다른 사업장폐기물 등이 반입하지 않도록 관리
- 폐사된 가축은 관련규정에 따라 적정처리
 - 폐기물관리법 및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하여 소각 또는 매몰처리
- 수해쓰레기 매립지 반입비용 지원
 - 수해쓰레기는 매립장에서 계근하여 정상매립 후(증빙서류 확보) 재난대책비 지원요청(재난안전대책본부와 협의 후)
- 수해지역 폐기물 불법투기 감시강화
 - 수해지역쓰레기의 긴급 수거·처리시 사업장폐기물 등을 매립지에 위장반입하거나 수해지역에 불법 배출·투기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활동 실시
- 수해지역 폐기물 불법투기 감시 강화
 - 수해지역 쓰레기의 긴급 수거·처리시 사업장 폐기물 등을 매립지에 위장 반입하거나 수해지역에 불법 배출·투기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활동 실시
- 폐사가축 처리방안
 - 폐사 가축은 매몰 후 축사에 대한 소독 실시
 - 가축 전염병 예찰을 강화하고 예방주사 실시

다. 부상자 진료 및 예방접종

- 현장 응급의료소 설치 운영
 - 의료구호반은 대피장소 및 재난현장에 구호소 설치
 - 중상자 응급처치 및 후방 의료기관으로 운송, 수송 곤란자 및 경상자 의료조치, 조산구호, 사망자 확인 사체 검안
- 의약품, 의료기자재 비축
 - 5일간 사용할 의약품, 의료기자재 등을 비축 보관
- 수인성전염병 예방
 - 장티푸스 등 예방접종

10.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가. 자체피해조사 및 합동조사

- 우심 사·군·구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 대 상 : 경미한 피해 【'05.11.30. 재난구호및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
관한규정(대통령령) 개정】
- 보통세 등의 연평균액이 100억원 미만인 시군구 : 14억원미만
- 보통세 등의 연평균액이 100억원이상 350억원미만인 시군구 : 20억원미만
- 보통세 등의 연평균액이 350억원이상 600억원미만인 시군구 : 26억원미만
- 보통세 등의 연평균액이 600억원이상 850억원미만인 시군구 : 32억원미만
- 보통세 등의 연평균액이 850억원이상인 시군구 : 38억원미만
- 조사기관 : 도
- 시 기 : 최종 피해보고 7일후
- 조사방법

- 조사반 편성 : 피해상황에 따라 관련부서 직원 차출
- 기 간 : 1주일 이내
- 조 사 내 용
 - ┌ 피해원인
 - └ 피해액 확인
 - └ 재해대장 및 복구조서 작성
- 조 사 방 법
 - ┌ 현지조사
 - └ 재해대장 및 복구조서 검토
- 보고서 내용
 - ┌ 조사 복명서
 - └ 피해원인 분석
 - └ 피해 및 복구계획서
 - └ 재해대장 등

↓ 보 고

도 재난안전대책본부

○ 우심 시·군·구가 발생한 경우

- 대 상 : 우심 시·군·구가 발생하더라도 1개 시·도에 국한되거나
중앙합동조사가 필요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조사기관, 시기 및 조사방법은 우심 시·군·구가 없을 경우와 동일

○ 중앙합동조사단 편성·운영

- 대 상 : 여러 시·도나 시·군·구에 우심지역이 발생하여 중앙재난안전
중앙합동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 편 성 : 관계부처 공무원으로 구성·운영(관계부처 합동)

- 직무범위
 - 피해조사 및 피해원인분석, 재난복구계획(안)의 작성
- 시 기 : 최종 피해보고 7일후
- 조사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반 편성 : 피해내용에 따라 해당부처 4 ~ 6급직원 차출 · 기 간 : 1주일 이내(피해정도에 따라 기간조정) · 조 사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원인 └ 피해액 확인 └ 복구조서 작성 · 조 사 방 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조사 └ 도 복구조서 검토 · 보고서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 복명서 └ 피해원인 분석 └ 피해 및 복구계획서 └ 재해대장 └ 건의사항 └ 기타 참고자료

↓ 보 고

중 앙 재 난 안 전 대 책 본 부

○ 재난원인분석조사단

- 대규모 재난발생시 재난원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근원적 대책 강구를 위해 학계·민간전문가 등을 위주로 편성·운영
- 직무범위
 - 재난원인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 홍수범람 흔적관리를 위한 항공사진 측량, 비디오 촬영, 위성사진 분석등에 관한 사항
 - 기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의뢰한 재난원인 분석관련 기술 검토와자문 등

나. 피해유형별 복구비 지원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지침 참조

다. 피해유형별 복구계획 수립

1. 기본방침

- 주변 환경을 고려한 친환경적 복구사업 수립 시행
- 민생관련 시설의 조기복구를 통한 주민생활안정 도모
- 현지여건에 적합한 공법 선정 시행으로 피해재발 방지
- 사유재산피해에 대한 『선지원 후정산』 복구지원체제 정착

2. 추진방침

- 피해시설별 특성을 고려 완공목표설정 추진
- 복구계획 확정 즉시 용역발주 및 현지여건을 고려한 설계 등 조기착공
- 개선복구 사업지구는 지역적 특성을 감안한 종합적인 사업계획 수립으로 피해재발 방지
- 시설별 세부복구추진지침에 의거 신속·정확한 복구비 집행
-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한 설계·용지보상 등 각종 지원단 구성,운영
- 통합감리제도 등을 적극 활용하여 복구공사 부실방지
- 복구사업 집행의 투명성·정확성을 강화할 수 있는 행정지도·점검강화

3. 복구의 종류

- 응급복구
 - 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재해위험시설의 피해확대 방지 및 기능회복을 위하여 복구 및 시설하는 것을 말함
- 항구복구
 - 기능복원 : 재해가 발생하여 기존의 시설이 파손되었을 경우, 동 시설을 기존시설과 유사하게 복구하는 것을 말함
 - 개선복구 : 재해가 발생하여 기존의 시설의 파손되었을 경우 피해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동 시설의 기능을 크게 개선하여

복구하는 것을 말함.

※ 개선복구사업개량 대상

- 피해가 발생한 일정지역 안의 하천·도로·수리시설 등을 총괄하여 복구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는 지구
- 대규모 산사태지역 또는 절개지 등 기능복원사업을 하여도 근원적으로 재해발생원인이 해소되지 아니하거나 안전에 문제가 있는 시설 등
-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주민편익증진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시설 등
- 하천의 홍수부담 경감을 위해 우수지 설치 등 홍수저류대책이 필요한 지구
- 그 밖의 중앙본부장이 개선복구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본부회의에서 결정된 시설 등

4. 재난복구비용의 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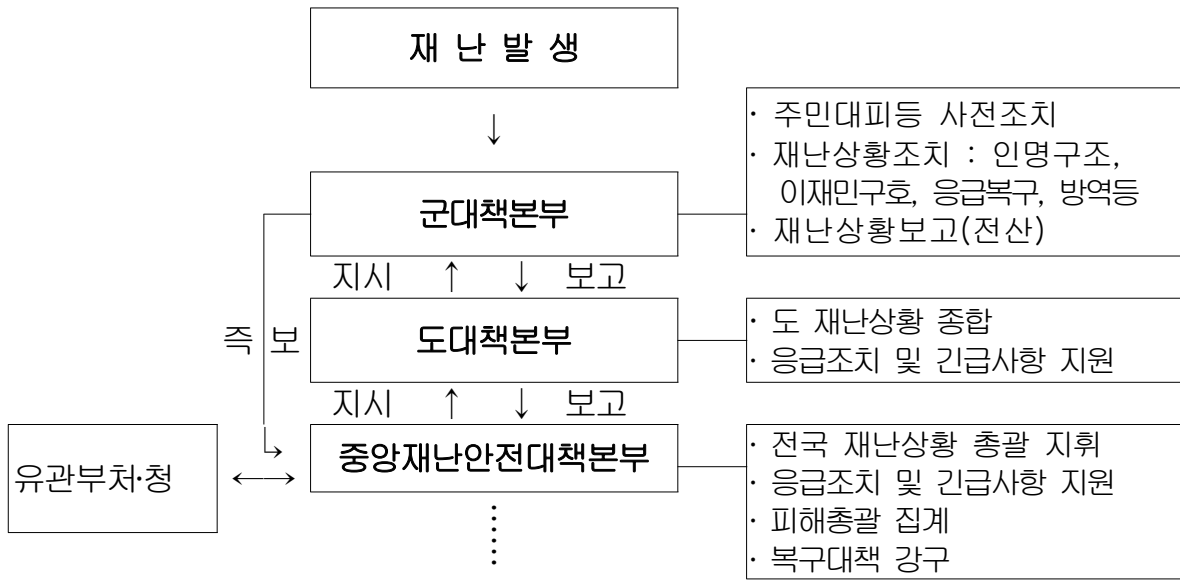
- 재난복구비용의 산정기준은 기능복원사업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과 같이 기능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 개선복구사업비 지원
 - 피해가 발생한 일정지역 안의 하천·도로·수리시설 등을 총괄하여 복구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는 지구
 - 대규모 산사태지역 또는 절개지 등 기능복원사업을 하여도 근원적으로 재해발생원인이 해소되지 아니하거나 안전에 문제가 있는 시설 등
 -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주민편익증진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시설 등
 - 하천의 홍수부담 경감을 위해 우수지 설치 등 홍수저류대책이 필요한 지구
 - 그 밖의 중앙본부장이 개선복구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본부회의에서 결정된 시설 등
- 제4조 제1항 제2호 바목의 재난복구비용을 산정할 경우, 해양수산부령이 정한 양식시설기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표준사육기준을 초과하여 산정할 수 없다

5. 복구비 지원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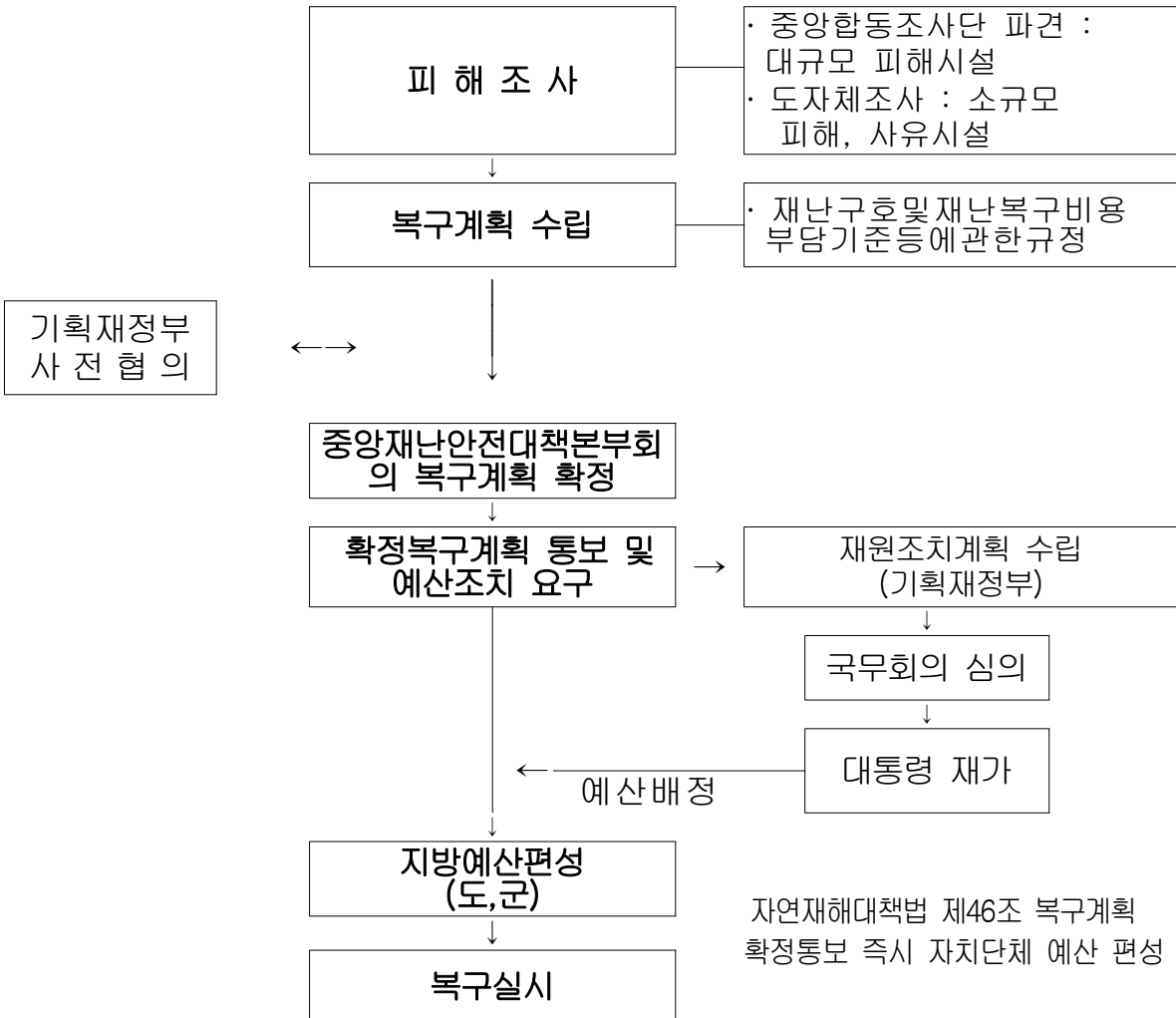
- 복구계획(안) 작성
 - 피해합동조사보고서를 토대로 「재난구호및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 등에관한규정」에 의거 사업별, 지역별에 따라 국고, 지방비,용자, 자부담 등으로 재원을 구분하여 복구계획(안)을 작성
- 복구계획(안) 심의 확정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심의
 - 복구계획(안)을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 협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상정 심의 확정
 - 확정시달
 - 본부회의에서 심의확정한 내용을 기획재정부장관과 관계부처 및 시·도에 통보
- 재난복구비 예산요구 및 조치
 - 재난복구계획 확정 통보 즉시 관계부처는 소관사업에 대한 재해복구비 예산 지출요구서(예산조치 계획, 예산편성내역)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
 - 관계부처 기정예산에서 조치하는 예산과 재해의연금은 소관부처별로 즉시 예산내시 및 재배정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통보
 - 지방 예산조치
 - 도지사, 군수는 재해복구계획 확정통보 즉시 지방예산을 편성 (자연재해대책법 제46조제3항)
- 재해복구비 예산내시 및 재배정
 - 기획재정부에서는 재해복구비 예산지출에 대하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득하여 각 부처별로 예산배정
 - 각 부처는 예산배정 서에 따라 시행청별로 예산내시 및 재배정 조치하고 그 결과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통보한다.
 - 도 관련실과는 복구계획에 따라 도비를 확보하고 복구비를 해당 시·군에 예산내시 및 재배정

○ 재해복구흐름도

< 재난응급대책 >



< 재난복구 >



제2절 기타 자연재난 업무(대설,황사,가뭄,지진)

1. 대설대책

가. 도로별 제설대책

○ 도로제설대책 일반사항

- 제설장비의 확보 및 사전 점검·정비 철저
 - 제설차, 덤프트럭, 모래(영화칼슘)살포기, 제설삽날(트렉타용), 그레이더, 로우더, 굴삭기, 카고트럭 등
- 제설작업요원의 제설취약구간현장 적정 배치
 - 조종원, 도로보수원, 일용제설원, 미화원 등 기타 제설요원
- 제설자재의 확보·비축 및 적사함 설치 관리
 - 영화칼슘, 모래주머니, 모래 등 제설자재의 적정량 확보
 - 교량 또는 노견이 협소하여 적사함 설치가 곤란한 어려운 지점은 영화칼슘, 모래주머니 등으로 현장 비축
 - 적사함은 응달부, 고갯길, 곡선부, 터널입출구 등 제설취약지점에 설치하고 영화칼슘, 모래, 삽 등 비치

○ 도로등급별 제설작업 우선순위 선정 및 집중 제설관리

- 일반국도, 지방도 및 군도
 - 국도 및 대로와 군과 연결도로
 - 지방도 및 군도로서 읍면간 연결도로
 - 농어촌도로 등 기타도로로서 마을간 연결도로

○ 일반국도 및 기타도로 제설대책

- 중점관리대상
 - 교통두절 및 취약지도로 선정관리
- 교통량 및 지역여건 등 중요도에 따른 제설우선 순위 설정운영
 - 첫째 : 국도 및 대로와 군 간 연결도로
 - 둘째 : 지방도 및 군도로로서 읍면간 연결도로
 - 셋째 : 농어촌도로 등 기타도로로서 마을간 연결도로
- 폭설, 결빙 등으로 인한 교통두절 예상구간 특별관리 및 취약구간 집중관리

- 고지대 급커브 및 경사도로로서 연장이 20km이상 구간으로 폭설시 교통소통에 지장이 있는 취약구간 집중관리
- 우회도로 사전지정 및 제설인원, 장비, 자재 등 사전확보
- 도로 신설 및 확장개통구간의 제설대책 강구
- 군 관리 국도구간의 제설장비 급유 및 자재확보 방안 강구
- 군 및 유관기관 제설 공조체제 구축
- 군 ⇔ 도 건설본부 ⇔ 국도유지건설사무소 ⇔ 군부대 등

나. 주택가 등 제설대책

- 건축물 소유자·관리자 등의 제설책임 홍보
 - 근 거 :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 내 용 :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 도로에 대한 제설·제빙작업 의무
- ※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 제설·제빙 책임범위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조례에 명시

다. 농어촌 등 시설피해 방지대책 지도

- 비닐하우스시설
 - 폭설시 비닐하우스시설의 눈을 쓸어내리기 등 사전대비 철저
 - 폭설시 휴작중인 비닐하우스는 양수기를 작동하여 보온을 실시함으로써 비닐하우스의 눈을 녹여 피해예방
 - 농림부 발행 표준규격시설이 아닌 경우는 지원복구 대상에서 제외
 - 비닐하우스 설치기준 및 행정지도 강화
- 새로 설치하는 비닐하우스는 반드시 「표준설계도」에 의한 규격 설치를 준수하도록 지도강화
- 대국민 교육실시
 - ※ 비닐하우스 설치요령, 재료구입방법, 재해예방관리 등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계몽 및 홍보실시

- 비닐하우스시설 설치기준 강화
 - 재래식하우스에서 농가보급형 비닐하우스 설치로 개량권장
 - 300평이상 비닐하우스시설은 동 신고제 실시
 - 이동형 비닐하우스 시설에 대한 표준도 개발보급
 - 미신고 또는 무허가시설물에 대하여 피해발생시 복구비 지원 제한
- 첨단기술농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고부가가치,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 구축

라. 폭설대처 및 대국민 행동요령 홍보

○ 대국민 홍보강화

- 겨울철 재해대비 국민행동요령과 설해대책 협조사항을 각 언론, 반상회, 회보, 스티커 등 모든 매체를 최대한 활용하여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홍보 실시
- 홍보기간 : 매년 11월 ~ 익년도 3월까지
- 홍보내용
 - 설해발생시 대국민 행동요령
 - 설해상황 및 교통통제 등 교통정보사항
 - 적설대비 차량 안전장구 휴대운행 및 내 집, 내 점포 앞 눈은 내가 치우기
- 홍보매체 : 방송, 신문, 반상회 회보, 깃발, 스티커, 광고전광판, 공문서 하단에 표어 게재
- 홍보방법
 - 민방위 훈련시간을 이용한 대국민 설해대비요령 홍보
 - 설해대책상황을 방송, 신문 등에 보도
 - 강설시 교통방송(TBS)은 타 방송에 우선하여 집중방송

○ 국민행동요령

- 차량운전자
 - 자가용차량 이용을 억제하고 대중교통(지하철, 버스 등) 수단을 이용합시다.
 - 설해대비용 안전장구(체인, 모래주머니, 삽 등)를 휴대 합시다.
 - 커브길, 고갯길, 고가도로, 교량 등에는 서행운전 합시다.
 - 라디오, TV 등을 항상 청취하여 교통상황을 수시 파악 운행 합시다.
 - 간선도로변의 주차는 제설작업에 지장을 초래하니 삼갑시다.
 - 차간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브레이크 사용을 자제합시다.

- 브레이크 사용시에는 엔진브레이크를 사용합시다.
- 눈길에서는 제동거리가 길어지기 때문에 교차로나 횡단보도 앞에서는 감속운전 합시다.
- 보행자
 - 가급적 외출을 자제합시다.
 - 외출시에는 미끄러지지 않도록 바닥면이 넓은 운동화나 등산화를 착용합니다.
 - 눈길을 걸을 때에는 미끄러우므로 주머니에 손을 넣지 맙시다.
 - 걸어가는 중에는 휴대전화 통화를 삼갑시다.
 - 횡단보도를 건널 때에는 차량이 멈추었는지 확인하고 도로에 진입합니다.
 - 계단을 오르내릴 때에는 난간을 잡고 다니는 것이 안전합니다.
 - 야간 보행은 매우 위험하므로 조속히 귀가합시다.
 - 차도로 나와서 차량에 승차하여 타 차량의 주행을 방해하지 맙시다.
- 가정에서
 - 내 집 앞, 내 점포 앞 도로의 눈은 내가치우는 건전한 주민정신을 발휘합시다.
 - 내 집주변 빙판길에는 염화칼슘이나 모래 등을 뿌려서 미끄럼 사고를 예방합시다.
 - 어린이 및 노약자는 외출을 삼갑시다.
 - 적설시 차량, 대문, 지붕 및 옥상위에 눈을 치웁시다.
 - 노후가옥은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붕괴사고를 예방합니다.
 - 고립지역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직장에서
 - 평상시보다 조금 일찍 출근하고 일찍 귀가합시다.
 - 출·퇴근 시에는 자가용 운행을 억제하고 대중교통(지하철, 버스 등)수단을 이용합시다.
 - 직장 주변의 눈은 내가치워 건전한 주인정신을 발휘 합시다
 - 직장 주변 빙판길에는 염화칼슘이나 모래 등을 뿌려서 미끄럼 사고를 예방합시다.
- 농촌에서
 - 붕괴가 우려되는 비닐하우스 등 농작물재배시설은 받침대 보강 또는 비닐 찢기 등의 보호조치를 합니다.
 - 비닐찢기 작업시 안전사고에 유의합시다.
 - 작물을 재배하지 않는 빈 하우스는 비닐을 걷어내어 하우스를 보호합시다.
 - 고립지역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 라디오, T.V등을 청취, 폭설 등 기상상황을 수시 파악할 수 있도록 합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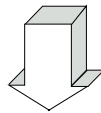
2. 황사대책

가. 황사대처 국민행동요령 홍보

- 추진 방향
 - 라디오방송, 신문, 반상회 회보, 인터넷, 홍보전광판 등을 통한 홍보
 - 홍보비디오, 팸플릿, 스티커, 포스터 등 홍보물 제작 홍보

- 추진할 사항
 - 3월 ~ 5월 반상회보에 「황사대비 국민행동요령」 게재
 - 황사대비 대국민 홍보용 팸플릿, 스티커, 포스터 등 제작·배포
 - 「황사대비 국민행동요령」 홍보비디오 활용
 - 인터넷 홈페이지에 황사대비 국민행동요령 게재
- 황사대비 국민행동 요령

- 황사로부터 내 건강·내 가족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수시로 「황사 발생 기상정보」를 확인하여
- 「국민행동요령」에 따라 신속하게 대처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황사발생 확인 3가지 방법>

<p style="text-align: center;">방송매체를 통한 확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TV의 일기예보 시청▶ 라디오의 일기예보 청취	<p style="text-align: center;">기상청 홈페이지 수시 확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상청 www.kma.go.kr	<p style="text-align: center;">전화를 통한 확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상청 (02) 841-0011 (02) 831-0365 국번없이 131 (타지역 기상정보/ 지역번호+131)
---	--	--

〈황사 발생전〉

- 가정에서
 - 황사가 실내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창문 등을 점검하고
 - 실내 공기정화기 및 가습기 등을 준비
 - 외출시 필요한 보호안경, 마스크, 긴소매의복 등을 준비
 - 포장되지 않은 식품 등은 운반시 오염되지 않도록 위생용기 등을 준비
 -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 기상청 등에서 발표한 기상예보를 청취·분석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휴업 또는 단축수업 등을 신중히 검토
 - 학생 비상연락망 점검 및 연락체계 유지
 - 휴업 조치시 맞벌이 부부자녀에 대한 자율학습대책 등 수립
 -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황사발생대피 피해예방을 위한 행동요령 지도 및 홍보 실시
 - 축산·시설원예 등 농가에서
 - 운동장 및 방목장에 있는 가축 대피 준비
 - 노지에 방치, 야적된 사료용 볏짚 등에 대한 피복물 준비
 - 동력분무기 등 황사세척용 장비 점검·장비
 - 비닐하우스, 온실 등 시설물의 출입문 및 환기창 점검
- ※ 기타 제조업체 등 사업장에서는 자재 및 생산제품의 옥외야적을 억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포장 및 차단시설 설치

나. 황사발생에 따른 조치

- 황사발생시 가정, 학교, 농가 등에서 조치할 사항을 신속히 홍보
- 홍보 방법
 - TV·라디오방송, 인터넷, 홍보전광판, 마을 앰프 등
- 황사대비 국민행동 요령

〈황사 발생중〉

- 가정에서
 - 가급적 외출을 삼가되, 외출시 보호안경, 마스크, 긴소매의복을 착용하고, 귀가 후 손과 발 등을 깨끗이 씻고 양치질
 - 들어오지 못하도록 창문을 닫고 실내공기의 정화 및 가습기를 사용한 실내 적정습도 유지

- 황사에 노출된 채소, 과일 등 농수산물은 충분히 세척 후 섭취
- 식품가공, 조리시 철저한 손씻기 등 위생관리로 2차오염 방지
-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실외활동 금지 및 수업단축 또는 휴업
 - 황사발생기간중 실외학습, 운동경기 등 중지 및 연기 조치
- 축산·시설원예 등 농가에서
 - 운동장, 방목장에 있는 가축은 축사안에서 신속히 대피시켜 황사에 노출방지
 - 축사의 출입문 및 창문을 닫아 황사유입을 최소화하여 외부의 공기와 접촉을 가능한 적게 할 것
 - 노지에 방치·야적된 사료용 건조, 볏짚 등을 비닐, 천막 등으로 덮기
 - 비닐하우스, 온실 등 시설물의 출입문 및 환기창 닫기
 - ※ 기타 제조업체 등 사업장에서는 생산공정 불량률 발생방지를 위한 작업일정 조정 및 상품포장, 청결상태 유지

〈황사 종료후〉

- 가정에서
 - 실내공기의 환기 및 환경 정화
 - 황사에 노출 및 오염된 물품 등은 충분히 세척후 사용
-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 학교 실내·외 방역 및 청소를 통한 먼지 제거
 - 학생건강 등 피해상황 파악 및 사후조치
 - 감기, 안질 등 환자는 쉬게 하거나 일찍 귀가조치
 - 황사발생후 발생할 수 있는 전염병에 대한 예방접종 등 실시
- 축사·시설원예 등 농가에서
 - 비닐하우스·축사 등 시설물, 방목장 사료조 및 가축과 접촉되는 기구류 등은 세척 및 소독 실시
 - 가축이 황사에 노출되었을 때는 몸체에 묻은 황사를 털어낸 후 구연산소독제 등을 이용 분무소독 실시
- 황사가 끝난 후 2주일정도 질병의 발생유무 관찰
- 구제역 증상과 유사한 병든 가축 발견시 신고

3. 가뭄대책

가. 가뭄대처 대국민 행동요령 전파

- 지역방송매체를 통한 절수운동 전개
 - 자막방송 및 특집프로 제작 홍보
- 가뭄극복 3대 운동의 전개 → 저수, 절수, 용수개발
- 범국민 생활용수 10% 절수운동 전개
 - 기존건물의 수세식 변기물통에 벽돌 및 물주머니 넣기, 수도 꼭지에 절수 디스크 달기운동 등
- 빗물모으기시설 설치 및 빗물모으기운동

나. 생활용수 확보대책

- 가뭄대책에 관한 연구개발 및 조사 활성화
 -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의 가뭄방재를 위한 조사·연구개발
 - 가뭄대책에 관한 기초자료 집적, 연구시설 확충 등
- 상습가뭄지역해소를 위한 중장기대책 수립 추진
 - 기존 수자원시설의 효율적 활용
 - 수리시설, 양수장비 정비점검 및 부족한 장비의 사전보충 실시
 - 다양한 수자원 확보
 - 지하수의 효율적 개발·이용 및 해수담수화, 중수도 도입 등 다양한 수자원 확보 추진
- 물절약 대책추진
 - 물다량 사용업소, 유치원 및 초중고 등에 절수교육 실시 및 절수기 설치 유도
 -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및 물다량 사용업소에 중수도 및 절수기 설치 의무화
- 갈수기 수질오염사고 예방대책 추진
 - 수계별 환경오염 우려업소 중점 단속실시
- 지하수개발 및 사후관리 강화
 - 지하수 기초조사 확충 및 D/B 구축
 - 필요시 즉시 개발이 가능하도록 기초조사 실시
 - 조사 자료를 D/B화하여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 지하수 감시를 위한 관측소 설치
- 가뭄발생 예상지역의 가뭄대책장비 점검·정비

다. 농업용수 확보대책

- 가뭄대책에 관한 연구개발 및 조사 활성화
 -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의 가뭄방재를 위한 조사·연구개발
 - 가뭄대책에 관한 기초자료 집적, 연구시설 확충 등
- 농업용수대책 추진
 - 영농기 이전 농업용수의 개발을 위한 사전조사의 실시, 농업용수의 개발시 환경파괴 등을 고려
 - 수리시설, 양수장비 정비점검 및 부족한 장비의 사전보충 실시
 - 논물 가두기, 간이보 설치 등 용수확보대책의 사전점검 및 준비
 - 용수 부족지역은 농작물을 선별파종하는 등 피해예방대책 강구
 - 지하수 수맥조사 및 관정개발계획 수립 추진
- 상습가뭄해소를 위한 중·장기계획 수립 추진
 - 용수공급 능력이 부족한 수리시설 확충 보강
 - 수리시설이 없는 지역의 용수원 개발
 - 상습가뭄지역을 조사하여 저수지, 양수장, 용수로 등 수리시설의 신설·확장 등의 용수개발 추진
- 물절약 대책추진
 - 가뭄극복 3대운동(저수, 절수, 용수개발) 전개
 - 집단못자리, 반복수 이용 등 절수영농계획 수립
 - 과, 채소 등 밭포장의 피복관리 등
- 한해 장비 점검·정비
 - 자체보유중인 장비에 대해 월1회 이상 점검·정비 실시
 - 양수장비 보유량이 정수에 미달될 경우 즉시 확보 보충
- 기상분석 및 생육상황 관찰
 - 지역별 강우량, 저수율 파악 및 정밀 분석
 - 논·밭의 토양수분함량 및 농작물 생육 상황 파악

라. 비상시 식수원 확보 및 공급 계획

- 유희 우물 또는 농업용 관정 등 기존시설을 최대한 활용
- 민방위기본법에 의하여 설치된 비상급수시설, 인근 정수장, 간이 상수도, 전용 상수도 등을 활용
- 농업·공업·발전용수 등 다른 수리시설을 일시 전용하여 응급조치
-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비상급수를 위한 시설장비 및 인력 확보(군부대, 소방서 등)

- 급수차, 정수차를 이용하여 주민급수를 지원
- 먹는 샘물업체의 협조를 받아 식수를 원활하게 공급 조치

마. 단계별 제한급수대책 추진

- 지역실정에 맞는 단계별 급수대책 수립
- 지역실정에 따라 1단계(10~30% 감량공급)~4단계(급수중단)로 구분 단계별 추진대책 수립 실시

구 분		기 준	내 용
1단계	1-1단계	10% 감량공급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지대 및 급수불량지역 운반급수 ○ 방송·캠페인 등을 통한 절수 홍보 ○ 상수도 수질관리 강화(정수장 소독, 급수전 검사)
	1-2단계	10~30% 감량공급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상급수대책상황실' 운영 ○ 물다량사용업소의 영업시간 단축 ○ 상수도 수질관리 강화(정수장 소독, 급수전 검사) ○ 공공건물, 대형빌딩에서의 절수 확대 ○ 공업용수 절약사용 및 재활용 확대 ○ 각 가정에서의 절수 적극 유도 ○ 식수용 지하수 개발 ○ 격일제 또는 3일제로 제한급수 실시 ○ 수영장, 세차장 등 영업시간단축 또는 임시휴업 ○ 농업용수원지(저수지 지하수)활용조치
2단계	2단계	30~50% 감량공급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근 지자체간 긴급급수지원 ○ 물다량 사용업소 자율 휴무실시 ○ 식수용 관정개발 확대 ○ 민방위 비상관정 이용 ○ 수돗물 다량사용 공장 조업 단축 ○ 군부대 인력·장비 지원 비상급수
3단계	3-1단계	50~60% 감량공급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정에 따라 35일제 급수 ○ 산업용수 공급 감축·중단 ○ 개인 및 민방위 관정, 전용상수도 공동이용 확대
	3-2단계	60%이상 감량공급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소한의 생활용수만 공급 ○ 수돗물 다량사용업소 격일제 영업
4단계	4단계	급수중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먹는샘물 공급 ○ 최소한의 식수배급제 실시 ○ 개인관정 공동이용

바. 긴급 용수원 확보대책 추진

○ 긴급식수원 확보 및 생활용수 공급

- 유희우물 또는 농업용관정 등 기존시설 최대 활용
- 민방위기본법에 의하여 설치된 비상급수시설, 인근 정수장, 간이 상수도, 전용상수도 등 활용
- 농업·공업·발전용수 등 다른 수리시설 일시 전용
- 유관기관과 협조체제 구축 및 비상급수를 위한 시설장비 및 인력 확보(군, 소방서 등)
- 먹는 샘물업체와 협조, 긴급식수 공급

○ 가뭄발생지역 긴급 용수원 개발 추진

- 가뭄발생지역 또는 물 부족 예상지역은 지하수, 간이용수원 등을 개발하고 물 부족 지역은 양수공급 실시
- 지하수 개발 : 암반관정, 소형관정, 집수정 등
- 간이용수원 개발 : 하상굴착, 포강, 이동식양수시설 등
- 양수급수 : 양수장비를 동원한 용수공급 및 다단양수

4. 지진대책

가. 다중이용시설 점검 정비사항

- 5층이상 아파트 및 연면적 5,000㎡ 이상의 판매시설 등 다중이용 시설물은 시설물의안전관리
에관한특별법 및 각종 시설물의 관계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정비 실시
- 자동차여객터미널, 종합여객시설, 종합병원, 판매시설, 관광숙박시설, 관람집회시설 등

나. 공공시설물 점검 정비사항

- 도로, 철도, 댐, 하천 등 대규모 재해 유발요인이 있는 시설물은 특별법 또는 각종
시설물의 관계 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정비 실시
- 산사태, 산지재해, 토석류 등의 피해가 예상되는 시설
- 상·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시설 등 국민생활 필수시설(Life-line)
- 도로, 하천, 항만, 철도 등 사회 간접자본시설
- 각종 집회시설 등 사회적 혼란이 예상되는 다중이용시설
- 화약류 저장소, 취급업소 등 폭발로 인하여 피해가 예상되는 시설

다. 화재·폭발·가스 등 사고우려 시설물 점검사항

- 석유, 화약류, 화학약품 등의 보관시설, 가스보관, 독극물 취급, 방사선사용 시설
등 화재발생이 예상되는 시설에 대한 조치
- 비축기지별, 유형별로 계획 수립
- 비축기지별로 자위소방대 편성·운영 : 직원별 임무부여 및 교육실시
- 긴급사태 발생에 대비 유관기관과 협조체제 구축
- 인화·발화·폭발성 또는 독성물질을 제조 취급하는 사업장에서의 화재·폭발·누출
로 인한 중대산업사고 방지대책 추진
- 안전운전지침, 안전작업허가 및 근로자 교육계획 등 안전운전계획 이행 실태 점검
- 위험성 확인·피해최소화 계획수립·시행
- 공정의 안정성 이행 확립지도 및 비상조치계획 수립 지도

라. 2차 피해 방지대책 추진

- 소방활동로 지정, 소방활동 곤란지역 해소계획 등을 수립 추진
- 정보·통신체제의 정비
 - 지진피해 발생지역에 대한 통신체계 조기 복구계획 수립
- 유·무선 통신용 119전화 회선 확대
- 2차 피해확산 방지시설 설치
 - 연소 방지기능을 가진 수림대 및 화재 확산방지를 위한 완충 녹지공간 확보

마. 경비·방범 대책

- 대규모 지진발생에 대비 경비본부 설치 운영
- 경찰서장은 관내에 규모(M) 5이상의 지진이 발생하였을 경우, 긴급현장상황반, 5분대기조 등 초동조치부대 현장출동 임무수행
- 경찰서장은 가용인원을 최대한 동원 현장에 투입하여 피해실태 파악, 대피유도, 구조·구난 등 실시
 - 재해발생 및 발생우려지역에 대한 경찰통제선(Police line) 설치
 - 재해현장 출입 인원 통제 및 질서유지
 - 피해주민 대피 유도
- 지진피해지역의 아파트, 주택 및 상가 등에 대한 범죄 예방 활동 전개
 - 재해현장 주변상가, 주택가 아파트단지 등에 대한 순찰 강화 및 검문 검색 철저
 - 인접 경찰서, 방범순찰대, 기동대 등 병력집중지원으로 안전활동 및 방범활동 강화
 - 미아 및 고아에 대한 전산수배 및 연고지 수배로 신속한 보호자 확인인계

5장 산청군재난안전대책본부 행동요령

- 1. 본부장(군수)**
- 2. 차장(부군수)**
- 3. 총괄조정관(기획감사실장)**
- 4. 통제관(건설과장)**
- 5. 담당관(해당재난관련부서과장)**
- 6. 실무반**

제5장 산청군재난안전대책본부 행동요령

1. 본부장(군수)

관할구역내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 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한다.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

본부장 임무 및 역할

-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에 대한 지역 총괄조정
- 재난상황에 효율적인 대처를 위한 상황판단회의 주재
-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및 지역안전관리위원회 주재
- 피해예방 및 경감을 위한 예·경보 발령 및 특별지시
- 재해취약시설 정비·점검 지시
- 장비 및 자재 지정·관리 확인
- 고립예상지역 및 교통두절 대책 수립 확인
- 유관기관 긴밀 협조체제 구축
- 농업관련시설 관리 철저 지시
- 제설을 위한 장비·인력 등의 동원발령 및 응원 요청
- 피해지역에 대한 신속한 응급복구 지시
- 이재민 보호대책 수립 확인
- 피해현장 방문, 응급복구 현황파악 및 이재민 위로

가. 대비단계

1) 재난을 신속히 대응·복구하기 위한 계획수립 시행(법 제4조)

-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의 예방과 피해경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재난을 신속히 대응·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2)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지원협조 및 파견요청(법 제17조)

- 재난의 수습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관할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 및 재정상의 조치나 그 밖의 필요한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 재난의 효율적인 수습을 위한 행정상의 조치를 위하여 재난상황대응계획서를 요청할 수 있음.
 - 재난발생의 장소·일시·규모 및 원인
 - 재난대응조치에 관한 사항
 - 재난의 예상 진행 상황
 - 재난진행단계별 조치계획
 - 그 밖에 본부장이 정하는 사항
- 관할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음.

3) 안전관리계획 수립

- 군 안전관리계획 수립지침과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작성한 계획을 종합하여 군 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하고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함.
- 확정된 안전관리계획을 시장에게 보고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4)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

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 조치(법 제26조)

- 소관 관리 대상업무의 분야에서 재난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조치를 하여야 함.
 - 재난에 대응할 조직의 구성 및 정비
 - 재난의 예측과 정보전달체계의 구축
 - 재난발생에 대비한 교육·훈련과 재난관리 예방에 관한 홍보

-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은 분야에 대한 안전관리체계의 구축 및 안전관리 규정의 제정
-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특정관리대상시설)의 지정·관리 및 정비
- 물자 및 자재의 비축, 재난방지시설의 정비와 장비 및 인력의 지정
- 그 밖에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재난피해 원인의 조사·분석
 - 각종 개발사업 등과 연계한 특정관리 대상시설의 재난위험요인 검토
 - 재난과 관련된 통계의 조사·분석
 - 재난예방을 위한 연구용역
- 재난예방 조치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여야 함.
- 다른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시행하는 재난예방 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안전관리체계 및 안전관리 규정을 정비·보완하여야 함.
-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지정·관리 및 정비조치 결과를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함.
 -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지정 현황
 - 특정관리대상시설에 대한 정기 및 수시점검과 정비·보수

나) 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 등(법 제30조)

- 특정관리대상시설과 그 밖에 소방서장이 긴급 안전점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및 지역에 재난의 발생이 우려되는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하게 함.
 - 긴급한 사유
 - 사회적으로 피해가 큰 재난이 발생하여 유사시설의 재난예방이 필요한 경우
 - 계절적으로 재난이 우려되는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대책이 필요한 경우
-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한 때에는 긴급안전점검 대상시설 및 지역의 관리에 관한 카드에 긴급안전점검 결과 및 안전조치사항 등을 기록·유지하여야 함.

다) 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법 제31조)

- 긴급안전점검 결과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하여는 그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음.(안전조치명령서 통지)
 -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시설에 한한다)
 - 보수 또는 보강 등 정비

- 재난을 발생시킬 위험요인의 제거

※ 안전조치명령서 내용

·안전점검의 결과

·안전조치를 명하는 이유

·안전조치 실시기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는 사항

·안전조치 방법

·안전조치를 실시한 후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사항

- 안전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수 없는 상태에 있고,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당해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하여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시킬 수 있으며 또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수 있음.

라) 물자·자재의 비축 등(법 제35조)

- 안전관리계획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관업무와 관계되는 재난응급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재난복구에 필요한 물자 및 자재를 비축하며 재난방지시설을 정비하여야 함.

- 재난방지시설

·소하천부속물 중 제방·호안·보 및 수문

·하천부속물 중 댐·하구둑·제방·호안·수제·보·갑문·수문·수로터널·운하 및 관측시설

·국토계획법에 의한 방재시설, 하수도 중 하수관거 및 하수종말처리시설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저수지, 양수장, 관정 등 지하수 이용시설, 배수장, 취입보, 용·배수로, 유지, 방조제, 제방

·사방시설, 댐

·터널·교량 및 도로의 부속물 중 방설·제설시설, 토사유출·낙석방지시설, 공동구, 지하도 및 육교

·재난 예보·경보시설, 항만시설 등

- 물자 및 자재

·포대류·묶음줄 등 수방자재

·시멘트·철근·하수관 및 강재 등 건설자재

·전기·통신·수도용 기자재

·자재·인력 등을 운반하기 위한 수송장비 및 연료

·불도저·굴삭기 등 건설장비

- 양수기 등 침수지역 복구장비
- 손전등·축전지·소형발전기 등

나. 대응단계

- 재난발생시 동원명령 (법 제39조)
 -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민방위대의 동원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응급조치를 위하여 관계직원의 출동 또는 물자 및 지정된 장비·인력 등의 동원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주도록 요청
 - 국방부장관에게 군부대의 지원 요청

다. 복구단계

- 복구계획의 수립 및 집행(법 제66조)
 - 재난복구사업의 재원은 재난구호및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 규정에 따라 국고의 부담금 또는 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의연금 등으로 충당함.
 - ※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중 시흥시가 부담하는 기준은 재난구호및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 규정에 따라 부담
- 재난관리기금의 적립(법 제67조)
 -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여야 함.
 - ※ 매년도 최저 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년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법 제68조)
 - 재난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
 - 재난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사업
 - 시설의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사업
 - 재난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 재난원인분석 및 침수흔적조사, 침수흔적도 작성·보존 등의 사업
 -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지원 및 주택임차비용 용자
 - 소하천 및 하천시설 중 제방·수문·배수관·유수지 및 수위관측시설 등의 정비사업
 - 하수도시설(하수종말처리장 제외)중 배수펌프장 및 하수관거의 정비사업
 - 농업생산기반시설중 배수장, 보, 용수로·배수로 및 방조제의 정비사업
 - 설해대비 제설용 자재구입

- 긴급구조에 필요한 특수장비의 구입
- 상습가뭄 재해지역의 임시 용수확보 대책사업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 설치
- 인명구조장비 등 안전장비 확보
-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및 재난관련 장비구입 등
-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법 제61조)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는 응급대책 및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금융·의료상의 특별지원을 할 수 있음.
 - 국고의 특별지원과 재난복구사업에 있어서 자부담분의 국고 및 지방비로 전환
 - 인력 및 장비의 지원
 - 의료·방역·방제 및 쓰레기수거 활동 등에 대한 지원
 - 전기·가스 및 상하수도 등의 복구에 있어서의 지원
 - 의연금품의 특별지원
 - 농어업인의 영농·영어·시설·운전자금 및 중소기업의 시설·운전자금의 우선 용자, 상환유예·기한연기 및 그 이자감면과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등의 지원

2. 차장(부군수)

- 본부장을 보좌하고 본부장 사고시 직무 대행

3. 총괄조정관(기획감사실장)

- 본부장 및 차장 보좌

4. 통제관(건설과장)

- 본부장 및 차장, 총괄조정관을 보좌하며 명을 받아 실무반 지휘
- 시설별 담당공무원 파견 또는 차출 요청
- 단계별 근무체제의 개시 및 해제 결정
- 실무반 편성 및 운영
- 방재교육 또는 훈련계획 수립 및 실시 지도감독
-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지휘 감독
-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한 협의 등
- 방재용 자재의 수송지휘에 관한 사항
- 군장비 등 지원요청 및 협의
- 복구사업 지도 감독

5. 담당관(해당재난관련부서장)

- 본부운영의 실무책임자로서 총괄조정관 및 통제관 보좌
- 실무반 복무 지도감독
- 본부 근무명령 및 근무상태 지도점검
- 재해일지 기록배치
- 본부 물품관리 운용
- 수난구조 상황파악
- 군장비 지원사항 파악
- 구호활동 지원요청 및 협의, 상황 파악
- 관계기관간 통신시설 설치 및 수리 보수
- 기상자료, 피해상황 자료 등 수집
- 일일 재해상황보고서 작성 및 배부

□ 단계별 간부공무원 표준행동매뉴얼

단 계 별	담 당 자	메 뉴 얼
준비단계 ()	재난관리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상정보 수집, 군 재해관련부서, 유관기관, 읍면 상황 전파 ○ 태풍크기 및 예상 진로 파악 보고 (기상청, 일본기상청, 미국태풍센터) ⇨ 보고선 : 과장, 부군수 ○ 강우량, 강수위 상황 보고 ○ 경계체제 돌입, 군 재해관련부서, 유관기관, 읍면에 재해예방대책 추진 지시 ⇨ 군 재해관련부서, 읍면 비상근무 ⇨ 읍면 및 유관기관 기상특보 전파 ⇨ 재해위험지구 예찰 및 주민대피 준비 ⇨ 주민대피 권고 (, 야영객, 하천·해안변 저지대 주민) ⇨ 배수문, 배수장 및 양수장 점검 ⇨ 비닐하우스, 수산물 양식시설 보호조치 등 ○ 태풍 대비 대처상황 종합 보고서 작성 ○ 보도자료 제공 ⇨ 공보담당
	건설과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해대책 비상근무 상황유지(도 및 군, 읍면) ○ 댐 및 저수지 수위조절을 위한 예비방류 협조 요청 ⇨ 건설과, 한국농촌공사 등 ○ 태풍크기, 예상 진로 및 대처상황 보고 ⇨ 보고선 : 부군수, 군수
	부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풍 북상대비 상황판단회의 주재 (실과소장) ⇨ 단계별 대처 협의 및 파견근무자 소집 대상범위결정 등 ○ 실과소장, 읍면장에게 재해예방대책 철저 당부
단 계 별	담 당 자	메 뉴 얼

<p>비상단계</p>	<p>재난관리담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상정보 수집, 군 재해관련부서, 유관기관, 읍면에 상황 전파 ○ 태풍크기 및 예상 진로 파악 보고 (기상청, 일본기상청, 미국태풍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고선 : 과장, 부군수 ○ 시간대별 강우량, 강수위 상황 보고 ○ 경계체제 돌입. 군 재해관련부서, 유관기관, 읍면에 재해예방대책 강화 지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읍면 비상근무 강화 ⇒ 읍면 및 유관기관에 기상특보 전파 ⇒ 재해위험지구, 산사태위험지역, 해안변 저지대 주민대피 권고 및 대피 명령 ⇒ 산간계곡, 행락지와 경계구역내 야영객, 등산객, 낚시꾼 대피 및 귀가 조치 ⇒ 배수문, 배수장 및 양수장 점검 ⇒ 비닐하우스, 수산물 양식시설 보호조치 등 ○ 인명 피해예방 대책 강화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천변 저지대, 산사태위험지구 예찰 등 ○ 홍수 예·경보 전달 ○ TV 방송국에 재해 자막방송 협조 요청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특별지시 등 각종 재해관련 지시사항 전파 ○ 수방자재 및 구호물자 현지 배치, 응급 복구장비 소재 파악 지시 ○ 도로피해 구간 교통통제 및 우회도로 지정 ○ 피해발생시 상황보고 및 응급조치 대책 강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망 및 부상자 조치, 실종자 수색 ⇒ 수난구조 활동 신속 전개 ⇒ 이재민 수용 및 구호, 방역활동 전개 ⇒ 도로, 하천 등 공공시설 응급복구 추진 ○ 태풍 대비 대처상황 종합 보고서 작성 ○ 보도자료 제공 ⇒ 공보담당
--------------------	----------------------	---

<p>단계별</p>	<p>담당자</p>	<p>메뉴얼</p>
-------------------	-------------------	-------------------

	<p>전설과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천변등 저지대 주민 대피 강조 전화 ⇒ 군 관련부서장, 읍면장 ○ 재해대책본부 근무자 상황실 근무 지시 ○ 청내 재해관련 실과장 및 유관기관 관계자 회의서류 개최 ⇒ 부서별 대비사항 전달 ○ 39사단, 한전 등 유관기관 관계자 파견 요청 ○ 군부대, 경찰, 유관기관 인력지원 요청 ○ 청내 재해관련 실과장 및 39사단, 한전 등 유관기관 관계관 회의 주재 ⇒ 사전대비 조치사항 강조 (지시) ○ 도지사 특별지시 상황 전파 등 ○ 태풍크기, 예상 진로 및 대처상황 수시 보고 ⇒ 보고선 : 부군수
	<p>부군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내 재해관련 실과장 회의 및 유관기관 관계관 회의 인사·당부 말씀 ○ 실과소장, 읍면장에게 인명피해 예방대책 등 재해대책 철저 지시 ⇒ 일제 지령전화 등 ○ 군 행정지도담당 읍면 출장 지시 ⇒ 주민대피계획 등 사전 점검, 지도 ○ 직원 비상근무 지시 ⇒ 지방공무원복무조례에 의거 비상 발령
	<p>군 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과소장에게 소관사항 재해대책 철저 지시 ○ 읍면장에게 재해대책 철저 당부 ⇒ 특히 인명피해 예방대책 강조

단 계 별	담 당 자	메 뉴 얼
-------	-------	-------

<p>복구단계</p>	<p>재난관리담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간대별 강수량, 강수위 상황 보고 ○ 홍수 예·경보 전달 ○ 군수,도지사,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특별지시 등 각종 재해관련 지시사항 전파 ○ 응급 복구장비 소재 파악 및 긴급 동원 조치 ○ 도로피해 구간 교통통제 및 우회도로 설치 ○ 피해발생시 상황보고 및 응급조치 강구 지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망 및 부상자 조치, 실종자 수색 ⇨ 신속한 수난구조 활동 전개로 인명구조 최선(119구조대, 경찰, 자원봉사자 등) ⇨ 이재민 수용 및 구호, 방역활동 전개 ⇨ 도로, 하천 등 공공시설 응급복구 추진 ⇨ 피해 및 조치상황, NDMS 입력 ⇨ 농작물 배수로 정비 및 병해충 방제 ⇨ 벼 일으켜 세우기, 낙과제거 등 ○ 도로변 가로수, 가로등 등의 전도로 교통 두절시 도로기동반 동원 즉시 제거 조치 ○ 신속한 배수장 가동으로 침수피해 최소화 대책 강구 협조 요청 ⇨ 농업기반공사 ○ 정전피해에 속출에 따른 전력공급 및 응급 대책 실시 협조 요청 ⇨ 한국전력공사 ○ 전기, 통신, 가스, 상수도시설 피해 등 민생 관련시설 조기 응급복구대책 협조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전, KT 등 관련 유관기관 ○ 하천,댐, 저수지 유입 쓰레기 제거 대책 강구 지시 ⇨ 군, 읍면 ○ 수해지역 가전제품, 보일러, 농기계 무상 수리 지원 요청 ⇨ 관련업체 협조 ○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조사 보고 및 재해대장 작성 ⇨ 피해합동조사반 편성 및 안내 ⇨ 피해합동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 피해상황 및 응급조치 상황 종합 보고서 작성 ○ 보도자료 제공 ⇨ 공보담당 ○ VIP 방문, 보고자료 작성
--------------------	----------------------	---

단 계 별	담 당 자	메 뉴 일
	건설과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해복구 관련 실과장 회의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서별 신속한 수습대책 협조 강조 ○ 주택 피해주민 임시거처 마련 및 주택복구비 신속지원 협조 요청 ⇨ 주택과 ○ 신속한 이재민 구호 및 방역활동 협조 요청 ○ 부족한 응급복구 장비 및 인력, 자재 파악 지원대책 강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근 시군, 유관기관, 단체, 자원봉사자 ○ 군부대, 경찰, 소방인력 및 장비 동원 협조 ○ 건설기술 인력 및 장비 지원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내 건설회사, ENG회사, 건설협회 등 ○ 피해 및 응급조치 상황 수시 보고 ○ 응급복구 지원을 위한 예비비 지원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획감사실장 협의 ○ .복구 등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한 도지사 특별지시 발령 건의 ⇨ 경상남도 ○ 국회의원 등 VIP 안내 및 상황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고선 : 부군수,군수
	부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해관련 실과장 회의 주재 ○ 군청내 각 실과 업무 분담 지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획감사실 : 예비비지출 -행정과 : 인력동원 -농업지원과 : 노력지원 대상지 등 ○ 장관 등 VIP 영접, 안내 ○ 대규모 재해지구 현장 방문, 위로·격려
	군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 경찰병력 및 장비 및 유관기관, 단체 인력 지원 협조 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부대, 경찰서, 교육감등 ○ 대규모 재해지구 현장 방문, 위로·격려

□ 건설과 개인별 표준행동매뉴얼

담당자		매뉴얼	비고
행정	신현영	○ 업무총괄, 지시사항 수명 처리	
	정들순	○ 응급복구 등 각종 인력동원 계획 및 지원 ○ 라디오 등 방송사 인터뷰 및 홍보	
	이덕화	○ 응급복구 대상지 파악 ○ 재해대책상황실 근무자(타 실과, 타 기관) 연락 확인	
	손재호	○ 재해비상 근무자 지원 업무	
도로	이창규	○ 업무총괄, 지시사항 수명 처리	
	김영옥	○ 종합상황보고서 작성 보고 ○ 특별지시 등 주요사항 기안, 시행	
	정춘기 임민섭	○ 유관기관 협조요청 및 상황전파 ○ 재해대책 상황실 근무자 소집 운영 ○ 자막방송 등 홍보 실적 파악 ○ 태풍 정보, 기상특보에 따른 각종 문서 기안 처리 ○ 파워포인트 보고서 작성	
하천 관리	안준석	○ 업무총괄, 지시사항 수명	
	홍순일	○ 특별지시 등 주요사항 기안. 시행 ○ 각종 회의자료 작성	
	김종현	○ 강우량, 강수위 및 방류량 파악 보고 ○ 태풍 정보, 기상특보에 따른 각종 문서 기안 처리 ○ NDMS 사전대비 입력사항 점검.확인	
재난 관리	김기훈	○ 업무총괄, 지시사항 수명 처리 ○ 종합상황보고서 작성 보고 ○ 특별지시 등 주요사항 기안, 시행 ○ 공공시설 응급복구 계획 수립 → 교통두절 등 공공시설 피해 응급복구 ○ 재해 피해 사항 집계 및 보고	
	정희교 차현식	○ 태풍 정보, 기상특보에 따른 각종 문서 기안 처리 ○ 재해 상황판단 (관련부서 및 유관기관) 회의 소집. 개최 ○ 기상자료수집 및 판단, 각기관 전파 ○ 기타 재해상황지원업무	
교통 행정	김치목 허태호	○ 업무총괄, 지시사항 수명 처리 ○ 해당업무 관련 문서 기안 시행	
	성지은 윤경미	○ 재해 피해 사항 집계 및 보고 ○ 유관기관 협조요청 및 상황전파	
상황실		○ 재해대책 상황유지 ○ 군 재해관련부서 및 유관기관, 읍면에 재해관련 상황전파	

6. 실무반

가. 상황총괄반

○ 대비단계

- 상황실 회의 및 보고회 관련 장비 운영
- 관계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 기상상황 등 재난의 예측·분석관리 및 전파
-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 비상근무조 투입시 실무반별 좌석 배치 및 상황실 정리
- 비상근무자 도착시 실무반 비상근무수칙·실무반별 상황관리철(유관기관 파견 상황일지철 포함) 배포 및 미흡사항 처리
- 상황근무자 식사·야식 등 후생·복지
-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등 준비 및 개최
- 상시모니터링시스템 구축·운영

○ 대응단계

- 상황판단회의 개최 및 대처계획수립 보고
- 주요인사 종합상황실 방문시 보고서 작성
- 기상 및 수습대처 관련 특별지시사항 처리
- 상시 상황파악 독려 및 반원근무실태 파악
- 재난진행상황 파악·전달·처리 및 사전예방조치
- 피해정보 수집·보고
- 일일상황보고서 작성보고 및 상황일지 작성
- 국가안전정보관리시스템(NDMS)을 활용한 피해상황 등 파악
- 긴급상황 관리(즉보사항 처리:인명구조, 인명피해, 교통두절상황 등)
- 문제점, 애로사항 분석 조치

○ 복구단계

- 인명피해 자료 취합 및 분석관리
- 재난피해 분석·판단 및 미담사례 등 확인
- 본부장 및 주요인사 현장방문시 보고자료 작성
- 긴급을 요하는 경우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 해당 실무반에게 협조요청

나. 행정지원반

- 대응단계
 - 주요인사 방문시 의전 및 상황에 관한 보고자료 작성
 - 당일 비상근무자 확인 및 복무단속
- 복구단계
 - 현장 상황지원관 파견·관리 및 수습지원단 운영 지원
 - 각종 여론·정보수집 및 민심동향·민원처리
 - 파악된 모든 상황을 상황총괄반에 제출
 - 그 밖에 통제관이 필요한 자료 등 협조요청 신속한 수집 및 보고 등

다. 구조구급반

- 대비단계
 - 의료시설, 물자·장비 확보
 - 유관기관 구조구급 협조체계 가동
 - 구조구급관련 네트워크 가동(헬기, 장비, 응급실, 구조요원 등)
- 대응단계
 - 구조구급 지원
 - 구조구급상황 파악 관리
- 복구단계
 - 구조구급상황 파악 및 자료 제출
 - 파악된 모든 상황을 상황 총괄반에 제출
 - 그 밖에 통제관이 필요한 자료 등 협조요청 시 신속한 수집 및 보고 등

라. 비상지원반

- 대비단계
 - 관련실과 및 파견기관별 소관 현황 파악
 - 이재민 수용시설 지정 및 구호센터 설치운영 지도·확인
- 대응단계
 - 재난구호활동본부 및 구호지원반 설치운영 지도

- 파견기관의 언론보도·정보사항 등 확인 및 조치결과 보고
- 파견 기관별 상황대처 관련 각종 회의, 대책, 지침, 지시사항 등에 대한 유관기관의 이행실적 및 조치결과 파악

○ 복구단계

- 응급복구 및 구호상황 파악
- 사망·실종자 유족대책, 응급생계구호 실시
- 부상자 의료지원 및 기동의료반 편성운영 지도·확인
- 침수지역 및 이재민 집단급식소 위생관리 지도·확인
-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및 기동 방역반 편성운영
- 재난쓰레기 수거처리 및 임시적환장 설치운영 지도·확인
- 응급복구를 위한 전문인력, 자재·장비확보 지도·확인 및 군병력·장비지원 협조요청
- 국민생활 필수시설 응급복구 추진상황 지도·확인
- 도로·교량, 하천, 항만, 어항, 수리시설, 철도, 사회 공공시설 등 응급복구 추진상황 지도·감독
- 고립지역 긴급수송로 개설 및 수송차량 확보
- 정전피해 복구 및 통신두절지역의 이동용 통신시설 확인
- 대국민 공지가 필요한 주요사항 상황관리
- 교량, 도로, 항공 등 교통통제 및 해제 사항
- 침수지역 퇴수 및 인명·대규모 피해지역 응급조치상황 등
- 국가안전관리시스템 위주로 지자체별 소관부서를 최대한 활용, 상황파악
- 파악된 모든 상황을 상황 총괄반에 제출
- 그 밖에 통제관이 필요한 자료 등 협조 요청시 신속한 수집 및 보고 등

마. 자원봉사지원반

○ 대비단계

- 자원봉사단체 협조체계 구축
- 자원봉사자 현황 파악
- 자원봉사 장소, 인원 등 정확한 수요조사 및 자원봉사자의 적재적소 배분·배치(지원내용, 인력, 필요장비 등 양식 작성)

○ 대응단계

- 자원봉사센터 설치 운영 및 지도·확인
- 자원봉사단체 합동근무 실시
- 복구단계
 - 사유시설 응급복구 등 대민지원활동 추진
 - 수해주택 안전점검 및 무상수리 등 추진
 - 자원봉사자 응급복구 투입현황 파악
 - 타 시 자원봉사 지원
 - 자원봉사센터를 중심으로 여러 민간단체 유기적인 협조하에 자원봉사자 정보 수집 및 전달
 - 자원봉사센터
 - ⇒ 자원봉사 지역, 필요인원 및 애로사항 파악
 - 파악된 모든 상황을 상황총괄반에 제출
 - 그 밖에 통제관이 필요한 자료 등 협조 요청시 신속한 수집 및 보고 등

바. 홍보지원반

- 대비단계
 - 재난상황 단계별 국민행동요령 홍보
 - 민간공보위원, 군수 등의 정례·수시브리핑 지원
- 대응단계
 - 재난수습을 위한 보도지원
 - 라디오 기상·자막방송 등 요청 및 오보대응정정보도
 - 홍보상황·실적 기록 및 정리·보고
 - 재난 예·경보발령사항 등 전파(라디오·지역방송 등)
 - 각종 보도자료 작성 배포(직접 배포, 이메일·문자메시지 전송)
 - 라디오·신문사 등이 요청하는 각종 자료 수집 및 제공
- 복구단계
 - 라디오 등 각종 인터뷰 요청시 대처
 - 재난현장 취재 지원
 - 파악된 모든 상황을 상황 총괄반에 제출
 - 그 밖에 통제관이 필요한 자료 등 협조 요청시 신속한 수집 및 보고 등

6장 실과별 주요임무

- | | |
|------------|-------------|
| 1. 기획감사실 | 2. 주민생활지원실 |
| 3. 행정과 | 4. 재무과 |
| 5. 문화관광과 | 6. 환경위생과 |
| 7. 경제도시과 | 8. 건설과 |
| 9. 산림녹지과 | 10. 보건의료원 |
| 11. 농업기술센터 | 12. 상하수도사업소 |

제6장 실과별 주요임무

기 획 감 사 실

- 재해복구계획의 수립에 따른 자원별 복구비 확보
 - 각 부서 기정예산 전용
 - 재해대책 예비비 사용
 - 추가경정 예산편성 및 지방채
 - 자연재해 대책법 제63조에 의한 재난관리기금 예산반영
- 지방재정 지원
 - 피해복구에 대한 복구비 지원은 중앙재해대책본부의 재해구호 및 복구 부담 기준에 의한다.
 - 수해복구재원을 조속히 확보하여 지원계획을 신속히 수립하고 부족재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다.
 - 공공시설 복구는 주민복지 차원에서 타 사업에 우선하여 추진하고, 피해 발생 방지를 위하여 근원적인 항구복구사업을 추진한다.
 - 주택복구는 동절기 이전에 입주가 가능하도록 하고, 상습침수지역 주택은 안전지대 이축사업을 전개한다.

주 민 생 활 지 원 실

가. 수해구호대책 기구운영

- 각종 재해발생시 이재민에 대한 효율적인 구호와 복구자원을 위해 보건사회부 및 각 시도와 일선기관에 재해구호 활동반을 편성하여 구호업무의 효율성을 제고시킨다.

나. 사망·실종자의 유족보호

- 위로금(장의비 포함) 지급
 - 재해로 인해 사망 또는 실종 유족에게는 시·도 보유 재해의연금 또는 재해구호기금에서 즉시 지급(중앙지원은 시·도 지급의 결과에 따라 배정)
 - ※ 중앙지원이 아닌 경우 사망, 실종자의 유족 위로금은 도 재해구호 기금에서 지급토록 함.
- 생계보조비 지급

- 재해로 인해 그 가구의 생계를 맡고 있던 자가 사망·실종·부상 (신체장애 등급 7급이상) 당함으로서 그 유족 및 부상자의 생활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서 지급(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거나 재해로 인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전락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이재민 지원

- 응급생계지원
 - 주택의 반파전파 및 유살침수 등으로 주택 사용이 불가능한 이재민에게는 7일 간의 구호기준에 따른 생계구호를 실시
 - 기초 생필품은 대한적십자사 지사 등과 협의하여 이종지원 방지
- 장기생계지원
 - 자연재난 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지침에 의거 소관 부처별 기준에 따라 장기구호 실시

라. 주택복구

- 주택피해자는 응급구호를 실시하고 피해정도에 따라 장기구호를 실시하되, 이와는 별도로 건물 복구비를 지원한다. 다만, 건물주가 주택을 복구하지 아니할 경우 보조금중 의연금만을 지원
- 주된 주거용 방이 침수되어 수리하지 않고는 사용할 수 없는 침수주택의 경우 의연금 지원

마. 의연금품 모집 및 관리

- 재해가 발생하여 재해 의연금품을 모집할 경우에는 전국 재해대책 협의회에서 주관하여 모집, 관리토록 하고, 모집된 의연금품은 중앙지원 계획에 의거 지원
- 도지사는 각 도·군에 접수된 의연금이 전국 재해대책협의회에서 허가 받은 기부금품 모금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즉시 대해대책협의회에 이관하여야 함.

바. 재해구호 적립금 관리

- 재해구호법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사도는 법정 적립금을 철저히 적립
- 도 부유 재해구호 적립기금은 신속한 이재민 구호를 위해 우선 사용 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집행결과 보고

사. 집단묘지 수방대책 강구

- 호우시 집단묘지 붕괴가 빈발하므로 행정기관과 법인체(관리사무소)가 우기를

대비한 합동점검 및 보강작업을 실시하여 재해를 예방한다

- 대 상 : 공설묘지 및 기타
- 대책시설 : 배수로 시설 및 보강 훼손지 복구 및 석축쌓기 녹지조성 비닐, 마대등 수방자재 비축
- 수방시설 책임 : 지도감독 강화

행 정 과

가. 공무원 지원대책

○ 재해공무원 지원대책

- 취급기관 : 공무원 연금 관리공단
- 종 별 : 주택피해
- 지원내용
 - 공무원 연금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규정에 의거 화재, 홍수, 호우, 폭설, 폭우등 이에 준하는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현상으로 인하여 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 소유의 주택이나 공무원이 상시 거주하는 주택으로서 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소유의 주택이 입는 피해는 아래와 같이 부조금액을 급여한다.
 - 재해정도별 부조금액
 - ① 주택이 완전히 소실, 유실 또는 파괴된 경우에는 보수월액의 6배
 - ② 주택의 2분의 1이상이 소실, 유실 또는 파괴된 경우에는 보수월액의 4배
 - ③ 주택의 3분의 1이상이 소실, 유실 또는 파괴된 경우에는 보수월액의 2배

나. 민방위대 운영 대책

○ 민방위대의 운용 및 동원

- 민방위 기동조직을 지역방재대비 중추조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지역의 특성에 따라 수해 우심 재해 다발 현장 중심으로 조직하되, 대원은 젊고 경력 있는 자를 우선 편성한다.
- 재해 영향권별로 지역연합 민방위대를 편성하여 사태 대응능력 제고 및 공동대응 체제를 확립한다.
- 재해 취약지와 우심지역에 대한 사전예찰활동을 강화하고 방재장비 및 자재를 평소에 확보하여 재해대비에 만전을 기한다.

- 재해 발생시 신속한 소집 및 복구활동에 임하기 위하여 비상연락망을 수시 점검하고 방재 특성훈련을 강화한다.

○ 민방위대의 동원

- 사태 발생시 신속하고 민방위대의 동원이 가능하도록 지역여건에 부합된 비상연락망을 정비, 보완하고 유관기관과의 사태예방 및 수습을 위한 인력과 장비 지원 협조체제를 유지한다.
- 사태 발생시에는 재해 영향권 내에 신속한 동원령을 하달하여 재해발생 지역의 기도조직, 일반조직의 인접 민방위대간에 효율적인 상호 동원체계를 강화, 신속히 사태수습에 대처한다.
- 동원권자는 사태의 규모와 지역적 범위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 도지사, 시장·군수, 읍·면장으로 한다.
- 동원절차는 사태 발생보고 → 민방위협의개최(긴급시는 제외) → 동원권자의 동원령하달 → 동원(민방위대장)으로 한다.
- 동원시는 임무 및 행동요령을 사전 주지시켜 사태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

재 무 과

가. 재해민 세제 지원대책

○ 지방세 감면조치

- 건축물 피해에 대해서는 멸실후, 2년 내 신축 복구시 취득세·등록세(지방세법제108조)를 전액 또는 일부 면제 하고, 면허세(지방세법제163조를 면제한다.)
- 자동차 기계장비 피해에 대하여는 소실 멸실 파손 자동차의 대체 취득시 취득세, 등록세를 비과세하고 소실 멸실 파손된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인정할 경우에는 자동차세(지방세법 시행령 제146조의 2)를 비과세한다.
- 농경지 피해는 피해의 정도에 따라 농업소득세는 최고 5년간 전액면제하다.
- 재해주인에 대한 지방세 납부는 6개월 이내에서 연장 또는 징수유예(지방세법 제41조, 동법시행령 29조) 조치한다.

문화관광과

가. 방재대상 문화재 및 시설

- 국가지정 및 지방지정 문화재중 재해우려가 큰 목조문화재 및 다우다설 지역 소재 문화재와 명승지역의 재해 피해예방 대상 문화재
- 문화재 지정 및 보호구역내 문화재 보존시설 및 주변시설물
- ※ 점검대상 문화재 : 별첨참조

나. 방재예방 점검실시

- 사전 점검반 편성 및 점검실시
 - 점검반 편성 : 문화재담당 등 4명
 - 점검시기 : 해빙기(2~3월), 하절기(8~9월), 동절기(10~12월)
 - 관할 구역내 문화유적 관리 및 현상 유지실태 점검실시
 - 조사내용
 - ① 당해문화재의 균열, 탈락, 누수, 붕괴실태 및 위험요소의 조사
 - ② 보호구역내 담장, 축대, 배수시설, 각종 관리시설 등의 붕괴, 파손, 유실 등의 사항파악
 - ③ 시설물의 침하로 인한 균열 이완상태 발생여부 조사
 - ④ 목조건축물 지붕 누수 및 기와 고르기 정비여부 조사
 - 조사결과 조치
 - ① 경미한 지적사항은 현지소유자, 관리자, 관리단체에 시정조치
 - ② 응급조치 대상 중 대단위 보수대상은 지주목 설치 등 일부 지방비 투입 보완 조치 실시
- 재난상황실 구성·운영
 - 재난상황실 구성
 - 상황실장 : 문화관광과장
 - 반 장 : 문화재담당
 - 반 원 : 담당자 3명
 - 재난상황실 운영 : 기상특보발령시 및 재난발생 우려시

다. 응급복구 세부내용

- 행정사항

- 지정문화재 방재 대상시설 중 고증이나 기술지도가 필요한 사항은 문화재청의 지도를 받아 시행하도록 함
- 군에서 점검한 지정문화재 점검 중 중요 피해상황은 우선 군대책본부에 보고하고 문화재피해 상황보고서(소요경비 산출 및 현황사진 첨부)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보고
- 도에서는 지정문화재의 피해상황을 중앙재해대책본부에 보고함과 동시에 문화재청장에게 보고
- 목조건조물 및 석조건조물의 피해예방
 - 지붕의 와상초를 제거(제초제 살포 등)하고 교란된 기와의 정리와 부분적으로 파손된 기와의 정리와 부분적으로 파손된 기와의 교재를 자체에서 즉각 시행한다.
 - 균열, 붕괴, 탈락우려가 있는 벽체, 담장, 축대 등은 우기전에 부분 보강보수 시행한다.
 - 교란된 기단을 바로잡고 균열된 성벽과 담장 등은 보수시까지 지주설치 등으로 우선 보강하고 토사가 퇴적된 배수로는 준설한다.
- 건조물 주변 등 문화재 보호 및 관리시설 보강
 - 주변의 배수로 배수관등은 바닥의 퇴적물을 준설하고 개·보수 및 수초제거, 부속시설물(암거 등) 정비.
 - 축대, 담장, 경사지, 도요지, 고분군 소재지역의 튀어 나오거나 균열되어 붕괴 우려 있는 부분은 지주목, 토사유출방지시설 설치 등 보수보강 조치 한다.
 - 우기전 정비가 어려운 시설은 비닐(포장막)덮기, 마대쌓기, 지주목 설치, 가배수로 설치등 응급조치 실시

라. 보고 및 감독 관리체계 강화

- 보고체계
 - 보고기관 : 산청군
 - 문화관광과 : 055)970-6441
 - 재난상황실 : 055)970-6007
- 보고방법 : 문화재 피해상황보고서 작성 후 신속 보고

환경 위생 과

가. 수해지역 발생시 쓰레기 수거 및 처리계획

- 수해쓰레기 발생량 파악
 - 쓰레기 발생량은 수해지역의 특징 및 수해정도 등에 따라 가변적 이므로

- 가옥, 구조물 등 피해정도에 따라 추정 산정
 - 자치단체관리 기관에서 발생량 파악 및 보고
- 긴급수거현장 선정 및 임시적환장 설치
 - 쓰레기 장기 적체로 인한 수인성 전염병 발생 우려지역, 교통소통 및 피해 복구 장애지역 쓰레기를 최우선 수거지역으로 선정
 - 임시적환장은 재침수로 인해 유실될 우려가 없고 주거지역과 격리된 지역을 선정
 - 임시적환장은 매일 2-3회 소독 및 탈취제를 살포하여 위생적 관리
- 긴급수거를 위한 운송장비, 인력확보 조치
 - 자체수거·운송장비 부족시 인근자치단체, 한국자원재상공사 및 관련 민간단체에 수거·운송장비 및 인력지원 요청
 - 침수쓰레기 수거는 한국자원재생공사, 재활용품 수집업체의 집계차량을 우선적으로 지원받아 수거조치
 - 수거된 쓰레기의 매립지 운송은 건설폐기물처리업체 등의 중장비를 지원받아 수거·운송조치
- 수해쓰레기의 쓰레기매립지 반입. 처리
 - 수해지역 침수쓰레기, 종량제봉투 미사용 쓰레기의 반입을 위하여 쓰레기 매립지 운영·관리기관과 임시 반입허용에 관한 협의를 우선실시
 - 수해지역 쓰레기 반입에 따른 반입비용은 처리후 재해대책비 지원 요청
- 수해지역 폐기물 불법투기 감시 강화
 - 수해지역쓰레기의 긴급 수거·처리시 사업장 폐기물 등을 매립지에 위장 반입하거나 수해지역에 불법 배출·투기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활동
 - 침수된 공장에서 발생하는 사업장 폐기물은 생활쓰레기와 혼합하여 매립지에 반입되지 않도록 적정관리

나. 식품위생

-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위생점검 강화
 - 침수된 원재료는 폐기처분
 - 날음식 및 부패변질 우려성이 있는 식품판매 금지
 - 무표시, 무허가 식품은 사용금지
 - 모든 음식물은 반드시 끓여서 조리토록 함
 - 침수된 지역의 식기등 주방기구는 가열 또는 살균 소독하여 사용
 - 급수된 수돗물을 사용하고 식수는 끓여서 제공하되, 지하수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수질 검사를 반드시 실시한 후 급수 실시

- 화장실 등 부대시설은 청소와 소독을 병행 실시하여 구충구서에 만전
- 안전수 공급
 - 관리자를 임명하여 철저한 관리 및 식수검사를 실시한 후 사용
 - 지역내 안전수 공급이 필요한 경우 급수차를 동원하여 공급
- 집단급식소 및 이재민 수용소
 - 수해지역에는 식품위생 감시원이 정기 순회하여 식중독 예방
 - 집단 수용시설에는 식품위생 감시원을 고정 배치하여 급식관리 철저
 - 식수는 반드시 끓여서 제공
 - 오염된 식기류, 도마 등은 차아염소나트륨을 사용하여 소독하거나 반드시 햇볕에 건조한 후 사용
- 식품 및 첨가물 제조업소 관리
 - 파손된 건물은 시멘트 등 내구성 있는 구조물로 즉시 보수하여 생산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
 - 작업장 바닥은 청소 후 소독하여 식품에 오염되지 않도록 함
 - 기계, 기구 등은 깨끗한 물을 사용 세척 건조하고 녹슨 부분은 깨끗이 제거하고 침수된 원료 및 제품과 시약류는 폐기처분

경 제 도 시 과

가. 주택시설 대책

- 재해로 인한 주택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지구에 대하여 기상특보발령 등 재해발생 우려시에는 군수 책임하에 일회 이상 점검 정비한다.
 - 수해 상습 저지대
 - 산사태 발생우려가 있는 고지대 및 급경사지
- 재해로 인한 주택의 복구는 조기 착공하여 신속하게 복구하고 가능한 동절기 이전에 완공토록 함.
 - 주택복구에 필요한 건축허가 등의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여 복구비 지원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 주택건설 공기의 단축과 비용절감 등을 위하여 당해지역 건축사와 협의하여 주택 설계등을 단시일내에 완료토록 한다.
 - 자재확보 방안과 기술인력에 의한 기술지원 방안을 수립 조기 주택 복구에 만전을 기한다.
- 수해 상습지 및 산사태 위험 등으로 개별복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이주단지를

조성하여 항구복구를 추진하되, 이주대상지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를 거쳐 이주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공사가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한다.

나. 공장재해 사전예방대책

○ 공장방재 대책반 편성 운영

· 편성시기

- 평 시 : 담당 부서에서 일상 업무와 같이 수행
- 집중호우로 공장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 전담반을 편성, 24시간 근

무

· 설치기간

- 중앙 공장방재 대책반 : 산업자원부
- 도 공장방재 대책반 : 도
- 군 공장방재 대책반 : 시·군
- 공업단지 방재대책반 : 공업단지 관리기관

· 임 무

- 공장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대책 수립 시행
- 수해로 인한 피해공장 실태조사 및 피해공장의 복구지원대책 강구

· 피해보고 체제

- 도는 군 및 지방공단(농공단지 포함) 피해조사 결과를 종합, 산업자원부에 제출
- 국가공단 및 수출자유지역 대책반은 피해조사 결과를 산업자원부에 직접 제출

○ 안전관리 대책 및 사전 점검 실시

· 공장수해 예방대책의 적극적인 추진

- 재해 취약요인의 사전 점검 및 정비 보완
- 대규모 공장 밀집지역(사상공단)의 수방대책 중점 시행

· 추진 중인 수해 복구사업의 완벽한 마무리

- 우기전 완공이 불가능한 사업에 대한 보완대책의 수립 시행

○ 수해업체에 대한 복구지원대책 강구

· 수해 발생시 피해상황 및 복구지원 요망사항의 신속한 조사 실시

- 도가 주관하여 군 직원으로 조사단을 편성, 조사 실시
- 대규모 피해 발생시 지방자치단체와 산업자원부 합동으로 조사반을 편성하여 합동조사 실시

- 신속한 복구지원을 위한 관련기관 업무처리 지침
 - 지원내용 : 금융, 세제, 복구 기술지원 등
 - 피해조사 결과에 따라
 - ① 1차로 군에서 현지 금융기관 지정, 세무서 및 기타 현지 금융기관과 협조 지원 추진
 - ② 피해 규모가 크거나 현지 협조로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또는 최종적으로 산업자원부가 관계부처, 기관과 협조지원

다. 가스관 파열시 대책

○ 고압가스 시설

- 예방대책
 - 고압가스 재해 발생을 조기발견 및 신고토록 신고체제 확립
 - 재해 발생시 주민보호, 사고 확대방지 등 신속하게 사태진압 및 수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술지원, 유관기관과의 긴급연락망 구축 등 협조체제 유지
 - 지역별로 재해예방지역(방재권)을 설정 주기적인 점검 및 취약점 보완
 - 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활동(가스 안전관리 요령, 응급조치 요령, 긴급대피 요령, 주민 대피유도 및 통제 요령)을 실시
- 복구대책
 - 실제사태 발생시 대응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유관기관과의 합동훈련 실시
 - 재해 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긴급복구 할 수 있도록 업소 및 지원기관의 긴급 출동반 훈련을 강화하고 긴급복구용 자재 확보

건 설 과

가. 교통 방재대책(사전예방대책)

○ 육로분야

- 풍수해 발생시 교통두절이 예상되는 도로지점 조사
- 이에 대응할 우회도로 조사
- 교통두절이 예상되는 도로를 운행하는 노선 여객자동차와 노선화물 자동차 실태 파악

나. 응급조치 대책

- 육로분야
 - 교통두절시 수송대책
 - 교통두절 지점을 운행하는 노선여객 자동차와 노선화물 자동차에 대하여 우회도로 지정, 우회운행 조치(근거법령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5조)

다. 도로시설보호

- 각급 도로관리청은 도로 계획시 아래사항을 고려하여 설계
 - 가급적 하천에 연한 도로설계 지양
 - 홍수위를 감안하여 도로 계획고 결정
 - 수충부에는 콘크리트옹벽 설치
 - 홍수위보다 낮은 도로 및 반복피해 수충부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시 우선 반영 개량
- 아래 위험지구는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하여, 평시에는 주1회 이상, 우기에는 주2회 이상, 기상특보 발령 등 재해 발생우려시에는 일2회 이상 점검을 실시한다.
 - 홍수시 침수로 인하여 차량통행이 위험한 구간
 - 산사태 및 낙석 우려 구간
 - 석축, 방호책 옹벽 등의 기초가 세굴되어 전도가 우려되는 개소
 - 홍수시 도로파괴의 원인이 되는 균열노면과 매몰 우려 측구
 - 배수시설이 미흡한 구간
 - 하천과 접하고 있는 도로법면
 - 강설시 적설량이 많은 구간
 - 기온 강하시 결빙예상 구간
- 상습 침수도로 및 위험교량에 대해서는 우회도로를 지정 관리한다.
- 응급복구용 물자등 사전확보
 - 피해 확대 방지를 위한 가마니, 새끼, 말뚝, PP포대 등을 충분히 확보
 - 재해시 동원될 수 있는 장비를 사전관할 재해대책본부에 통보하여 재해발생시 신속하게 동원될 수 있도록 체제를 갖춘다.
- 설해위험지구
 - 교통두절 예상지구 및 우회도로 지정
 - 제설용 장비확보 및 장비 점검
 - 제설용 인원확보

- 제설용 염화칼슘 비축

라. 하천시설

- 하천공사 계획시 아래사항을 고려하여 설계
 - 하천개수 시행시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시행
 - 수충부 구간에는 반드시 호안설계 시공
 - 제방의 뚝마루뚝, 여유고 등은 최소한 홍수량에 견딜 수 있는 기준으로 결정
 - 기존 홍수위보다 낮은 제방 및 반복 피해지구는 사업계획시 우선 반영 실시
- 하천 기성제 및 부속공작물 유지관리
 - 하천구역내 불법점용 및 공작물 설치 등으로 유수소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천유지관리청은 불법행위 단속
 - 하천감시원의 활동을 강화하여 제방, 수문 등 시설보호에 최선을 다한다.
 - 하천 유수소통에 지장을 주는 수목 제거
 - 각종 표지판 및 경고판과 표주를 설치하고,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하여 주민이 자율적으로 홍수 방어시설물을 보호토록 한다.
 - 기존 제방은 봄, 가을 정기점검의 수시로 점검하여 피해예방에 최선을 다한다.
 - 장비 및 인력투입에 한한 단순작업의 경우 지역 군부대의 지원을 받아 정비한다.
- 수해대책
 - 수해발생 위험지구 지정 및 관리
 - 홍수피해 방지를 위한 수방자재 비축
 - 수해발생시 하천 응급복구 최우선 실시

마. 헬기 인명 구조대책

- 홍수, 화재, 천재지변과 기타 긴급사태 발생시 군·경찰 헬기를 동원하여 신속, 안전하게 인명 구조 임무를 수행한다.
- 구조반 편성은 경찰서 및 각 시·도 경찰청 항공대로 하고, 구조장비는 로프연결 장치(카고훅) 구조망, 구명대, 구명보트, 구명환, 기타 대민 우선 방송장비를 최대한 활용한다.
- 헬기 지원요청 결과는 시도 재해대책본부 경유 중앙재해대책본부에 보고
- 상황 보고시에는 정확한 사고위치, 사고내용, 구조인원수, 구조현장의 상황, 사고지역 기상상태 등 사고정황을 정확히 보고하여야 한다.
- 인접 시·군간에는 상황에 따라 지원이 가능토록 협조 유지한다.
- 헬기장 운용 기상조건은 경찰항공 운영규정에 준하는 기상상태에서 가능하

- 며, 긴급 특수임무 수행시 지휘관 및 해당 정조종사의 판단에 따른다.
- 헬기장은 헬기 이착륙에 장애가 되는 전기줄, 높은 나무, 지반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산 림 녹 지 과

1.. 추진방침

- 산사태위험지의 일제조사 및 특별관리로 피해예방에 만전
- 피해발생시 신속한 조치로 피해최소화 및 응급·항구복구 실시
- 재해취약지에 대한 계층별 지도·점검 강화

2. 추진요령

가. 예방대책

(1) 산사태·임도피해우려지

- 산사태위험지의 대폭적 확대지정관리로 재해사전 예방대책 강구
- 산사태위험지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산사태위험이 있는 곳은 추가 지정하고 여건변동으로 위험요인이 소멸된 지역은 지정해제 조치
 - 기존의 주택·산업시설주변 이외에 관광지, 유원지 그밖에 인명·재산피해 방지상 필요한 지역까지 대폭 확대 지정
 - 산사태위험지는 현장에 위험지표지판을 설치하고 관리대장 작성,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주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 보수보강하는 등 특별관리
- 산사태위험지는 산사태저지용 사방댐, 예방사방 등 항구적인 재해예방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
- 임도시설지는 전 노선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피해우려지는 보수·보강 등 안전조치 철저
 - 특히, 임도시설지 하부에 가옥이 있는 곳 등 재해취약지역에 대하여는 비닐피복 및 배수로정비, 유사시 주민대피 등 인명피해방지를 위한 사전 조치를 강구
 - 절·성토사면이 집중호우로 무너질 우려가 있는 곳은 구조개량계획에 우선적으로 반영하여 구조물 보강설치 및 사면녹화피복 등 안전조치 강구 (설계·시공 등은 “임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규정”에 의함)
 - 측구·배수관·박스교 등이 메워져 있거나 유목(流木) 등이 걸려 있는 곳 등은 정리·보수
 - 토사유출 등 우려가 있는 계류의 상·하류에는 골막이 등 설치

- 공사 중 자연물길을 변경했거나 메운 곳은 자연 상태로 정비
- 피해발생 대비 응급복구용 수방자재 비축
- 마대류, 말뚝, 비닐, 묶음줄 등을 현지실정을 고려하여 적정량 비축
- 유사시 대피장소 지정 및 인근주민에 대한 대피요령·응급복구 조치 등에 관한 사전교육 실시

(2) 산림의 형질변경허가지

- 군사시설 등의 형질 변경지는 지속적인 안전점검 및 피해우려가 있는 곳은 우기이전까지 보수·보강 조치
- 공사 중 자연물길을 변경했거나 재해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토록 조치
- 무리한 수직굴착으로 인한 낙석·붕괴위험지 등에 대하여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조치
- 절·성토 비탈은 산지관리법 규정에 의한 경사도를 유지하고, 매 5m 이내의 높이마다 폭 2m이상의 소단을 설치토록 함과 아울러, 작업이 완료된 개소부터 파종, 나무심기로 녹화피복
-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불안정한 비탈면은 비닐·천막덮기 및 물길돌리기, 배수로 정비 등 조치
- 토석채취 허가취소지 및 채취 완료된 곳은 조속히 복구하도록 조치
- 공사현장사무소, 인부막사 등 시설물은 산사태·계곡물 범람 등 위험이 없는 안전한 장소에 설치하도록 지도
- 제거대상 목 중 관상용 가치가 있는 수목은 최대한 이식활용하고,
이용가능목은 전량 수집하여 활용, 특히 수익이 적다는 사유로 방치하거나 계류 등에 무질서하게 적치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
- 산림형질변경·토석채취허가 개소별로 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고담당자를 지정 책임관리 철저

(3) 송전철탄시설부지 및 진입로

- 송전철탄시설부지 및 진입로에 대하여는 우기이전까지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피해우려가 있는 지역은 복구를 실시하여 2차 피해를 방지
- 금후 시설하는 송전철탄시설부지 및 진입로에 대하여는 산림복구를 원칙으로 하되 임도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도설계및시설기준」 과 「송전철탄시설에따른업무처리지침」에 부합되도록 시설

(4) 산림사업장 및 벌채목 관리

- 육림 산물 및 벌채 부산물 등의 정리를 철저히 하여 집중호우시 하천교량 등의 유수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중앙재해대책본부, 건설교통부 등 협조요청 사항)
- 재해발생우려지역에 대해서는 육림산물 수집비를 사업단비에 반영
- 벌채원목은 유실되지 않도록 계류를 피하여 집재하고, 계곡물 범람시 유실우려가 있는 원목은 안전한 곳으로 이동 집재
- 산림형질변경지내 입목은 굴취하여 조경수로 활용하거나 주변적지에 이식토록 지도 및 벌채시에는 전량 수집·활용토록 함으로서 집중호우시 유로차단 방지
- 산불 및 병해충 제거목은 최대한 임외로 반출하고 임내 존치 시에는 계곡 및 계류를 피하여 안전한 곳에 집재
- 벌채작업시의 가지, 초두부, 후동목 등은 계곡에서 떨어진 안전한 곳에 정

리

- 피해목은 조속히 정리하여 산림환경 개선
- 집중호우시 유목, 나뭇가지 등이 계류를 따라 떠 내려와 교량에 걸리고 배수관을 막을 우려가 있는 곳에 대해서는 부벽식스크림 사방댐을 시

공

- 간벌작업시 계곡인접지역 10m이내 산사태우려지역은 약도 간벌 실시
- 산림사업장에 인부막사 등 시설물 설치시 가급적 지양하되, 부득이 한 경우 산사태계곡물 범람 등의 위험이 없는 안전한 장소에 설치하도록 지도

(5) 양묘장

- 포지의 유실 또는 침수가 우려되는 개소는 사전에 배수로 등 정비
- 제방 등이 집중호우로 무너질 우려가 있는 곳은 제방정비, 비닐피복, 말뚝박기 등으로 예방조치
- 임간 묘포장은 산사태, 계곡물 범람 등 위험이 없는 장소에 조성하고 무너질 우려가 있는 절개지 등은 사전에 정비
- 온실·창고·관리사 등 부대시설물은 산사태, 계곡물 범람 등 위험이 없는 안전한 장소에 설치하도록 지도

(6) 생산원목의 관리

- 생산원목은 홍수위 이상의 안전한 곳에 무너지지 않도록 집재
- 반출된 원목을 하천변이나 고수부지에 집재하지 않도록 지도
- 하천부서와 협조하여 하천구역 내 집재원목은 이동조치
- 집중호우시 떠내려갈 위험이 있는 원목 집재더미는 단단하게 결속 조치
- 집재원목이 떠내려가 하류의 교량, 구조물, 선박 등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원목소유자가 변상하여야 함을 설명 및 홍보

- 원목적치장에서 발생하는 부유물질 등이 집중호우로 떠내려가지 않도록 정리 실시
 - ※ 위의 내용중 해당사항들을 벌채허가, 산지전용허가등 각종 인·허가 및 사업지원 시에 부대조건으로 명기

나. 복구대책

(1) 인명구조

- 유사시에는 최우선적으로 인명을 구조하되, 오지대 등 육로후송이 어려울 경우 산림청 헬기를 지원받아 조치

(2) 피해상황 보고

- 피해상황을 재해대책본부계통에 신속정확하게 통보(전산입력) 하고, 그 내용을 지방청에 보고
 - ※ 피해상황이 사군(사도) 재해대책본부에 정확히 전산입력 되는지를 수시 확인하여 복구계획에서 누락되거나 잘못 처리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 유의
- 피해현지조사는 과장되거나 중복 보고가 되지 않도록 피해상황을 조사야장에 상세히 기록 유지하여 재해대장 작성 및 피해상황 전산입력시 기초자료로 활용
- 피해액 및 복구소요액 산정시는 중앙재해대책본부장이 정하는 당해 년도 “재해복구비용산정기준단가”를 적용
- 피해지 복구는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하되, 인명피해나 반복피해 우려 지역 등은 추가소요 공종을 적용한 개량복구계획에 반영
- 소유구분(국·공·사유)을 명확히 하여 국고 지원비율이 틀리지 않도록 유의
- 인공절개지 및 복합적 피해지 등은 국가예산으로 복구함이 타당한

지,

산림부서에서 복구할 대상인지를 면밀하게 검토

- 피해지 전 개소에 대한 근원경사진(3×5)을 촬영, 재해대장에 부착하되, 중앙재해대책본부의 복구계획 심의시 사진만으로도 피해규모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연결사진 등 생동감 있게 촬영

(3) 응급복구

- 산사태 등으로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곳과 피해확대우려지 등은 응급복구 실시
 - 비닐피복·통나무울짱얇기·흙마대쌓기·우회수로 설치 등
 - 긴급한 장비는 자체보유 및 산림조합계통조직 중장비를 지원받아 복구 조치
- 응급복구 지역별로 담당공무원을 기동 배치하여 신속한 복구 추진

(4) 항구복구

- 복구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신속하고 견실한 복구사업 추진
 - 마을·농경지 주변 등 주민생활 관련지역을 우선적으로 복구
- 유역전체가 완벽하게 복구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계류 등에 적치된 유목거석 등의 정리비도 설계에 반영 검토
- 피해재발이 없도록 적지·적공법에 의한 개량복구 추진
 - 피해발생원인을 분석, 항구 복구하되 인명·주요시설 등 피해 우려지는 기준단비에 구애없이 개량복구
 - 임도피해지는 배수시설 확대 등 구조개량 차원에서 복구
- 유관기관(시·군, 산림조합 계통조직 등)간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 복구의 효율성 제고

보건의료원

가. 의료구호

- 기동의료반을 편성하여 수해발생 지역에 상주 또는 순회 진료케 하고 부상자는 응급 또는 후송 조치
- 보건증진과 및 보건지소 등에 비상대기조 편성 운영
- 필요한 경우 공공의료기관의 협조하에 민간 의료지원반을 편성 상호 지원 실시

나. 방역활동

- 방역소독 실시
 - 폭우 및 침수지역은 주2회 이상 방역소독 실시
 - 기타 지역은 주1회 이상 실시
- 방역약품 지원
 - 예방접종 약품 및 방역소독 약품 부족시 긴급 지원 요청
- 환경개선 및 방역소독 철저
 - 하수구, 변소, 쓰레기장 등 해충서식처나 발생원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살충, 살균소독 실시
 - 하수구, 배수로 정비 및 웅덩이 제거
 - 침수지역의 가구, 의료, 생활용품 등의 일광건조 및 소독
- 환자 신고체제 구축
 - 고열 또는 설사환자 발생 즉시 보건기관에 신고토록 통보

- 기동방역반 출동태세 완비
- 질병 정보 모니터망 수시점검

다. 수재민 공동수용소 관리

- 의료진 상주 근무토록 하여 환자 발생시 대처토록 함
- 수인성 전염병 발생예방
 - 콜레라, 장티푸스 접종
- 방역소독
 - 변소, 하수구, 쓰레기장 등 살충, 살균소독 철저
 - 급수원, 잔류염소 소독 0.4ppm 이상 유지
- 보건계몽 강화
 - 읍면 및 단체 새마을 자율방역단 활동 적극지원 및 계몽 강화

농업기술센터

가. 농경지 및 농작물 보호

- 기상정보 및 재해요인 정밀분석으로 사전대책 추진
 - 각종 기상요소별 피해상황을 기록 보존하고 재해 상습지에 대한 특별관리 대책을 수립한다.
 - 기상예보 및 재해관련 분석자료의 신속한 활용 등으로 재해대비 행동요령을 마을앰프, 라디오, TV 등 홍보매체를 최대한 활용하여 대농민홍보 및 지도
- 재해유형별 종합대책 적극 추진
 - 재해취약지구 관리카드를 작성비치 활용하여 재해대비 활동요령에 대하여 대농민 교육실시
 - 재해 상습지별로 요인을 분석하여 피해의 최소화를 위한 대책 강구
 - 재해에 대비한 영농 실천상황을 마을 앰프방송, 반상회 등을 활용 하여 대농민 홍보 및 지역별 관리책임자를 지정 운영한다.
 - 신속한 재해예방 및 복구동원 태세 확립
 - 재해사전 대책 추진을 위하여 수방자재 사전 비축과 재해우려 지역의 순찰을 강화한다.
 - 논둑,수로 등 농경지의 안전 여부를 점검 개보수를 철저히 한다.
 - 침관수지역 조기 퇴수를 위한 양수장비 동원계획을 수립한다.
 - 침수 농작물의 휴양금 씻어주기, 병충해 방제, 쓰러진 농작물을 일으켜 세우기

등 복구사업 대책을 수립 추진한다.

- 복구작업은 인력 및 장비를 총 동원하여 신속한 복구를 추진하되, 피해가 많을 경우 인력동원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피해복구 및 일손돕기 작업을 실시한다.

나. 피해농가 지원대책

- 농작물, 가축, 양곡 등 피해상황 파악
 - 피해농가로부터 신고를 받아 관계공무원, 피해농가, 부락대표 등과 합동 정밀조사
- 피해상황 및 정도에 따라 자체복구 또는 재해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에 의거 중앙지원 복구 실시 추진
 - 피해농가 생계보호(무상양곡 지급)
 - 영농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 농약대 및 대파대 지원

< 참 고 >

- 재해대비 행동요령
 - 태풍대비
 - 관계공무원 유관기관 비상체제 유지
 - 쓰러질 우려 및 백수 우려 논은 논물 깊이대기
 - 과수, 고추, 참깨 등은 지주 세우기 및 묶어두기
 - 논물꼬, 밭고랑, 배수로 등 정비
 - 피해복구를 위한 인력 및 장비동원 신속복구
 - 침수지역 도열병 및 백엽 고병약
 - 쓰러진 벼 조기 묶어 세우기
 - 쓰러진 과수, 고추, 참깨 등 작물 일으켜 세우기 및 병충해 방제 실시
 - 생육부진 포장은 요소, 엽면시비 실시
 - 수해대비
 - 침수 상습지에 알맞은 품종선택 재배
 - 침수 상습지에 가리질 비료 20~30% 증시
 - 배수로 풀베기 및 붕괴 우려 논두렁 비닐 포복 등 실시
 - 배수로 정비
 - 농작물 침관수지역 배수작업 실시
 - 배수시 분무기, 장대 등 이용 흙양금과 오물 씻어주기
 - 토양표면의 흙양금 긁어주기 및 물 걸러대기 실시
 - 쓰러진 벼 등 농작물 일으켜 세우기

- 파손 논두렁 및 제방등 복구
- 침관수 농작물 퇴수 후 병충해 방제 실시

다. 원예작물 및 하우스 시설

○ 수해대책

- 이랑을 높게 하고 적절한 배수로 확보 및 정비
- 고추, 과수 등 작물을 지주 설치 및 지주를 보강하여 폭우로 인한 쓰러짐 방지
- 침관수 지역은 조기배수, 작물의 잎줄기에 묻은 흙양금 등 불순물 세척
- 배수 후 표토를 긁어 주어 토양의 공기유통을 촉진
- 병충해 방제 및 엽면 시비실시
- 침수 피해 정도에 따라 보파, 보식 또는 대파 실시

○ 풍해대책

- 지주 재배시는 지주대의 보강과 결속 보완
- 과실, 낙과방지제를 살포하고 낙과시 상처바이를 위해 짚 등으로 표토 피복
- 고추, 과실 등 성숙과는 조기 수확 실시
- 쓰러진 고추, 과수 등 작물을 일으켜 세우고 상처과실을 제고한 후 살균제 살포
- 엽면시비를 실시하여 피해작물의 생육 회복 촉진
- 비닐하우스 시설 : 쓰러진 부분은 조기 정비, 찢어진 비닐은 즉시 보수
- 비닐하우스 시설 보강
 - 하우스 골재 간격을 좁게 하고 중앙 파이프를 보강
 - 하우스의 높이를 낮게 하고 내부 버팀대 보강
 - 비닐이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비닐 고정끈 보완

○ 설해대책

- 설해 상습지역은 적설경감 형태의 하우스 설치
 - 연동을 억제하고 단동형 하우스 장려
 - 비닐하우스 지붕은 경사지게 설치 눈이 잘 흘러내리도록 함
 - 비닐하우스 내부 버팀대를 보강하여 적설로 인한 붕괴 방지
 - 과수목은 적설이나 폭풍설로 가지가 부러지거나 찢어지지 않도록 지주 설치
 - 비닐하우스에 작물 휴작시는 특별관리 철저(작물 무재배 하우스 내부 온도 강화)
- 비닐하우스에 쌓인 눈을 수시 제거, 눈이 쌓이지 않도록 함
- 하우스내 난방시설을 가동하여 눈이 녹아 내리도록 조치
- 하우스 주위는 수시제설 작업으로 하우스 내부 온도 강하 방지하도록 및

대피장소, 수송수단 등을 사전 확보한다.

라. 축산시설 보호

- 가축, 축사시설 보호
 - 축사주위, 방목장, 분뇨처리장 등 배수로 정비
 - 넓은 축사 및 사료창고 보수
 - 비상사료를 10일분 이상을 사전에 비축한다.
 - 가마니, 마대, 새끼 등을 준비한다.
 - 홍수, 폭설 등에 의한 위험 예상지역의 축사 및 가축을 사전 조사하여 우회도로 및 대피장소, 수송수단 등을 사전 확보한다.
 - 가축방역 및 위생관리
 - 긴급 방역비(지방비) 확보로 소독약, 예방약 등 방역약품을 사전에 비축한다.
 - 소독기 등 방역장비를 사전 점검한다.
 - 공수의 등 동원체제를 점검한다.
 - 폐사가축은 소각 또는 매몰한다.
 - 침수지역 등은 축사에 대한 소독을 실시한다.
 - 가축 전염병 예찰을 강화하고 예방주사를 실시한다.
- 초지관리 및 사료작물 관리
 - 재해 예방대책 지도 및 홍보
 - 기상통보 등에 따른 예상지역은 지역책임제로 집중 지도한다.
 - 침수, 유실, 매몰 등 피해 예상지역은 배수로 정비 등 예방조치 계획 통보
 - 피해지의 복구지원
 - 피해복구를 위한 인력, 장비, 사업비등의 신속한 지원
 - 재파종 대상지역은 소요 종자, 알선 및 파종 지도
 - 피해상황은 신속하게 사진 촬영하여 복구 지원시 활용

마. 수리시설 보호(한국농촌공사 포함)

- 저수지
 - 저수지 및 여수토 방수로에 퇴적된 홍수배제 장애물을 제거하여 방류에 지장이 없도록 점검 정비한다.
 - 제당비탈면에 가축방목을 엄금하고 사면 붕괴로 인한 누수유무를 확인 점검한다.
 - 여수토 방수로의 바닥 및 측벽 등의 균열된 부분과 누수부분은 즉시보수 및 보강한다.

- 취수탑 및 사통의 개폐조작의 이상유무를 확인 점검 정비한다.
 - 통관의 균열 등으로 위험, 누수유무를 점검하고 무리한 방류조작은 금지한다.
 - 홍수시 수위를 수시 관측하여 급격한 수위상승시 일시 방류로 인한 하류부 피해 확대 방지를 위한 사전대비를 철저히 한다.
 - 이상 홍수로 인한 수위 상승시 제체월류 등 대형재해 발생에 대비하여 관계기관과 협의 사전 수위조절 등으로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한다.
 - 수문 조작상태를 사전 점검하여 수문홍통에 이물질이 투입되어 개폐에 지장이 있는지 여부를 수시 점검 정비한다.
 - 수해가 예상되는 저수지는 수방자재를 사전에 확보 비치하여 항상 수해에 대비한다.
- 양배수장
- 원동기 및 펌프의 정상가동을 위한 점검 정비에 철저를 기한다.
 - 양배수장내 배수펌프, 천장주행 기중기 등 점검정비를 철저히 하여 홍수시 조작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한다.
 - 송배전선로 및 수전시설의 이상유무를 수시 확인하여 조작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한다.
 - 수해가 예상되는 저지대의 양배수장은 개보수, 보강사업 등으로 안전하게 조치한다.
- 취입보
- 배수문의 조작기능 여부를 점검하여 정비에 철저를 기한다.
 - 언체균열 및 누수유무 점검과 상하류의 호안공, 제방 등 점검 정비를 철저히 한다.
- 용·배수로
- 용·배수로의 사면붕괴, 떼파손 부분을 점검 정비한다.
 - 용·배수로내의 잡초를 수시 제거, 통수에 원활을 기하고 우기에 수로독을 넘지 않도록 정비에 철저를 기한다.
 - 계획고 미달수로는 우기전 보강 완료한다.
 - 방수문 조작을 사전 점검 우기에 배수의 원활을 기한다.
 - 산측 배수처리 구조물 및 용·배수로의 중·횡단 구조물을 점검하여 통수 단면의 급축소를 초래하는 개소는 사전 보완한다.
- 피해시설 복구 및 노후시설의 사전 보수
- 수리시설 관리책임자(시장, 군수, 농지개량조합장)는 수해 피해 우려가 있거나 내구연한의 경과로 노후화된 취약시설에 대하여는 개보수사업 등으로 시설물 안전도를 제고한다.
 -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재해 발생 수리시설은 응급복구를 실시 피해확대

를 방지하고 완벽한 항구복구를 실시한다.

- 사업(공사중) 지구
 - 공사용 물자(자재, 장비, 유류 등)는 침수피해를 받지 않는 지역으로 이동보관한다.
 - 재해우려가 있는 지역은 비닐, PP포대, 말뚝 등 수방자재를 활용하여 사전대비에 철저를 기한다.
 - 시공중 이상 홍수로 인하여 제체월류가 예상되는 저수지 지구는 우기전 홍수대비 계획고 까지 시공하고 불가능한 지구는 비상 배수로로 설치한다.
 - 시공중인 지구는 홍시시 부유물 또는 목재 등이 가배수터널(통관) 탐구의 철근, 미제거된 거푸집에 부착되어 수위상승 요인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철근, 거푸집을 정리한다.
- 기록관리 철저
 - 시설물의 사전점검 사항과 정비결과 내용을 시설 관리대장에 상세히 기록한다.
- 시설물에 대한 설계기준 상향검토 연구
 - 둑, 수로, 저수지 등의 설계기준 상향조정 정밀검토 추진

바. 항구 복구대책(분야별 공통사항)

- 재해 복구비용 기준에 의한 예산 확보와 항구 복구계획 수립 시행
- 피해원인 분석 및 사후대책 수립 시행
- 필요시 유관기관과의 협조 요청
- 필요 복구자재의 확보

상 하 수 도 사 업 소

가. 상하수도 시설보호 및 노후시설 대책

- 상수도
 - 상수도담당부서는 재해위험 지구를 정하고 점검표를 비치하여 순찰원으로 하여금 기상특보 발령 등 재해발생 우려시에는 일 1회이상 아래 사항을 점검한다.
 - 기상정보를 확인하여 호우와 강풍, 한파가 도달하기 전에 미리 각 시설물을 순회 점검하여 침수, 침하 등의 손상에 의한 대책을 강구
 - 각종 정수처리 약품 및 예비품목을 사전에 점검하여 충분히 확보 하고, 홍수 및 한파시 각종 시설물관리에 유념하고 수질시험을 철저히 하는 등 사전 재해를 예방하고 재해 발생시는 긴급조치
 - 재해 발생시 시설물 보호를 위한 배수로로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배출 수작업

등을 신속히 조치토록 한다.

- 호우 피해의 확대방지를 위하여 해당 관리청은 수방자재(예비펌프 점검, 비상양수기 조치, 가마니, 포대, 새끼 등)의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비축
- 시설물의 시공, 내구년한, 취약부분 등을 검토
- 노후화 대상의 급, 배수관 및 각종 수압밸브, 배출수 펌프의 작동상태 등의 점검 및 배수 설치
- 관련 각종 시설도면을 재정비하여 사고 발생에 대비
- 홍수시 및 동절기에 누수가 예상되는 부분은 교체, 비상대책 강구

○ 하수도

- 하수도담당부서는 아래에 열거한 지구를 재해 위험개소로 지정하고 점검표를 비치하여 순찰원에게 하여금 평시는 주1회, 우기에는 주2회 기상특보 발령 등 재해 발생 우려시에는 일1회 이상 점검을 실시
- 노후된 하수관거
- 통수단면이 부족한 하수관거
- 유속 3m/sec 이상의 급경사 하수관거
- 상습 침수구역내의 하수관거
- 유수지 및 배수펌프장
- 재해 발생시 우수배제를 위한 임시 배수로를 설치한다.
- 홍수 피해 확대방지를 위하여 해당 하수도관리청은 수방자재(모타펌프, 준설기, 가마니, 새끼, 말뚝 등) 수급계획을 수립 비축한다.

7장 국민 행동요령

제1절 태 풍

제2절 호 우

제3절 대 설

제4절 황 사

제5절 가 뭍

제6절 지 진

제7절 폭 염

제8절 강 풍

제7장 주민행동 요령

제1절 태 풍

1. 태풍주의보 발령시

《도시지역》

- 저지대·상습침수지역 등 재해위험지구 주민대피 준비
- 노후가옥, 위험축대 등 시설물 점검 및 임시철거
- 고압전선 접근금지
- 옥내외 전기수리 금지
- 각종 공사장의 안전조치
- 고속도로 이용차량 감속운행
- 뇌우시 저지대 또는 인근가옥으로 대피
- 지붕결박 및 낙하위험 시설물의 제거 또는 결속
- 송전철탑 도괴, 누전·방전 발견시 인근 기관이나 한전에 동시 연락
- 출입문·창문 등은 굳게 닫고 잠글 것
- 노약자, 어린이 외출금지
- 라디오, TV 등에 의한 기상예보 및 태풍상황 청취



《농촌지역》

- 저지대·상습침수지역 등 재해위험지구 주민대피 준비
- 노후가옥, 위험축대 등 시설물 점검 및 임시철거
- 고압전선 접근금지
- 옥내외 전기수리 금지
- 각종 공사장의 안전조치
- 고속도로 이용차량 감속운행
- 뇌우시 저지대 또는 인근가옥으로 대피
- 지붕결박 및 낙하위험 시설물의 제거 또는 결속
- 송전철탑의 도괴, 누전·방전 발견시 인근 기관이나 한전에 동시 연락
- 출입문·창문 등은 굳게 닫고 잠글 것
- 노약자, 어린이 외출금지
- 라디오, TV 등에 의한 기상예보 및 태풍상황 청취
- 농작물 보호조치
- 용·배수로 점검
- 소하천 및 간이 취수장 등의 정비



- 산간계곡 야영객 대피
- 농촌시설보호 및 보강

《하천주변지역》

- 저지대·상습침수지역 등 재해위험지구 주민대피 준비
- 노후가옥, 위험축대 등 시설물 점검 및 임시철거
- 고압전선 접근금지
- 옥내외 전기수리 금지
- 각종 공사장의 안전조치
- 고속도로 이용차량 감속운행
- 뇌우시 저지대 또는 인근가옥으로 대피
- 지붕결박 및 낙하위험 시설물의 제거 또는 결속
- 송전철탑의 도괴, 누전·방전 발견시 인근 기관이나 한전에 동시 연락
- 출입문·창문 등은 굳게 닫고 잠글 것
- 노약자, 어린이 외출금지
- 라디오, TV 등에 의한 기상예보 및 태풍상황 청취
- 저지대 위험 지역에 대한 경계 강화 및 주민안전지대 대피 준비



2. 태풍경보 발령시

《도시지역》

- 저지대·상습침수지역 등 재해위험지구 주민대피 준비
- 노후가옥, 위험축대 접근금지
- 옥내외 전기수리 금지
- 피해개소에 대한 응급복구
- 수방자재 및 구호물자의 활용
- 낙뢰가 있을시 작업장 안전조치
- 위험시설물의 사전 제거
- 고속도로 이용차량의 감속운행
- 출입문·창문 등은 굳게 닫고 잠글 것
- 라디오, TV 등에 의한 기상예보 및 태풍상황 청취

《농촌지역》

- 저지대·상습침수지역 등 재해위험지구 주민대피 준비
- 노후가옥, 위험축대 접근금지
- 옥내외 전기수리 금지

- 피해개소에 대한 응급복구
- 수방자재 및 구호물자의 활용
- 낙뢰가 있을시 작업장 안전조치
- 위험시설물의 사전 제거
- 고속도로 이용차량의 감속운행
- 출입문·창문 등은 굳게 닫고 잠글 것
- 라디오, TV 등에 의한 기상예보 및 태풍상황 청취
- 농작물 보호조치
- 용·배수로 보수
- 논둑 보수 및 물꼬조정
- 소규모 교량은 안전 확인 후 이용
- 산사태 위험지구 경계강화 및 접근금지
- 산간계곡 야영객 대피
- 농림시설결박 및 보호조치 강화

《하천주변지역》

- 저지대·상습침수지역 등 재해위험지구 주민대피 준비
- 노후가옥, 위험축대 등 시설물 점검 및 임시철거
- 옥내외 전기수리 금지
- 피해개소에 대한 응급복구
- 수방자재 및 구호물자의 활용
- 낙뢰가 있을시 작업장 안전조치
- 위험시설물의 사전 제거
- 고속도로 이용차량의 감속운행
- 라디오, TV 등에 의한 기상예보 및 태풍상황 청취
- 저지대 주민 경계강화 및 안전지대 대피
- 소규모 교량은 안전 확인후 이용
- 산사태 위험지구 접근금지

제2절 호 우

1. 호우주의보 발령시

《도시지역》

- 저지대·상습침수지역 등 재해위험지구 주민대피 준비
- 노후가옥, 위험축대 등 시설물 점검 철거
- 고압전선 접근금지
- 옥내외 전기수리 금지
- 각종 공사장의 안전조치
- 고속도로 이용차량 감속운행
- 뇌우시 저지대 또는 인근가옥으로 대피
- 라디오, TV 등에 의한 기상예보 및 홍수예보 청취
- 배수문 및 양수기 점검 철저
- 하수도 및 배수로의 정비점검



《농촌지역》

- 저지대·상습침수지역 등 재해위험지구 주민대피 준비
- 노후가옥, 위험축대 등 시설물 점검 철거
- 고압전선 접근금지
- 옥내외 전기수리 금지
- 각종 공사장의 안전조치
- 고속도로 이용차량 감속운행
- 뇌우시 저지대 또는 인근가옥으로 대피
- 라디오, TV 등에 의한 기상예보 및 홍수예보 청취
- 배수문 및 양수기 점검 철저
- 하수도 및 배수로의 정비점검
- 농작물 보호조치
- 용·배수로 정비
- 소하천 및 붓물둑 정비
- 산간계곡 야영객 대피
- 농촌시설 보호조치



《하천주변지역》

- 저지대·상습침수지역 등 재해위험지구 주민대피 준비
- 노후가옥, 위험축대 등 시설물 점검 철거
- 고압전선 접근금지
- 옥내외 전기수리 금지
- 각종 공사장의 안전조치
- 고속도로 이용차량 감속운행
- 뇌우시 저지대 또는 인근가옥으로 대피
- 라디오, TV 등에 의한 기상예보 및 홍수예보 청취
- 배수문 및 양수기 점검 철거
- 하수도 및 배수로의 정비점검
- 수산증·양식시설물 보호조치
- 저지대 위험 지역에 대한 경계 강화 및 주민안전지대 대피 준비

2. 호우경보 발령시

《도시지역》

- 저지대·상습침수지역 등 재해위험지구 주민대피 준비
- 노후가옥, 위험축대 등 시설물 점검 철거
- 옥내외 전기설비 고장시 수리금지
- 수방자재 및 구호물자의 활용
- 피해지구의 응급조치
- 낙뢰우가 있을시 작업장 안전조치
- 위험시설물 사전제거
- 고속도로 이용차량의 감속운행
- 홍수에 따른 저지대 주민의 대피
- 라디오, TV 등에 의한 기상예보 및 홍수예보 청취

《농촌지역》

- 저지대·상습침수지역 등 재해위험지구 주민대피 준비
- 노후가옥, 위험축대 등 시설물 점검 철거
- 옥내외 전기설비 고장시 수리금지

- 수방자재 및 구호물자의 활용
- 피해지구의 응급조치
- 낙뢰우가 있을시 작업장 안전조치
- 위험시설물 사전제거
- 고속도로 이용차량의 감속운행
- 홍수에 따른 저지대 주민의 대피
- 라디오, TV 등에 의한 기상예보 및 홍수예보 청취
- 농작물 보호조치
- 용·배수로 정비
- 논둑 보수 및 물꼬조정
- 소규모 교량은 안전확인 후 이용
- 산사태 위험지구 경계강화 및 접근금지
- 산간계곡 야영객 대피
- 농촌시설 보강

《하천주변지역》

- 저지대·상습침수지역 등 재해위험지구 주민대피 준비
- 노후가옥, 위험축대 등 시설물 점검 철거
- 옥내외 전기설비 고장시 수리금지
- 수방자재 및 구호물자의 활용
- 피해지구의 응급조치
- 낙뢰우가 있을시 작업장 안전조치
- 위험시설물 사전제거
- 홍수에 따른 저지대 주민의 대피
- 라디오, TV 등에 의한 기상예보 및 홍수예보 청취
- 저지대 주민 경계 강화 및 주민안전지대 대피 준비

제3절 대 설

1. 대설주의보 발령시

《가정에서의 대비사항》

- 각종차량의 감속운행(안전장구 부착)
- 노후가옥 안전점검
- 노약자 및 어린이 외출 금지
- 라디오, TV 등에 의한 기상예보 청취
- 대중교통수단 이용
- 피해지구 응급복구 참여
- 내집앞, 골목길 등에 영화칼슘·모래 등 배치



《농촌지역 대비사항》

- 등산객, 관광객의 조속하산 및 귀가
- 각종차량의 감속운행(안전장구 부착)
- 노후가옥 안전점검
- 노약자 및 어린이 외출 금지
- 각종 공사장의 안전조치
- 라디오, TV 등에 의한 기상예보 청취
- 대중교통수단 이용
- 가옥주변 적설제거
- 비닐하우스 등 농작물시설에 대한 보호조치



《운전자 대비사항》

- 각종차량의 감속운행(안전장구 부착)
- 라디오, TV 등에 의한 기상예보 청취



2. 대설경보 발령시

《가정에서의 대비사항》

- 각종차량의 감속운행(안전장구 부착)
- 노후가옥 안전점검

- 노약자 및 어린이 외출 금지
- 라디오, TV 등에 의한 기상예보 청취
- 대중교통수단 이용
- 피해지구 응급복구 참여
- 내집앞, 골목길 등에 영화칼슘·모래 등 배치

《농촌지역 대비사항》

- 등산객, 관광객의 조속하산 및 귀가
- 각종차량의 감속운행(안전장구 부착)
- 노후가옥 안전점검
- 노약자 및 어린이 외출 금지
- 각종 공사장의 안전조치
- 라디오, TV 등에 의한 기상예보 청취
- 대중교통수단 이용
- 가옥주변 적설제거
- 비닐하우스 등 농작물시설에 대한 보호조치

《운전자 대비사항》

- 각종차량의 감속운행(안전장구 부착)
- 라디오, TV 등에 의한 기상예보 청취

제4절 황 사

1. 황사주의보 발령시

《가정에서의 대비사항》

- 황사가 실내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창문 등을 점검
 - 실내 공기정화기 및 가습기 등을 준비
 - 외출시 필요한 보호안경, 마스크, 긴소매의복 등을 준비



- 포장되지 않은 식품 등은 운반시 오염되지 않도록 위생용기 등을 준비

《교육기관에서의 대비사항》

- 기상청 등에서 발표한 기상예보를 청취·분석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휴업 또는 단축수업 등을 신중히 검토
 - 학생 비상연락망 점검 및 연락체계 유지
 - 휴업 조치시 맞벌이 부부자녀에 대한 자율학습대책 등 수립
-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황사발생대피 피해예방을 위한 행동 요령지도 및 홍보 실시



《농축산 농가에서의 대비사항》

- 운동장 및 방목장에 있는 가축 대피 준비
- 노지에 방치, 야적된 사료용 볏짚 등에 대한 피복물 준비
- 동력분무기 등 황사세척용 장비 점검·장비
- 비닐하우스, 온실 등 시설물의 출입문 및 환기창 점검
 - ※ 기타 제조업체 등 사업장에서는 자재 및 생산제품의 옥외야적을 억제하고, 불가피한경우 포장 및 차단시설 설치

2. 황사경보 발령시

《가정에서의 대비사항》

- 가급적 외출을 삼가되, 외출시 보호안경, 마스크, 긴소매 의복을 착용하고, 귀가후 손과 발 등을 깨끗이 씻고 양치질

○ 황사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창문을 닫고 실내공기의 정화 및 가습기를 사용한 적정습도 유지

○ 황사에 노출된 채소, 과일 등 농수산물은 충분히 세척후 섭취

○ 식품가공, 조리시 철저한 손씻기 등 위생관리로 2차오염 방지

《교육기관에서의 대비사항》

○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실외활동 금지 및 수업단축 또는 휴업

○ 황사 발생기간중 실외학습, 운동경기등 중지 및 연기조치

《농축산 농가에서의 대비사항》

○ 운동장, 방목장에 있는 가축은 축사 안에서 신속히 대피 시켜 황사에 노출방지

○ 축사의 출입문 및 창문을 닫아 황사유입을 최소화하여 외부의 공기와 접촉을 가능한 적게 할 것

○ 노지에 방치·야적된 사료용 건조, 볏짚 등을 비닐, 천막 등으로 덮기

○ 비닐하우스, 온실 등 시설물의 출입문 및 환기창 닫기

※ 기타 제조업체 등 사업장에서는 생산공정 불량률 발생방지를 위한 작업 일정 조정 및 상품포장, 청결상태 유지

제5절 가 물

《가정에서 할일》

- 변기에 벽돌을 넣어 수세식 화장실 물을 아낀다
- 세탁물을 모아서 한번에 한다
- 수도꼭지에 절수디스크를 달아서 사용한다
- 이웃 주민과 절수 운동을 계획 한다
- 공공 시설물 물 낭비를 확인 한다
- 자동치 세차의 횟수를 줄인다
- 물탱크 누수를 확인한다
- 오래된 수도 파이프의 누수를 확인한다
- 가정마다 10% 절수 운동을 시작 한다
- 세탁 헹굼물을 화장실 청소 등으로 재사용한다
- 목욕물을 수세식 변기 등에 재사용한다



《농축산농가에서 할일》

- 관정, 양수기, 등 양수장비를 총동원하여 초지등에 급수대책 실시

《산업시설에서 할일》

- 민방위기본법에 의하여 설치된 비상급수시설, 인근 정수장, 간이상수도 전용상수도 등을 활용한다
-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비상급수를 위한 시설장비 및 인력을 확보 한다(군부대, 소방서등)

제6절 지 진

《가정에서 할일》

- 화재예방
 - 열기로부터 순간적으로 화재가 발생되어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화기를 신속히 처리하고 화재 발생시는 5분 이내에 진화 하도록 하며 대피시는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가리고 낮은 자세로 기어서 대피
- 성냥, 라이터, 가스렌지, 석유난로 등 발화물질 사용 금지
- 라디오, TV등 방송을 청취하며 상황판단과 질서 유지
- 가스, 수도, 전선 등의 이상 발견 시는 즉시 차단조치
- 목욕탕, 화장실 등 좁은 공간은 안전하므로 황급히 외부로 나오지 말고 상황파악 후 행동
- 가정에 있을 경우에는 1층보다 2층이 더욱 안전하므로, 1층 출입구에 있으면 밖으로 대피, 계단 가까이 있을 때는 2층으로 대피



《다중이용시설에서 할일》

- 상점가에 있을 경우
 - 간판이나 유리가 떨어져 내릴 수도 있으므로 도로의 복판으로 대피
- 영화관, 학교, 사무실 등 실내에 있을 경우
 - 신속히 의자 밑으로 머리를 숙이고 상황을 살핀 후 도피 보다는 화재가 위험하므로 상황을 보아 질서를 유지하며 신속히 출구로 대피
- 지하도에 있을 경우
 - 당황하여 출입구로 쇄도하거나 소리 지르지 말고 침착하게 질서를 유지하며 대피
- 운동장에 있을 경우
 - 당황하여 출입구로 쇄도하기 보다는 넓은 운동장으로 대피하는 것이 더욱 안전
- 응급대피
 - 옥내에서 테이블, 침대 등 비교적 견고한 가구 밑에 순간적으로 대피하고 옥외에서는 낙하물이 없는 내진성이 강한 건물로 대피하여



최소한 비상 지침물을 휴대하고 도보로 대피

○ 유연비어에 현혹되지 말 것

- 유연비어로 인한 공포분위기 조성에 침착하게 대처하고 재난안전대책 본부의 지시에 따라 신속하게 행동한다.

《고층건물에서 할일》

○ 실내에 있을 경우

- 창문에서는 멀리 떨어지고, 건물 중앙의 벽 쪽이 안전

○ 피해 입은 건물에서는 승강기보다 계단이용 신속히 대피

《저지대지역에서 할일》

○ 산이나 절벽에서는 산사태 발생이나 낙석에 주의하고 저지대는 침수사태에 대비

《보행자가 할일》

○ 강한 진동이 계속되는 시간은 15초를 넘지 않으므로 멀리 대피하기 위하여 서둘지 말고 있던 장소에서 안전한 곳으로 신속히 대피

○ 질서유지에 협조

- 번화가, 지하시설 등에서는 낙하물사고 및 정전에 대비하여 유도요원

의

지시에 절대적으로 따른다.

《차량운행중에 할일》

○ 운전 중인 때의 행동

- 차량을 신속히 평지나 지하차고로 대피후 차에서 떨어진 곳으로 대피

제7절 폭 열

1. 폭염시 국민행동 요령

가. 한낮의 뜨거운 햇볕은 피한다.

- 온도가 높은 한낮에는 되도록 천천히 걷고 격렬한 운동은 삼가
- 노약자는 야외활동을 삼가고 시원한 장소를 찾아 더위를 식힌다.
- 외출시 가볍고 밝은 색 계통의 헐렁하고 얇은 옷을 입고, 넓은 챙이 있는 모자를 써서 얼굴을 보호한다.
- 피부가 장시간 햇빛에 노출될 때는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 피부를 보호한다.
- 야외 근무자는 시원한 장소에서 평소보다 자주 휴식을 취한다.

나. 식사는 균형 있게, 물은 많이 마신다.

- 육류, 생선, 콩, 잡곡 등을 골고루 충분히 섭취한다. 단, 한꺼번에 많이 먹는 것은 피한다.
- 신선한 야채와 과일을 즐겨 먹는다.
- 탄산, 알코올, 카페인이 들어있는 음료는 피하고, 물은 갈증이 나지 않더라도 규칙적으로 자주 마신다.

다. 위생적인 생활을 습관화 한다.

- 반드시 끓인 물을 섭취하고, 날 음식은 삼간다.
- 손발을 깨끗이 하고 손톱은 짧게 깎는다.
- 조금이라도 상한 음식은 버리고 오래 보관하지 않는다.
- 조리기구는 청결히 사용한다.

라. 올바른 냉방기기 사용법을 숙지한다.

- 실내외 온도차는 5℃ 내외로 유지, 냉방병을 예방한다. (건강 실내 냉방온도는 26~28℃)
- 50분 가동 후 10분은 꼭 환기하고, 2주에 한번 필터 청소를 한다.
- 밤새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켜는 것은 위험하므로 방안을 미리 시원하게 하고 잠들기 전에는 전원을 끈다.
- 에어컨 가동중에는 창문을 모두 닫고 커튼이나 블라인드 등으로 직사광선을 차단, 냉방효과를 향상시킨다.

마. 동료이웃 건강에 관심을 갖는다.

- 주변의 혼자 생활하는 노약자, 장애인, 만성질환자 등에 관심을 갖고, 주거환경, 건강상태를 보살핀다.
- 야외 현장이나 고온 작업장에서 동료 몸상태에 서로 유의하고 필요시 도움을 준다.
- 응급환자 발생시 119, 1339 등에 연락하고, 구급차 도착시까지 환자를 서늘한 곳에 옮긴 후 체온을 내리는 조치를 취한다.

바. 만일의 정전사태에 대비한다.

- 정전에 대비하여 손전등, 비상 식음료, 부채 등을 마련한다.
- 정전시 주요 뉴스를 청취할 수 있도록 휴대용 라디오를 준비한다.
- 정전시에 아파트에서는 관리 사무소에, 일반주택의 경우 123번으로 신고한다.

사. 농가에서는 가축 및 작물관리에 유의한다.

- 축사 천장에 스티로폼 등 단열재를 부착한다.
- 축사주변과 운동장에 그늘막을 설치한다.
- 창문을 개방하고 선풍기나 팬 등을 이용 지속적인 환기를 실시하며, 적정 사육밀도를 유지한다.
- 돈사, 계사 천장에 물 분무장치 설치로 복사열을 방지한다.
- 축사 및 운동장의 분뇨제거와 건조상태를 유지한다.
- 깨끗한 물을 마시게 하고 비타민, 광물질을 섞은 사료를 먹인다.
- 곰팡이가 피거나 오래된 사료는 주지 않는다.
- 모기퇴치기구를 설치하고 정기적으로 축사소독을 한다.
- 하우스내 피해 예방을 위해 차광시설, 점적관수, 수막시설을 설치한다.
- 병해충 발생 증가 대비, 방제를 강화한다.
- 노지 재배 채소는 스프링클러를 이용한 관수작업을 실시한다.

아. 양식어장에서는 어장관리에 철저를 기한다.

- 환수량을 최대한 늘이고, 먹이 공급량과 사육밀도는 하향 조절한다.
- 액화산소를 공급하고 폭기시설을 설치한다.
- 차광막을 설치하고 저층수와 상층수를 뒤섞는다.
- 어체의 생리적 약화에 의한 어병 확산을 방지한다.
- 고온과 습기로 인한 사료부패 예방에 힘쓴다.

자. 편안한 잠자리를 갖는다.

- 찬물보다는 미지근한 물로 샤워하는 것이 숙면에 좋다.
- 자고 일어나는 시간을 일정하게 하고, 낮잠은 오래 자지 않는다.
- 자기 전 심한 운동은 피하고, 가벼운 운동을 규칙적으로 실시한다.
- 수분은 많이 섭취하지 말고, 허기질 때는 우유 한 잔 정도로 배를 채우고 잠자리에 든다.
- 커피와 홍차 등 카페인 함유 음료와 술, 담배는 지양한다.
- 잠들기 전 정신적 긴장감을 줄 수 있는 드라마 시청, 컴퓨터게임 등은 하지 않는다.
- 잠이 오지 않을 때는 '자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버리고 간단한 일을 하거나 독서를 한다.

2. 열대야 불면증 예방수칙

가. 일반성인

- 자고 일어나는 시간을 일정하게 하고, 전날 밤을 설쳤더라도 낮잠을 오래 자지 않아야 함
- 과식은 피하고 수분도 너무 많이 섭취하지는 말아야 하며, 우유한잔 정도로 가볍게 배를 채워 줌
- 커피와 홍차 등 카페인 함유 음료와 과음은 지양
- 숙면에는 찬물 샤워보다는 미지근한 물이 좋음
- 공포영화를 보거나 장시간 컴퓨터 게임을 하지 않아야 함
- 늦은 시간 과도한 운동은 숙면을 방해하므로 최소한 3시간 전에 가볍게 하는 것이 좋음
-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밤새 켜지 않도록 함

나. 아이들

- 아침엔 온 가족이 같이 생활을 시작함으로써 아이도 자연스럽게 깰 수 있도록 유도하고, 낮잠시간을 더욱 규칙적으로 유지함
- 낮 시간에는 아이가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가져 피곤함으로 밤잠을 잘 자게 함
- 실내 환경을 조용하고 쾌적하게 만들어 편안한 수면상태 유지
- 에어컨을 1시간 이상 가동하면 실내 습도가 내려가 감기에 걸리기 쉬우므로 50분 정도 틀고 10분 정도는 환기를 시켜 줌
- 취침 1시간 전까지 바깥에서 더위를 식히며 산책을 하는 것은 괜찮지만 취침 직전까지 야외에 머물면 오히려 숙면을 방해함

제8절 강 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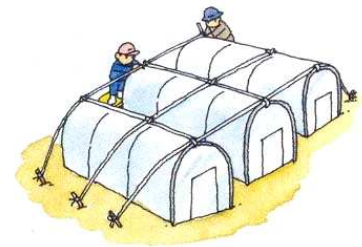
《평상시》

- 노후된 간판을 정비하고, 지붕, 옥상 등에 바람에 날릴 수 있는 물건을 치운다.
- 비상물품과 가정상비약을 준비한다



《강풍주의보·경보가 예보된 경우》

- TV, 라디오 등을 통해 강풍정보를 수시로 확인한다.
- 가능하면 외출을 자제하고 특히 장애인, 노약자, 어린이는 외출을 금지한다.
- 출입문을 굳게 닫고, 창문에 테이프를 붙이거나 커튼, 블라인드 등을 치고 창문에서 멀리 떨어진 화장실, 골방 등으로 피한다.
- 지붕, 안테나를 결박하고 낙하의 위험이 입간판 등의 시설물은 제거한다.
- 가옥 내·외의 전기수리를 하지 않는다.
- 지붕위 등 지상보다 높은 곳에서는 가능한 작업을 하지 않는다.
- 외부에 있을 때는 신속히 건물안으로 대피하고, 나무 밑으로는 피하지 않는다.
- 자동차를 타고 갈 때에는 속도를 줄이고 방음벽 아래로 대피하지 않는다.
- 놀이공원, 유원지 등의 놀이시설, 공사장의 크레인, 리프트 등은 즉시 운영을 중지하고 대피한다.
- 전주, 송전철탑 주변에 접근하지 않도록 한다.
- 낡은 집이나, 위험담장, 축대 인근을 접근하지 않는다.
- 공사장에서는 가시설, 안전장비를 점검하며, 낙하의 위험이 있는 시설물에 대하여 안전조치를 취한다.
- 비닐하우스, 인삼재배시설, 버섯재배시설 등 농림시설을 결박, 보강조치를 취한다.



1. 기상특보 및 발령기준

종 류		주 의 보	경 보
강풍 (육상)	평지	·10분간 평균풍속 14m/sec 이상 또는 순간풍속 20m/sec 이상이 예상될때	·10분간 평균풍속 21m/sec 이상 또는 순간풍속 26m/sec 이상이 예상될때
	산지	·10분간 평균풍속 17m/sec 이상 또는 순간풍속 25m/sec 이상이 예상될때	·10분간 평균풍속 24m/sec 이상 또는 순간풍속 30m/sec 이상이 예상될때
풍랑 (해상)		·10분간 평균풍속 14m/sec 이상 이고 3시간이상 지속 되거나 유의파고 3m 이상이 예상될때	·10분간 평균풍속 21m/sec 이상 이고 3시간이상 지속 되거나 유의파고 5m 이상이 예상될때
호 우		·12시간 강우량이 80mm이상 예상될때	·12시간 강우량이 150mm이상 예상될때
대 설	일반 지역	·24시간 신적설량이 5cm이상 예상될때	·24시간 신적설량이 20cm이상 예상될때
	산간 지역		·24시간 신적설량이 30cm이상 예상될때
건 조		·실효습도 35%이하가 2일이상 지속 될 것이 예상될때	·실효습도 25%이하가 2일이상 지속 될 것이 예상될때
해 일	폭풍 해일	·천문조와 기상조의 복합적인 영향 으로 해수면이 상승하여 발효기준 값을 넘을 것으로 예상될때	·천문조와 기상조의 복합적인 영향 으로 해수면이 상승하여 발효기준 값을 넘을 것으로 예상될때
	지진 해일	·대규모 해저 지진에 의한 해일발생 이 우려될때	·대규모 해저 지진에 의한 해일이 발 생 하여 해안지대 침수가 예상될때
한 파		·10월~4월의 아침최저 기온이 전일 보다 10℃이상 하강하여 발효기준값 이하로 예상될때	·10월~4월의 아침최저 기온이 전일 보다 15℃이상 하강하여 발효기준값 이하로 예상될때
		발효기준값 : 아침 최저기온 평균값에서 1/2표준편차를 감한 값의 정수값	
태 풍		·태풍의 영향으로 강풍풍랑호우 또는 해일현상 등이 주의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때	·태풍의 영향으로 강풍풍랑호우 또는 해일현상 등이 경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때
폭 열		일 최고기온 33℃ 이상이고, 일 최저 고 열지수(Heat Index) 32℃ 이상인 상태가 2일이상 지속 될때	일 최고기온 35℃ 이상이고, 일 최저 고 열지수(Heat Index) 41℃ 이상인 상태 가 2일이상 지속 될때
황 사		황사로 인해 1시간평균 미세먼지 (PM10) 농도 400 $\mu\text{g}/\text{m}^3$ 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황사로 인해 1시간평균 미세먼지 (PM10) 농도 800 $\mu\text{g}/\text{m}^3$ 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2. 재난대비 산청군재난안전대책본부장 지휘매뉴얼

가. 대설

기본개요

● 기상특보(기상청)

- 대설주의보 : 24시간 신적설이 5cm(산지10cm)이상 예상될 때
- 대 설 경 보 : 24시간 신적설이 20cm(산지30cm)이상 예상될 때

※ 한파예보

- 한파주의보 : 10월~4월 아침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 이상 하강하여 발효기준값 이하로 예상될 때
- 한 파 경 보 : 10월~4월 아침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5℃ 이상 하강하여 발효기준값 이하로 예상될 때

< 발효기준값 : 아침 최저기온 평년값에서 1/2표준편차를 감한 값의 정수값 >

< 기온조건에 따른 동파가능성 >

동파가능성	기 온 조 건
높 음	일 최저기온이 영하 5℃ 이하의 날씨가 2일 이상 지속
낮 음	일 최저기온이 영하 5℃ 이하의 날씨가 2일 미만 지속
없 음	일 최저기온이 영하 5℃ 이상인 날씨가 2일 이상 지속

● 적설량 등 기상상황에 따른 단계별 교통통제

- 1 단계 : 적설량 2cm 미만, 시거장애 100m 미만(20% 감속운행)
- 2-1단계 : 적설량 2cm 이상, 시거장애 20m 미만(50% 감속운행)
- 2-2단계 : 적설량 5cm 이상(월동장구 미착차량 및 연결화물차량 통행제한)
 - 도로정보 수시방송(방송국), 통행제한 및 우회조치(경찰청)
- 3 단계 : 적설량 10cm 이상, 시간당 적설량 3cm이상이 6시간 이상 지속, 강설 안개 등으로 시거장애 10m 미만(교통제한 및 운행정지)
 - 노면상태, 제설, 기상 및 교통상황을 감안 긴급통행제한(경찰청 협조)
 - 도로정보 수시방송(방송국 협조) 및 핸드폰 재난문자서비스 제공

대설 단계별 주요 조치사항

대설의보

24 신적설이 5cm이상 예상될 때

대설경보

24시간 신적설이 20cm이상 예상될 때

① 대설주의보 ⇨ 예방·대비단계

- 종합상황실 대응체제 점검 및 특별지시
- 진주기상대장과 전화 회 (필요시)
- 산청군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주재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 부처별 대비·대응계획 보고 받음
 - 피해최소화 위한 유관기관 협조 당부

② 대설경보 ⇨ 대응단계

- 종합상황실 상황점검
 - 대설예상지역 읍면장 전화(필요시)
- VIP 재난종합상황실 방문시 영접 및 상황보고 배석
- 산청군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주재
 - 재난관련 부서장 -적설상황, 기상특보 및 대처계획 보고
- 이재민 긴급구호 검토지시(필요시)

③ 경보해제 ⇨ 복구단계

- 본부장 역할수행 (필요시)
 - VIP 등 재난 피해현장 방문시 수행
-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구(필요시)
- 산청군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주재
 - 피해상황 파악 및 복구대책 등

□ 대설주의보(예방·대비단계)

본부장	재난안전대책본부	비고
<p>① 종합상황실 대응체계 점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상상황보고 청취 및 특별지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설 및 기온강하대비 사전 점검 철저 등 ○ 기상대장과 전화 등 회의 (필요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상강설량 및 기상전망 - 장소 : 재난종합상황실 ※ 회의 자료 작성 ○ 대설예상지역 읍면장 전화 (필요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립지역, 교통대책 철저 등 (재난종합상황실 ⇄ 읍면장) ※ 전화 당부자료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설대비 상황대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상상황 및 전망 ○ 대설주의보 발령에 따른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상근무계획수립 및 자막요청 ※ 상황대처계획보고 : 상황실장 ◆ 상황실 대비체제 확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상청방재기상정보시스템 활용 ○ 본부장 ↔ 기상대장 전화 등 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설로 인한 대규모 피해예상 ◆ 대설대비 상황판단 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황단계별 대처계획 협의 ○ 실무반 편성, 파견근무자 소집 ※ 따라 통제관·상황실장에게 위임 	
<p>② 산청군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주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및 읍면장 회의 ○ 피해최소화 위한 유관기관 협조 당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조·당부사항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청군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의소집 및 회의장 준비 ○ 부서별 대비·대응자료 작성통보 ○ 그 밖에 본부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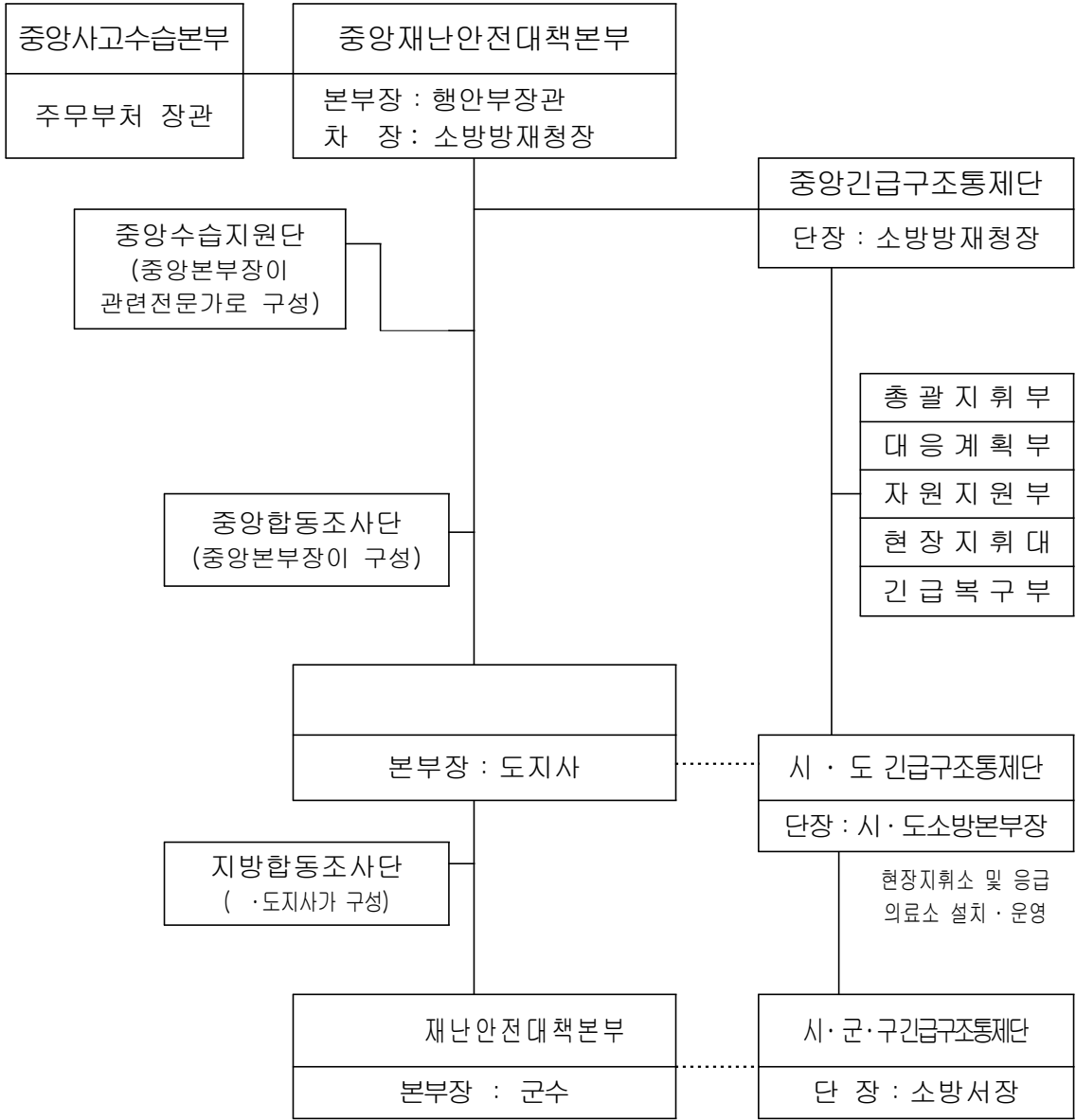
2 대설경보(대응단계)

본부장	재난안전대책본부	비고
<p>① 종합상황실 상황점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설대비 사전조치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설예상지역 대비 만전 - 관계부서(건교,농림,도로공사)피해 예방 철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화 당부자료 작성 ○ 대설예상지역 시·군·구 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속한 제설 및 상황관리 철저 : 상황실 ↔ 읍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화 당부자료 ○ VIP, 총리 상황실 방문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접 및 상황보고 배석 (VIP용 엘리베이터) ○ 관계 부서장회의 참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설상황, 기상특보 및 대설 대처계획 보고 <p>② 재난사태 선포 건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위원회 심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지역 2개 시도 중앙본부장 선포 - 대상지역 3개 시도 이상 국무총리 선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긴급시 선포 후 중앙위원회 승인 <p>③ 긴급구호 지원 건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교부세 지원건의 ○ 생계구호비 등 	<p>◆ 재난안전대책본부장 특별지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설피해 최소화 만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무원 비상소집,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가동 - 고립예상지구 교통소통대책 - 이재민구호 체계점검 ○ 대설지역 읍면장 전화 당부사항 ○ VIP등 재난상황실 방문 상황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상특보, 적설상황, 주요피해 및 대설대처 상황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설대처상황보고 : 통제관 ○ 관계 부서장 회의자료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상상황, 적설량, 기상특보 및 피해발생 등 대설대처계획보고 <p>◆ 재난사태 선포건의 건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위원회 개최 (안건작성 및 회의장 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장 : 국무총리 - 국무위원 등 25인 ○ 재난경보발령, 인력·물자동원, 위험 구역지정, 대피명령 등 <p>◆ 응급구호 등 긴급지원 협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남도 요구 구호물품 지원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해구호협회, 대한적십자사 등 ○ 조기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 	

□ 복구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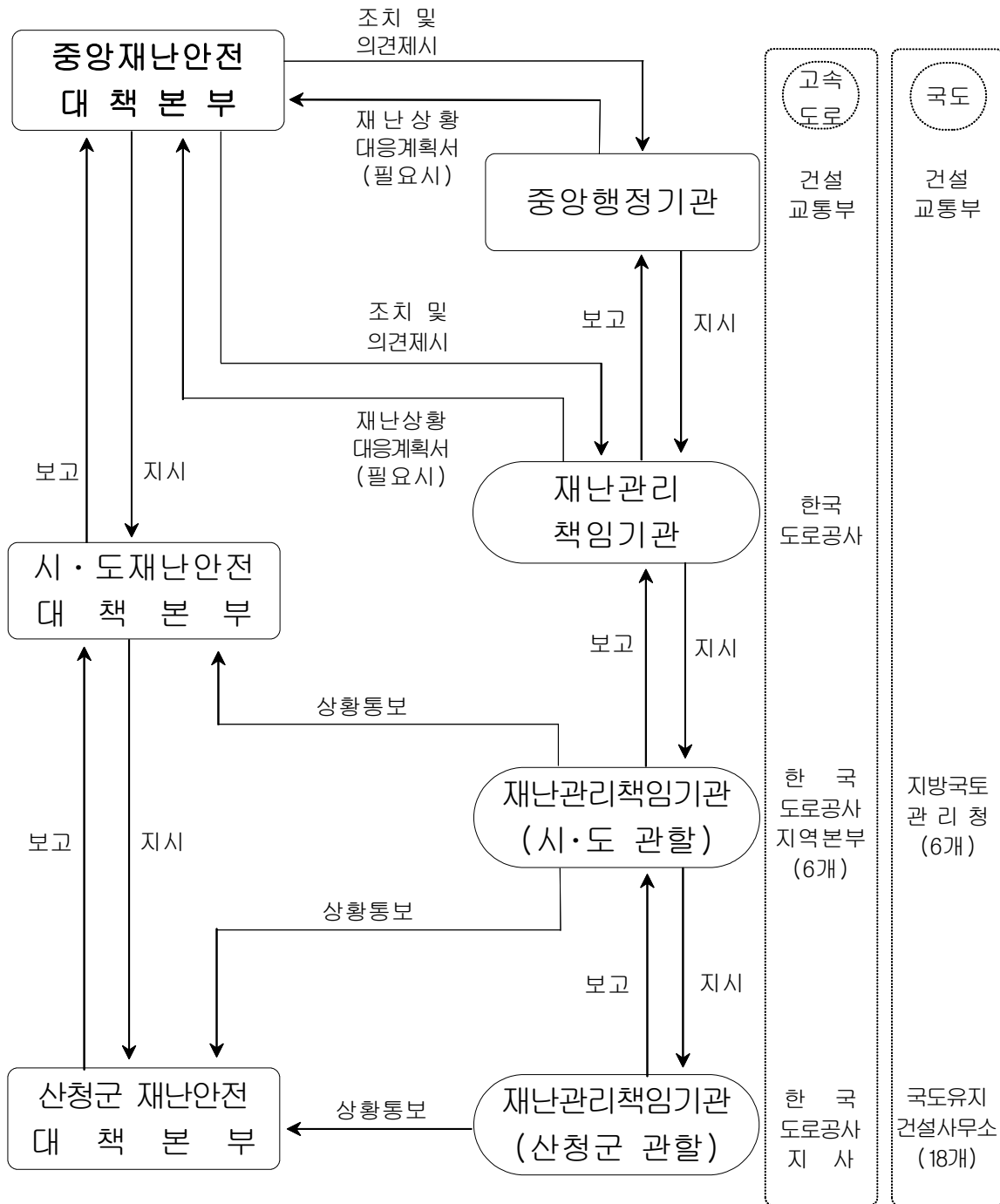
본부장	재난안전대책본부	비고
<p>① 본부장 역할수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VIP 등 상황실 방문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접 및 상황보고 배석 ○ VIP등 피해현장 방문시 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급복구 및 이재민 수용시설 방문 위로 등 사후수습 당부 <p>※ 일정·자료 : 건설과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황보고 등 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VIP등 상황실 방문시 ○ VIP 등 피해현장방문시 ◆ 응급복구관련 본부장 특별지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시설물복구, 이재민 구호비는 도 재해구호기금 우선 지원 등 	
<p>② 본부장 대설피해현장 방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급복구 현장방문 격려 - 이재민 수용시설 방문 위로 및 사후수습 당부 <p>※ 일정·자료 : 건설과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재민 구호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재민 구호품 지급(적십자사) ○ 의연금 우선지원 검토(재해구호협회) ◆ 중앙수습지원단 파견 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현장 수습지원 및 중앙정부에서 지원해야 할 사항(행정·재정적) <p>※ 중앙수습지원단 파견</p>	
<p>③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앙위원회 심의결과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 BH 재가 후 브리핑 ○산청군재대본 회의 주재 <p>※ 특별교부세지원, 피해건물의 지방세 비과세 행자부 차원 지원 건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합동조사반현지조사파견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부서 합동조사 후 복구계획 수립 확정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 확정 ◆ 소관부서별 회의자료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접수현황 및 복구대책 등 	

대설대응체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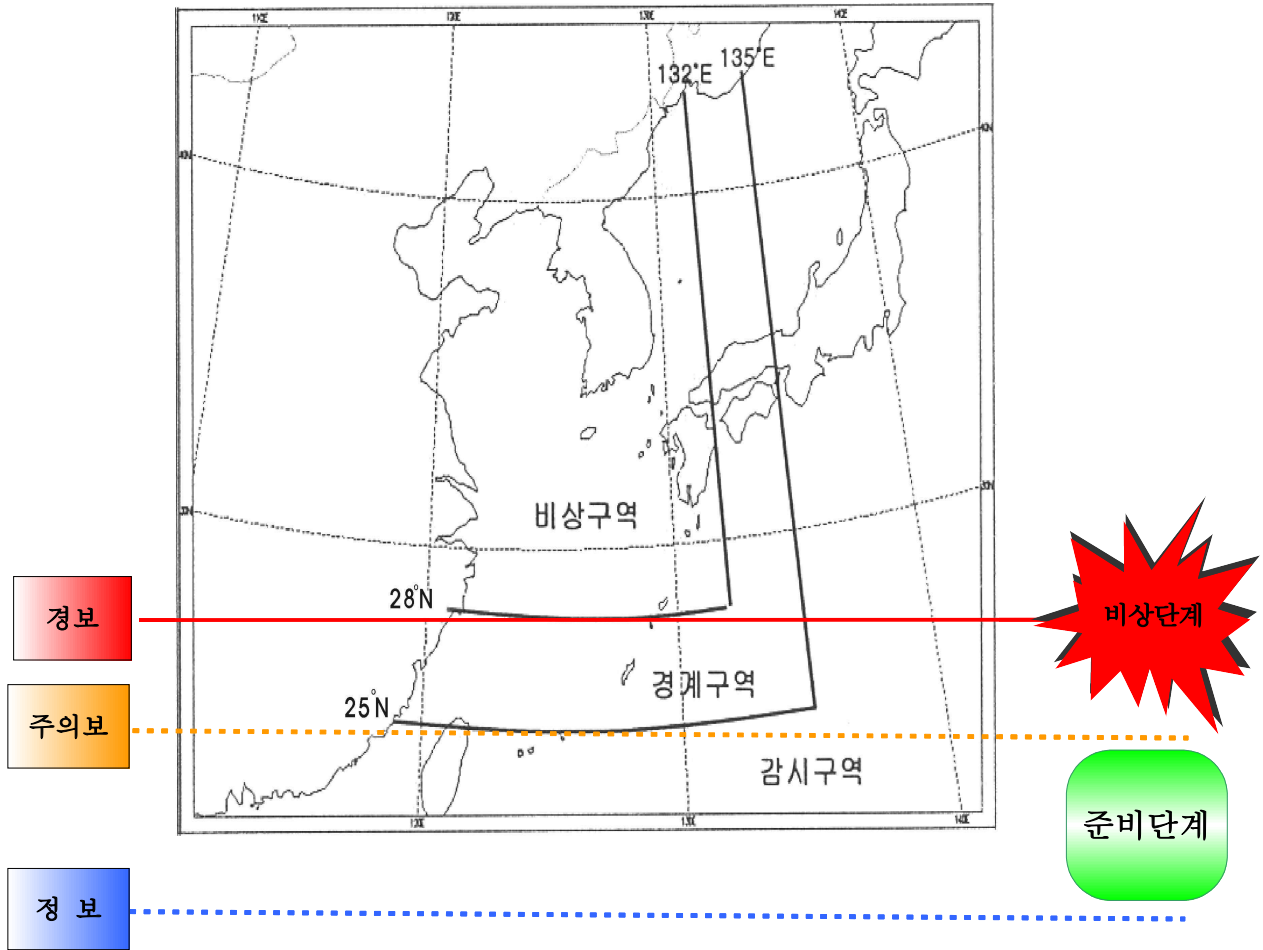
- 상황실 운영 : 24시간 근무
 - 주간 : 건설과, - 야간 : 당직실
 - ※ 단, 기상특보시는 재난종합상황실

대설상황 보고 체계도



나. 태풍

태풍정보구역



기상상황	단계별	태풍위치	태풍구역	제주도 남쪽
태풍정보	예방단계	16.0 N, 141.5 E	감시구역	1,948km지점
태풍주의보	대비단계	25.0 N, 135.0 E	경계구역	917km지점
태풍경보	대응단계	28.0 N, 132.0 E	비상구역	573km지점
태풍통과	복구단계	동해 진출	-	-

태풍 단계별 주요 조치사항

① 태풍정보발표 ⇨ 예방단계

- 재난종합상황실 대응체제 점검 및 대비 지시
- 진주기상대장과 전화 등 회의 (필요시)
- 산청군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주재(태풍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 부서별유관기관 등 협조 당부사항 등 경각심 고취

② 태풍주의보 ⇨ 대비단계

- 재난종합상황실 방문 및 특별지시
 - 태풍경보 예상지역 대비 철저 등
- 태풍 대비체제 점검
 - 태풍 예상진로에 따른 읍면장 전화 통화 (필요시)

③ 태풍경보 ⇨ 대응단계

- 재난종합상황실 상황점검 (태풍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 VIP 등 재난종합상황실 방문시 영접 및 상황보고 배석
- 산청군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주재
 - 재난관련 부서장 태풍예상 진로 및 상황대처 계획보고
- 긴급구호 검토지시

④ 통과단계 ⇨ 복구단계

- 본부장 역할수행 (필요시)
 - VIP 등 재난상황실 및 피해현장 방문시 수행
- 산청군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주재
 - 피해상황 파악 및 복구대책 등

□ 태풍정보발표(예방단계)

본 부 장	재난안전대책본부	비고
<p>① 상황실 대응체제 점검</p> <p>○태풍 관련 상황 청취</p> <p>- 태풍상황 단계별 대처 철저지시</p> <p>○진주기상대장과 전화 등 회의 (필요시)</p> <p>- 감시 구역내 진입 후 우리지역 직접 영향이 예상될 경우</p> <p>- 장소 : 재난종합상황실</p> <p>※전화 등 회의자료 작성</p>	<p>◆ 태풍대비 상황대처계획수립</p> <p>○ 태풍상황 및 전망</p> <p>○ 태풍영향권에 따른 조치</p> <p>※태풍 상황대처 보고 : 통제관</p> <p>◆ 상황실 예방단계체제 확립</p> <p>○ 기상청 등 태풍 정보 파악</p> <p>○ 본부장↔기상대장 회의 준비</p> <p>- 태풍 진로가 우리나라 영향 예상</p> <p>- 태풍의 크기가 중형(300~500km) 강도가 중 이상이 예상될 때</p> <p>※ 태풍예상 진로보고 : 기상대장</p>	
<p>② 산청군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주재</p> <p>○태풍의 직접적인 영향이 예상될 경우 부서별·대바·대응계획 보고 받음</p> <p>○유관기관 협조 당부사항 등 경각심 고취</p> <p>※부서·유관기관협조·당부사항 작성</p>	<p>◆ 산청군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개최</p> <p>○ 회의소집 및 회의장 준비</p> <p>○ 부서별 대비·대응자료 작성통보</p> <p>○ 그 밖에 본부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p>	

□ 태풍주의보(대비단계)

본 부 장	재난안전대책본부	비고
<p>① 종합상황실 방문 및 특별지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태풍대비 사전조치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보예상지역 대비안전 등 <p>② 태풍 대비체제 점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풍 예상 진로에 따른 재난관련 부서장 및 읍면장 전화 통화 (필요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계 구역내 진입 및 통과가 예상될 경우 - 재난종합 상황실 ⇔ 읍면장 (각종 시설물 등 점검철저 당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화 당부자료 작성 -긴급 대비 체제구축에 만전을 기하도록 당부 (필요시 대피명령 발령검토지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화 당부자료 작성 	<p>◆ 태풍대비 본부장 특별지시시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풍피해 사전예방 조치철저 ○ 인명피해 Zero화 안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풍예상 진로 및 단계별 대처요령 - 사전대비 및 피해발생에 따른 조치 <p>◆ 태풍대비 상황판단 회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황단계별 대처계획 협의 ○ 실무반 편성, 파견근무자 소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풍 규모에 따라 통제관, 차장, 본부장이 회의 주재 <p>◆ 본부장 지시사항 시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읍·면장에게 전화당부 내용 ○ 태풍예상 진로에 따른 긴급대비 체제 구축 등 ○ 종합상황실 방문 지시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부장 당부내용 시달 : 통제관 	

③태풍경보(대응단계)

본부장	재난안전대책본부	비고
<p>① 종합상황실 상황점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설, 농림 등 관련부서장 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방철저, 피해상황 신속파악 당부 ※협조 당부자료 자료 ○VIP 등 상황실 방문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접 및 상황보고 배석 <p>② 산청군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주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난관련부서장 회의 참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풍예상 진로 및 상황 대처 계획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풍대응 본부장 특별지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발생지역 공무원 비상소집 및 유관기관 협조체제 구축가동 ○ 군경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인명구조 및 이재민구호체제 점검 ◆ VIP 등 상황실 방문시 상황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풍위치, 크기, 상륙지점 및 피해예상지역 대처상황 등 ※ 태풍대처상황보고 : 통제관 ◆ 회의자료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풍예상 진로 및 상황대처계획 등 태풍대응 상황보고 	

4 태풍통과(복구단계)

본부장	재난안전대책본부	비고
<p>① 본부장 역할수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VIP 등 상황실 방문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접 및 상황보고 배석 ○ VIP 등 피해현장 방문시 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정·자료 : 건설과장 ○ 응급복구관련 특별지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생계관련 우선 지원 등 <p>② 본부장 수해현장 방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급복구 현황 파악 - 이재민 수용시설 방문 위로 및 사후수습 당부 ※ 일정·자료 작성 <p>③ 신청군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주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관련 부서장 회의 참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현황 및 복구대책 보고 - 관련사항 협의 	<p>◆ 상황보고 등 자료작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VIP 등 상황실 방문시 ○ VIP 등 피해 현장 방문시 <p>◆ 응급복구관련 본부장 특별지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침수주택수리, 이재민 구호비는 사도 재해구호기금에서 우선 지원 등 <p>◆ 이재민 구호조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재민 구호품 지급(적십자사) ○ 의연금 우선지원 검토(재해구호협회) <p>◆ 소관부서별 회의자료 작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 접수 현황 및 복구대책 등 	

다. 호우

호우 단계별 주요 조치사항

호우주의보

6 강우량이 70mm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10mm이상 예상될 때

호우경보

6시간 강우량이110mm이상 예상될 때
12시간 강우량이 180mm이상 예상될 때

① 호우주의보 ⇨ 예방·대비단계

- 재난종합상황실 대응체제 점검 및 특별지시
- 진주기상대장과 전화 또는 회의 (필요시)
- 산청군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주재 (호우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 부서별 대비·대응계획 보고 받음
 - 피해최소화 위한 유관기관 협조 당부

② 호우경보 ⇨ 대응단계

- 재난종합상황실 방문 특별지시 (호우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 VIP 종합상황실 방문시 영접 및 상황보고 배석
- 산청군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주재
 - 강수상황, 기상특보 및 대처계획 보고

③ 경보해제 ⇨ 복구단계

- 재난현장에 도·중앙수습지원단 파견 요청 (필요시)
 - VIP 등 상황실 및 피해현장 방문시 수행
- 산청군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주재
 - 피해상황 파악 및 복구대책 등

1] 호우주의보(예방·대비단계)

본 부 장	재난안전대책본부	비고
<p>① 상황실 대응체제 점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호우대비 상황 청취 및 특별지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해위험지구 시설물 안전점검 - 가로등신호등 감전사 피해방지 ○진주기상대장과 전화 및 회의 (필요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 예상 (기상전망 및 예상강수량) - 장소 : 재난종합상황실 ※전화 등 회의자료 작성 <p>② 산청군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주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서별 대비·대응계획 보고 받음 - 소관실과소별 부서장 ○피해최소화 위한 유관기관 협조 당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협조·당부사항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우대비 상황대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상상황 및 전망 ○ 호우주의보 발령에 따른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상근무 등 재난예방활동 수립 비상근무: 재난관리 단계별 근무체계 의함 - 호우대처상황보고(통제관) ◆ 상황실 대비단계체제 확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상청방재기상정보시스템 활용 ○ 본부장↔기상대와 회의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우로 인한 대규모 피해예상 ◆ 호우대비 상황판단 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황단계별 대처계획 협의 ○ 실무반 편성, 파견근무자 소집 ※ 규모에 따라 통제관에게 위임 ◆ 산청군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의소집 및 회의장 준비 ○ 부서별 대비·대응자료 작성 통보 ○ 그 밖에 본부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2 호우경보(대응단계)

본부장	재난안전대책본부	비고
<p>① 재난종합상황실방문 특별지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호우대비 사전조치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우경보 예상지역 대비 만전 - 산사태우려지역 예찰강화 등 - 예방철저, 피해상황 신속파악 ○집중호우 예상지역 읍면장 전화 (필요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명피해 예방 철저 등 (재난종합상황실⇔읍면장) ※ 전화 당부자료 작성 ○국지적 호우예상지역 읍면장 전화 (필요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주민 대피 등 대응만전 당부 (재난종합상황실⇔읍·면장) ※전화 당부자료 작성 <p>② 재난종합상황실 상황지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VIP 등 상황실 방문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접 및 상황보고 배석 <p>③ 산청군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주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난관련부서장 회의 참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수상황, 기상특보 및 상황 대처계획 등 보고 	<p>◆ 산청군재난안전대책본부장 특별지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우피해 사전예방 조치철저 ○ 인명피해 Zero화 만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무원 비상소집,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가동 - 인명구조 및 이재민구호체제점검 <p>◆ 본부장 지시사항 시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읍면장에게 전화당부 내용 ○ 국지적 호우예상지역 읍면장 전화 당부사항 ○ 종합상황실 방문 지시사항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화지시내용 시달 : 통제관 <p>◆ 상황보고 등 대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VIP 등 상황실 방문 상황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상특보, 강수상황, 주요피해 및 호우대처 상황보고 ※ 호우대처상황보고(통제관) <p>◆ 회의자료 작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상상황, 강수량, 기상특보 및 피해발생 등 호우대처상황보고 	

3 복구단계

본 부 장	재난안전대책본부	비고
<p>① 본부장 역할수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급복구관련 특별지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생계관련 우선 지원 등 ○VIP 등 상황실 방문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접 및 상황보고 배석 - 피해현황 및 응급복구상황보고 <p>※보고자 : 통제관</p> ○ VIP 등 피해현장 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재민 수용시설 방문 위로 및 사후수습 당부 <p>※ 일정·자료 : 건설과장</p> <p>② 본부장 수해현장 방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급복구 현황 파악 - 이재민 수용시설 방문 위로 및 사후수습 당부 <p>※ 일정·자료 : 건설과장</p> <p>③ 재난부서장 본부장 주재 회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현황 및 복구대책 보고 - 관련사항 협의 	<p>◆ 응급복구관련 본부장 특별지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이재민 구호비는 사도 재해구호기금에서 우선 지원 등 지원해야 할 사항(행정·재정적) <p>◆ 상황보고 등 자료작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VIP 등 재난종합상황실 방문시 ○ VIP 등 피해 현장 방문시 <p>◆ 이재민 구호조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재민 구호품 지급(적십자사) ○ 의연금 우선지원 검토(재해구호협회) <p>◆ 소관부서별 회의자료 작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 접수 현황 및 복구대책 등 	

3. 자연재난으로 인한 과거 14여년간의 피해현황

년도별	인 명 피 해		피 해 액 (억원)			복 구 액 (억원]		
	사망/실종	이재민 (세대/명)	계		사유시 설	계	공공시설	사유시설
평균	3/0.2	96.4/245.4	191.1	169.5	21.6	304.4	271.0	33.4
1998	27/2	1/1	254	217	37	306	269	37
1999	-	-	41.9	29.8	12.1	41.9	29.8	12.1
2000	-	-	128.6	123	5.6	153.6	148	5.6
2001	-	1/4	17	16	1	20	19	1
2002	2/0	766/1,977	943	849	94	1,488	1,367	121
2003	1/0	106/237	247	206	41	470	337	133
2004	-	28/83	34	31	3	63	59	4
2005	-	-	0.6	-	0.6	0.6	-	0.6
2006	-	60/148	209.5	189	20.5	432.1	414	18.1
2007	-	2/4	35	34	1	69	67.4	1.6
2008	-	-	0	-	-	0	-	-
2009	-	-	0	-	-	0	-	-
2010	-	-	0	-	-	0	-	-
2011	-							

4. 재난관련부서·유관기관 표준행동매뉴얼

□ 재난관련부서 표준행동매뉴얼

과 별	항 목	메 뉴 얼
공 통 사 항	◦ 상황근무 유지	◦ 재난대책 상황 근무요원 비상연락망 유지 - 24시간 상황유지
기획감사실	주 민 홍 보	◦ 청내 방송 및 언론 홍보
	직원복무상태확인	◦ 대규모 피해예상 및 피해발생시 본청 및 사업소,읍면 근무 실태 확인 점검
	보고서 작성 및 안내	◦ 대규모 피해발생시 VIP 보고서 작성 및 안내
주민생활지원실	재해구호 체계확립	◦ 인명사고시 재해구호기금 지급 등 구호체제 점검 ◦ 의연금품의 모집, 관리, 배분 ◦ 이재민 수용시설 지정관리 및 운영
	긴급 자원봉사	◦ 자원봉사자 긴급 동원태세 확립
행 정 과	직원비상근무	◦ 태풍대비 재해대책 비상근무 발령
	인력동원	◦ 피해발생시 응급복구를 위한 인력동원 (주민, 경찰, 군, 학생 등)
	민방위대 동원 등	◦ 지역 민방위 기동조직 편성 운영 ◦ 수해 취약지역 민방위 장비 및 자재확충 ◦ 재난발생 우려시 경보발령 및 상황유지
문화관광과	문화재 피해방지	◦ 전통사찰 등 문화재 피해예방 및 복구대책 추진
	관광지등 피해방지	◦ 관광지,관광시설 피해예방 및 복구대책 추진
	체육시설 피해방지	◦ 체육시설 피해예방 및 복구대책 추진

과 별	항 목	메 뉴 열
환경위생과	분뇨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생시 인접지역의 분뇨처리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계 유관기관과 사전 협의 및 협조체계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해발생 즉시 사용토록 쓰레기 임시적 환장 및 매립장을 사전 지정 쓰레기 처리를 위한 장비·인력 등 지원 협조체제 구축
경제도시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감전사고 예방 전기가스시설 피해복구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장시설 피해예방 및 복구대책, 감전 등의 위험 안전지도 점검 전기가스시설 안전성 점검 및 보수정비 (한전,가스공사등 유관기관 협조)
	주택시설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해상습 저지태, 산사태 우려지역의 노후 주택 점검 관리
	옥외광고물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광고물의 전도, 추락 등 예방관리
	산업단지 등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업단지 조성, 오지개발 등 시행중인 공사장 및 재해우려지 예찰 관리
건설과	중기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읍면별 중기현황 파악 및 동원체제 구축
	주차피해 방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수부지 등 저지대 주차관리 강화로 피해 최소화(견인장비 확보)
	공사장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행중인 공사장 관리
	우회도로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습 침수도로는 우회도로 지정 응급 복구용 장비, 물자등 사전 확보
	도로 응급복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통두절 도로 응급복구 실시 (도로변 장애물 제거 포함)
	공사장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해복구 사업지구 피해재발 방지 및 시행중인 하천공사장 관리
	수위 및 배수장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댐 및 하천 수위 파악 주요 배수펌프장 가동 현황 파악
산림녹지과	산림재해예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사태 복구지, 산림훼손복구지, 임도등의 사전 점검 및 대책강구 산사태 발생 우려지 주민대피 양묘장·버섯재배시설 피해예방대책 추진

과 별	항 목	메 뉴 열
보건의료원	전염병 예방대책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염병 예방대책 ◦ 전염병 예방을 위한 홍보 관리 ◦ 비상 방역 등
농축산과	농작물 피해예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습침수지 특별관리 ◦ 재해대비 영농 실천사항 (병해충예방, 침수농작물 관리, 양수장비 동원 등) 대 농민 홍보
	축사,잠사피해 예방 및 복구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낡은 축사 및 사료창고 보수정비 ◦ 홍수에 의한 위험예상지역의 비상 대피 장소, 수송수단 등 사전 확보 ◦ 가축 사전대피 및 방역, 위생관리
	수리시설 피해 예방 및 복구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수지, 소류지시설 점검, 정비 및 사전 방류로 홍수량 관리 ◦ 양, 배수장 시설 점검 및 관리인 비상근무 조치(농업기반공사 공조) ◦ 취입보, 용배수로 등의 시설점검, 정비
농업지원과	원예작물 등 하우스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풍해 상습지역은 방풍벽 설치 ◦ 하우스의 지주대 보강과 결속 보완
상하수도 사업소	상, 하수도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하수도 관로등 시설물 점검 보강 ◦ 배수지 시설점검 및 관리인 비상근무 ◦ 단수에 대비한 비상급수계획

□ 유관기관 표준행동매뉴얼

기 관 별	매 뉴 얼
공 통 사 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대책 상황 근무요원 비상연락망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4시간 상황유지
진주 기상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우, 태풍정보 신속제공 ◦ 주민 행동요령 홍보
산청소방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긴급 재난발생시 재난구조단 편성 운영 ◦ 119긴급전화로 피해상황 접수 관련실과 및 시군전달
산청 경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기관과 공조체제 구축, 재난 예상지역 사전 정보입수, 주민동향 파악 및 관계기관 통보 ◦ 피해지역 치안대책 및 교통상황 적극 홍보 ◦ 신속한 홍보활동으로 주민 안전지대 대피 유도 ◦ 유연비어 적극대처, 신속한 사실공개 ◦ 국·공립공원, 피서지, 야영장, 낚시터 등의 행락객 대피 또는 철수업무 적극 지원 ◦ 인명구조, 구난활동 강화 ◦ 도로침수 및 교통두절지역 안전관리 ◦ 교통신호등 감전사고 예방(필요시 단전조치)
부산지방 국토관리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도, 국가하천 공사장 피해예방대책 추진 ◦ 관리중인 시설물의 피해예방대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감독 현장 상주
제118연3대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구조반에 편성된 각 부대는 개선된 편성 및 운용지침 의거 상시 임무수행 가능토록 자체준비 ◦ 인명구조대 편성 운영 ◦ 피해복구를 위한 인력 및 장비 지원 ◦ 지역별 지원부대 편성으로 신속한 지원체제 구축
KT경남본부 산청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상습지 및 취약시설의 특별관리방안 강구 ◦ 재난대비 인력, 물자, 장비 등 동원체계 확립 ◦ 통신 소통 고립지역 해소 등 통신지원 ◦ 이재민 대피소 등 재난지역 공중통신 지원 ◦ 현장지휘소 긴급 임시전화 가설 ◦ 재난지역 가입자 통신시설 정비지원
한국농촌공사 진산지사산청지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수지 사전방류 및 퇴수로 홍수량 유출 저감 ◦ 양·배수장 시설점검 및 관리인 비상근무 ◦ 양·배수장 정전에 대비하여 비상전력 확충 ◦ 양·배수장 및 전기시설물 운전요령 교육 등

기 관 별	매 뉴 얼
한전 산청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해위험지구의 주기적 점검 및 개보수 ◦ 이재민 발생시 우선적으로 임시전력 공급 ◦ 양·배수장의 예비전원 점검으로 사고예방 ◦ 정전에 대비하여 전담반 편성으로 주민불편 조기 해소 ◦ 급·배수펌프장 등 국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시설의 정전 대책 ◦ 대단위 아파트단지 등 대규모 공동주택의 집단 정전대비
한국가스공사 진주지역본부 산청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굴착공사 현장 등의 취약시설 점검·정비 ◦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스관로 및 저장탱크의 시설점검 관리로 대형사고 예방 및 주민불편 해소 ◦ 재난 발생지역 가스안전 조치요령 홍보
국립공원관리공단 지리산사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원시설물 안전점검 실시, 대형공사장 관리 ◦ 재난위험 상존지구 관리 ◦ 재난 예·경보시설 점검·정비 및 전달체계 운영 ◦ 재난발생시 탐방로 등 입산통제 조치 ◦ 재난발생시 공원구역 내 피서지, 야영장 등 행락객 대피
산청 교육지원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시설에 대한 피해 예방대책 ◦ 학교시설 공사장에 대한 점검·정비 ◦ 이재민 수용시설 지정 및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발생시 수용에 지장이 없도록 시설관리 철저 - 군 재난대책본부와 공조체제 구축

5. 재난상황관련 비상연락망

○ 산청군재난안전대책본부장·차장

구 분	전 화		핸 드 폰	FAX(일반)
	일 반	행 정		
○ 본부장(군 수) - 사무실 - 관 사 ※ 부속실 - 비 서 실	970-6001 970-6004 970-6002 970-6003	6001 6002 6003	011-231-9811	970-6005
○ 차장(부군수) - 사무실 - 부속실 - 관 사	970-6006 970-6007 970-6008	6006 6007 6008	010-9542-5613	970-6009

○ 주요간부

	구 분	전 화		핸 드 폰	FAX(행정)
		(행정)	자 택		
본 청 직속기관 사업소	기 획 감 사 실 장	6060	743-2637	011.855.5637	6069
	주 민 생 활 지 원 실 장	6500	973-7304	011.9346.8940	6509
	행 정 과 장	6100	972-3315	011.9506.3315	6109
	재 무 과 장	6200	972-7695	016.835.6280	6209
	민 원 과 장	6300	747-9656	010.8506.2261	6309
	문 화 관 광 과 장	6400	972-7599	011.9518.7598	6409
	엑스포조직위본부장	8603		010.3572.0778	8659
	환 경 위 생 과 장	7100	973-9430	010.3552.9713	7109
	경 제 도 시 과 장	6800		010.9630.4140	6809
	건 설 과 장	6700	973-2932	010.9551.2936	6709
	산 림 녹 지 과 장	6900	852-3580	010.3550.1007	6909
	한 방 산 업 과 장	7700		010.9872.5321	7709
	보 건 증 진 과 장	7600	070-7787-6671	011.835.6671	7519
		7800	972-3283	010.3869.3289	7809
	농 업 지 원 과 장	7900	758-6634	017.545.6634	7909
상 하 수 도 사 업 소 장	7000	748-0110	010.5384.6596	7009	

○ 재난관련 담당부서

실 과 (담 당)	전화번호	Fax번호	담 당 업 무	비 고
기획감사실 (공보담당)	6051	6069	홍보업무	
주민생활지원실 (복지기획)	6501	6609	이재민재해구호	
주민생활지원실 (자원봉사)	6531	6609	자원봉사업무	
행정과 (행정)	6101	6109	주요인사 방문자료	
행정과(서무민방위)	6121	6109	민방위대원 동원	
문화관광과 (문화재)	6401	6409	문화재	
문화관광과 (관광개발)	6431	6409	관광시설	
문화관광과 (체육)	6411	6409	체육시설	
환경위생과(환경시설)	7131	7109	폐기물처리시설	
경제도시과 (지역경제)	6801	6809	농공·산업단지	
경제도시과(주택행정)	6811	6809	주택	
건설과 (건설행정)	6701	6709	소규모사업	
건설과 (도로담당)	6721	6709	도로·교량	
건설과 (하천관리)	6711	6709	하 천	
건설과(재난관리)	6731	6709	재난상황관리	
건설과(교통행정)	6741	6709	대중교통	
보건증진과(예방의약)	7531	7519	방역,의료	
농축산과(친환경농업)	7811	7809	농작물	
농축산과(친환경축산)	7831	7809	축사, 가축	
농축산과(농업기반)	7851	7809	수리시설,농경지	
농업지원과(원예·과수특작)	7921	7909	비닐하우스,버섯,과수	
상하수도사업소(상수도)	7011	7009	상수도시설	
상하수도사업소(하수도)	7021	7009	하수도시설	

○ 유관기관

기 관 명	전 화 번 호	FAX번호	담 당 부 서
산청 경찰서	972-2903	973-4982	경 비 담 당
산청군 산청교육 지원청	970-3064	973-0556	협력지원과
8962부대3대대	963-1113	964-2412	군 수 처
KT산청지점	972-0060	972-4115	고객서비스과
도로공사산청지사	970-4332	970-4308-9	도 로 부
한국전력공사산청지점	970-4237	970-4240	
산청소방서	970-9212	970-9239	
산청 소방서 산악구조대	973-1119	973-0064	"
한국동서발전(주) 산청양수발전처	970-2259	970-2214	총 무 과
한국농촌공사산청지사	973-1346	973-2090	산 청 지 사
진주기상대	746-0132		예 보 과
KBS 진주방송국	740-7100		보 도 국
MBC 진주방송국	771-2114		보 도 국
국도유지건설사무소 진주국도 산청지사	740-2632~37	740-2659	보 수 과
국립공원관리공단 지리산사무소	972-7771~2	972-7773	보 전 과
남강댐 진주지사	750-1212	750-1229	운 영 과

2012년 자연재난대비 및 방재물자 확보현황

1. 방재시설 현황

시·군	합 계	하천 제방	수문	배 펌프 수장	댐	저수지	방조제	기타
산청군	488	250	40	2	0	198	0	7
	(7)	(-)	(-)	(0)	(-)	(-)	(-)	(7)

※ ()는 중점관리대상 방재시설 현황입니다.

2. 재해취약시설 현황

시·군	합 계	중요방재 시 설	재해위험 지 구	대형공사장	위험구역	산 사 태 우려지역	기 타
산청군	15	7	3	2	3	-	

2-1. 중요방재시설 현황

시·군	시설명	유형별	위치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비고
			읍면	리			
산청군	자동우량 경보시스템	예경보	시천면	사리	건설과	차현식 (970-6733)	
산청군	자동우량 경보시스템	예경보	단성면	백운	건설과	차현식 (970-6733)	
산청군	자동우량 경보시스템	예경보	금서면	오봉	건설과	차현식 (970-6733)	
산청군	자동우량 경보시스템	예경보	삼장면	유평	건설과	차현식 (970-6733)	
산청군	자동우량 경보시스템	예경보	삼장면	대포	건설과	차현식 (970-6733)	
산청군	자동우량 경보시스템	예경보	시천면	중산	건설과	차현식 (970-6733)	
산청군	자동우량 경보시스템	예경보	시천면	내대	건설과	차현식 (970-6733)	

2-2. 재해위험지구 현황

시도명	시군구	읍면동	지구명	유형별	위험 등급	시설명	시설 등급	총 사업 규모	
								사업 물량	총사업비 (백만원)
경남도	산청군	시천	내공	제방	가	시천천	지방	제방및축제 L=1.5km	5,000
경남도	산청군	삼장	대원사	절개지	다	산림	급경사	사면보강 1식	10,000
경남도	산청군	신안	적벽산	절개지	다	산림	급경사	피암터널 L=850m	10,500

2-2-1. 재해위험지구 관리책임자 비상연락망

지구명	시설명	위치		시설관리기관		현장 관리책임자 (공무원 주민 구분작성)		현장 관리책임자 연락처			비고
		시군	읍면	기관명	사무실	직급	성명	사무실	자택	핸드폰	
내공	제방	산청	시천	산청군	970-6732	7급	이종순	970 8322-		010-9488- 0829	
대원사	절개지	산청	삼장	산청군	970-6732	7급	김현철	970 -8272		010-2057- 5836	
적벽산	절개지	산청	신안	산청군	970-6732	7급	김병찬	970 -8422		010-7930- 2920	

2-3. 대형공사장 현황

시·군	시설명	유형	위치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비고
			읍면	리			
산청군	한국선비문화연구원 건립공사	건축물	시천면	사리	산청군청문 화관광과	이현필 970-6433	이상없음
산청군	산청생초지방상수도 통합및확정공사	상수도	생초면	신연리	산청군청상 하수도사업 소	김성훈 970-7012	이상없음

2-4. 위험구역 현황

시·군	지구명	유형	위치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비고
			읍면	리			
산청군	유평지구	산간계곡	삼장	유평	삼장 개발	정춘기 970-8272	
산청군	중산지구	산간계곡	시천	중산	시천 개발	형경호 970-8322	
산청군	백운지구	산간계곡	단성	백운	단성 개발	차상효 970-8381	

2-5. 산사태 우려지역 현황

시·군	지구명	가구/인원	위치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비고
			읍면	리			
	해	당	없		음		

2-6. 기타 현황

시·군	시설명	유형	위치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비고
			읍면	리			
산청군	산청 정수장	상수도	산청읍	차탄리	상하수도 사업소	최근식 (970-7002)	

3. 수방자재 확보현황

시·군	합 계	모 래 주머니 (매)	포대류 (매)	묶음줄 (타래)	말뭍 (본)	배수관 (본)	덮개류 (비닐) (㎡)	작업 공구 (점)	비축 장소 (개소)
산청군	16,831	4,000	2800	200	1,370	-	8,000	450	11

4. 구호물자 확보현황

시·군	일시구호세트		응급구호세트					재가구호세트			
	비축 기준	비축량	비축 기준	비축량				비축 기준	비축량		
				소계	기존 (1종)	기본용	개인용		소계	기존 (2종)	개인용
					소계					기존 (2종)	
산청군	46	193	165	184	3	52	129	95	93	8	85

5. 방역물자 확보현황

시·군	합 계	살충제 (ℓ)	살균제 (ℓ)	우물소독약 (kg)	예방주사약 (천명)	비축장소 (개소)
산청군	800	700	50	50	0.6	1

6. 응급복구장비 지정현황

시·군	합 계	불도저 (대)	페이로더 (대)	그레이더 (대)	크레인 (대)	포크레인 (대)	덤프트럭 (대)	집게차 (대)	청소차 (대)	분뇨차 (대)	기타 (대)
산청군	104	-	-	-	1	47	43	-	10	-	3

7. 이재민 수용시설 현황

구분	계		학교		마을회관		경로당		관공서		기타	
	개소	수용 능력(명)	개소	수용 능력	개소	수용 능력	개소	수용 능력	개소	수용 능력	개소	수용 능력
산청군	40	6,297	11	4,366	20	920	1	17	4	561	4	433

8. 수난구조용 장비 현황

시·군	합 계	헬기 (대)	선 박(척)				구명복 (벌)	구명환 (개)	산소 호흡기 (대)	구조용 로프 (개)	잠수세트 (점)	기타
			계	지도선	구명 보트	기타						
산청군	333		8	-	8	-	134	131	25	29	3	11

9. 확보현황

구 분	확보액(백만원)			사용액	잔 액	비 고
	계	원 금	이 자			
산청군	671	660	11	0	671	

10. 080 무료전화 설치현황

기 관 명	무료전화번호	회 선 수	비 고
산청군	080-973-3650	1	

11. 재해 예·경보시설

11-1. 자동우량경보시설

시군명	지구명	시 설 현 황							설치 년도	경보발령 기준 (분/mm)	국립공원 관리공단 설치
		계	감시국	통제국	우량국	수위국	경보국	중계국			
계	28개지구	278 (18)	10	20	62 (3)	1	171 (15)	14			
산청군	대원사 계곡	68 (11)	1	1	3	-	17 (4)	1	1998 1999 2003	경계 20/16 대피 20/17	우량국 1 경보국 4
	내원사 계곡				3 (1)	-	6 (3)	-	2001 2002 2004	경계 20/17 대피 20/18	경보국 3
	거림 계곡			3	-	5 (1)	1	2001 2003 2004	경계 20/17 대피 20/18	경보국 1	
	백운 계곡			1	-	2	-	2005	경계 20/14 대피 20/15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	
	중산리 계곡			4	-	10 (2)	1	1996 1999 2001 2003 2004	경계 20/14 대피 20/15	경보국 2	
	오봉 계곡			1	2	-	4	1	2005	경계 20/14 대피 20/15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

※ ()은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설치한 현황, 전체 숫자에 포함

11-2. 재해 상황문자 정보시스템 설치 현황

시군명	지구명	유 형	설치장소	대수	설치년도	비 고
산청군	중산리	산간계곡	시천면 중산리 중산리계곡 입구	1	2002	
	대원사	산간계곡	삼장면 평촌리 대원사계곡 입구	1	2002	
	백운계곡	산간계곡	단성면 백운리 백운계곡 입구	1	2002	
	산청읍	하천	산청읍 옥산리 래프팅 승선장	1	2012	

11-3. 자동음성통보시스템 통보대상자 D/B 구축현황

구분	합계	마을 앰프	공무원	통리 반장	유관 기관	모니터 위 원	일반 주민	기 타
산청군	1,347	70	636	286	10	12	290	43

11-4. 위성전화기 확보현황

(단위 : 대)

시·군	수 량
산청군	6(기존보유)

11-5. TV재해경보방송수신기 설치현황

구분	시군명	설 치 장 소	주 소	전화번호
1	산청군	산청군재해대책본부	경남 산청군 산청읍	055-970-7007
2		산청군청 당직실	경남 산청군 산청읍	055-970-6222
3		산청경찰서 상황실	경남 산청군 산청읍	055-972-7000
4		산청경찰서 경비상황실	경남 산청군 산청읍	055-972-2903
5		산청경찰서 정보계	경남 산청군 산청읍	055-972-2906
6		국립공원지리산관리사무소(본소)	경남 산청군 시천면	055-972-7771
7		국립공원지리산관리사무소(중산)	경남 산청군 시천면	055-972-7785
8		삼장면 사무소	경남 산청군 삼장면	055-970-8271
9		시천면 사무소	경남 산청군 시천면	055-970-8321
10		단성면 사무소	경남 산청군 단성면	055-970-8381

12. 민방위 경보시설 현황

시군	구분	계	통합 사이렌 설치 장소	비고
산청군		2	산청 군청 청사 내, 신안면사무소	

12-1. 민방위 경보장비 설치 현황

순번	설 치 장 소		비고
	주 소	단 말 명	
1	산청군.읍 산엔청로 1	민방위 경보시설(경보사이렌)	
2	산청군 신안면	민방위 경보시설(경보사이렌)	

13. 배수펌프장 현황

시군별	계	도시 방재용			농업용			비고
		소계	시군	타기관	소계	기반공사	시군	
산청군	5	1	1	-	4	1	3	

13-1. 도시방재용 배수펌프장 현황

시군명	배수장명	위치		설치 년도	배수량 (m ³ /min)	시설 규모		관리자 전화번호
		읍면	리동			용량	수량	
산청군	하정	신안	하정	1993	390	전300HP×1,000mm 전200HP×800mm	1 2	조기성 01.9186.9370

14. 응급 의료센터 현황

(단위: 개소, 명)

시군	병원명 (대표자)	병실수	응급차 보유 대수	전화번호
산청군	산청군보건의료원(문형도)	30	1	970-7500

15. 인명구조 기관현황

기관명	소재지(주소)	전화번호
산청소방서산악구조대	산청군 시천면 사리 829-6	973-1119
지리산국립공원 관리사무소	산청군 시천면 사리 755-24	972-7771
대한적십자지리산 산악구조대	산청군 시천면 중산리 두류동 113-1	972-1155

16. 인명구조기관·협회별 현황

기관·협회	소재지	구조유형	전문인력	보유장비
산청소방서 산악구조대	산청	산악	3	·산악구조장비 1식
지리산국립공원 관리사무소 외 3개분소	"	"	12	·산악구조장비 1식 ·분소(화개, 함양, 중산리)

17. 시·군별 인명구조기관·협회 현황

(소방서, 경찰서 제외)

시·군	기 관 · 단 체 명	대표전화
산청군	산청소방서 산악구조대 지리산국립공원 동부관리사무소산악구조대 대한적십자사 지리산산악구조대	(055) 973-1119 972-7771 972-1155 972-1155

18. 일반 건설업체 현황

구분	계	토건	토목/건축	토목	건축	산업설비	조경	기타
계	23	0	4	16	0	0	3	0

19. 전문 건설업체 현황(1)

구분	등록업종수	업체수	실내건축	토공	미장방수조적	석공	도장	비계	금속구조창호	지붕건축조립	철콘	기계
계	112	195	9	11		44		2	4		70	

20. 전문 건설업체 현황(2)

구분	상하	보링	철도	포장	수중	조경식재	조경시설	강구	철강	준설	승강	가스	시설	비고
계	14	1		2		10	6							

21. 엔지니어링 등록업체 현황

시·군	상 호	대표자	주 소	등록부문
	경성기술단	류근상	신안면 하정리 744-5	건설
	대경	하종균	하정리 936-5	건설
	장호엔지니어링	이석생	단성면 성내리 299	건설
	세다엔지니어링	차승윤	산청읍 옥산리 438-20	건설

22. 자연재난상황관련 비상연락망

구 분		군수	부군수	과 장	담 당
산 청 군 (055)	성 명	이재근	강승순	서길영	김기훈
	행 정	6001	6006	6700	6731
	일 반	970-6001	970-6006	970-6700	970-6731
	휴대폰	011-231-9811	010-9542-5613	010-9551-2936	011-560-6651